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1. 선 사
2. 고 대
3. 고 려
4. 조 선
5. 근현대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1. 선 사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60만년 전의 유적이 발견되어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오래 전부터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는 지질학적으로 제4기 홍적세로 기후와 지형의 변화가 심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 무렵까지 계속된 이 홍적세의 기나긴 기간 중에 주로 타제석기를 사용하면서 수렵·채집경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문화가 구석기문화이다.

그 후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부터 지구상에는 기온의 상승과 함께 동식물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싹트게 되었다.

신석기시대 문화라고 하면 이와 같이 홍적세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배경으로 전개된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농경의 실시 이전에 토기가 먼저 제작되고 간석기를 사용한 곳도 있다.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충적세에 속하고, 토기와 간석기들은 신석기적 문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신석기문화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후자에 속하는 곳이 가까운 시베리아, 일본, 한국이다.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기존에는 대략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새로운 자료의 증가를 통해 현재는 기원전 10000년경까지 소급해보기도 한다. 이후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지방적 특색을 지니면서 발전하였고, 농경의 시작은 기원전 2000년경의 신석기시대 말기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0세기에 이르면 쌀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농업경제를 배경으로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며,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문화에 전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배계층의 확립, 문자의 발명, 도시의 발생, 교역과 분업, 청동기의 출현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여러 조건을 전제로 하여 청동기시대로 시대구분되지는 않는다. 청동기시대의 규정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동기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청동기가 출현하는 시기는 기원전 10세기경이나, 鑄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거는 그보다 약간 더 늦은 시기부터 나타난다.

청동기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그 형태와 기능이 점차 세련되고 다양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기원전 3세기경에는 새로이 철기의 도입이 이루어진다. 철기의 출현시기는 대체로 청동기의 극성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분기점을 설정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시기는 어디까지나 청동기시대의 문화전통이 지속되던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되는 서력 기원 전후를 분기로 하여 그 이전은 청동기시대, 이후는 원삼국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철기의 보급과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원삼국문화는 4세기를 전후하여 왕권의 성립과 함께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는 삼국시대로 접어든다.

한국의 선사문화는 이상과 같이 전기구석기시대부터 본격적인 삼국시대 개시 이전까지 한반도 선주민이 남긴 일체의 문화라 할 수 있다.

1) 역사의 서장—구석기문화

한반도에서 구석기문화가 논의되고, 발굴 조사가 행하여진 것은 최근 40년 이내의 일이다. 해방 전인 1935년 함경북도 두만강 부근 동관진에서 고생물학자 모리 타메조(森爲三)·도쿠나가 시게야스(徳永重康)에 의해 채집된 赤鹿(Cervus)·巨鹿(Megaceros)의 뿔 또는 뼈로 만든 약간의 찌르개가 채집되었고,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예리한 날의 석기도 몇 점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나옴라(直良信夫)는 1940년에 이것을 구석기시대 유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유적 근처에는 신석기유적들이 있고, 이러한 유적에서도 흑

요석으로 만든 펜석기들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동관진에서 채집된 홍적세 화석동물 뼈 조각과 이들 석기와와 공존관계 여부가 의문시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구석기시대의 존재가 부정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던 중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새로이 발견되고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초이다. 이렇듯 구석기 연구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지만 그간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 수는 약 30여 개所に 달하며, 그 중 전기구석기에서 후기구석기에 속하는 유적이 모두 발견되어 구석기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중 그 유적의 성격이 파악되어진 대표적인 전기구석기유적으로는 평양 상원 검은모루유적,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충남 공주군 석장리, 충북 제천시 점말동굴 등이 있다.

먼저 1966년 발굴 조사된 평양 상원 검은모루유적은 그 연대가 40~60만 년 전으로 발표됨에 따라 우리 나라 역사의 상한선이 종래 생각했던 것보다 수십 만년 상회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은 동서의 길이 약 30m, 최대 폭 2.5m 정도의 석회암 동굴 유적으로 시멘트 재료를 구하기 위한 석회암 채취 과정에서 알려진 곳이나, 여러 종류의 펜석기와 함께 수많은 동물화석이 발견되어 전기구석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펜석기로는 석회암류나 석영맥암으로 만든 주먹도끼·찌르개·외날긁개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돌로 된 모루 위에 원석을 던져 그 파편으로서 석기를 제작하는 모루 때기(Anvil Hurling Technique) 또는 직접때기기술로 제작되었다. 이들 석기와 함께 출토된 다량의 홍적세 동물화석은 몇 개의 생태적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삼림성 포유류가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으로 초원성 또는 삼림 초원성이 많으며, 강이나 늪 가까이 사는 동물은 두세 종에 불과하다. 특히 상원큰사슴·상원갈발쥐·상원말 등 고생물 중에서 처음 발견된 종류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또한 물소·원숭이·큰쌍코뿔소·코끼리 등은 아열대 및 열대에 사는 동물로서 당시의 기후가 현재보다 더웠고 습윤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은 홍적세중기 초인 약 50~6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충남 공주군 석장리 유적은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석기유적으로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모아(A. Mohr)씨와 샘플(L. Sample) 여사의 지표조사에서 약간의 펜석기편이 수

습되었다.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연세대학교 박물관조사단이 연차적인 발굴에 착수하여 전기·중기·후기의 구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이 중 전기에 속하는 하위층에서는 찌개문화전통(Chopper, Chopping Tool)의 석영제 석기가 출토되었다. 중기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는 석장리 중위층이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굽개·조각기 등 박편석기 계통의 석영제·반암제 석기가 주체를 점하고 있다. 한편 평양 상원 검은모루 부근의 용곡동 동굴유적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고고학조사단에 의해 40~50만 년 전의 화석인골 10인분과 다수의 뎀석기들이 출토되어 체질인류학적 측면에서의 전기구석기인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후기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는 석장리 상위층, 웅기 굴포리가 있다. 석장리에서는 전기와 중기에 많던 찌개가 수적으로 감소하고 박편석기가 현저히 증가되며, 유럽의 후기구석기문화인 오리나시안(Aurignacian) 기법이 나타나며, 북중국과 시베리아의 구석기들과도 관련성을 보인다. 굴포리에서는 굽개와 조각기 등의 석영제, 각혈암제 박편석기가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에서부터 후기에 이르는 여러 유적과 화석 인골이 확인되었다.

2) 정착생활의 신석기문화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의 수는 약 150개소에 이른다. 이들은 한반도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대동강·한강 유역 및 그 인접도서를 포함한 서해안지역, 두만강유역을 포함한 동북해안지역, 낙동강유역을 포함한 남해안지역 등 세 개 지역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들 각 지역군 사이에는 문화 양상의 차이 또한 적지 않다.

서해안지역에서는 토기의 기형이 곧은 아가리와 뿔족 바닥으로 이어지는 포탄 모양의 뿔족밑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 토기의 바탕흙에는 운모가 혼입된 것이 많고, 수적으로는 적지만 석면과 활석이 혼입된 것도 있다. 무늬는 그릇 표면의 전면 혹은 일부에 장식되어 있으며, 이들 무늬는 바탕흙이 마르기 전에 이빨이 하나인 단치구 또는 여러 개 달린 다치구의 무늬새기개

로 굽거나 눌러서 새긴 것이다. 아가리부분의 주된 무늬로는 평행밀집단사선문, 점열문, 사격자문 등이 있고, 몸체 부분에는 어골문 또는 그의 변형이 대부분이고, 바닥은 몸체와 다른 무늬로 장식하였다. 이런 특성을 갖는 토기를 총괄하여 서한점저유형토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서한토기는 표면의 장식 무늬가 아가리부분, 몸체부분, 그리고 바닥 가까운 부분 등 각각의 몸체 부위에 따른 장식 무늬의 유무와 조합 관계에 따라 3기로 나뉘어진다. 제1기는 기원전 5000~3500년, 2기는 기원전 3500~2000년, 3기는 기원전 2000~1000년까지이다.

동북해안지역의 토기는 그릇 형태에 있어 예외 없이 납작바닥인 점이 특징이다. 바탕흙에는 굵은 모래가 섞여 있으며,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조개가루를 혼입한 것도 있다. 무늬는 토기 표면 전체에 걸쳐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릇 표면의 아가리부분 또는 아가리부분과 몸체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무늬를 그린 수법은 매우 다양한데, 바탕흙을 빗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눌러찍기 또는 그어서 무늬를 새긴 것이 아니라 뽕죽한 무늬새기개로 찢어서 점 같은 것을 새긴 것이다. 그러나 무늬가 없는 토기도 반출되고 있다. 이들 토기를 일괄하여 동한평저유형토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동한토기는 함북 웅기군 서포항유적 발굴 조사에서 층서적 상하관계가 잘 나타나 있으므로 그에 따라 1기에서 5기로 세분되며 1기는 기원전 5000년경에서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1000년까지 계속되었다.

남해안지역에서는 부산 영도섬에 있는 동삼동유적이 중요하다. 동삼동유적에서 나타난 층서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토기군 상호간의 특성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가 5기로 세분되는 각 분기의 주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 토기를 일괄하여 남한유형토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토기는 기원전 5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까지 지속되었다.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여러 종류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는 화살촉·창·도끼·조합식 낚시바늘 등이 있다. 화살촉의 등장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종래에 창처럼 근접해서 수렵을 하는 단계에서,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활의 사용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량 확보의 증대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어구류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어로에 커다란 비중을 두었

음을 알 수 있다. 암사동유적을 위시한 서해안지역의 유적에서는 돌로 된 그물추가 다수 발견되어 주로 그물에 의해 고기를 잡았음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이 그물에 의한 어로 방식은 강원도 오산리나 부산 동삼동유적처럼 신석기전기의 낚시바늘이 개별적 작업인데 반하여 다량의 어획량을 보장하는 집단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기부터는 냇돌에서 떼어낸 타원형 격자를 안팎으로 떼어낸 돌도끼가 출현하여 후기에까지 그 전통이 지속된다. 후기에 들어서면 이와 같은 냇돌 석기 전통이 지속되지만, 간석기의 양이 증가하면서 농경과 관련된 석기류가 출토된다.

집자리는 대부분 땅을 파고 들어간 움집이다. 초기에 속하는 집터로는 서포항의 경우 평면이 타원형 움집이나, 오산리에서는 발굴된 14기가 모두 평면형태가 원형 또는 타원형인 지상 집자리이다. 이는 유적이 가는 모래로 이루어진 모래 언덕이기 때문에 움집터 대신 점토를 다져서 지상가옥을 만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강가나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평면형태가 방형 또는 원형을 이룬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암사동 취락지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장축이 5m, 깊이가 1m 내외인 방형 또는 원형의 움집들이다. 중기의 집자리는 서포항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전기와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후기의 집자리는 이전에 비해 규모가 커져 서포항에서 확인된 당시의 집자리 중에는 장축이 7m가 넘는 장방형 집자리도 있다.

무덤으로는 춘천 교동유적과 시도유적이 있는데, 교동유적은 동굴에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것이고, 시도유적은 장축 1.65m의 타원형 돌무지무덤이다.

신석기시대의 생활경제는 대부분의 유적이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하고, 석기의 주종이 어구류라는 점에서 어로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기에 들어서면서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은 채집경제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탄수화물의 공급원으로는 도토리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도토리가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암사동·미사리·오산리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신석기문화는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서한침저유형토기의 경우 범시베리아적인 공통 요소를 보이며, 한

반도에서 번영하였던 이 토기문화는 일본 규슈(九州)의 소바다식토기의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동한평저유형토기는 연해주의 토기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오산리하층의 토기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관련성이 시사되며,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는 일본과의 관계 규명에 중요한 자료로서 주목된다. 동삼동에서는 소량이지만 일본의 조몽토기 각종이 발견되어 일찍부터 양 지역 사이에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동기문화

일제시대에는 김해패총유적에서 청동기와 함께 철기, 석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국에는 청동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전국시대 말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이민들에 의해 청동과 철이 동시에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고, 일본학자들은 이 시기를 청동기시대 대신에 금석병용기시대라고 설정하였다. 이런 용어는 해방 이후 얼마간 계속 사용되었다. 그러나 ‘금석병용기’는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아직 청동합금기술이 개발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연동을 두드려 도구를 제작하던 순동시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순동제품이 출토되지 않는 한국에서 금석병용기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도 모순이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강계 공귀리, 의주 미송리유적을 비롯한 많은 유적이 발굴 조사됨에 따라 청동기시대의 문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상한연대의 설정은 그리 용이하지 않은데, 한반도에서의 고고학적 자료의 성격 규명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 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동기문화는 중국의 수원-요령지방, 나아가서는 시베리아 지역의 미누신스크 청동기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안드로노보, 카라스크, 타가르기로 이어지는 미누신스크 청동기문화 중 기원전 1200~700년의 카라스크문화는 몽골계의 농경문화로 청동단검·청동단추 등의 청동기가 대표적이며, 무덤으로는 돌널무덤을 사용하였다. 기원전 700~200년의 타가르문화는 돌로 덮은 나무곽을 무덤으로 이용하였고, 기원

전 4세기경에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청동문화는 기원전 7세기경에 이르러 수원 청동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周를 동천시키기까지 하면서 만주와 몽골 일대에 타가르-스키타이-오르도스계통의 북방 청동문화를 퍼뜨렸다.

요령지방에는 일찍이 카라스크문화의 영향을 받아 비파형의 독특한 청동단검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가 번성하였다. 이 중 대표적 유적인 남산근유적에서 西周 말, 春秋 초의 청동기가 출토됨으로써 그 연대가 기원전 9~8세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비파형의 요령식동검이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과 한반도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상한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한반도와 두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한국의 청동기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청동기의 유입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기원전 3세기에 접어들어 한국식동검이라 할 수 있는 세형동검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철기가 청동기를 대체해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점으로 하여 기원전 10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청동기시대, 기원전 3세기부터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서력기원 전후까지를 초기 철기시대로 구분한다.

청동기로는 비파형단검·부채형도끼·날개촉·손칼·거친무늬거울·장신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비파형단검은 기원전 9~8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검 하반부의 곡선이 점차 완만해지는데, 한반도 내에서 출토된 비파형단검은 약간 늦은 시기에 속한다. 부채도끼는 자루를 끼울 수 있는 자루투겹부가 있고 날 부분이 부채꼴처럼 넓어져 있으며, 단추의 경우 카라스크문화의 특징적인 청동기의 한 종류를 띠며 장신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는 크게 한반도 서북지방에서 성행하였던 팽이형토기, 동북지방의 구멍무늬토기, 남한의 무문토기로 대별된다. 팽이형토기는 角形土器라고도 불리는데 바닥의 지름이 3~4cm밖에 되지 않는 좁은 납작바닥이고, 아가리 부분은 밖으로 말린 이중이며, 동체부는 아가리 부분보다 부풀어 팽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중으로 말린 아가리 부분에는 짧은 빗금이 새겨져 있고, 바

탕흙에는 점토에 모래, 활석, 석면 등을 섞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 무문토기와 쉽게 구별이 되는 팽이형토기는 분포지역도 청천강 이남, 한강 이북으로 국한되어 있다.

구멍무늬토기는 한반도 동북지방의 특징적인 토기이면서 남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토기로서 약간 외반된 아가리 부분에 구멍이 돌려져 있고, 입술 부분의 윗단에는 새김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동북지방에는 그릇의 두께가 얇고 그릇 표면을 간 다음 붉은 칠을 하거나 덧띠무늬와 음각무늬를 장식한 붉은 간토기가 출토된다.

남한지역의 무문토기는 납작한 바닥의 화분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동북지방의 영향으로 아가리 부분에 구멍무늬로 장식된 것도 포함된다. 서북지방 팽이형토기의 변형으로서 형태는 화분형이면서 아가리부분이 이중이고 짧은 빗금이 장식된 것이 있으며, 붉은 칠을 하고 표면을 간 둥근 바닥의 긴 단지(紅陶)가 고인돌 등에서 집중 출토된다.

석기는 신석기시대 이래로 계속 사용되던 갈판을 비롯하여 돌칼·화살촉·반달형 돌칼·돌도끼 등 다양한 종류의 간석기류가 있다. 간돌칼은 청동기시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 기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형태는 대체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단검으로 자루 중간에 홈장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돌칼은 종래에는 주로 고인돌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의기로 생각되어 왔지만 집자리에서 출토된 예도 많아져 실용기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살촉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출현하였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화살촉은 자루가 달리지 않은 것과 펜화살촉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청동기시대가 되면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제작도 세련되어진다. 화살촉의 형태는 자루가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 버들잎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것은 실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무덤에서 출토된 것은 형태와 크기로 보아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반달돌칼은 중국 신석기시대의 양소·용산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로 이삭을 따는데 사용하는 수확용구이다. 반달돌칼은 장방형·빗·배·삼각형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면서, 각기 지역적 분포를 보인다. 돌도끼 역시 그 형태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인 원통형의 조개날도끼 외에도 목공구 또는 농경구로

생각되는 턱자귀나 흙자귀, 곤봉두인 바퀴날도끼·툼니날도끼 등이 있다.

무덤으로는 돌널무덤과 고인돌이 있다. 돌널무덤은 지하에 판석이나 할석으로 매장부를 만들고 지상에는 봉토나 상석과 같은 뚜렷한 무덤 표식 시설이 없는 무덤이다. 청동기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고인돌은 그 분포지역이 유럽, 근동지방, 인도, 동남아시아, 한국 등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남방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이다. 극동지방의 경우 한국이 분포권의 중심이 되는 이 고인돌은 탁자식·기반식·개석식 등으로 구분된다. 탁자식은 매장부가 지상에 놓여 석실의 벽이 고임돌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주로 북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북방식으로도 불리고 있다. 기반식은 지상에 고임돌의 역할을 하는 괴석이 따로 설치되고 분포지역도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남방식이라고도 불린다. 개석식은 변형 고인돌이라고도 불리는데, 고임돌이 따로 없이 지상의 대형돌이 매장부의 뚜껑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남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북한에도 다수 분포되어 있다.

기원전 3세기경에 들어서면 새로이 철기가 보급되면서 실용화되고 청동기는 의기화되는 초기철기시대가 시작된다. 초기철기시대의 청동기로는 세형동검·잔무늬거울, 다양한 형태의 차마구류·공구류·무기류가 있다. 이 중에서 세형동검은 비파형단검이 한국화된 것으로 중간의 돌기부가 더 아래 쪽으로 내려오고 검 하반부의 폭이 좁아져 가늘고 긴 형태를 띠고 있다. 잔무늬거울은 전기의 거친무늬거울이 발전된 것으로 동심원문, 사선으로 채워진 삼각문 등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토기는 청동기시대에 뚜렷하던 지역적 특성들이 점차 약해지면서 새로이 검은 간토기와 함께 덧띠토기가 출현한다. 이 중에서 후자는 원통형에 가까운 몸체의 아가리부분에 점토를 말아 붙인 것으로 후기의 특징적인 토기이다. 석기는 간돌칼·반달돌칼·유구석부 등이 계속 사용되기는 하지만 전기의 다양한 석기들은 점차 퇴화하거나 소멸해가면서 철기가 이를 대체한다.

무덤은 고인돌이 점차 소멸되면서 새로운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널무덤이 출현한다. 초기철기시대의 다양한 수레부속구는 대체로 이들 널무덤에서 출

토된다.

청동기시대의 주거 양식은 움집으로서 대체로 강을 바라보는 얇은 구릉지대에 분포되어 있고, 집자리의 면적도 다소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와 함께 반달돌칼·괭이·흙자귀 등의 출토유물을 통해 당시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혼암리에서는 쌀·보리·조·수수, 충남 송국리에서는 쌀이,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친 유적인 평양 남경유적에서는 쌀·조·콩·기장·수수 등이 탄화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법석자귀가 찍힌 토기가 경남 대평리, 전북 소산리, 경남 강루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청동기에는 파비로 밭을 갈고 괭이로 땅을 파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양상 등을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의 경제적 측면은 농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울주 반구대의 암각화는 당시 예술활동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수렵과 어로의 생활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4) 원삼국문화

서력기원 전후에 이르면 의기화된 청동기는 소멸하고, 일반적인 생활용구로서의 기능은 철기가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이전에는 이 시기를 단순히 도구의 재질에 초점을 두어 철기시대라 불렀으나 현재는 사회정치적 개념을 고려하여 다음에 올 삼국시대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원삼국시대라 부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대동강유역에 漢의 낙랑군이 설치되고 남한지역에는 경기도·충청도·전라도지역에 마한, 낙동강 이동의 경상도지역에 진한, 김해를 비롯한 낙동강유역에 변한 등 삼한이 성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삼국시대의 상한은 대체로 낙랑군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서력기원 전후가 되며 하한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실질적으로 고대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기원 후 3세기가 된다.

원삼국시대의 문화상은 철기의 본격적인 생산과 보급, 경질무문토기의 확산, 고인돌의 소멸 및 돌덧널무덤의 성행, 벼농사를 비롯한 농경의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철의 생산은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크게 발달하여 《삼국지》위서 동이전 韓條에는 이 지역의 철기 생산의 번창함을 묘사하면서 낙랑과

일본에까지 철을 수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남 창원 성산 패총과 경주 황성동에서는 당시의 야철지가 발굴되었고, 경기도 가평 마장리에서는 冶爐 送風用鼓風管 등이 발견되었으며, 함경도지역의 영흥 용강리, 회령 오동 등에서도 증거가 확인되었다. 이들 철기류 중에는 금속학적으로 백련강에 속하는 것도 있어 당시 고도의 철기제조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질무문토기는 이 시기의 표식적인 유물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에 새로이 중국식 회도 기술이 도입되어 나타나게 된 토기이다. 토기의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고 종래의 노천요 대신 등요에서 제작되었으며 토기의 성형에도 회전판이나 물레가 사용되었다. 토기의 표면에는 토기가 완전히 굳기 전에 두드려 생기는 살무늬나 문살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형태상으로도 상당히 다양해져서 일반적인 항아리나 대접 이외에도 굽다리접시, 단지, 쇠뿔잡이토기, 시루 등이 출현한다.

집자리로는 김해 부원동에서 원형·방형·초석이 있는 세 종류의 움집이 조사되었고, 춘천 중도에서는 방형 또는 말각방형의 움집터 등이 조사되었으며, 수원 서둔동에서는 아궁이 시설이 있는 움집터가 확인되었다.

무덤은 이전의 돌널무덤·고인돌 등이 점차 소멸하면서 널무덤·덧널무덤·돌덧널무덤 등이 성행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소형으로 김해 예안리, 울산 삼광리 등의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상과 같이 원삼국문화는 농경의 확산과 철기의 발달 등 발전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정치구조가 점차 확립되게 된다. 그 결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족장사회들이 하나의 중심 세력에 의해 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 고구려·신라·백제 등 삼국이 완전한 왕권을 갖추고 고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확립하게 됨으로써 3세기 전후에 이르러 본격적인 역사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5) 한국 농경문화의 기원－쌀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한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농경문화를 유지해왔다. 애초에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먹을 것으로서 댤 처음 무엇을 심기 시작했는가 라는

것은 흥미로운 문제이다. 현재까지 약 300여 종의 작물을 심고 가꾸어 왔지만 그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성행하고 발달한 원인과 자연 조건이 벼농사에 알맞았는가의 여부, 어떤 경로를 통해 벼씨가 들어왔는가 등 벼씨 전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석기시대에는 사냥, 고기잡이, 조개줍기, 초목의 채취 등으로 식량을 얻었다. 구석기시대인들은 식량을 얻는데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의 부족이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 해결책으로 농경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하면 농경을 제외하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서 농경 생활은 하지 않았으나 간석기나 토기와 같은 신석기시대의 문화요소가 나타나고 정착생활을 한 지역이 있다. 이와 같이 농경은 행하지 않았으나 정착 생활을 하고 간석기를 만들어 쓴 분명한 신석기적인 요소를 보이는 곳이 한국을 포함한 일본, 시베리아지역이다. 이러한 극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는 농경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신석기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수렵과 채집, 어로를 중심으로 한 수렵채집경제를 그대로 이어왔으며, 중요한 식물자료로서는 도토리가 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전반에 걸쳐 농경이 행해진 것은 아니며, 신석기시대 후기에 와서 그 흔적이 나타난다. 그 예로 황해도 지탑리유적에서는 유일하게 재배곡물이라고 생각되는 식물이 나왔는데, 벼는 아니고 조나 피로 보인다. 평남 궁산리유적에서는 곡물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돌괭이와 수확도구로 쓰였던 농경구가 쏟아져 나왔다. 이를 보면 궁산리유적과 지탑리유적을 잇는 한반도 서북부 서해안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인 기원전 2000년경부터 원시 농경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도 그 초기부터 농경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한 주장은 출토 유물 중에 원시 맷돌과 돌도끼가 나온 것을 근거로, 그것들이 농경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원시 맷돌은 말안장 모양의 갈판과 갈돌이 한 조를 이룬 것으로 이런 형태의 유물은 이란과 이라크 등 서남아시아

아의 신석기유적에서도 출토되는데, 보리나 밀의 껍질을 까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도 그 용도가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을 농경의 방증 자료로 보고, 커다란 돌도끼 또한 농경에 사용된 하나의 도구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일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석기시대의 유물 중에서 앞서 말한 두 종류의 석기만을 예로 농경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은데, 신석기시대의 수많은 도구 중에서 단지 두 종류만 뽑아서 다양한 석기의 용도 중 농경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만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소극적인 자료에 의한 미약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석기 시대는 수렵·채집·어로생활에 기반을 두었지만 말기에 가서 농경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농경으로의 전환은 무문토기 사용 단계인 청동기시대이며 이 때의 농경은 벼농사에 보리·조·수수 등이 병행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민족이 처음 식량으로 삼은 곡류는 쌀이 아니라 조·피·기장 등의 잡곡이다. 그 후 쌀이 선택되어 수도작이 시작되고 이것이 한반도 전역에 보급되어 벼농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작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세계의 농경지 분포를 보면 250mm 이하 되는 지대는 거의 없고, 500~1000mm 정도의 지대면 밀과 보리가 80% 이상 재배되며, 1000~1200mm의 비가 내리는 지대가 벼의 재배에 알맞다. 따라서 벼농사의 발상지로 생각되는 곳도 강우량이 많은 곳으로 보고 있으며 하천을 끼고 있어서 비교적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벼농사의 기원과 발생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고고학자와 농학자가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고고학자가 보는 입장은 杭州 근처의 河姆渡 유적을 발견했더니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발견되었는데 그 연대가 기원전 4955±15년이므로 기원전 5000년,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으로 올라간다.

양자강하류 즉 하모도유적이 있는太湖지구 주변에서는 야생종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벼농사 중심지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강하게 대

두된다. 이제까지 중국의 범씨가 발견된 50개의 유적의 절대연대를 보면, 양자강하류에서 북으로 올라갈수록 후대의 것이 많다. 그 대부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5000년 전의 것이 많고 벼가 풍성하게 재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벼농사가 남쪽에서 발생했으며 발상지의 한 곳이 태호지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모도지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의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5000~4000년 사이의 양자문화 등이 계속되어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연속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한 문화가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의미에서 고고학자들은 태호지구를 벼농사의 기원지 중 하나로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 농학자들은 야생종을 총망라하고 있고 기후 조건이 알맞은 인도의 아삼 벵골만 벨트지역을 기원지로 보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벼는 이 화남지역으로부터 파급된 것이 한반도로 들어왔을 것인데, 그 전파 경로는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상정된다. 첫째는 북로(북방)설인데 인도의 아삼과 운남성 일대에서 북상하여 하모도가 있는 양자강 하류 지역에서 다시 북상하여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통하여 육로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황해를 곧바로 건너 들어왔다는 황해횡단설이다. 중국의 양자강 하류에서 쌀과 수확 도구인 배 모양의 반달칼이 나왔다. 그것들은 한반도 서해안에서 나온 유물들과 아주 흡사해서 황해횡단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중국의 사회과학원 안지민은 기원전 10세기경에 한국과 일본으로 동시에 벼농사가 전래됐다고 주장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오래된 시기의 유적이 일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설 자체에 머문 채 학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남방설이다. 인도의 아삼과 중국의 운남성 지역에서 타이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지나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설의 성립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벼 전래는 북로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황해횡단설도 유력한 가설로 남아 있다. 우리 학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미약한 편이다.

1936년까지만 해도 김해패총에서 나온 탄화미가 1세기경의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기원전 3세기의 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쌀은 일본에서 유입됐다는 설마저 대두되고 있었다. 당시까지 한국에서는 많은 유적을 발굴하고도 농경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아 자료의 빈곤은 북로설을 주장한 학자들을 수세에 몰리게끔 한 것이었다. 지난 1972년부터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야산에 있는 청동기시대유적을 연차적으로 발굴조사하여 온 필자는 1975년과 1976년에 혼암리유적발굴에서 미세자료를 찾아내는 방법을 응용했다. 채집한 흙을 가는 눈금이 있는 그물에 거르는 방법인 부유법으로 많은 곡물 자료를 얻었다. 혼암리의 시료를 연대측정한 결과 기원전 13세기, 10세기경, 7세기경 등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벼농사는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혼암리의 발굴 결과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북로설의 입장이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혼암리유적 발굴 5년 뒤에 평양에서 남경유적이 발굴조사되어 농경관계에 중요 자료들이 제시되었다. 36호 주거지에서는 탄화미 250여 개와 보리·조·수수·기장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 내용이나 연대는 혼암리와 비슷하다. 충남 부여군 조천면 송국리유적에서는 잡곡류는 나오지 않았으나 탄화미가 300g 정도 나왔는데 기원전 6~5세기경으로 밝혀졌다. 일본학자들은 이 같은 결과를 보고 혼암리유적과 남경유적에서는 논농사가 아니고, 송국리유적에서부터 논농사가 시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청동기시대에는 신석기시대 채집경제에서 식량생산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 시대였다. 이때부터 안정된 생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큰 혁명이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지도력이 필요했고 관개사업도 벌여야했기 때문에 자연히 정치적인 힘도 생겨났다.

이상에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로서 벼농사와 관련한 농경의 제반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농경의 기원에 대한 확고한 설명을 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과 함께 주변 국가와의 연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任孝宰〉

2. 고 대

1) 국가의 성립과 발전

(1) 고조선의 형성

고대의 개시를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를 찾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원시사회에서 진행된 일련의 변화 발전의 總和로 등장하였으며, 국가의 성립은 전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한국고대사의 특징적인 일면도 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졌다.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국가로는 일단 먼저 고조선이 상정되어진다. 전근대 시기 한국사의 서술은 고조선을 기원으로 하는 일원적인 역사체계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 이래로 칠백여 년간 유지되어왔던 이 역사체계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한편에선 고조선의 실제 자체를 부정하였고, 다른 한편에선 거대한 제국으로서의 고조선상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일제시기 고조선사 연구는 식민주의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이 맞부딪치는, 이어 마르크시즘사학도 이에 가세한 첨예한 이념적 대결의 장이 되었다.

해방 후 남북한 사학계 모두에서 합리적인 고조선사의 정립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일제하에서 파행적으로 전개되었던 혼란스런 역사 이해를 정리하고 한국사의 여명기의 역사상을 밝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고조선사 연구에 큰 의미가 부여되었던 바이다. 나아가 이는 전통사서에 개진된 상고사 체계를 개항 이후 수용한 근대적 학문 방법론을 구사해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방 이후 제기되었던 고조선사에 대한 각양의 논의를 보면, 여전히 상이한 역사인식이 교차하는 면을 나타내었고, 고조선이 언제 어느 지역

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그 정치체로서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둘러싸고 큰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조선사의 면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연구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

먼저 고조선이란 실체가 언제 역사상에 등장하였던가에 대해선 이른바 ‘단군릉’으로 상징되어지는 5천년전 설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지만, 빨라도 기원전 10세기 전후 무렵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 보다 직접적으로는 비파형동검문화의 성립 시기가 기원전 10세기 전후 무렵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국가의 성립은 청동기문화와 농업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해진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가능하였다. 이런 면은 한국사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조선’이란 실체가 문헌상에서 확인되어지는 시기는 기원전 4세기이다. 《史記》와 《戰國策》에서 언급한 조선에 관한 기록이 그것이다.¹⁾ 물론 이는 고조선의 실체가 북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기가 늦어도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다. 실제 고조선이 등장한 것은 그보다 이른 시기일 수 있다. 《管子》輕重甲篇의 기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관자》에서 언급한 齊와 조선과의 교역에 관한 기록은, 이 책 자체가 중국의 전국시대(B.C. 403~B.C. 221)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기원전 7세기 사람 管仲에 가탁하여 기술한 것이므로,²⁾ 어느 때의 상황을 기술한 것인지를 단정키 어렵다. 하지만 《관자》가 비록 후대에 기술되었지만 그에서 사용된 자료는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키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고조선 지역의 유적 유물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접근해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고조선 중심지 위치에 관한 논쟁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여러 설들 중, 시종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령성

1) 《戰國策》권 29, 燕策 1.

《史記》蘇秦傳.

2) 《管子》경중갑편의 저술시기에 관한 諸論議는 金谷 治, 〈管子 輕重甲篇의 成立〉(《東洋史研究》43-1, 1984) 참조.

지역에 있었다는 설은 부정되어진다. 적어도 기원전 3세기 초 북중국의 연나라가 동으로 침공해와 청천강을 경계로 삼은 이후에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 지역이었으며, 위만조선의 왕험성을 공략하고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은 지금의 평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떠하였던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선 초기에는 중심지가 요하유역이었다가 기원전 3세기 초 이후 그 중심지를 평양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이동설과, 평양 지역이 시종 중심지였다는 재평양설이 각각 견지되고 있다.

한편 비파형동검문화 분포지와 고조선과의 관계에 대해, 전자를 모두 고조선의 세력권으로 보는 견해가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비파형동검문화 분포지 내의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러한 시각은 부정되어졌다. 가령 비파형동검문화 분포지 내에서 내몽고 영성현 등 努魯兒虎산맥 이북지역에선 남산근 유적이나 소흑석구 유적에서 보듯 비파형동검문화 외에도 오르도스식 청동검이 많이 출토되고 또 한편으로는 북중국 방면의 商·周 청동기 문화의 영향도 강하게 보인다. 여러 갈래의 청동기문화가 착종하는 면모를 나타내며, 생활상에서도 농업과 함께 목축의 비중이 상당하였던 것 같다. 그에 비해 동으로 요하 하류지역으로 올수록 그런 면이 약해진다. 특히 요하를 경계로 그 동·서 지역간의 문화적 차이가 주목되어 왔다. 요하 이동지역은 비파형 동검의 여러 양식 중 短莖式 동검만 출토되어지고 요서지역과 내몽고 동부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鞞柄式이나 匕首式은 출토되지 않는다.³⁾ 토기 양식에서도 미송리형 토기는 요하 이동지역에서만 출토되고 반면에 요서 지역에서 널리 출토되는 삼족기는 요동지역에선 별로 출토되지 않으며,⁴⁾ 지석묘도 요하 선을 경계로 그 이동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등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졌다. 특히 요동반도의 해성·개주 등지의 대형 탁자식 지석묘는 대동강 유역의 그것과 흡사한 모습을 지녔다. 그리고 서북한 지역의 지석묘에선 팽이형토기가 출토되는데, 요동의 지석묘가 있는 곳

3) 靳楓毅, 〈論於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考古學報》1982年 4期, 1983年 1期).

4) 김용간·황기덕,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 문화〉(《역사과학》 67-2).
〈고조선 문화의 특성과 그 발전〉(《고조선문제 연구논문집》, 최택선·이난우 편집, 1976).

에서도 팽이형 토기와 유사한 계통의 그릇이 보인다. 일부 지식묘에서 아가리를 이중으로 겹쳐 넘긴甕이나 甕이 세트로 나오고 있으며 신금현의 당산肇工街나 쌍타자 유적에서 나온 토기의 겹아가리에선 대동강 유역 팽이형토기의 구연부 수법과 매우 유사한 ‘彡’ 모양의 빗금 문양이 보이고 있고,⁵⁾ 변형 팽이형토기인 겹아가리 긴 목 항아리도 평안북도 용천 신암리 유적 등지에서 미송리형토기와 함께 출토되어져,⁶⁾ 美松里型土器 문화와 청천강 이남 지역 팽이형토기 문화간의 친연성이 보인다.

한편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해 이를 고조선의 문화로 여기거나,⁷⁾ 이를 고조선 문화로는 여기지 않고 맥⁸⁾ 또는 예맥의 문화로 간주하는 견해가 견지되고 있다.⁹⁾ 고조선의 등장 시기나 그 초기 중심지 논의와 직결된 이 문제는 앞으로 요령성 지역과 서북한 지역의 청동기문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고조선의 정치체로서의 성격은 그나마 약간의 기록이 남겨져 전하는 위만조선의 경우를 먼저 살핀 후 거슬러 추정해보자. 위만조선의 정치체제에서 주목되는 면은 왕 아래에 복수의 相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상은 단순한 왕의 관료가 아니라, 휘하에 자신의 집단을 거느리고 있던 자들이다. 이들 집단은 왕권에 의해 일정한 통제를 받지만, 그 내부의 일에 대해선 상당한 자치력을 지니고 있었다. 위만조선을 이끌어 나간 중심세력은 왕에 직속된 집단과 그리고 상으로 대표되는 자치 집단들로 구성되었고, 그 외곽에 진번·임둔 등의 피복속 집단들이 예속되어 있다. 중앙에 공납을 바치는 이들 피복속 읍락들도 그 내부의 일에 관해서 자치를 영위하였다. 위만조선의 국가구조는 이런 각급 자치체들을 연합한 형태를 지녔다. 자연 그 국가운영도

5) 송호정,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 성격의 연구의 쟁점과 과제> (《韓國古代史論叢》 10, 2000).

6) 尹武柄, <無文土器 型式分類 試攷> (《震檀學報》 39, 1975).

7) 황기덕, <비파형단검문화의 미송리유형> (《역사과학》 89-3, 1989).

——, <고조선국가의 기원> (《고고민속론문집》 12, 1990).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1900 : 《단군과 고조선사》, 2000).

8) 鄭漢德, <美松里型土器の形成> (《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 1990), 87~138쪽.

9) 宋鎬晟, <古朝鮮 國家形成過程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왕과 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삼국 초기의 부체제와 유사함을 보여, 그 초기 형태로 상정되어지는 바이다.¹⁰⁾ 삼국 초기의 부체제는 이후 삼국시대가 진전되면서 점차 중앙집권적인 영역국가체제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진전 과정을 역으로 추론해보면, 거슬러 시대를 올라갈수록 그 정치체제는 중앙집권력과 왕권이 미약한 그러한 형태였을 것임을 능히 상정할 수 있게 한다, 즉 위만의 정변이 있기 이전의 후기 고조선은 위만조선의 그것에 비해 집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의 유사한 정치체제가 상정되어진다. 일단 후기 고조선까지는 초기 고대국가의 범주로 설정할 수 있겠으나, 기원전 3세기 초 이전의 전기 고조선의 정치체로서의 성격은 추정하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 그 중심 지역이 확실한 유적 유물을 통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고조선의 실재는, 그 처음 등장 시기나 정치체로서의 성격 규정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확인되어졌다. 나아가 고조선이 비파형동검문화-세형동검문화로 이어지는 문화에 바탕을 두었으며, 곰 숭배 제의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문화전통이 그 건국신화에 반영되어 있음이 논해졌다.¹¹⁾ 다시 말하자면 중국세가 본격적으로 동진하여 오기 전에 고조선이 존재하였고, 그 청동기문화가 북중국의 商·周계통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었음을 말한다. 이 면은 한국어의 특성과 함께, 한반도와 중남부 만주 지역의 주민이 중국 문물의 압도적인 영향이 미쳐온 뒤에도 그 개성적인 성격을 유지하며 이른 시기의 역사를 영위해나

10) 노태돈, <위만조선의 정치구조-관명 분석을 중심으로->(《汕転史學》8, 1998 : 《단군과 고조선사》, 2000).

11) 곰을 조상신으로 여기는 토렘신앙은 수렵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화요소로서 시베리아에 거주하던 소박한 사회 단계의 족속인 퉁크스족이나 고아시아족 사이에 널리 보이며, 특히 흑룡강 유역에 살던 퉁구스족의 그것과 단군신화는 유사한 면을 지녔다(大林太郎, <朝鮮の檀君神話とツグス族の熊祖神話>, 《東アジアの王權神話》, 1984, 374~375쪽). 단군신화에는 환웅 등의 천신이 거주하는 神界와 곰이나 호랑이로 대표되는 자연계 및 인간계가 서로 교류하여 이상적인 조화의 세계를 추구하며, 여러 세계와의 교류에 산(태백산)과 宇宙木인 신단수 같은 매개체가 등장하는 등 샤머니즘 문화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러 점들은 단군신화에 시베리아나 북동부 만주 지역과 연결되는 계통의 문화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갈 수 있게 한 주요한 토대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한반도와 남만주의 청동기 문화를 독자적 성격의 것이라고 또는 북방계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이른 시기부터 요서지역과 북중국 방면으로부터의 영향이 컸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¹²⁾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이 진전되면서 요령성 지역 청동기문화가 다원적인 성격을 지닌 면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바이다. 아울러 한국문화의 기원에 북중국 방면의 문화가 끼친 영향의 상징으로 언급되었던 이른바 ‘기자조선’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북중국 방면으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은 기원전 3세기 초 연의 군사적 공격으로 남만주 지역과 청천강 이북 지역이 그 영토가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나아가 기원전 2세기 초 북중국 방면으로부터 흘러온 유이민 위만이 고조선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이민과 토착민의 연합정권적인 성격을 지닌 위만조선은 중국의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급속한 팽창을 해나갔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동진하는 한제국의 세력과 충돌하게 되었다. 위만조선과 흉노의 연결을 차단하고 동북아시아 방면을 제패하기 위한 한제국의 침공은 기원전 108년 왕희성의 함락과 낙랑군 등의 설치로 종결되었다. 이에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일찍 국가를 형성하였던 고조선은 멸망하고, 평양 일대에 설치된 중국 군현은 그 뒤 400여 년 지속하였다. 이에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고조선사회는 더 이상 동심원적인 확대발전이 저지되었다. 이는 시기에 예·맥·한족 사회에서 대두한 국가들은 고조선 사회의 바깥에서 등장하였으니, 삼국이 그들이다.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한 군현은 설치된 뒤 얼마 안 있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원전 75년 맥족의 저항으로 현토군이 퇴축되었고, 소로집단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연맹체가 태동하였다. 그런데 기원전 75년 이후에도 한제국은 일단 직접 지배 방

12) 李亨求, 〈青銅器문화의 비교(중국과의 비교)〉(《韓國史論》 13, 국사편찬위원회, 1983).

책은 포기하였으나, 간접통제정책을 구사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고구려사회에 미쳤다.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여러 지역집단(那)과 각각으로 외교 무역 관계를 맺어 이들을 회유하고 분열시켰으며, 때로는 무력 간섭을 감행하여, 고구려 사회 내부에서 강력한 단일 통합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당시 중국 군현 세력은 고구려의 정치적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였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선 한 군현과의 교역과 교류를 통해 한의 철기문화가 수용되어졌다. 집안 등지에서 출토된 漢式 철제 농기구와 오수전과 같은 한의 화폐 등은¹³⁾ 그런 일면을 전해준다. 새롭게 수용한 선진 철기문화는 고구려사회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당시 태동하던 고구려 연맹체는 한편으로는 한의 분열 기미정책에 저항하고 다른 일면으로는 한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국가의 형성을 지향하였다. 기원 전후 무렵 소로집단을 대신해 주몽이 이끄는 계루집단이 연맹체를 주도하는 고구려가 성립하였다. 이어 1세기 중반 이후 장기간의 내분을 거쳐 1세기 말 태조왕 때 강한 통합력을 갖춘 국가가 확립되었고, 대외적인 팽창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백제의 경우, 문헌에서 전하는 바처럼 부여-고구려계 유이민 집단에 의해 건국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에 관한 《삼국사기》백제본기 초기 기사는 《삼국지》위서동이전에서 전하는 상황과 상치되는 면을 보여,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인정키는 어렵다. 근래 한성시기 백제의 도읍지로 확실시되는 서울의 풍납동 토성이 언제 축조된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 성은 둘레가 3.5km이고 높이가 약 8m에 달하는 대형 토성이다. 토성과 성 내의 여러 곳에서 출토된 목재와 목탄 자료를 이용한 몇 차례의 탄소연대측정 결과, 그 연대가 이른 경우는 기원전 1세기로 산출되기도 하였다. 만약 그것을 따른다면 백제의 건국은 《삼국사기》의 기사를 그대로 신뢰하여도 무방한 것이 된다. 그러나 몇 차례 행한 탄소연대측정의 수치들이 2백년 이상의 큰 폭의 차이를 내면서 각각 다르게 나와서, 그것을 통해 토성 축조의 연대를 추정키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성안에서 삼중 環濠가 둘러친 취락이 발굴되었는데, 이 환호가 폐기되고 토성이 축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 古兵, 〈吉林省集安歷年出土的錢幣〉(《考古》, 1962年 2期).

이 환호 내부에서 타날문토기·심발형토기·긴 달걀모양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볼 때 토성의 축조 시기의 상한은 3세기 중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풍납토성지에서 서진의 전문토기가 대량 출토되었다는 것은 이 곳에 근거지를 두고 서진과의 교섭을 주도하던 정치체의 존재를 말해준다.¹⁴⁾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와, 3세기 중엽 마한(臣智¹⁵⁾)와 대방군 간의 그리고 백제와 낙랑군 간의¹⁶⁾ 무력 충돌을 전하는 등의 문헌 기록을 고려할 때 3세기 후반에 백제가 국가로 성립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겠다. 이후 4세기 대에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으로, 남으로는 반도의 서남부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면서 성장해나갔다. 단 3세기 중반 이전 시기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에선 기원전 1세기 중엽에 국가로 성립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의 사실성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져왔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따르면 2세기 후반 3세기 초까지도 사로국은 진한의 한 소국이었을 뿐이며 그 존재가 특기되지 않았다. 기원 전후 무렵 경주 일원에 토광목관묘가 조영되었다. 이들 토광목관묘와 그 출토 유물의 양식은 서북한 지역 고조선의 그것에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조선 유민이 내려와 신라를 건국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적어도 그 문화계통 면에선 일정한 객관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토광목관묘가 국가 성립 단계의 상황을 반영하느냐는 의문이다.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로 그 연대가 추정되는 토광목관묘인 경주 사라리 130호 경우 우수한 유물을 부장하였으나, 같은 무덤때 내의 다른 무덤에 비해 무덤 입지상의 구분이 없으며, 같은 무덤때 내에서 동질의 우수한 부장품을 담은 1급 무덤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면은 이 무덤때를 남긴 집단의 사회와 문화가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나가, 대내적으로 안정성을 지닌 지배계급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는 이 곳이 연속성을 지닌 지역 세력의 중심지로 발전해나가는 그런 형태

14) 朴淳發, 《漢城百濟의 誕生》(2001), 179~183쪽.

15) 《三國志》東夷傳 韓條.

16) 《三國史記》권 24, 백제본기 2, 고이왕 12년조.

의 진전을 이룩하지는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무덤떼 내에서 대형 무덤과 소형 무덤 간에 무덤의 입지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은 2세기 후반 이후 조양동 3호분과 같은 유의 목곽묘가 축조되는 단계에 들어선 뒤였다.¹⁷⁾ 이들 목곽묘에는 더 이상 청동기는 보이지 않고 철기 유물만 부장되었다, 3세기 말 4세기 초의 구정동 고분의 경우, 다량의 쇠창과 단갑을 부장하였다. 성장해가던 이사금시기의 사로국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경주지역의 고분이 여타 영남 지역의 고분과 현격한 차이를 들어내며 우월한 모습을 들어낸 것은 4세기 후반 적석목곽분이 출현한 이후부터이다. 적석목곽분이 조영되던 중심 연대는 마립간시기로서 이 시기에 신라는 영남지역의 여타 세력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압도하며 급속한 성장을 해나갔다.

한편 신라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삼국사기》신라본기와 《삼국유사》에 기술된 그 수장의 칭호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그것은 거서간-차차웅-이사금-마립간-왕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 중 그 어원이 불분명한 거서간은 차차웅과 같은 단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⁸⁾ 이런 임금 칭호의 변화는 토광목곽묘-토광목곽묘-적석목곽묘-석실봉토분으로 이어지는 경주 평야의 무덤양식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는 면이 있다.¹⁹⁾ 물론 문헌기록의 기년과 무덤 편년 사이에선 괴리가 있지만, 양자가 대체적인 사로국의 성장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라국의 성립 시기에 대해선 백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의 기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앞으로 고고학적 발굴의 진전과 그리고 국가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계속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듯 삼국은 고조선사회의 바깥에서 각각 상당한 시차를 두고 등장하였고, 발흥 지역이 상호 떨어져 있었으며, 성립기의 주변 상황도 서로 다른 면을 지녔다. 삼국이 국경을 접하면서 실제적인 상호 접촉을 하게 된 것은 4세

17) 崔秉鉉, 〈新羅의 成長과 新羅 古墳文化의 展開〉(《韓國古代史研究》4, 1991).

18) 남해거서간을 남해차차웅이라고도 하였다(《三國遺事》권 1, 南解王條).

19) 崔秉鉉, 앞의 글.

기 후반 이후부터였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삼국은 그 초기의 문화에선 상호 공통성에 못지 않게 각각의 개성적인 성격을 질게 지녔다. 가령 묘제의 경우를 보면,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의 전통적인 적석총 양식을 5세기 초까지 계속 사용하였다. 경주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토광목곽묘-토광목곽묘에 이어, 4세기 후반 이후 적석목곽묘를 사용하여 소백산맥 이남의 여타 지역의 그것과도 다른 독특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백제의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여러 양식의 묘제가 사용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그 뒤 5, 6세기가 지나면서 삼국 모두에서 그 지배층의 묘제는 돌방흙무덤으로 단일화되어 갔다. 대가야와 영산강 유역의 묘제도 그렇게 되어 갔다.

그런데 이처럼 삼국은 그 성립시기와 발전 과정에서 상호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정치체제에선 일정한 공분모를 지녔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구려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3세기대까지는 5부가 중심이 된 정치체제였다. 고구려 초기의 5부는 4세기 이후 시기의 그것과 같은 수도의 행정구역 단위는 아니었다. 5부의 전신은 那였다. 나는 川과 같은 말로서, 압록강 중류 지역 일대에 있는 여러 작은 하천변에 생성된 지역집단으로서 부족이나 시원적인 소국이였다. 이들 다수의 ‘나’들이 상호 통합과정을 거쳐 다섯이 되었고, 그 중 가장 유력한 계루집단에 의해 여타 집단의 자치력의 일부가 통제되어져 部가 되었던 것이다. 5부는 계루부 왕권에 의해 대외교섭권 등을 박탈당하였지만, 부의 내부 사항에 대해선 상당한 자치력을 지닌 단위정치체였다. 각 ‘부’의 大加들은 왕족 대가들과 함께 회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국정의 운영에 참가하였다. 왕은 초월적인 권력자라기 보다 이들 대가들의 대표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 한편 고구려 국가구조에서 보면 5부는 지배층단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고구려국에는 5부 외에 피복속 종족들이 귀속되어 있었다. 이들 피복속 집단은 5부와는 차별되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보듯이, 고구려라고 하였을 때는 5부만을 뜻하고, 피복속 집단은 동예·옥저 등 각각의 종족 명으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옥저·동예 등의 피복속 종족들은 읍락 별로 고구려에 예속되어 공납을 바쳤고, 읍락 내부의 일은 자치에 맡겨져 그 수장을 통해 간접 지배되었다. 3세기 무렵까지의 고구려국은 각종 자치체들을 그 정치적 위상에 따라 누층적으로 편제한 자치체의 연합체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를 나타내게 된 근본적인 동인은 당 시까지도 작용하고 있던 읍락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있었다.²⁰⁾

이와 같은 초기고대국가의 정치체제는 3세기 말 4세기 초 이후 점차 해체 되어졌다. 왕권과 중앙집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각급 자치체들은 해체되어지고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어 나갔다.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구려의 경우, 초기의 고유한 명칭을 가진 5부의 소명과 方位名 5부의 등장이다. 각급 자치체들이 해체됨에 따라 기존의 加들은 중앙귀족으로 전신하여 수도에 집중해서 거주케 되었는데, 방위명 5부는 수도를 구획하여 만든 행정구역단위이며, 귀족의 原籍과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고구려 초기에 보였던 5부가 중심이 된 국가구조와 정치운영체제를 部體制로 명명해 볼 수 있다.²¹⁾

한편 고구려의 부체제와 비슷한 양태를 6세기 초 이전의 신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양자의 성격이 반드시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유사한 면모는 확인할 수 있다. 냉수비와 봉평비를 통해서 볼 때, 部名을 冠稱하였던 왕은 아직 초월적인 권력자라기보다 6부 귀족의 대표와 같은 성격을 지녔고, 왕을 위시한 여러 干들이 모여 주요 문제를 논의하였던 회의체가 국정 운영에 주요 기능을 하였다. 간들 중 으뜸가는 간이라는 뜻인 마립간이라는 임금 칭호는 이 시기 신라국의 정치체제와 왕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²²⁾. 또 ‘신라’라는 말이 6부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피복속 지방 촌락은 기존의 수장인 干을 통해 간접 지배를 받았다. 이러한 부체제는 마립간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변화되어 나가, 임금을 왕이라 칭하게 된 6세기 초 이후에는 해체되고, 영역국가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되어 갔다.

20) 노태돈, 《고구려사연구》(2000), 135~149쪽.

21) 노태돈,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부체제론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 17, 2000).

———, 〈삼국시대의 部와 부체제—부체제론 비판에 대한 재검토—〉(《한국고대사논총》 10, 2000).

22) 朱甫敦, 〈6세기 초 新羅王權의 位相과 官等制의 成立〉(《歷史教育論集》 13·14, 1990).

백제의 경우, 그 초기의 정치체제는 당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금석 문이나 중국측 사서와 같은 당대의 기록이 없어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늦어도 6세기 대에는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해 나가, 고구려나 신라의 그것과 비슷한 면을 나타내었다.

삼국이 중앙집권적인 영역국가체제를 구축해나감에 따라 일원적인 관등체계가 확립되고 중앙 관서가 증치되는 등 관료조직과 율령이 정비되어 갔고, 지방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달리 피복속 지역을 간접 통치하던 데서 벗어나 지방관을 파견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민과 땅을 중앙정부가 직접 장악하는 체제를 지향하였다. 5세기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에서 보듯 ‘國土’라는 개념도 이때 등장하여 영역국가의 면모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단양 적성신라비에서 ‘佃舍法’과 ‘小女’ 등의 표현이 보인다. ‘소녀’는 연령 등급제에 따른 편제를 나타내며, 전사법은 그 전후 구절이 떨어져 나가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치 않지만 토지제도와 연관된 법령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6세기 중반 신라의 국가권력이 지방의 토지와 민에 대한 지배력을 구사하고 이를 율령으로 규정하였던 면을 전해준다. 그리고 울진 봉평신라비에 奴人法이 언급되었다. 이 역시 전후 부분의 글자가 모호하여 자세한 내용은 분명치 않으나, 노인은 피정복되어 신라에 흡수된 변경지대의 주민들로서, 아마도 집단예민의 처지에 있었던 이들로 여겨진다. 이들을 신라 조정에서 일반 민으로 그 처지를 개선시키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들이 모종의 소요를 일으킴에 그에 대한 응징으로 기존의 노인법에 따라 집단적인 처벌을 한 내용을 비문에 담고 있다. 이는 신라 영내에 있던 각종의 주민집단을 고대국가의 일반 민으로 편제하여 지방제도와 율령을 통해 일원적으로 지배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진흥왕 북한산비에서 새로이 편입한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신라 영역의 모든 민을 ‘新舊黎庶’라 표현한 것도 그런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 백제에서도 중앙 관서인 ‘黠口部’가 있었다.²³⁾ 구체적으로 부여 宮南池 출토 목간의 하나에 ‘歸人中口四 小口二 邁羅城法理源 水田五形’이라 기록되어있는데,²⁴⁾ ‘中口’나 ‘小口’는 주민을 중앙정부가 연령 등급별로 편제

23) 《周書》百濟傳.

24) 小口는 下口로 판독하기도 하는데, 연령구분과 관련된 丁이나 中에 대응하는

하여 파악하였음을 말해준다.

민과 함께 중앙정부는 주요한 지배기반인 물적 자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장악을 도모하였다. 진흥왕 창녕비에 ‘土地疆域山林’大等與軍主幢主道使與外村主審照’海州白田畝’△鹽河川’ 등의 구절이 보인다. 마멸이 심하여 전후 문맥을 알 수는 없으나, 전답 등의 토지와 하천,鹽, 산림 등에 대해 ‘審照’ 즉 조사하여 파악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⁵⁾ 물적 자원 중 핵심은 토지일 것인데, 적성비에서 보이는 ‘전사법’의 존재는 토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 조치가 취해졌음을 전한다.

토지를 어떤 형태이든 간에 조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토지에 대한 측량 사업을 요한다. 삼국시대의 양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어려우나, 고구려의 경우 고구려칙에 의한 절대 면적 기준의 段步制가 행해졌다는 설은²⁶⁾ 유의되는 바이다. 신라의 경우, 늦어도 문무왕 3년(663)에는 結負法이 행해졌던 것이 확인되어진다.²⁷⁾ 그런 만큼 그 이전 시기에 토지에 대한 측량과 양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국의 중앙집권체제가 진전되어 나감에 따라, 삼국간에선 영역국가의 지배 기반인 민과 땅을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한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빈번한 전쟁이 해를 이어 벌어졌다. 특히 고대의 귀족은 기본적으로 무사였다. 전쟁은 이들에게 부와 권력과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십대 후반의 어린 화랑이었던 斯多含이 대가야 공략전에서 공을 세워 높은 명성을 얻고 300명의 포로와 토지를 사여받았던 예는²⁸⁾ 그런 일면을 말해준다. 이들 귀족이 전쟁 수행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삼국이 중앙집권적인 영역국가로 발전해나가게 된 동인으로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야철 기술의 발달과 한반도 전역에 걸친 철제 농기구

小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李鎔賢, 〈扶餘 宮南池 出土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25) 노용필, 《眞興王代 國家發展의 經濟的 基盤》(1996), 74~82쪽.

26) 朴贊興, 〈고구려의 段步制〉(《韓國史學報》12, 2002).

27) 문무왕 3년(663) 김유신에게 田 500結을 하사하였다(《三國史記》권 42, 金庾信傳).

28) 《三國史記》권 43, 斯多含傳.

의 광범위한 보급이 거론되었다. 개간용구, 起耕具, 수획구 등의 철제농기구는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철제 보습의 사용은 우경과 심경을 가능케 하였다.²⁹⁾ 그리고 ‘살포’와 같은 논농사에 필요한 농구도 사용되었다.³⁰⁾ 자연 이러한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개선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영농단위의 축소를 가능케 하였고, 가족 내지 家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그간 민의 생활과 재생산의 기반이었던 읍락공동체의 기능 축소와 해체를 가져왔다.³¹⁾ 그와 함께 민호의 분화 또한 진전되었다. 이는 국가 권력이 읍락 내에까지 침투하여, 호 단위로 민을 파악하여 수취하는 제도의 시행을 가능케 하였다. 고구려의 3등호제는³²⁾ 그런 면을 말해준다.

이런 면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전쟁이다. 4세기대 동아시아 국제정국의 격동으로 빈번한 전란이 일어났고, 전쟁은 중장기병이 동원되는 등 대규모화하였고 그 파괴력도 훨씬 커졌다. 이런 정세에 대응하며 생존키 위해서는 각국은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생산력 자체의 증대를 피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보다 조직화된 동원력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특히 생산력 증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통제와 조직 강화를 통한 동원과 수탈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조직과 동원력은 때로는 수리시설의 축조 사업에 구사되어졌고, 그것은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였다. 곧 이 시기 삼국이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발전해나간 데는 빈번한 전쟁에 따른 이런 면이 깊이 작용하였다고 보아진다.

장기간 지속되던 삼국간의 전쟁은 7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몰살을 타고 진전되었다. 그간 따로따로 전개되었던 고구려와 수·당제국 간의 전쟁과 한반도에서 진행되었던 삼국간의 전쟁이 648년 당의 수도에서 있었던 김춘추와 이세민의 회담 이후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29)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 발달과 사회변동>(《역사와 현실》 4, 1990).

李賢惠, <三國時代의 農業技術과 社會發展>(《韓國上古史學報》 8, 1991)

——, <한국 고대의犁耕에 대하여>(《국사관논총》 37, 1992 :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1998).

30) 金在弘, <살포와 鐵鋤를 통하여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科技考古研究》 2, 아주대박물관, 1997).

31) 안병우, <신라 통일기의 경제제도>(《역사와 현실》 14, 1994).

32) 《隋書》高麗傳.

신·당 연합군에 의한 660년 사비성의 함락과 668년 평양성의 함락으로 귀결되었다.

당은 평양성에다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평양에 중국 왕조의 통치기관이 설치된 것은 기원전 108년 왕희성의 함락과 함께 설치된 낙랑군에 이어 두번째였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기원전 108년 한 제국은 1년여의 공방전 끝에 왕희성을 공략하였고, 그 땅에 설치된 낙랑군은 그 뒤 400여 년 유지되었다. 그러나 668년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데에는 수·당 두 왕조에 걸쳐 7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고 그나마 신라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였다. 그런데 안동도호부는 불과 8년만에 신라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다. 양자간의 이런 차이는 곧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고대사회가 이룩한 역사적 성취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왕희성 함락 당시 한과 고조선간에는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의 낙차가 있었는데,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고대사회가 성장하여 이를 극복해나갔음을 말해준다.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 조정은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편제하였고, 그 아래 설치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나아가 外司正을 주와 군에 파견하여 지방관과 행정을 감찰하게 하였고, 지방 유력자를 상경케 하는 상수리제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결부제에 입각한 양전 사업이 전국에 걸쳐 행해졌고, 민은 9등호제로 편제되었다.

이렇듯 통일기 신라는 전국에 걸친 고도의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한편으로 국학을 설치하였고 8세기 후반에는 국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삼품과를 운영하여 인재 양성과 등용 방법을 개선하기도 했다.³³⁾ 그러나 끝내 보편적인 성격의 인재 등용제도는 마련되지 못하였고, 정치와 관료제의 운영은 여전히 골품제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세습 신분인 진골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민에 부과하였던 조세 또한 여전히 인두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 면은 수취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고경석, <신라 관인 선발제도의 변화> (《역사와 현실》 23, 1997).

2) 통일 신라의 수취제도

(1) 계연과 9등호제

신라 통일기 때의 수취제도의 실상에 대한 이해는 남겨진 자료에 따라 두 측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이 부담하였던 조세의 내용에 대한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서원경 인근 지역의 4개 촌락에 관한 문서를 통해 검토되어왔다.

신라 촌락문서에는 각 촌의 호구와 전답, 소와 말, 뽕나무와 잣나무, 추자나무에 관해 기록하였고, 조사된 뒤의 변동사항을 추기하였다. 이 문서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이 計烟과 孔烟이다. 공연의 성격에 대해선 자연호설과 편호설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촌락문서에서 몇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공연 하나가 소멸된 사례로 전하고 있어, 공연은 일반적으로 편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공연이 모두 다 인위적으로 몇 개의 자연호를 합쳐 편성한 것은 아니다. 공연에는 유력한 자연호 하나로 구성된 것, 자연호와 그에 예속된 개별 인들로 구성된 것, 자연호 몇 개를 합쳐 이루어진 것 등이 상정되어지는데, 일단 공연 자체의 성격은 수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자연호설에선, 여러 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도 공연의 수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보이므로 공연을 편호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³⁴⁾ 이 점에 대해 편호설에선, 당시 당이나 일본의 예로 보아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도망해간 경우에는 공연의 감소로 인정치 않고 3년 동안 계연을 계산할 때 그대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추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³⁵⁾

34) 이회관, <통일신라시대의 공연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사연구》 89, 1995).

35) 李泰鎮, <新羅 村落文書의 牛馬>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碧史李佑成先生 定年退職紀念論叢(상)－》, 1990).

全德在, <統一新羅期の 戶等制의 性格과 機能에 관한 研究> (《震檀學報》 84, 1997).

공연은 9등호로 편제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仲上烟을 1로 하고 하하연을 1/6로 계산하여 각 촌의 계연이 산출되었다. 이 계연에 의거하여 각 촌의 조세나 역역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계연의 합계를 통해 전국의 조세나 역역의 총액이 산정되어질 수 있으니, 이에 근거하여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형식의 문서양식은 西魏의 計帳에서 찾아볼 수 있어, 중국에서 비롯한 계장 양식의 영향을 받아 이를 신라의 실정에 맞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³⁶⁾

촌락문서에서 수취액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것으로는 계연 이외의 것은 보이지 않으므로, 계연의 성격 파악이 당시 조세부과의 주된 기준에 대한 이해의 요체가 된다. 이는 곧 공연의 9등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는가와 계연 수가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규명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선 人丁기준설, 토지기준설, 資産기준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중 먼저 제기되었던 설이 인정기준설이다. 즉 각 호의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호로 나누었으며, 9등호에 의거한 계연은 역역 징발의 기준이 되었고, 전조와 공물은 전답과 뽕나무·잣나무·추자나무 등에 기초하여 징수되었다는 견해이다.³⁷⁾

이에 대해 자산기준설로서, 호등은 助·丁의 수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고 다른 경제적 조건 등이 참작된, 각 호의 자산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계연 수는 촌에 부과되는 모든 부담의 이행 기준이 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각 호등에 따라 각 공연간에 분배되었다고 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⁸⁾

한편 토지 기준설에선 각 호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호등이 정해졌고, 계연 수는 토지에 기초하여 산출되었으며, 조·용·조 전반이 이에 의거하여 수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³⁹⁾ 또한 토지를 기준으로 한

윤선태, 《신라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49~160쪽.

36) 윤선태, 〈신라 촌락문서의 計烟과 孔烟—中國·日本의 戶等制, 年齡等級制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研究》 21, 2001).

37) 旗田 巍, 〈新羅の村落—正倉院にある村落文書の研究〉(《歴史學研究》 226・227, 1958・1959: 《朝鮮中世史の 研究》, 1972).

38) 李泰鎮, 〈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烟〉(《韓國史研究》 25, 1979).

39) 李仁哲, 〈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韓國史研究》 54, 1986).

9등호제는 인정하지만, 계연 수에는 면조지인 촌주위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田租의 수취는 불가능하며, 계연 수는 단지 戶調의 수취에만 관련 되고, 전조는 촌락문서에 기록된 田結 수에 의거하여 1/10의 租가 부과되었다고 이해하는 설이 있다⁴⁰⁾.

한편 근래에는 인정을 중심으로 한 자산이 기준이 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즉 당시 당과 일본의 사례로 보아, 각 호가 보유한 전답의 면적 자체는 호등의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각 호의 가용 노동력을 비롯하여 생산곡물의 양, 가축, 가옥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자산’에 의해 공연의 호등이 산정되었다는 설이 그것이다.⁴¹⁾ 그리고 전조는 결부수에 의거하여 수취되지 않았으며, 호등제를 통해 租·調를 수취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⁴²⁾ 나아가 연령등급제의 의미와 동 시기 당과 일본의 사례 및 고려 때의 변화된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라의 9등호제는 인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³⁾

이렇듯 호등의 설정 기준과 계연이 포괄하는 세목의 범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설들에서 제기되었다. 각 설을 다시 검토해보면, 먼저 토지가 기준이 되었다고 볼 경우, 이는 삼국시대의 조세 부과 양상과는 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삼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기록으로선 고구려의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 《隋書》고려전에 “人稅는 포 5필 곡 5석이고 遊人은 3년에 한 번 10인이 細布 1필을 낸다. 租는 家戶 당 1석, 다음은 7斗, 다음은 5斗를 낸다”라 하였다. 이에서 人이란 가호의 호주를 뜻한다고 보아지므로, 곡 5석과 포 5필은 일종의 戶調로 여겨지며, 정납을 중심으로 한 가호 단위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호마다 균일하게 부과된 것이니 인두세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⁴⁴⁾ 이 외에 租는 3등으로 나누어 차등으로 부과

40)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사회변동과 관련하여—》(역사비평사, 1991), 158~186쪽.

41) 윤선태, 〈新羅村落文書의 作成年代와 記載樣式—중국·일본의 積藏문서와의 比較검토를 중심으로—〉(332회 역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1996).

전덕재, 〈통일신라기 호등 산정 기준〉(《역사와 현실》 23, 1997).

42) 全德在, 앞의 글(1977).

43) 윤선태, 앞의 글(2001).

44) 곡 5석과 포 5필은 가호에 부과하는 것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어서, 이를

되었는데, 이는 가호의 빈부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고 보아진다.⁴⁵⁾ 戶租는 그 세액에서 보듯 조세의 주된 부분은 아니고, 부가세적인 것으로 보아진다.⁴⁶⁾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의 경우, 조세 부과와 주된 기준은 人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만약 통일 신라에서 토지가 기준이 되어 9등호가 설정되었다면, 이는 삼국시기와는 크게 다르고 토지가 조세 부과와 기초가 되었다는 측면에선 고려시대의 그것과 동질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춘락문서에는 토지가 결·부·속 단위로 자세히 파악되어 있다. 국가에 의한 양전은 곧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때, 결부법에 의한 토지의 파악은 토지가 주요 세원이 되었음을 뜻한다고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토지는 노동력과 결합되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생산을 낼 때, 수취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토지에 비해 인구가 적고, 호구의 이동이 잦으며, 토지 생산성이 낮고 농법이 휴한법 단계에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결부법에 의한 토지 면적 표시가 곧 결부 단위로 전조가 수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시기 당에서도 頃·畝 단위로 토지를 파악하였지만 조세는 호등에 의해 부과되었고, 그 호등은 소유한 토지 면적에 의해 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라 통일기 때 토지가 조세 부과와 기준이 되었다면, 고려 시대의 田券에서 보이듯 陳田 여부에 관한 언급이⁴⁷⁾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당시는 아직 토지의 연작상경이 일반화되지 못한 단계였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 시기 사용된 결부법은 수확량 기준이 아니고 절대면적 기준이었

‘곡 5석이나, 포 5포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김기홍, 앞의 책(1991), 53~54쪽.

45) 《周書》 고려전에서, ‘賦稅는 소유한 바에 따라 빈부를 헤아려 차등으로 징수하였다’고 하였다.

46) 당시 隋에서 開皇 16년 司倉을 설치하면서, 부가세로 3등의 戶等에 의거하여, 上戶1石, 中戶7斗, 下戶4斗를 부과한 예는 참조가 된다(《隋書》권 24, 食貨志). 고구려의 3등호제에 의거한 租를 義倉租나 北齊의 義租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다(안병우, 앞의 글, 1994).

47) 旗田 巍, 〈新羅·高麗の田券〉(《史學雜誌》 79-3, 1970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1972).

던 만큼⁴⁸⁾ 토지의 비척도에 대한 고려는 안정적 조세 수취를 위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촌락문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고려 시대에 접어들어 호적과 양안이 분리되었고,⁴⁹⁾ 연령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 절대면적단위인 결부법으로 표시된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田品이 설정되었던 점 등이 유의된다. 특히 신라 말에 세워진 개신사 석등기에서 소유주의 畓의 소재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방의 지점을 기술하고, 畝畓과 渚畓으로 畓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술하여, 촌락문서와는 다른 기재 방식이 사용되었다.⁵⁰⁾ 이는 위에서 지적한 요소와 연관해 볼 때 새로운 변화로서 주목되어진다.

한편 인정기준설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즉 만약 인정이 기준이었다면 왜 이들 촌에는 등급이 높은 호는 없고 仲下烟이 최고의 등급호가 되었으며, 4개의 촌락의 등급호의 분포 비율이 각 촌락의 호당 인구수나 丁의 수와 비례하지 않은가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⁵¹⁾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시 조세 부과에 주된 지표인 계연을 산출하는 근거인 호등을 설정하는 기준은 인정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자산이었다고 보는 설이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촌락문서는 수취를 위해 작성한 행정문서이다. 국가는 조세를 안정적으로 징수키 위해 세원에 대한 자세한 파악을 하려 했을 것이고, 그런 면을 행정문서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촌락문서에서 인정에 대한 기술이 자세하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인정이 조세 수취에 중심이 됨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반면 토지에 대한 기술에선 陳田 여부와 전답의 종류나 등급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점은⁵²⁾ 적어도 토지가 주된 조세부과의 항목이 아니었다

48) 李宇泰, 〈新羅時代의 結負制〉(《泰東古典研究》 5, 1989).

49) 盧明鎬, 〈高麗時代 戶籍 記載樣式의 성립과 그 사회적 의미〉(《震檀學報》 79, 1997).

50) 윤선대, 앞의 글(2001).

51) 허종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1)》(1991), 209쪽.

이인철, 〈新羅村帳籍에 대한 몇 가지 論議〉(《韓國古代史研究》 21, 2001).

52)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首露王廟의 位田으로 ‘上上田 30頃’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무왕대에 토지의 9등급 田品制가 시행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료 비판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인정키는 어렵다(전덕재, 〈統一

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당시 토지가 전혀 조세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촌락문서에 烟受有畓에 속하는 촌주위답이 있다. 이는 촌주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지정된 것으로서, 아마도 촌주 소유지를 位畓으로 설정하여 면세를 해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토지에 어떤 형태의, 아마도 부가세적인 성격의, 조세가 부과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³⁾

이렇게 볼 때, 통일신라의 수취제도가 삼국 시기의 그것과 현격하게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기 신라 때 조세 부과 주된 기준이 토지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은 이 시기 관리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체계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되어진다.

(2) 녹읍제의 성격

통일 신라기 때 관리에 대한 보수 지급 제도로 기록에 전하는 것은 祿邑과 관료전이다. 이 중 중심을 이루는 것은 녹읍이었다. 녹읍은 관리에게 일정한 지역에서 부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급여 대신 지급한 것이다. 녹읍은 신문왕 9년(689) 폐지되고, 대신 매년 租가 지급되었다가(歲租), 얼마 후 매월 지급되었다(月俸). 당시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한 구체적인 사례는 佐波理加盤附屬文書에서 확인된다.⁵⁴⁾ 폐지된 녹읍은 경덕왕 16년(757) 다시 부활되어 신라 말까지 지속되었다.

녹읍이 폐지된 것은 신라 통일기 초로서, 강대해진 왕권에 의해 녹읍을 지급받는 주된 대상이었던 진골 귀족세력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옛 백제 영역과 고구려 영역의 일부를 통합함에 따라 세원이 크게 늘어나 세조를 지급할 수 있게끔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기에 가능하였다. 한편 녹읍의 부활 원인에 대해선 직접적인 사료는 보이지 않으나, 신라 중대를 거치면서 각종의 재정 지출이 크게 증대되었고 성덕왕과 경덕왕 대에 자주 보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의 유망이 늘어남에

新羅期 戶等制의 性格과 機能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84, 1997).

53) 전덕재, 위의 글.

54) 尹善泰, 〈正倉院所藏‘佐波理加盤附屬文書’의 新考察〉(《國史館論叢》 74, 1997).

따른 재정공핍과 진골 귀족의 이해가 어우러진 데서 찾기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녹읍주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수조권설, 조·용·조 징수권설, 調와 역역 징발권설, 등 그간 다양한 견해들이 개진되었다.

먼저 수조권설을 보면, 통일기 신라의 녹읍은 녹읍주에게 녹읍 내의 전답의 소유주로부터 전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중세 전기의 특징적인 토지제도인 田主佃客制의 유형이었다고 보았다.⁵⁵⁾ 한편 이에 대해 만약 녹읍주에게 수조권이 지급되었다면 녹읍은 전결 수로 분급되어야 하는데, 학생 녹읍의 예에서 보듯 지역 단위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면에 대해 수조권설에선 당시 녹읍은 고을 단위로 그 수조권이 분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⁶⁾

만약 녹읍주에게 수조권이 분급되었다면, 녹읍의 농민들에 대해 전조가 수취되었고 전조가 농민의 부세 부담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읍의 농민에 대한 수취는 일반 촌락의 농민에 대한 그것과 일단 제도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촌락문서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계연 산출의 근거인 9등호는 토지 소유 정도에 의거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토지가 주된 세 부과 대상은 되지 못하였고, 전조가 수취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다음 녹읍주에게 분급된 것은 전조를 제외한 공부와 역역 징발권 및 소와 말에 대한 지배권이었다고 본 설은⁵⁷⁾ 고대 일본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율령체제 하에서 관리에게 준 일본의 職分田을 신라의 관료전과,

55) 金容燮, 〈前近代의 土地制度〉(《韓國學入門》, 學術院, 1983).

이경식, 〈고대 중세의 녹읍제의 구조와 전개〉(《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56) 李景植, 〈新羅時期 祿邑制의 施行과 그 推移〉(《歷史研究》 72, 1999).

57) 吉田 孝, 〈公地公民制について〉(《坂本太郎古稀記念 續日本古代史論集》 中卷, 1972).

木村 誠, 〈新羅祿邑制と村落構造〉(《歷史學研究》 428 別冊(世界史の新局面と歴史像の再構成), 1976).

武田幸男, 〈新羅의 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をめぐって—〉(《朝鮮學報》 81, 1977).

그리고 封戶를 녹읍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설은 촌락문서의 작성 연대를 헌덕왕 7년(815)으로, 그리고 촌락문서를 녹읍지배를 위한 기초문서로 간주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촌락문서의 작성연대에 대해선 최근 695년설이⁵⁸⁾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분분하며, 촌락문서에 등장하는 촌락의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일정치 않다. 그런만큼 좀더 고찰이 필요한 바이다.

한편 녹읍주에게 주어진 것이 곡물 수취권이었다고 보는 설도⁵⁹⁾ 있으며, 조종조 모두를 수취하였다는 설은 일찍부터 제기되어온 바이다.⁶⁰⁾ 그리고 전기 녹읍과 경덕왕 16년(757) 부활한 후기 녹읍간에는 수취 내용이 달랐다는 설도 제기되었다.⁶¹⁾

이렇듯 당시 녹읍에 대한 수취 양태가 어떠하였던가는 그간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아직 논란이 분분하여 분명치 않은 점이 많은 형편이다. 앞으로 삼국시대와 통일기 신라 그리고 고려 전기로 이어지는 시기의 사회적 변화와 농업의 진전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확충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아울러 삼분법 또는 오분법적인 시대구분론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데서 벗어나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발해인과 발해국

8~9세기 한국고대사에서 주요한 쟁점의 하나는 발해사에 대한 이해이다. 발해사의 성격과 그 귀속을 둘러싸고 그간 국내외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58) 尹善泰, 〈村落文書の 作成年代—일본의 ‘華嚴經論’流通過程을 중심으로—〉(《震檀學報》 80, 1995).

59) 全德在, 〈新羅時代 祿邑의 性格〉(《韓國古代史論叢》 10, 2000).

60) 金哲堧, 〈新羅 貴族勢力의 基盤〉(《人文科學》 7, 1962; 《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姜晉哲, 〈新羅의 祿邑에 대하여〉(《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論叢》, 1969; 《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1989).

——, 〈新羅의 祿邑에 대한 若干의 問題點〉(《佛教와 諸科學》, 1987; 앞의 책, 1989).

朴贊興, 〈신라 녹읍의 수취에 대하여〉(《韓國史學報》 6, 1999).

61) 김기홍, 앞의 책(1991), 142~147쪽.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발해가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된 고구려 계승국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보는 견해와 말갈족이 중심이 된 국가로 여기는 견해로 대별된다. 전자는 남북한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후자에선 발해를 중국의 중세 지방봉건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당 왕조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중국학계의 주장과 말갈족 역사로서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러시아 학계의 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발해사의 이해를 둘러싸고 각국 학계의 견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선 정치적 입장과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기 어렵다.

발해국은 다종족 국가였는데, 그 중 두 계통의 주민이 대종을 이루었다. 발해국의 주민은 발해 멸망 직후부터 요나라에 의해 ‘발해인’과 ‘여진인’으로 구분되어져 각각 다른 형태로 지배를 받았다. 즉 전자는 주현의 민으로 편제되어 요의 지방관에 의해 漢法 즉 漢人에게 적용하는 법으로 통치되었다. 그와는 달리 후자는 부족 단위로 편제되어 자치를 영위케 하고 간접 지배를 하였다. 이는 양자의 사회의 성격이 달랐던 데서 비롯한 것이다. 전자의 사회는 이미 공동체적인 관계가 해체되고 사회분화가 깊이 진전되었는데 비해,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 고려에서도 귀부해 온 옛 발해국의 주민을 발해인과 여진인으로 구분하였다. 여진인의 경우, 집단적으로 안착시켜 그 내부의 일은 자치에 맡겼다.

이렇게 발해국의 주민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은 발해국 존립 당시에도 그러하였다. 발해 초기에 발해를 방문하였던 일본인의 견문기에서 그 주민이 ‘土人’과 말갈로 구분되었고 도독, 자사 등은 ‘토인’이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주민구성의 이중성은 발해 말기에도 확인되어진다.

발해의 묘제에서도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발해 초기의 무덤 양식을 보면 석실봉토분과 토광묘로 대별된다. 전자는 수도와 주요 지방 중심지에 축조되었고, 후자는 주로 변방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발해 초기, 수도의 주민들의 묘지였던 옥정현 옥정산의 무덤떼를 보면 고구려 문화적인 요소와 말갈 문화적인 요소가 함께 보인다. 구체적으로 옥정산 고분 분포지 내에서 대형 석실분이 자리잡은 구역에선 고구려적 요소가 두드러지며, 작은 무덤이 밀집한 구역에선 말갈 요소가 현저하게 보인다. 이는 곧 발해 건국의 주도세

력이 고구려계의 주민이었음을 말해주는 바이다.⁶²⁾

그리고 발해인들의 의식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은 찾아볼 수 있으나 말갈 계승의식은 확인키 어렵다. 792년 당에 발해사절로 파견되었던 양길복이 락관명이 ‘押靺鞨使’였다.⁶³⁾ 즉 ‘말갈을 관할하는 관리’라는 뜻의 관직명이다. 만약 발해 조정이 말갈족 출신이고 말갈족에 소속의식이 있었다면, 존재키 어려운 관직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인접국인들의 인식 또한 이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보는 것이 절대 다수였다. 즉 보장왕의 손자인 高震의 묘지명에서 고진의 출자를 발해인으로 기술하였고, 발해를 멸망시킨 후 그 땅에 거란이 설립한 동단국의 左次相이었던 거란인 야율우지가 요동지역을 발해인의 고향이라고 하였으며, 일본인들이 발해사절을 고려사라 하였다.⁶⁴⁾ 그리고 8세기 후반 9세기 초에 티베트어로 기술된 돈황문서 P.1283에 의하면 당시 내륙아시아 터키계 유목민들이 발해를 ‘Muglig’라고 불렀다 하는데, 이 말은 고구려 존립 당시 고구려를 돌궐에서 Mökli 또는 Moukri라 하였던 데서 비롯한 것이다. 같은 문서에서 당나라 사람들이 이 Muglig를 ‘Keuli’ 즉 고려라 하였다고 전한다. 발해와 고구려를 계승관계에 있는 실제로 이해하였음을 말해준다.⁶⁵⁾

이런 면으로 볼 때, 발해국을 이끌었던 주된 족속인 ‘토인’-‘발해인’은 고구려계가 중심이었다고 보아야겠다. 그리고 그간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대조영의 출자는 변경의 고구려인⁶⁶⁾ 또는 말갈계 고구려인⁶⁷⁾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발해인의 족속계통을 파악하는 것이 발해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62) 宋基豪, 〈六頂山 古墳群의 성격과 발해 건국집단〉(《汕耘史學》 8, 1998).

——, 〈事實과 前提-발해 고분의 경우-〉(《韓國文化》 2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0).

63) 《唐會要》 권 96, 渤海.

6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거는 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の 族源〉(《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참조.

65) 盧泰敦, 〈高句麗 渤海人と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大東文化研究》 23, 1989 : 《고구려사 연구》, 1999).

66) 盧泰敦, 앞의 글(1989).

67)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一潮閣, 1995), 41쪽.

주요한 부분이지만, 그 점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발해사를 고구려사의 연장
으로만 이해케 하는 오류를 낳게 한다. 발해는 200여 년 존속하는 동안 그
시기의 내외의 객관적 여건에, 특히 고구려유민들이 목단강 유역 등 동부 만
주 신개척지에서 다수의 말갈족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면서 그 나름의 개성적인 면모를 형성하였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면
에 대한 천착이 진전되어야 발해사의 특성이 보다 부각될 수 있겠다.

한편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양국이 시종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였고 당이 그것을 조장하였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⁶⁸⁾ 즉 강대한
외세의 조종에 휘말려 양국은 서로 동족의 나라임을 자각치 못한 채 당 중
심의 국제질서에 안주하여 분열과 대립을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
해와 신라는 시종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호 교류도 하였
다.⁶⁹⁾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라는 이름의 교통로가 존재하였다는 사
실은⁷⁰⁾ 그런 면을 말해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양국간의 관계는 우
호적인 것은 아니었고, 교류 또한 활발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실제 양국
은 733년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른 바 있다. 이 해의 전쟁에서 그러하였듯이,
발해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당에 밀착하여 이에 대응하려 하였다.
발해는 일본과 관계를 맺어 신라를 견제하려 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세력균형을 이루어 안정을 유지
하였으나, 신라와 발해간의 관계는 적대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특기할만한
관계 개선 없이 병존 상태를 지속하였다. 삼국 통일 전쟁 후 신라 조정은
삼한일통의식을 전면 내세워 적극적으로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동족으로
포괄했지만, 뒤 이어 등장한 발해에 대해선 능동적으로 동족의식을 표방하
지 않았다. 이는 당시 신라 조정이 삼한일통을 자신의 위업이요 정통성의
주요 기저로 내세웠는데, 고구려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발해를 고구려계
승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논리와 상충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68) 李佑成, 〈南北國時代와 崔致遠〉(《창작과 비평》 10-4, 1975).

69) 宋基豪,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70) 《新唐書》渤海傳.

풀이는 의미가 있다.⁷¹⁾

그러면 양국이 존재하던 8세기에서 1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의 시기 명칭을 정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간 ‘통일 신라와 발해’, ‘남북국시대’, ‘발해와 후기 신라’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면에 대해선 그 시기의 역사적 실상과 함께, 발해인과 발해국에서 이룩한 역사적 성취가 어느 정도 고려사회에 이어졌는가에 의해 가름지워져야 할 것이다. 고려사회의 주된 부분이 그 영역과 함께 통일기 신라의 그것을 이었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盧泰敦〉

3. 고 려

고려의 太祖 王建은 泰封國의 弓裔를 축출하고 새로이 나라를 개창한 데 (918) 이어서 신라를 평화리에 합병하고(태조 18년, 935), 이듬해에는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그는 지방세력인 호족들을 회유, 규합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거니와, 뒤를 이은 역대 왕들도 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成宗朝(982~997)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기반이 잡히고 지배체제도 정비될 수 있었다. 이처럼 성종조에 와서 국가의 체제가 일단락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6두품 출신인 崔承老의 보필이 컸지마는, 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국왕에게 올린 바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로 요약되는¹⁾ 그의 시무 28조는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후 발전을 거듭한 고려의 門閥貴族社會는 11대 국왕인 文宗朝(1047~1083)에 접어들어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睿宗(1106~1122)·仁宗(1123~1146) 때에는 벌써 사회가 동요를 면치 못하더니 毅宗 24년(1170)에는 귀족사

71) 李康來, 〈三國史記의 靺鞨 인식〉(《白山學報》 52, 1999).

1) 李基白, 〈新羅統一期 및 高麗初期의 儒敎의 政治理念〉(《大東文化研究》 6·7 합집, 1969·1970 :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韓國研究院, 1978).

회 내부의 모순과 文·武臣 간의 대립으로 촉발된 武臣亂으로 인하여 문신 중심의 귀족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써 우리들이 흔히 고려 전기로 분류하는 시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무신란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부터는 무신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武臣政權時代가 되었다. 이후 그것은 꼭 100년간(明宗 원년, 1171~元宗 11년, 1270) 지속되거나와, 이 시기에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사회·사상 등 각 방면에 일대 변혁이 초래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高宗 18년(1231)에는 몽고족의 침입이 시작되며, 이에 고려 조정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저들과 전쟁을 치르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그런 끝에 몽고와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조정은 1271년에 개경으로 환도하지만, 이때부터는 저들의 내정간섭을 받아 나라의 자주성이 위축됨을 면치 못하였다. 그 같은 상황하에서 정치질서는 더욱 문란해지고, 사회경제적 모순은 한층 심화되어 갔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恭愍王(1352~1374)은 元改革政治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운동은 원(몽고)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문제를 비롯한 제 모순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신홍 무장과 손을 잡은 新進士類勢力에 의하여 고려는 34왕 475년만에 종언을 고하고 마는 것이다(1392년).

封建制度和 農奴制 생산양식, 기독교 문화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서양의 ‘中世社會’와 내용을 좀 달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고려도 많은 사람들이 ‘중세사회’라 일컫고 있다. 아마 단순한 시간의 원근이나 신라사회와의 차별성 또는 田主－佃戶制와 地代의 수취 등에 무게를 둔 이해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이처럼 흔히들 중세사회로 분류하는 고려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변천 과정을 밟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시대가 지나는 한 특성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사상상의 특징적인 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고려사회의 역사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1) 정치적 특성

(1) 중앙의 정치체제와 그 성격

고려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근대 왕조국가의 하나였던만큼 국왕권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를 경영하여 감에 있어서 국왕은 신료들과 정치권력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정치체제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하게 된다. 그것의 여하에 따라 국왕과 신료양자간에 지니는 정치권력의 대소, 강약이 영향을 받았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먼저 중앙의 정치기구들에 대해 살펴보면, 그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泰封 이래의 廣評省·內奉省 등을 이으면서도 한편으로는 唐의 제도에서 모범을 구한 3省(中書門下省·尙書省)과 6部(吏部·兵部·戶部·禮部·刑部·工部)였다. 그 아래에 다시 諸寺·監과 諸署·局 등이 있었지만, 또 宋制와 계통이 가까운 中樞院(樞密院)과 三司, 그리고 고려 자체의 필요성에서 생긴 都兵馬使·式目都監 등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구들이었다. 고려 때의 중요 정치기구는 크게 말해서 이처럼 세 계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 갔다는 데서 우선 한 특성을 엿볼 수 있다.²⁾

그런데 이들 기구는 조직상으로 2품과 3품을 경계로 하여 상·하 이종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 예컨대 중서문하성의 경우 2품관 이상으로서, 宰臣·宰相·省宰 등으로 불리며 議政機能을 담당했던 宰府와, 3품관 이하로 諫官·省郎 등으로 불리며 諫諍·封駁·署經 등을 담당했던 郎舍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中樞院과 尙書省도 마찬가지로 전자의 경우 역시 2품관—후대에는 3품관 포함—으로 樞密·宰相 등으로 불리며 의정 기능—후대에는 軍政 포함—을 담당했던 樞府와, 3품관으로 承宣이라 불리며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承宣房, 그리고 후자는 주로 문서 수발과 국가적 행사를 주관하던 2품 이상 관원의 조직인 尙書都省과 국정을 분담하여 집행하던

2) 邊太燮, 〈高麗의 政治體制와 權力構造〉(《韓國學報》4, 1976).

3품 이하 관원의 조직인 尙書6部(6部)로 나뉘어져 있었다. 고려에서 이같이 기능을 달리하는 두 조직을 한 기구 내에 설치한 것은 제도의 未分化性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일면 고려 나름으로 정국 운영의 묘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파악도 있어³⁾ 주목할 필요가 있는 양상의 하나이다.

한데 이들 상·하 조직을 다시 정치권력면에서 보면 한층 비중이 큰 것은 상층조직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재부와 추부는 兩府로서 정치의 중심에 위치하였는데, 이곳의 구성원인 宰臣과 樞密은 앞서 언급했듯이 宰相으로서 국왕과 중요 국정을 논의하는 의정 기능과 함께 그의 집행을 직접 관장하기도 했다는 데서 그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도적 조치가 6部判事制였다. 判尙書吏部事(判吏部事)·判尙書兵部事(判兵部事) 등이 그런 직위들인데, 고려에서는 6부의 장관인 尙書(정3품) 위에 判事를 더 두고 재부의 재신들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判吏部事를 겸직하는 宰臣이 首相이 되고, 判兵部事를 겸직하는 재신이 亞相, 判戶部事 겸직자가 3宰, 이하 차례로 내려가 判工部事가 6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宰臣判事の 6부에 대한 권한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재신들에 의해 6부가 통할되는 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6部尙書도 宰樞가 중복직으로 지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즉, 吏部尙書·兵部尙書 등의 각 尙書職을 재신의 경우 주로 叅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가 일부를 帶有하였으며,⁵⁾ 또 中樞院使(樞密院使)·知中樞院事·同知中樞院事 등 樞密들 역시 재신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상서를 중복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⁶⁾ 물론 상서들이 독립직·단독직으로 존재하는

3) 邊太燮, 위의 글.

朴龍雲, 〈高麗時代의 臺諫과 宰樞文武兩班〉(《誠信女大論文集》 12, 1979 : 《高麗時代 臺諫制度 研究》, 一志社, 1980).

4) 邊太燮,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尙書省 機構를 중심으로—〉(《歷史學報》 47, 1970 :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朴龍雲, 〈高麗時代의 6部判事制에 대한 考察〉(《고려시대연구》 II, 2000 : 《高麗時代 尙書省 研究》, 景仁文化社, 2000).

5) 朴龍雲, 〈고려시대의 叅知政事〉·〈고려시대의 政堂文學〉·〈고려시대의 知門下省事〉(《고려시대 中書門下省宰臣 연구》, 一志社, 2000).

사례도 보인다. 하지만 이들보다도 宰臣判事와 채추 상서들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찾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의 운용으로 국무의 집행기관인 尙書6部가 채추의 통할하에 있었다는 게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⁷⁾ 《高麗史》 권 76, 百官志 모두의 서문에 “宰相이 6부를 統轄하였다”고 서술해 놓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 짐작된다.

종래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서도 국무를 6부가 직접 국왕에게 아뢰고 처리하였다는 ‘6部直奏制’說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6부 중심의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⁸⁾ 이 같은 주장은 업무의 처리 과정 상으로 볼 때 수궁이 가지만 권력구조면에서는 좀 달리 이해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근자에 국왕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견해가 제시되었다.⁹⁾ 고려도 왕조국가의 하나였으므로 왕권이 결코 홀시되거나 낮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은 첫머리에서 지적했듯이 자명하다. 그러나 다만 국정 운영 과정에 채추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제도의 채택으로 상대적인 의미에서 왕권이 좀 미약했다는 정도의 이해인 것이다.

고려의 정치체제가 이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그가 귀족사회였다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 자체의 성격이 그러하였던 만큼 자연히 정치체제에도 귀족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그 하나로 우선 정치의 근간이 된 內史門下省(中書門下省)의 설치가 귀족정치를 지향하는 유신세력이 그 중심기구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

6) 朴龍雲, 〈高麗時代의 尙書6部に 대한 檢討〉(《高麗時代 尙書省 研究》, 景仁文化社, 2000).

——, 〈고려시대 樞密에 대한 검토〉(《高麗時代 中樞院 研究》 91, 高麗大 民族文化研究院, 2001).

7) 朴龍雲, 〈고려시대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 〈高麗時代의 宰臣과 樞密과 6部尙書의 관계를 통해 본 權力構造〉(《震檀學報》 91, 2001 : 《高麗時代 中樞院 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院, 2001).

8) 邊太燮, 앞의 글(1970).

9) 朴宰佑, 〈高麗前期의 國政運營體系와 宰樞〉(《歷史學報》 154, 1997).

——, 〈고려전기 政策提案의 주체와 提案過程〉(《震檀學報》 88, 1999).

다.¹⁰⁾ 그러므로 그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議政機關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 의정 과정도 내사문하성의 재신간에서뿐 아니라 중추원 추밀들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의안의 결정은 議습이라 하여 재추 전원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였다.

臺諫制度도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대간은 諫諍이나 時政의 득실을 논하는 기능 등을 통해 감히 왕권을 제약하고 국가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하는 귀족세력의 대표적 존재였기 때문이다.¹¹⁾ 이것 역시 귀족적 성격을 강하게 풍기는 제도의 하나였다.

다음 관직상으로는 淸要職이나 檢校職과 같은 勳職제도에서 귀족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¹²⁾ 고려시대 중앙의 정치체제에서는 이처럼 여기저기서 귀족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그의 가장 커다란 특질이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의 통치조직과 그 성격

고려의 건국(918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얼마 동안은 중앙과 함께 지방도 통치조직이 정비되지 못하여 중앙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호족이라 일컬어지는 재지세력이 번성하여 지방은 이들의 지배에 맡겨져 있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태조 23년(940)에는 州·府·郡·縣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租賦의 징수·보관과 관계되는 今有·租藏과 그의 운송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轉運使가 파견되기도 하고, 또 光宗 즉위년(949)에 州縣의 歲貢額을 정하고 있는 데서 지방에 대한 통제의 일면을 엿볼 수는 있으나 이들이 아직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못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의 조정이 지방에 본격적으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종 2년(983)에 들어와 12주에 목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이는 그 전 해에

10) 李泰鎮, 〈高麗 宰府의 成立—그 制度史的 考察—〉(《歷史學報》56, 1972).

11) 朴龍雲, 《高麗時代 臺諫制度 研究》(一志社, 1980).

12) 李基白, 〈貴族의 政治機構의 成立〉(《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 《高麗 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있었던 崔承老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거니와, 집권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우선 중요지역인 楊洲·廣州·忠州 등 12주에 목을 설치하고 상주하는 外官(地方官)인 牧使를 파견함으로써 중앙의 통제력이 비로소 지방에 본격적으로 침투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해에 戶長·副戶長 등의 鄉吏職制가 마련되는 것도 이와 관계가 깊지마는, 뒤이어 몇 가지 조치가 잇따랐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성종 14년에 당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수도인 開州가 開城府로 개정되고, 10도가 신설되며, 또 종래의 12州 牧使제도 12軍 節度使制로 개편되는 한편으로 7都團練使·11團練使·15刺史·5都護府使·21防禦使 등의 편제도 마련된다. 그후 이는 다시 穆宗 8년(1005)과 顯宗 3년(1012)의 개정을 거쳐 마침내 東王 9년(1018)에 이르러 4都護·8牧·56知州郡事·28鎭將·20縣令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물론 이 조직도 그후 여러 차례 바뀌며, 또 상급기구인 5道按察使制가 윤곽을 드러내는 것은 훨씬 뒤인 睿宗朝(1106~1122)경이지만, 보통 郡縣制로 불리는 고려조 지방통치조직의 골격은 이로써 일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지방의 통치조직을 구역별로 보면 南道 지역과 兩界 지역 및 경기 지역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위별로는 道·界와 京·都護府·牧 등의 界首官, 그 아래 州·府·軍·縣·鎭 등의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이 군현제 지역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들과 구별되는 鄉·部曲·所·莊·處 등의 특수행정조직이 따로이 광범하게 존재하였다. 이른바 部曲制 지역인 것이다.

종래에는 이렇게 군현제 지역과 구별되는 부곡 등의 특성을 신분적인 면에서 파악하여 천민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았다.¹³⁾ 그러나 근자에는 부곡 등에 비록 그 같은 천민적 존재가 더러 있기는 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부곡민 역시 良人이었다고 이해하고들 있다. 그리하여 이들을 주로 수취관계와 관련하여서거나¹⁴⁾ 越境地와 같은 지리적 조건과 연관지어¹⁵⁾ 해석하고도 있

13) 旗田巍, 〈高麗時代の賤民制度「部曲」について〉(《和田還曆紀念 東洋史論叢》, 1951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14) 朴宗基, 〈高麗 部曲制의 構造와 性格—收取體系의 運營을 中心으로—〉(《韓國史論》 10, 1984 : 《高麗時代 部曲制研究》, 서울大出版部, 1990).

15) 李佑成, 〈李朝時代 密陽古買部曲에 대하여—部曲制의 發生 形成에 關한 一推

는 것이다. 하지만 부곡제 지역 사람들이 일반 군현민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이처럼 일반 군현과는 구별되는 특수행정조직인 부곡 등이 광범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우선 하나의 특징으로 꼽아도 좋은 것이다. 혹자는 부곡제 지역의 광범함에 유의하여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을 이것과 군현제 지역으로 대별하여 파악하기도 한다.¹⁶⁾ 그러나 이 같은 이해는 통치구조면에서 볼 때 얼마간의 여운이 남는다.

다음 행정체계상의 큰 특징은 중앙과 외관이 파견된 主郡(領郡)·主縣(領縣)과 直牒關係에 있었다는 점일 것 같다. 이어서 설명하듯이 고려에서는 전체 군현에 외관(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역에 한정시켰는데, 중앙의 官司는 일반 행정 사항에 대한 公牒을 중간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들에게 발송하였고, 지방의 수령들 역시 해당 중앙관서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초부터 상급 기구의 위치에 있던 경·도호부·목 등의 계수관들이 담당한 역할도 몇몇 가지 사항에 한정되어 있었다.¹⁷⁾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上表하여 陳賀하는 일과 鄉貢을 選上하는 일 및 外獄囚 推檢 등이었다는 연구가 있거니와,¹⁸⁾ 중간기구로서의 그들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뒤에 성립되는 5道按察使制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안찰사도 전임의 외직이 아닌 使命官으로서 도내의 州縣을 巡按하면서 ①수령의 賢否를 살펴 黜陟하는 일을 위시하여, ②민생의 疾苦를 묻는 일, ③刑獄의 審治, ④租賦의 수납, ⑤군사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데¹⁹⁾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무기구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임기는 6개월에 불과하였

論》(《震檀學報》56, 1983 :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16) 朴宗基, 《高麗時代 部曲制研究》(서울대出版部, 1990).

17) 尹武炳, 〈高麗時代 州府郡縣의 領屬關係와 界首官〉(《歷史學報》17·18 합집, 1962).

18) 邊太燮, 〈高麗前期의 外官制-地方機構의 行政體系-〉(《韓國史研究》2, 1968 :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19) 邊太燮, 〈高麗按察使考〉(《歷史學報》40, 1968 :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다. 거기에다가 안찰사에 임명되는 사람이 대부분 5~6품의 微官이었고, 또 5도의 명칭과 그 소관 구역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고도 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안찰사를 도의 장관으로 보지 않으려는 견해까지 있는 것이다.²⁰⁾ 여기서도 중간기구로서의 道制가 지니는 한계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계수관이나 안찰사제가 지니는 이 같은 제약성과도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의 행정체계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직첩관계에 있었다고 하였거니와, 그러나 그것도 외관이 파견된 주군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려 때는 이러한 주군현보다도 특히 남방 5도를 중심으로 외관이 없는 속군·속현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주군현을 통한 간접지배를 하였던 것이다. 고려에서는 이처럼 일부 지역에만 外官을 파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행정을 펴 나갔으므로 邑格보다는 외관의 설치 여부가 한층 중요하였다. 광범한 속군·속현의 존재와 더불어 이 같은 외관 중심의 행정체계가 고려 군현제의 또 다른 특질의 하나였던 것이다.²¹⁾

그러면 고려의 군현조직에 있어 이러한 主屬關係가 생겨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羅末麗初에 호족들이 지배하던 세력권과 관련이 깊은 듯 하다. 고려는 건국의 초기에 각 곳의 유력한 在地勢力들에게 土姓을 分定하여 준다면가²²⁾ 공신책정이나 官階를 수여하여²³⁾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여 주었다. 이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세력권을 형성하여 그 안에 들어온 주변세력과 주속관계를 맺었던 것 같으며, 이런 관계가 곧 군현 상호간의 주속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나 짐작되는 것이다. 고려는 건국 초기뿐 아니라 그 후 줄곧 시혜나 징벌의 의미에서 邑號를 승강시키고 있어서²⁴⁾ 이와 좀 다른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주속관계의 시원은 대체적으로 그와 같이 파악되

20) 河炫綱, 〈後期道制에의 轉成過程〉(《高麗地方制度의 研究》, 韓國研究院, 1977 :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21) 邊太燮, 앞의 글(1968).

22) 李樹健, 〈「土姓」研究(其一)〉(《東洋文化》 16, 1975

——, 〈土姓의 形成過程과 內部構造〉(《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23) 金日宇, 〈高麗 太祖代 地方支配集團 편제의 제도적 장치〉(《濟州島史研究》 6, 1997 : 〈고려초기 국가의 地方支配體系 연구〉, 一志社, 1998).

24) 金甲童, 〈高麗初의 州에 대한 考察〉(《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朴恩卿, 〈高麗時代의 邑號陞降〉(《高麗時代 鄉村社會研究》, 一潮閣, 1996).

고 있는 듯 생각된다.

많은 속군현의 존재는 중앙의 행정력에 일정한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예종조로부터 심해지는 백성들의 流移 현상이 그 점을 보여주는 한 좋은 사례였다. 고려조는 국초부터 이 부분에 유의하여 本貫制 등을 시행하였지만,²⁵⁾ 이제는 속군현에 최하급의 외관이긴 하나 監務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로써 백성들의 유이 현상을 막고 변화하는 향촌질서에도 대처하려 하였던 것이다.²⁶⁾ 그러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외관을 배치하는 고려의 지방 통제 시책은 麗末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시행되지 못하였다.

지방행정의 말단을 맡아 실무를 본 것은 보통 長吏 또는 外吏로 불린 鄉吏層이었다. 이들은 군현제 지역이나 부곡제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행정구획에 설치된 邑司에 근무하면서²⁷⁾ 백성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컸다. 더구나 이들은 신분적으로 국초의 호족과 연결되어 있었고 과거 등을 통해 중앙의 관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등 권한과 지위가 상당히 크고 높았던 것이다.²⁸⁾ 고려시대의 향리들은 조선의 그들과 상당히 다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중앙정부가 其人制度나 事審官制度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통제책을 삼았다 함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행정조직의 하부 단위로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은 촌락이었다. 고려 때의 촌은 대체적으로 신라 장적문서에 보이는 沙害漸村 등과 유사한 자연촌락으

25) 蔡雄錫, 〈高麗前期 社會構造와 本貫制〉(《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출판부, 2000).

26) 元昌愛, 〈高麗 中·後期 監務增置와 地方制度의 變遷〉(《清溪史學》 1, 1984).

金東洙, 〈고려중·후기의 監務 파견〉(《全南史學》 3, 1989).

이인재, 〈고려 중후기 지방제 개혁과 감무〉(《外大史學》 3, 1990).

27) 李樹健, 〈高麗時代 「邑司」 研究〉(《國史館論叢》 3, 1989).

尹京鎮, 〈高麗時期的 地方文書行政體系〉(《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 서울대출판부, 2000).

28) 朴敬子, 〈高麗 鄉吏制度의 成立〉(《歷史學報》 63, 1974).

趙榮濟, 〈高麗初期 鄉吏職의 由來에 대한 小考〉(《釜大史學》 4, 1980).

李純根, 〈高麗初 鄉吏制의 成立과 實施〉(《金哲俊華甲紀念 史學論叢》, 1983).

尹京鎮, 〈高麗前期 鄉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韓國文化》 20, 1997).

로 이해하여 왔는데,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는 그 몇 개씩이 합쳐진 ‘地域村’을 이루기도 했다 한다.²⁹⁾ 한데 근자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전진된 ‘行政村’說도 나오고 있거니와,³⁰⁾ 고려 때 지방의 촌락이 수도인 개경의 坊·里制와 유사하게 행정적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지의 여부는 지금의 시점에서 단정하여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

매우 소략하게 살피는데 그치긴 했지만 고려시대의 지방통치조직과 구조 및 그 성격은 이처럼 여러 모로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3) 대외적 시련과 극복

고려의 역사 전개과정에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빈번하게 항쟁과 교섭을 벌여 왔다는 성격도 나타나고 있다. 원래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대륙의 정치형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중국의 역사는 남방의 농경민족인 漢族과 북방 유목민족과의 끊임없는 투쟁사라고 할 수 있거니와, 이러한 중국의 남북간 대립이 한국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東亞 국제정세의 삼각관계에 기인하는 결과로서, 중국 남북민족간의 대립에 있어 한국민족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했던 만큼 북방민족들은—때로는 漢族도 그러했지만—한국이 他方の 與國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곤 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한국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구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어쨌든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대외교섭사는 복잡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가 日本列島の 세력이 밀려와 그 복잡성을 더해가는 일이 있었거니와, 고려조에서는 그와 같은 대립·충돌이 유난히도 심하여 대외적인 성격이 강한 역사가 되었던 것이다.

10세기 초엽 고려의 건국이 있는 지 얼마 후 중국대륙에서는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宋이 일어났다(960년). 여기에서 고려가 수립한 대외정책은 北進·親宋政策이었다.³¹⁾ 그런데 당시에는 마침 송의 북방에서 契丹·女眞·

29) 李佑成, 〈麗代 百姓考—高麗時代 村落構造의 一斷面—〉(《歷史學報》14, 1961).

30) 朴宗基, 〈高麗時代 村落의 機能과 構造〉(《震檀學報》64, 1987).

31) 全海宗, 〈高麗와 宋과의 關係〉(《東洋學》7, 1977).

羅鍾宇, 〈高麗時代의 對宋關係〉(《圓光史學》3, 1984).

蒙古 등 유목민족이 차례로 발흥하여 송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고려의 북진·친송정책과 대립되게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먼저 거란족의 遼와 3차례 이상이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요나라의 聖宗은 압록강 하류의 여진을 치고 이어서 중류 지역에 발해의 유민이 세운 定安國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뒤 송마저 패퇴시켜 거릴 것이 없게 되자 고려에 제1차의 침공을 개시하였다(고려 성종 12년, 993).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정세를 잘 살핀 徐熙가 적장과 담판하여 저들이 원하는 송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물러나게 하고 오히려 江東6州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고려는 그 뒤에도 송과 비공식적인 교류를 계속한 데다가 강동6주의 탈환도 노려 요의 성종이 康兆의 정변을 구실 삼아 현종 원년(1010)에 직접 步騎 40만을 이끌고 제2차의 침입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수도인 개경이 함락당하고 국왕은 나주로 피신하는 시련을 겪었으나 상하가 단결하여 무사히 난국을 수습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소규모의 파상적인 공격을 하던 요는 마침내 1018년에 10만 군을 보내 다시 대공세를 폈으나 姜邯贊 등이 지휘한 고려군의 반격을 받아 참패하고 물러갔다. 이 같은 오랜 전란으로 지친 두 나라는 곧 화약을 맺거니와, 고려는 끈질긴 항쟁으로 대륙 북방의 강자인 요의 침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³²⁾

여진족의 金과 충돌하는 것은 그 부족의 하나인 完顔部가 세력을 키워 우리 지역으로까지 뻗어오면서였다. 즉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까지 여겨오던 저들은³³⁾ 烏雅束 때에 이르러 더욱 세력이 커지자 군대를 파견하여 이미 고려에 복속하고 있던 曷懶甸 일대의 여진부락을 경략하고, 계속하여 고려에 依附코자 來投해오는 여진인을 쫓아 定州의 千里長城 부근에까지 이르렀다. 때가 바로 肅宗 9년(1104)으로 고려로서는 도저히 이를 좌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양국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는데, 고려는 번번이 패배하였다. 적은 기병인데 비해 아군은 주로 보병인 데다가 그 조직마저 약화되어 있었기 때

朴龍雲,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韓國學報》 81·82, 1995·1996).

32) 李龍範,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東洋學》 7, 1977).

33) 金庠基, 〈금(金)의 시조(始祖)에 대하여〉(《국사상의 제문제》 5, 1959).

문이다. 이에 尹瓘은 왕에게 아뢰니 別武班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고, 睿宗 2년(1107)에는 마침내 저들을 내쫓고³⁴⁾ 지금의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에 걸쳐 9城을 축조하는 것이다.³⁵⁾ 이로써 우리 나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는데, 그러나 근거지를 잃은 여진족이 반격하는 한편으로 還附를 애걸하여 와서 얼마 뒤에 이 지역을 되돌려주고 말았다. 이후 더욱 세력이 강해진 금은 고려에 君臣關係를 강요하여 왔고, 이를 용인함으로써(仁宗 4년, 1126) 두 나라 사이에 더 이상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武臣執權期인 高宗 18년(1231)부터 몽고족의 침략을 받아 한층 커다란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전쟁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그 나름으로 항쟁을 이어 갔지만, 특히 육지에 남은 일반 백성들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山城과 海島로 入保하여 줄기차게 저항을 하였다.³⁶⁾ 이 같은 항쟁에 유례없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몽고도 어찌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려의 상하가 겪는 고초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고, 국토도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져 갔다. 이에 고려 조정은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거나와, 이때부터는 저들의 내정간섭을 받아 시련은 계속되었다. 몽고의 일본 원정에 동원된 것이나, 雙城總管府의 설치 등으로 인한 영토의 할양, 立省策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인데,³⁷⁾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34) 김상기, 〈여진관계의 시말과 윤관(尹瓘)의 북정〉(《국사상의 제문제》 4, 1959 : 《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1974).

35) 金九鎮, 〈公嶮嶺과 先春嶺碑〉(《白山學報》 21, 1976).

方東仁, 〈尹瓘九城再考〉(《白山學報》 21, 1976 :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36) 姜晉哲, 〈蒙古의 侵入에 對한 抗爭〉(《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 《韓國社會의 歷史像》, 一志社, 1992).

金潤坤, 〈抗蒙戰에 參與한 草賊에 對하여〉(《東洋文化》 19, 1979).

尹龍琳,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歷史教育》 32, 1982).

——, 《高麗對蒙抗爭史研究》(一志社, 1991).

37) 方東仁, 〈雙城總管府考〉(《關東史學》 1, 1982 :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金惠苑, 〈忠烈王 入元行績의 性格〉(《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張東翼, 〈元의 政治의 干涉과 高麗政府의 對應〉(《歷史教育論集》 17, 1992 :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1994).

위기에 처하여서는 역시 고려의 상하가 단결하여 역경을 헤쳐나갔다.

여말인 恭愍王 때에 고려는 元末의 혼란을 틈타 일어난 漢族의 流賊인 紅巾賊의 침입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서는 일본의 구도 집단인 왜구의 창궐로 인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³⁸⁾ 고려는 이때에도 무력을 동원하여 저들을 진압하고 있거니와, 이와 같이 고려의 역사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빈번하게 외교교섭을 벌이고, 또 자주 전쟁을 치르면서 발전하여 간 그런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2) 경제적 특성

(1) 민전과 공전·사전

고려시대에 있어서 주업은 농업이었다. 농경이 당시의 기본적인 생산형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토지문제는 사회질서와도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먼저 토지 지배관계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면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은 民田이었다. 이 민전은 백성들이 조상대대로 전래하여 오는, 명칭 그대로 人‘民’의 ‘田’으로서 그들의 사유지를 말하는 데, 대부분은 白丁으로 알려진 농민들이 소유주이었으나 양반과 서리·향리는 말할 것 없고 노비층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확물의 일부를 국가에 租稅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民產의 근본이 되는 토지였을 뿐더러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國用과 祿俸의 재원도 거기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민전의 경영은 대체적으로 영세 농민에 의한 自家經營의 형태를 취했던

38) 李鉉淙, 〈倭寇와 倭寇政策〉(《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韓國研究院, 1964).

孫弘烈, 〈高麗末期의 倭寇〉(《史學志》 9, 1975).

羅鍾宇, 〈高麗 末期의 麗·日關係—倭寇를 中心으로—〉(《全北史學》 4, 1980 :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圓光出版社, 1996).

金琪燮,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韓國民族文化》 9, 1997).

것 같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家族勞動力에 의지하여 자기의 소규모 토지를 경작해 생활을 꾸려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반과 토호들처럼 많은 민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는 그 경영 형태가 이와 좀 달랐으리라 예상된다. 이들의 토지는 노비노동에 의한 경작이나 傭作 등도 의당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소작을 주어 경작시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³⁹⁾ 이럴 때는 규정대로 수확의 50%를 소작료로 받았다고 생각된다.

민전은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토지였다. 이 점은 물론 수취와 관련이 깊은 것이었겠지만 民田主가 그 토지의 주인으로서 토지대장인 量案에 명시되고, 그리하여 각자의 소유권이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았던 것이다. 민전은 이와 같이 사적소유지였으므로 그에 대한 매매나 증여·상속 등 권리처분권도 소유주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었다.⁴⁰⁾

지금 민전은 각 개인의 소유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私田의 범주에 속하는 토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에 대칭되는 국유지나 관유지도 있었다. 그런 토지들로는 公廩田·屯田·學田·籍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공전이었다. 이처럼 토지의 공·사전은 소유권에 의하여 구분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토지는 收租權의 귀속에 의해서도 공·사전으로 구분되었다. 위에서 民田租는 국고에 수납되어 국용이나 녹봉에 충당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전은 公田이었다. 이에 비해 개인에게 수조되는 兩班田 등은 사전이었다. 이것을 다시 내용별로 정리하면 국유지와 국고수조지는 공전인데 대해 사유지와 사인수조지는 사전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⁴¹⁾ 그

39) 姜晋哲, 〈高麗時代の 農業經營形態—田柴科體制下の 公田의 경우—〉(《韓國史研究》 12, 1976 :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安秉佑, 〈高麗時期 民田의 經營〉(《韓國 古代·中世의 支配體制와 農民》, 지식산업사, 1997).

40) 有井智德, 〈高麗朝における民田の所有關係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 8, 1971 : 《高麗李朝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85).

41) 李成茂, 〈公田·私田·民田의 概念—高麗·朝鮮初期를 中心으로—〉(《朝鮮初期兩班研究》, 一潮閣, 1980 : 《韓祐勳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91).

姜晋哲, 〈私田支配의 諸類型〉(《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런데 민전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공전도 되고, 사전도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토지였던 것이다.⁴²⁾

종래 이들 공전·사전의 구분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었던 또 하나는 差率收租의 문제였다. 널리 알려진대로 고려 때의 토지에 대한 收取率로는 1/10조와 1/4조, 그리고 1/2조의 3종류가 기록에 보이고 있다. 처음의 연구자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1/10조는 태조 당시의 실정을 도외시한 신병성이 적은 사료라 하여 버리고 대략 공전에서는 1/4조, 그리고 사전에서는 1/2조를 수취하는 제도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때의 1/4(25%) 공전조는 地稅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데 반해 1/2(50%) 사전조는 地代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공전과 사전 사이에 倍額이나 되는 차율수조가 생겨나게 된 배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었다.⁴³⁾

한데 그 뒤에 1/10조는 고려 때 실제로 민전에 적용되던 수취율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취한 논자들은 성종 11년에 정해진 1/4공전조도 국유지를 소작주었을 경우의 지대로 파악하고 있다.⁴⁴⁾ 이어서 1/4공전조가 적용되던 토지는 국·공유지 가운데 일부에 한정되었다는 의견⁴⁵⁾ 등도 나와 있지만, 현재는 이들 새로운 견해에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유지(사전)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소작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대로 二分取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종래의 주장과 다른

42) 李成茂, 위의 글.

尹漢宅, 〈私田과 田丁〉(《高麗前期 私田 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院, 1995).

43) 姜晉哲, 〈高麗前期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率收租에 대하여—高麗 稅役制度의 一側面—〉(《歷史學報》29, 1965).

旗田 巍, 〈高麗의 公田〉(《史學雜誌》77-4, 1968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44) 李成茂, 앞의 글.

金容燮, 〈高麗前期의 田品制〉(《韓沽昐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金泰永, 〈科田法上の 踏驗損實과 收租〉(《經濟史學》5, 1981 :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研究》, 知識産業社, 1983).

45) 安秉佑, 〈高麗의 屯田에 관한 一考察〉(《韓國史論》10, 1984).

——, 〈高麗前期 地方官衙의 設置와 運營〉(《李載堧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한울, 1990).

박종진, 〈조세제도의 구조〉(《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출판부, 2000).

것이 없다.

다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토지국유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종래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동양의 여러 나라가 대개 그러했던 것처럼 전국의 토지가 ‘公田制’ 위에 성립되어 모든 토지는 국가의 公有에 귀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오랜동안 유력시되어 왔었다. 이것은 “넓은 하늘 아래에 王土 아닌 것이 없다”(《詩經》, 小雅 北山)는 전통적인 王土思想의 관념에서 영향받은 바도 없지 않았으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의 토지제도에 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저술을 낸 和田一郎의 公田制=土地國有制 이론과 唯物史觀이 말하는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의 私的 土地所有의 결여’라는 命題였는데,⁴⁶⁾ 그러나 지금은 대체적으로 잘못된 이해였다고 보고들 있다.

원래부터가 그들 주장에는 불순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여러 방면에서 비판이 가해져 왔었지만,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사전은 田租의 귀속문제와 함께 토지 그 자체가 사유지적 성격이 농후하다는 의미도 지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⁴⁷⁾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兩班永業田으로서의 功蔭田柴와 직역의 세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향리·군인의 영업전과 같은 사유지적 성격의 토지가 존재하였다는 실증과⁴⁸⁾ 더불어 공전 또한 국가의 직영지뿐 아니라 단순한 국고수조지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⁴⁹⁾ 종래의 이해방식은 수정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토지국유제론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민전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더욱 본격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성들의 사적 소유지로서 매매 처분과 증여·상속이 자유로운 토지였던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왕토사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있게 되었다. 사유지의 경우 비록 왕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유로이 처분할

46) 姜晋哲, <「土地國有制說」의 問題>(《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47) 姜晋哲, 앞의 글(1965).

48) 李佑成, <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49) 旗田巍, 앞의 글(1951).

수 없었던 기록 등으로 미루어 동양의 전통적인 왕토사상은 관념적인 산물이었을 뿐 현실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⁵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고려 때의 각종 토지는 소유권이나 수조권의 귀속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분류되었으며, 그것에 의해 수조율에도 차등을 두는 제도였다. 한테 그들 토지 가운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은 백성들의 사유지로서 1/10조의 수취율을 적용받았다고 생각되는 민전이었다. 이것은 민산의 근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지탱해주는 토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기반 위의 토지 지배관계를 한때는 토지구유제로 파악하려는 논의도 있었으나 그것은 옳지 못한 이해였다.

(2) 전시과제도와 농장

고려시대의 관리들은 국가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와 현물을 이증으로 받았다. 그 전자의 제도가 田柴科였으며, 후자가 祿俸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전시과는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는 문무양반이나 직역을 부담하는 서리·군인 등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응분의 田地와 柴地를 나누어준 제도를 말하는데, 景宗 원년(976)에 처음 제정된 이래[始定田柴科] 큰 것만 하여도 穆宗 원년(998)의 개정을 거쳐[改定田柴科] 문종 30년(1076)에 다시 고쳐지는[更定田柴科] 등 몇 차례의 변천이 있었다. 그 마지막의 제도를 볼 것 같으면 전체 대상자를 18科等으로 분류하고, 최고의 과등인 제1과는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하는데, 그 해당자는 中書令·尙書令·門下侍中이었으며, 이하 차례로 내려가 군인·서리 등은 제15과 이하에 소속하였고, 전지 17결만을 받는 최하의 제18과에는 閑人·雜類가 배치되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전시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제도를 의미했지만,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무산계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武散階田柴科와 관아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규정인 公廩田柴科 등 別定の 몇몇 종류가 더 있었다.

50) 李佑成, 〈新羅時代の 王土思想과 公田—大崇福寺碑 및 鳳巖寺 智證碑의 一考—〉(《趙明基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中央圖書出版社, 1965;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이들 전시과에서 분급한 토지에는 방금 설명했듯이 전지와 함께 시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지만 지급한 조선의 科田法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과전법에서 지급한 토지는 畿內에 한정되었던 데 비해 전시과의 그것은 《高麗圖經》에 명시되어 있듯이 外州, 즉 지방에 산재해 있어서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시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兩班科田 등이 어떤 성격의 토지로 지급되었으며, 또 그 지급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다. 이 문제에 있어 대략 이른 시기의 연구자들은 羅末麗初에 각 지방의 호족들이 지배하던 토지를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회수하였다가 전시과가 창설될 때에 그것을 새로이 분급해준 것이라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 지급도 토지 자체가 아니라 收租權을 준 것이며, 그리하여 당해 양반과전의 경작·생산을 감독하고 租를 수취하여 서울로 수송하는 일 등이 지방행정관인 수령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하였다.⁵¹⁾

그러나 이 의견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전시과의 과전도 조선에서처럼 민전 위에 설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때 그 토지는 수급자 자신이 마련해야 했으며, 그리하여 지급의 내용도 대체적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免租權을 주는 것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토지는 자연이 자가경영의 형식을 취하게 마련이었다는 것이다.⁵²⁾ 이 문제는 고려사회의 역사적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의 하나인데, 앞으로 좀더 많이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말로 마무리지어 둔다.

다음 녹봉은 대우 내지는 보수로 현물인 미곡 등을 급여하는 것이라 하거니와, 문종 30년(1076)에 정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① 妃主祿 ② 宗室祿 ③ 文武班祿 ④ 權務官祿 ⑤ 東宮官祿 ⑥ 西京官祿 ⑦ 外官祿 ⑧ 雜別賜 ⑨ 諸衙

51) 姜晉哲, 〈私田支配의 諸類型—兩班田〉(《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다만 이 논의에서도 군인전은 그들의 토지, 즉 민전 위에 설정되었다고 보고 있다.

52) 浜中昇, 〈高麗田柴科の一考察〉(《東洋學報》63-1·2, 1981: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法政大學出版局, 1986).

金琪燮, 〈高麗前期 農民의 土地所有와 田柴科의 性格〉(《韓國史論》17, 1987).

朴國相, 〈高麗時代의 土地分給과 田品〉(《韓國史論》18, 1988).

門工匠別賜의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문무백관을 비롯한 后妃·宗室과 胥吏·工匠 등 체계층에 녹봉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중 祿制의 중심을 이루었던 文武班祿을 보면 제1과 400石을 받는 중서령·상서영·문하시중으로부터 제47과 7석을 받는 國學學正·國學學錄·都染丞 등에 이르기까지 47과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과등은 仁宗(1122~1146) 때의 更定時에 28과등으로 조정이 되지만 전시과의 18과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세분된 것이다. 그것은 아마 품계상의 차등뿐 아니라 동일 품계의 관직 사이에도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던 데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닌가 짐작된다.⁵³⁾

이 같은 체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나 12세기 초엽에 이르러 동요의 양상을 보이더니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1170년)부터는 아예 파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간에 야기된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전시과체제의 모순이 표면화된 데다가 사회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종래의 질서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형성된 사적인 대토지지배의 특수한 형태를 우리들은 農莊(農場·農庄)이라 부르고 있다. 당시의 권세가들과 심지어는 사원까지도 개간이나 買得·賜牌 등의 합법적 방법뿐 아니라 奪占·高利貸·寄進·投托 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민전을 비롯한 각종 토지를 겸병하여 갔으며, 이렇게 하여 집적된 대규모의 땅을 농장으로 경영하였던 것이다. 이들 농장은 소유권에 입각한 것과 수조권에 의거한 것 등 두 종류가 있었는데, 현재 소유지형 농장이 일반적이었다는 주장과⁵⁴⁾ 그 보다는 수조지 집적형 농장이 우세했다는 견해로⁵⁵⁾ 나뉘어 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 농장은 다 같이 노비를 사역

53) 崔貞煥, 〈高麗 祿俸制의 運營實態와 그 性格〉(《慶北史學》 2, 1980 : 《高麗·朝鮮時代 祿俸制研究》, 慶北大出版部, 1991).

李鎮漢, 〈高麗時代 叅上·叅外職과 祿俸〉(《韓國史研究》 99·100, 1997 : 《고려전기 官職과 祿俸의 관계 연구》, 一志社, 1999).

54) 姜晉哲, 〈高麗의 農莊에 대한 一研究—民田의 奪占에 의하여 형성된 權力型農莊의 實體追求—〉(《史叢》 24, 1980 : 《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一潮閣, 1989).

55) 李景植, 〈高麗末期의 私田問題〉(《東方學志》 40, 1983 : 《朝鮮前期土地制度研究》, 一潮閣, 1986).

위은숙, 〈사적 대토지소유와 경영형태〉(《高麗後期 農業經濟研究》, 해안,

시켜 경작하는 直營制經營과 處干으로 불리는 佃戶에게 경작케 하는 佃戶制經營을 취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농장주는 그들대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치 않았고 거기에 招集된 전호들 역시 공민으로서의 부담을 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같았다.

이에 나라의 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분급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녹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在地地主들과는 달리 주로 開京에 거주하는 不在地主로서 권세가이기도 했던 농장주들은 그에 크게 구애될 바가 없었으나 특히 신진의 관리들에게 있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元宗 12년(1271)에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祿科田이라 하여 경기 일원의 墾地를 나누어주지만,⁵⁶⁾ 이 제도조차 어지러워졌을 뿐더러 또 그것이 국가 재정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도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제기된 바 고려 말기 가장 큰 쟁점의 하나였던 ‘私田’革罷 문제는 바로 이 농장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왕조로서는 끝내 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전시과제도와 녹봉은 고려 나뭇의 실정이 반영된 보수체계였다. 이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와 백성들에게 많은 폐단을 끼친 농장이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고려왕조는 그와 운명을 같이하였다.

(3) 상공업의 실태

고려 때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으므로 상공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편이었다. 아직 고려는 자연경제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교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업은 크게 국내상업과 대외무역으로 나뉘며, 국내상업

1998).

56) 深谷敏鐵, 〈高麗祿科田考〉(《朝鮮學報》 48, 1968).

閔賢九, 〈高麗의 祿科田〉(《歷史學報》 53 · 54, 1972).

은 다시 도시상업과 지방상업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도시상업은 역시 개경의 市廛이 큰 축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高麗史》에 의하면 이 개경의 시전은 이미 태조 2년(919)에 설치되었다고 전하거니와, 그 뒤 12세기 초엽에는 그들의 北廊 건물 65칸이 불탔다는 기록이 보이며, 또 《高麗圖經》에도 시전들이 廣化門 거리에 長廊을 이루고 있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이와 같이 개경의 시전들은 중요 거리에 장란을 이루고 있으면서 언제나 교역을 하던 상설집포였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도시인들의 생활품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주로 관수품을 조달하고 국고의 잉여품을 처분하는 어용상점의 기능을 했다고 짐작된다.⁵⁷⁾ 개경의 이 같은 상황에 비해 고려의 제2 도시였던 西京만 하여도 상업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방상업은 비상설적인 場市가 중심이었다. 즉 교통의 요지에 장시가 서서 주변의 1일 왕복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 米·布로써 화폐를 삼아 물물을 교환하는 형태의 상업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시가 며칠에 한 번씩 열렸으며 또 전국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지방에는 이밖에 육로를 따라 장사하는 陸商과, 강이나 바다를 따라 배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船商 등⁵⁸⁾ 行商들도 있었다.

고려 때의 상업상 하나 더 특기할 사항은 사원이 이 방면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원은 물론 종교의 道場이었지만, 여기서는 미곡 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우수한 수공업품도 제조되어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원의 상행위는 寺院經濟에 큰 보탬이 되기는 했으나 반면에 많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⁵⁹⁾

대외무역은 宋을 비롯하여 遼·金·日本 등 주변 각국들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졌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하게 교역을 한 나라는 송이었거니와, 공

57) 姜萬吉, 〈商業과 對外貿易〉(《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5).

金東哲,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釜大史學》 9, 1985).

朴平植, 〈高麗時期的 開京市廛〉(《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2000).

58)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 중세—》(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59) 李載昌, 《高麗寺院經濟의 研究》(亞細亞文化社, 1976).

李相瑄, 〈高麗寺院經濟에 대한 考察〉(《崇實史學》 1, 1983 : 《高麗時代 寺院의 社會經濟研究》, 誠信女大出版部, 1998).

식적인 조공무역 이외에 사무역도 번성하였다.⁶⁰⁾ 그러나 요·금의 경우 使行貿易이 행해지고 互市場인 榷場이 설치되기도 했지만 양국과는 전쟁 등의 긴장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교역도 그만큼 한계성을 지니게 마련이었으며,⁶¹⁾ 일본과도 정식적인 국교가 없었으므로 주로 민간상인들이 내항하여 방물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아 가는 정도였다.⁶²⁾ 그런 일면에 大食國, 즉 아라비아 상인들이 송나라의 고려 무역에 힘입어 진출하여 온 것은 한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 상업과 떼어 수 없는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화폐 문제가 있다. 고려 때 사용된 화폐로는 물품화폐와 금속화폐가 있었는데, 그 중 전자로 이용된 것은 布와 米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보다 널리 사용된 것은 布貨였거니와, 그것으로 기능한 포는 주로 질이 나쁜 마포인 麤布였다가 뒤에는 5綜布(5升布)로 바뀌었다.

금속화폐로는 성종 15년에 주조하여 쓰도록 한 鐵錢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얼마 뒤에는 숙종이 海東通寶 등을 주조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⁶³⁾ 또 銀 1근으로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본 딴 銀瓶 등도 만들어 통용토록 하였다.⁶⁴⁾ 그러나 실물경제에 치중되어 있던 고려에서 비록 도시의 경우 어느 정도 활발하게 금속화폐가 유통되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다음은 수공업에 대해서인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관청수공업이었다. 그러한 관부로는 繕工寺(將作監)·軍器寺(軍器監)·掌服署(尙衣局) 등이 있었거니와, 여기에는 해당 기술자인 工匠들이 전속되어

60) 金庠基, <麗宋貿易小考>(《震檀學報》7, 1937:《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羅鍾宇, <高麗時代의 對宋關係>(《圓光史學》3, 1984).

61) 李龍範, <麗丹貿易考>(《東國史學》3, 1955).

62) 羅鍾宇, <高麗前期의 麗·日貿易>(《圓光史學》1, 1981).

63) 金柄夏, <高麗朝의 金屬貨幣 流通과 그 視角>(《東洋學》5, 1975).

金光植, <高麗 肅宗代의 王權과 寺院勢力-鑄錢政策의 背景을 중심으로->(《白山學報》36, 1989).

64) 이경록, <高麗前期 銀幣制度의 成立과 그 性格>(《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해안, 2000).

김도연, <高麗時代 銀貨유통에 관한 一研究>(《韓國史學報》10, 2001).

정부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해 조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관청수공업으로는 각 도에서 운영하던 금기방·잡직방·갑방 등이 있었지만, 그 수나 규모는 중앙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⁶⁵⁾

所는 金所·銀所·銅所·鐵所·紙所·瓦所·炭所·瓷器所·魚梁所 등의 예에서 보듯이 특정의 물품을 만드는 특수행정집단이었다. 그러므로 所手工業의 생산활동은 역시 전업적이었는데, 그들 물품은 주로 공납품으로 충당되었다.⁶⁶⁾

국가에 전속되지 않은 工匠들도 그들에 대한 일종의 호적이라 볼 수 있는 工匠案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공사에 징발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役만 부담하고 나면 자유로이 급료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여 주거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 생계를 꾸려간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이러한 민간수공업 가운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에 의한 생산은 자가수요를 위한 衣料나 관부에 납부하기 위한 布物類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고려 때의 상업과 수공업은 대략 이상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다.

3) 사회적 특성

(1) 신분구조와 그 성격

전근대 국가가 대개 그러하였듯이 고려도 신분제 사회였다. 신분이란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구성원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단위의 하나로, 그 지위는

65) 姜萬吉, 〈手工業〉(《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5).

홍희유, 〈10~14세기(고려시기)의 수공업〉(《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부, 1978 : 지양사, 1989).

66) 徐明禧, 〈高麗時代 ‘鐵所’에 대한 연구〉(《韓國史研究》 69, 1990).

田炳武, 〈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韓國史研究》 78, 1992).

李貞信, 〈高麗時代의 漁業 實態와 魚梁所〉(《韓國史學報》 3·4, 1998).

67) 洪承基, 〈高麗時代의 工匠〉(《震檀學報》 40, 1975 : 《高麗社會史研究》, 一潮閣, 2001).

徐聖鎬, 〈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韓國史論》 27, 1992).

혈통에 따라서 세습되는 사회적 권리·특권과 의무·제약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신분층은 보다 많은 권리와 특권을 누렸던 반면에 어떤 신분층은 보다 많은 의무를 지고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니와, 그것은 곧 각 신분계층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연결되게 마련이었고, 고려에서는 그것이 役으로 표현되었다.⁶⁸⁾

종래 이 같은 정연한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략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신분계층을 크게 지배신분층과 피지배신분층으로 나누고, 거기에 다시 각각 2개씩의 신분층이 있어, 전자에는 양반·귀족과 중류층이, 그리고 후자에 양민과 천민이 소속했던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이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배신분층	① 양반과 귀족 … 文·武의 品官과 귀족	良身分層
	② 중류층 … 서리·향리·남반·하급장교	
피지배신분층	③ 일반 양민 … 白丁農民·수공업자·상인 하층 양민 … 鄉·所·部曲·莊·處民	賤身分層
	④ 천민 … 공노비·사노비	

한데 근자에 고려의 신분구조를 이와는 좀 달리 범제상 良身分과 賤身分의 두 계층으로만 나뉘어져 있었다고 보려는 양천제 이론이 제기되었다.⁶⁹⁾ 그에 따른 신분층의 분류는 위의 도표에 곁들인 바와 같은데, 보다시피 여기에서 종래의 이해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양반·귀족과 양민과를 동일한 양신분층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즉, 이 같은 입장에서는 우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良·賤 곧 賤人과

68) 洪承基, <(고려의)신분제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高麗社會史研究》, 一潮閣, 2001).

69) 許興植, <高麗時代의 身分構造>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洪承基, <高麗時代의 良人 : 士庶制·良賤制의 시행과 관련하여> (《學術研究論文集》, 養英會, 1994 : 《高麗社會史研究》, 一潮閣, 2001).

金蘭玉, <高麗時代 良人·賤人의 용례와 良賤制> (《韓國史學報》 제2호, 1997 : 《高麗時代 賤事·賤役良人 研究》, 신서원, 2000).

非賤人(良民)으로 나누는 것은 전근대사회에서는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구분법이기에 때문에 사회계층론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 비판하고, 또 양반·귀족과 양민은 士·庶로도 표현되듯이 상호 대칭되는 신분층으로 이들간의 상하·귀천의 질서는 양천의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⁷⁰⁾

이 부분을 役體制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양반·귀족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했던 仕宦權의 여부가 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가장 보편적인 방도의 하나였던 赴舉權이 양민에게도 주어졌는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없지 않으나 과거에서 가장 중시됐던 製述科에 양민은 응시자격이 없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⁷¹⁾ 그렇다고 한다면 양반·귀족과 양민을 동일한 범주의 신분층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양민들도 明經科나 雜科에의 응시는 가능하였고, 또 군인직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⁷²⁾ 그런가 하면 胥吏나 鄉吏 등에게는 과거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도 했으므로 이 문제 역시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양반과 귀족도 이와 좀 차원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많이 논의되어 온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귀족의 범위에 관해서였는데, 종래 그들은 문·무양반, 곧 品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⁷³⁾ 근자에는 거기에다 南班을 포함시키는 견해까지 제시되었다.⁷⁴⁾

70) 宋俊浩, 〈朝鮮兩班考—朝鮮朝社會의 階級構造에 관한 한 試論—〉(《韓國史學》 4, 1983).

金蘭玉, 〈高麗時代 士庶의 用例와 신분적 의미〉(《史叢》 46, 1997 : 《高麗時代 賤事·賤役良人 研究》, 신서원, 2000).

71) 許興植, 〈高麗科擧制度의 檢討〉(《韓國史研究》 10, 1974 :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李基白, 〈科擧制와 支配勢力〉(《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朴龍雲, 〈高麗時代의 科擧—製述科의 應試資格〉(《高麗時代 蔭絃制와 科擧制研究》, 一志社, 1990).

72) 李基白, 〈高麗社會에서의 身分의 世襲과 變動〉(《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73) 白南雲, 〈貴族群〉(《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 改造社, 1937).

아울러 蔭敍와 같은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류였는가의 여부에 기준을 두어 귀족을 관품 5품 이상관에 한정시키자는 주장이 나왔고,⁷⁵⁾ 이에 대해 귀족신분을 다루면서 官品에서 기준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설령 관품에 두더라도 “5품이라는 기준선은 귀족의 평가기준으로는 너무 낮다”는 의견⁷⁶⁾ 역시 제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귀족적 존재는 인정되나 고려를 귀족사회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⁷⁷⁾ 그리하여 귀족사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양반사회로 규정하는 게 더 좋겠다는 주장마저도 제기되어 있는 것이다.⁷⁸⁾

다음 양민에 있어서는 향·소·부곡민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 이들은 집단천민으로 파악하였었는데, 점차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지금은 부곡민 등이 일반 군현민에 비해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존재였으나 신분만은 양민이었다는 쪽으로 대략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방의 통치조직을 살필 때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재론치 않도록 하겠다.

공·사노비 등 천민에 대해서도 그들의 성격과 사회경제적 지위·역할 등에 걸쳐 커다란 연구의 진척이 있었다.⁷⁹⁾ 고려 때의 노비는 ‘一賤則賤’의 원칙에 따라 良賤交婚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생은 모두 천인이 되었고, ‘賤者隨母法’에 의거하여 어머니 쪽 소유주에 귀속하였는데, 이들은 다른 왕조

74) 洪承基, 앞의 글(1995).

75) 朴龍雲, 〈高麗 家産官僚制說과 貴族制說에 대한 檢討〉(《史叢》 21·22 합집, 1977 : 《高麗時代 臺諫制度 研究》, 一志社, 1981).

——, 〈高麗는 貴族社會임을 다시 논함〉(上)·(下)(《韓國學報》 93·94, 1998·1999).

76) 金龍善, 〈高麗 貴族社會 成立論〉(《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 〈高麗門閥의 構成要件과 家系〉(《韓國史研究》 93, 1996).

77) 劉承源, 〈고려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역사비평》 36, 1997).

78) 金塘澤, 〈高麗 兩班社會와 한국사의 時代區分〉(《歷史學報》 166, 2000).

79) 洪承基, 〈高麗時代 私奴婢의 法制上 地位〉(《韓國學報》 12, 1978 :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 〈高麗時代 公奴婢의 性格〉(《歷史學報》 80, 1978 : 위의 책).

——, 〈高麗時代 奴婢와 土地耕作〉(《韓國學報》 14, 1979 : 위의 책).

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개인에게 얹매어 지내면서 재물의 취급을 받는 부자유민이었다.

고려사회에서 새로이 양반층이 형성되고 향리·서리 등 중류층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았으며,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향·소·부곡민 등 하층 양민의 광범한 존재 등이 신분구조상의 한 특징이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보통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귀족층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각 신분층, 특히 노비층은 자기가 속한 신분을 원칙적으로 세습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 일반 양민에게는 중류층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중류층에게는 양반·귀족으로 신분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었다. 고려에서는 이 중 신분의 이동과 상승의 억제·방지에 중점을 두면서도 상반되는 두 원칙이 균형과 조화를 잡아가는 바탕 위에서 신분제를 운영하였던 것이다.⁸⁰⁾

(2) 가족·친족과 여성

고려 때의 가족제도를 살펴함에 있어서는 《고려사》 등에 전해지는 단편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몇몇 호적이나 호구단자·准戶口 등은 주로 후·말기의 것들이다.⁸¹⁾ 그러므로 고려 전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조심스런 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는데, 그러나 가족제도의 경우 두 시기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지금의 연구자들도 호구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의하면 우선 가족의 유형으로는 소가족도 있고 대가족 내지 중가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혹자는 고려 때 가족의 기본형태가 소가족이었다고 보기도 하고,⁸²⁾ 혹자는 대가족 내지 중가족 형태가 많았다고 보고도 있

80) 洪承基, 앞의 글(1995).

81)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81).

吳英善, 〈高麗末 朝鮮初 戶口資料의 形式 分類〉(《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 서울대출판부, 2000).

는⁸³⁾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견해차는 자료의 해석과도 관계가 있다. 소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족에 이미 혼인했음직한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대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료 역시 소가족들을 하나의 戶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 사회 전반의 문제와 관련시켜 천착함으로써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데 우리들은 이들 가족 구성에서 특히 조선시대와 견주었을 때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여성이 호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녀가 여럿인 경우 딸이 아들보다 나이가 위면 딸부터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혼인한 딸이 친정 부모와 한 가족을 구성하는, 바꾸어 말하면 사위가 장인·장모와 가족을 구성하여 모시는 率嬭家族이 흔히 보인다는 것 역시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 후자는 “男歸女家”·“嬭留婦家” 등으로 표현된 혼인의 습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마는, 어떻든 고려 때는 가족 가운데에서 여자의 지위와 역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⁸⁴⁾

가족의 형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혼인이 한 중요 계기가 되거니와, 고려시대의 그 연령은 개인에 따라 차별이 컸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는 16~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였던 듯하다.⁸⁵⁾ 그리하여 이들은 대개 一夫一妻制에 입각한 가정생활을 영위했던 것 같다. 기사 가운데는 多妻의 습속이 있었

82) 李佑成, 〈高麗時代의 家族—친족집단·사회편제 문제와의 관련에서—〉(《東洋學》5, 1975: 《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2).

崔弘基, 〈高麗時代의 戶籍制〉(《韓國 戶籍制度史 研究》, 서울대출판부, 1975).

盧明鎬, 〈가족제도〉(《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83) 許興植, 〈國寶戶籍으로 본 高麗末의 社會構造〉(《韓國史研究》16, 1977: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84) 崔在錫, 〈高麗後期家族의 類型과 構成—國寶 131號 高麗後期 戶籍文書 分析에 의한 接近—〉(《韓國學報》3, 1976: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金銀坡, 〈高麗時代 法制上 및 社會通念上에서의 女子의 地位〉(《全北史學》3, 1979).

85) 崔淑卿, 〈高麗時代의 女性〉(《韓國女性史》1, 梨大出版部, 1972).

許興植, 〈高麗時代의 家族構造〉(《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崔在錫, 〈高麗時代의 婚姻制度〉(《高麗大 人文論集》27, 1982: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金龍善, 〈고려 귀족의 결혼·출산과 수명〉(《韓國史研究》103, 1998).

던 듯한 서술도 보여 이를 긍정적인 논자도 있으나⁸⁶⁾ 그것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서 원칙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음이 재확인되고 있다.⁸⁷⁾ 이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 고려시대의 여성들은 남편과 사별하였을 경우 再嫁도 자유로웠다.

近親婚 내지 同姓婚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후대와는 다른 고려 때 혼인 풍습의 하나였다. 왕실에서 극도의 근친혼을⁸⁸⁾ 했다 함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거니와, 양반·귀족층에서도 이와 유사한 혼인이 성행했던 것이다. 内外 4촌간이나 6촌간에 혼인을 하지 말라는 禁습이 자주 내려지는 것으로 미루어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금지 조항은 주로 양반층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 백성들은 혼인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던 것 같다. 당시의 혼인이 이와 같았으므로 동성혼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동성동본혼의 사례가 찾아지는 것도 같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⁸⁹⁾ 고려 때의 婚俗은 여러 모로 특징적인 면이 많았다고 하겠거니와, 여성이라 하여 불합리한 억압을 받는 일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지위가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은 재산의 상속에도 드러나 있다. 고려 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의 하나인 노비는 자녀에게 균분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으며,⁹⁰⁾ 민전과 같은 개인 소유지의 상속형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⁹¹⁾ 부모의 의지가 적힌 文契가 있거나 “田丁 連立”이 되던 군인전 등

86) 金斗憲, 〈婚姻〉(《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출판부, 1969).

87) 張炳仁, 〈高麗時代 婚姻制에 대한 재검토〉(《韓國史研究》 71, 1990).

88) 尹庚子, 〈高麗王室의 婚姻形態〉(《淑大史論》 3, 1968).

河炫綱,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梨大史苑》 7, 1968).

鄭容淑, 〈高麗初期 婚姻政策의 推移와 王室族內婚의 成立〉(《韓國學報》 37, 1984 : 《高麗時代의 后妃》, 民音社, 1992).

89) 許興植, 〈高麗時代의 親族構造〉(《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盧明鎬,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韓國史研究》 33, 1981).

崔在錫, 앞의 글(1982).

90) 旗田巍, 〈高麗時代における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子女均分相續〉(《東洋文化》 22, 1957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91) 崔在錫, 〈高麗朝에 있어서의 土地의 子女均分相續〉(《韓國史研究》 35, 1981 ;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李義權, 〈高麗의 財産相續形態에 관한 一考察〉(《韓國史研究》 41, 1983).

은 이와 상속의 형태가 좀 달랐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財産・家業은 子女에게 균분상속되었던 것이다.

고려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회였으므로 그것이 친족조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친족조직은 相避制나 5服制度 및 호적에 있어서의 世系推尋 범위 등을 통해 살필 수 있는데, 그 하나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관직 취임 등에서 서로 피해야 하는 범위를 규정한 상피제는⁹²⁾ 本族뿐 아니라 外族・妻族도 상당한 범위에 걸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아울러 주로 4祖戶口⁹³⁾과 8조호구식을 채택하고 있던 세계추심과⁹³⁾ 喪服을 입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 친족관계의 親疎를 5등급으로 나누어 나타내던 5복친제에서도⁹⁴⁾ 母側과 妻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연구자는 고려의 친족조직을 ‘兩側的 親屬’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거나⁹⁵⁾ 그에 따른 기능도 후대의 사회에서와는 여러모로 달랐음을 지적하고 있다.⁹⁶⁾ 고려의 가족제도 역시 남다른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4) 사상적 특성

(1) 불교와 유교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기능하였고, 도교와 풍수지리・도참사상 등도 유행하였다. 고려시대의 사상계는 이처럼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각 사상 사이에서, 혹은 하나의 사상 내에서도 종파간에 대립

92) 許興植, 앞의 글(1981).

金東洙, 〈高麗時代의 相避制〉(《歷史學報》102, 1984).

93) 白承鍾, 〈高麗 後期の ‘八祖戶口’〉(《韓國學報》34, 1984).

權奎奎, 〈高麗時代 限品制와 世系 推尋範圍〉(《한국중세사연구》창간호, 1994).

94) 盧明鎬, 앞의 글(1981).

95) 盧明鎬, 위의 글.

96) 盧明鎬, 〈高麗時代의 親族組織〉(《國史館論叢》3, 1989).

——, 앞의 글(1995).

과 융합, 또는 영향을 미치고 받으면서 공존하였던 것이다.

이들 중에서 사회에 끼친 영향이 한층 큰 것은 불교였으며 다음이 유교였다. 그 가운데 불교는 國初에 所依經典을 주로 하는 교종이 여전히 교세를 이어가는 한편으로 개인주의적인 坐禪을 표방하고 나선 선종이 호족과 연결을 가지면서 변성하여 양립하는 형세를 이루었다.⁹⁷⁾ 그러던 것이 광종조에 오면 왕권의 상대적인 안정과 더불어 교종이 선종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심이 된 종파는 華嚴宗이었으며 이를 지도한 승려는 均如였다.⁹⁸⁾ 이에 대하여 선종은 중국에서 새로이 도입된 法眼宗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거니와,⁹⁹⁾ 僧科가 설치되는 것도 바로 이때였다.¹⁰⁰⁾

그 뒤 문벌귀족사회가 형성되면서는 교종인 法相宗과 화엄종이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법상종은 국왕인 현종의 지원을 받은 위에 고려 최대의 문벌외척세력인 慶源李氏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변성하였고,¹⁰¹⁾ 화엄종은 왕자 출신인 義天이 나오면서 절정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이 天台宗을 開立하였다. 天台學은 이미 고려 초기부터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지마는,¹⁰²⁾ 의천의 노력에 의해 이제는 一宗으로 개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敎觀並修를 표방하고 새로운 불교혁신 운동을 펴면서 개창된 이 천태종은 이후 많은 승려들의 호응을 얻어 번창하게 되는데,¹⁰³⁾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의 입장에서 선을 흡수하는 입장

97)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史學研究》 25, 1975).

98) 金杜珍, 〈均如의 生涯와 著述〉(《歷史學報》 75·76 합집, 1977 : 《均如華嚴思想研究》, 韓國研究院, 1981).

——, 〈均如의 “性相融會” 思想〉(《歷史學報》 90, 1981 : 위의 책).

崔柄憲, 〈高麗時代 華嚴宗의 變遷—均如派와 義天派의 對立을 중심으로—〉(《韓國史研究》 30, 1980).

99) 金杜珍, 〈高麗 光宗代 法眼宗의 登場과 그 性格〉(《韓國史學》 4, 1983).

100) 許興植, 〈高麗時代의 僧科制度和 그 機能〉(《歷史教育》 19, 1976 : 《高麗科學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101)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韓沽昶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

102) 金哲堧, 〈高麗初의 天台學 研究—諦觀과 義通—〉(《東西文化》 2, 1968 :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1975).

103) 崔柄憲, 〈天台宗의 成立〉(《한국사》 6, 國史편찬위원회, 1975).

——, 앞의 글(1980).

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선종은 한층 더 위축을 면치 못하였다.

한편 유교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 역시 고려조로 접어들어 통일신라 때와는 크게 달라진 사회체제와 분위기 속에서 새 전기를 맞았다. 그리하여 벌써 태조 주변에서 여러 유학자들이 활동을 하며, 광종조의 과거제 실시는 발전의 한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종조(982~997)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유교의례가 마련되고¹⁰⁴⁾ 天人合一思想이 제자리를 잡는¹⁰⁵⁾ 등 유교는 고려의 정치이념으로서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후 유학은 崔冲의 활동과 더불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그는 致仕 후 文憲公徒라고 불린 私學을 연 것으로 유명하거니와, 이 九齋學堂에 불인 樂聖·大中 등의 명칭이나 六經·三史를 중심으로 하는 教科目으로 이루어 볼 때 그의 유학 수준은 이미 漢唐의 訓詁學에서 탈피하여 철학적 내용이 상당히 가미된 宋代 유학에 접근하여 있었다는 평가가¹⁰⁶⁾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던 유학은 예종·인종대에 이르러 국학의 정비와 경학에 대한 강론회의 개최,¹⁰⁷⁾ 유학관계 서적의 편찬 등이 활발해지면서 한층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오래지 않아 武臣亂이 폭발하여(1170)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학은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무신집권기에는 이처럼 유학이 위축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에 불교계의 교종도 탄압을 받은 반면 선종은 무인을 비롯한 상하의 호응을 얻어 커다란

洪庭植, 〈高麗天台宗 開立과 義天〉(《韓國佛教思想史》, 圓光大出版局, 1975).

許興植, 〈高麗前期 佛教界와 天台宗의 形成過程〉(《韓國學報》11, 1978 :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104) 李範稷, 〈《高麗史》禮志의 分析〉(《韓祐勅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 :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1991).

朴贊洙, 〈文廟享祀制의 成立과 變遷〉(《鄭在覺古稀記念 東洋學論叢》, 고려원, 1984).

105) 李熙德, 〈高麗時代의 天文觀과 儒敎主義의 政治理念〉(《韓國史研究》17, 1977 :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 一潮閣, 1984).

——, 〈高麗時代 五行說에 대한 研究—《高麗史》五行志를 中心으로—〉(《歷史學報》79, 1978 : 《高麗時代의 天文思想과 五行說 研究》, 一潮閣, 2000).

106) 尹絲淳, 〈朱子學以前の 性理學導入問題—崔冲의 9齋와도 관련하여—〉(《崔冲研究論叢》, 慶熙大 傳統文化研究所, 1984).

107) 權延雄, 〈高麗時代의 經筵〉(《慶北史學》6, 1983).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曹溪宗의 중흥이 바로 그것으로서, 거기에는 闍崛山門 출신의 선승인 普照國師 知訥(1158~1211)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많았다. 그는 定慧雙修와 頓悟漸修를 宗旨로 삼고¹⁰⁸⁾ 修禪社를 중심으로 하는 信仰結社運動을 전개하여¹⁰⁹⁾ 조계종을 부동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어서 제2세 社主인 慧謚 때에 이르러서는 崔瑀政權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더욱 번창하였다.¹¹⁰⁾

한데 결사운동은 天台宗에서도 전개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圓妙國師 了世(1163~1245)가 중심이 된 白蓮社結社가 그것인데, 天台止觀과 法華三昧懺・淨土往生을 표방한 그의 신앙운동은 특히 기층사회의 백성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¹¹¹⁾

신앙결사로 나타난 이 같은 불교계의 혁신운동은, 그러나 元의 간섭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수선사의 경우 가지산문 출신의 一然(1206~1289)이 나와 한동안 曹溪禪宗을 주도하였고,¹¹²⁾ 공민왕 때에는 太古和尚 普愚(1301~1382)와 懶翁和尚 慧勤(1320~1376) 등이 배출되어 많은 활동을 폈으나¹¹³⁾ 순수한 신앙결사운동 때와는 달리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어

-
- 108) 張元吉, 〈曹溪宗의 成立과 發展에 대한 考察〉(《佛教學報》1, 1963).
 李鍾益, 〈普照國師의 禪教觀〉(《佛教學報》9, 1972).
 宋天恩, 〈知訥의 禪思想〉(《韓國佛教思想史》, 圓光大出版局, 1975).
 吉熙星, 〈知訥 禪 사상의 구조〉(《知訥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109) 李智冠, 〈知訥의 定慧結社와 그 繼承〉(《韓國禪思想研究》, 東國大出版部, 1984).
 秦星圭, 〈高麗後期 修禪社의 結社運動〉(《韓國學報》36, 1984).
 崔柄憲, 〈修禪結社의 思想史的 意義〉(《普照思想》1, 1987).
 蔡尙植, 〈고려후기 修禪結社 성립의 사회적 기반〉(《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 110) 金塘澤, 〈高麗 崔氏武人政權과 修禪社〉(《歷史學研究》10, 1981: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社, 1987).
 秦星圭, 〈眞覺國師 慧謚의 修禪社 活動〉(《中央史論》5, 1987).
- 111) 高翊晉, 〈圓妙了世의 白蓮結社와 그 思想的 動機〉(《佛教學報》15, 1978).
 蔡尙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結社〉(《韓國史論》5, 1979).
- 112) 蔡尙植, 〈普覺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迦智山門의 登場과 관련하여—〉(《韓國史研究》26, 1979).
 ———, 〈高麗後期 佛教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歷史教育》35, 1984).
- 113) 金映遂, 〈曹溪禪宗에 대하여—五教兩宗의 一派, 朝鮮佛教의 根源—〉(《震檀學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 휩싸여 타락상을 드러내고 있던 당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백련사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층 심하여 附元勢力化하는 성향마저 보이면서 많은 폐단을 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⁴⁾ 이에 따라 불교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은 자연이 축소되게 마련이었고 마침내는 그의 존립조차 위협을 받게 되었다.¹¹⁵⁾

당시의 이 같은 불교에 대하여 도전한 세력은 性理學이었다. 朱子性理學은 南宋의 朱熹가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신유학으로, 理·氣를 바탕으로 한 우주론·인성론을 주로 하는 사상체계였는데, 이것이 원을 통해 安昞·白頤正 등에 의하여 忠烈~忠肅王代에 고려에도 전래, 수용되었다.¹¹⁶⁾ 한데 원의 성리학은 주자학 본래의 성격인 형이상학적·사변적 경향과는 좀 달리 실천 윤리를 강조하는 학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니와, 따라서 고려에 들어온 성리학 역시 의리론·명분론이 그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받아들인 사대부들은 불교 및 그와 연결되어 있던 권문·세족들을 배척하면서 儒佛交替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¹¹⁷⁾ 이 성리학이 그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조선에서의 일이다.

報》9, 1938).

韓基斗, 〈高麗後期の 禪思想〉(《韓國佛教思想史》, 圓光大出版局, 1975).

許興植, 〈中世 曹溪宗의 起源과 法統〉(《韓國中世佛教史研究》, 一潮閣, 1994).

114) 蔡尙植, 앞의 글(1979a).

秦星圭, 〈高麗後期の 願刹에 대하여〉(《歷史教育》36, 1984).

許興植, 〈僧政의 紊亂과 宗派問의 葛藤〉(《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115) 韓祐勗, 〈麗末鮮初의 佛教政策〉(《서울대 論文集》6, 1957).

許興植, 위의 글.

116) 尹啓均, 〈朱子學의 傳來とその影響に就いて〉(《尹文學士遺稿》, 朝鮮印刷株式會社, 1933).

文喆永, 〈麗末 新興士大夫들의 新儒學 수용과 그 특징〉(《韓國文化》3, 1982).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李齊賢을 中心으로—〉(《震檀學報》51, 1981).

都賢喆, 〈高麗後期 朱子學 受容과 朱子書 普及〉(《東方學志》77·78·79, 1993 :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一潮閣, 1999).

117) 邊東明, 《高麗後期 性理學受容研究》(一潮閣, 1995).

李源明, 《高麗時代 性理學受容研究》(國學資料院, 1997).

申千湜, 《高麗後期 性理學의 受容과 教育思想》(明知大出版部, 1998).

高惠玲, 《高麗後期 士大夫와 性理學 受容》(一潮閣, 2001).

(2) 도교와 풍수지리·도참사상

佛·儒가 논의되는 자리에는 으레 道가 따라 나오듯이 도교 역시 우리 나라에서 크게 유행된 사상체계의 하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것은 고대의 민간신앙과 神仙說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道家나 음양·오행의 이론 등이 가미되어 성립된 신앙으로 불로장생 및 현세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특히 고려에서는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의식과 관련하여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벌써 태조 7년(924)에 수도인 개경에다 醺星處의 하나인 九曜堂을 창건한 것에서 그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현종 3년(1012)에는 대궐 안의 毬庭에서 크게 醺祭가 행하여진 사례가 발견된다. 이후 계속하여 北斗醺·太一醺·星變祈禳醺·老人星祭 등의 각종 齋醺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¹¹⁸⁾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도교에 많은 관심을 가진 예종(1105~1122)이 즉위함에 미쳐 새 전기를 맞는다. 그는 왕 2년에 연경궁의 후원에 있는 옥축정에다 元始天尊像을 안치하고 月醺를 지내게 하고 있거니와, 얼마 뒤에는 道觀인 福源宮(福源觀)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다. 《高麗圖經》권 17·18의 福源觀 및 道教條에 의하면 그곳에 功行이 높은 道士 10여 명이 있어 일을 보았다 한다. 이렇게 도교의 총림격인 복원궁의 건립은 도교사상 매우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인데, 그 뒤에는 비슷한 도관인 神格殿이 설립되고, 또 祈恩色과 大醺色 및 祈恩都監·淨事色¹¹⁹⁾·大清觀 등의 여러 도교기관도 마련되어서¹²⁰⁾ 도교사상은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¹²¹⁾

하지만 이 같은 도교기관과 도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려들과 같은 강한 교단을 형성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도교의 비조직성에다가 고려 후·말기에 들어와 그도 불교와 함께 사대부들의 배척을 받음으

118) 李能和, 《朝鮮道教史》(東國大, 1955: 李鍾殷 역, 普成文化社, 1977).

119) 梁銀容, 〈高麗道敎의 淨事色考〉(《韓國宗敎》 7, 1982).

120) 梁銀容, 〈高麗時代의 道敎와 佛敎〉(《韓國宗敎》 8, 1983).

121) 車柱環, 〈高麗의 道敎思想〉(《韓國의 道敎思想》, 同和出版公社, 1984).

金澈雄, 〈高麗中期 道敎의 盛行과 그 性格〉(《史學志》 28, 1995).

로써 위축되기 시작하였다.¹²²⁾

한편 풍수지리와 도참사상도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한 사상체계이었음이 알려져 있다. 이중 풍수지리설은 산세·수세를 살펴 도읍·주택·농묘 등을 선정하는 일종의 相地學과 같은 것으로서, 그 선정한 지역의 衰旺·順逆에 따라 국가나 인간의 길흉과 화복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 羅末의 道說과 관련을 가지면서 널리 전파되어 각 지방의 호족들이 자기의 존재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으며,¹²³⁾ 태조 왕건 또한 그의 돈독한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같은 풍수지리설은 그후에도 줄곧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데, 더구나 여기에 도참사상이 결합되면서 그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圖讖이란 원래 徵候·前兆 또는 神託·占言 등의 뜻을 지닌 말로 그것은 장차 닥쳐올 길흉화복을 예언·암시 혹은 약속하는 신비적·미신적 성격이 농후한 사상 체계이었거니와,¹²⁴⁾ 이러한 관념이 풍수지리설과 결부되어 정치·사회 및 일 반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태조대 이후의 그와 같은 사례로는 우선 정종의 서경천도계획을 들 수 있다. 이는 개경의 정정에 불안을 느낀 정종이 서경(평양)은 명당이라는 풍수설을 이용하여 추진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후대인 인종조에 妙淸 일파가 일으킨 서경천도운동 역시 자기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면에 지리도참설을 내세우고 획책한 사건이었다.¹²⁵⁾ 그 외에 개경에 이어서 서경과 동경(慶州)·남경(楊州: 지금의 서울) 등 3경을 두는 것도 吉地說과 延基觀念에 따른 조치였으며, 三蘇宮을 경영한 것도¹²⁶⁾ 유사한 연유에서였다.

122) 梁銀容, <도교사상>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94).

123) 崔柄憲, <道說의生涯와 羅末麗初의風水地理說—禪宗과風水地理說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韓國史研究》 11, 1975).

124) 李丙燾, <圖讖에對한一二의考察> (《震檀學報》 10, 1939).

——, <圖讖의意義> (《高麗時代의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125) 李丙燾, <仁宗朝의妙淸의西京遷都運動과그叛亂> (《高麗時代의研究》, 乙酉文化社, 1948: 亞細亞文化社, 1980).

金南奎, <高麗仁宗代의西京遷都運動과西京叛亂에대한一考察> (《慶大史論》 창간호, 1985).

126) 李丙燾, <明宗의世와三蘇造成> (《高麗時代의研究》, 乙酉文化社, 1948: 亞細亞文化社, 1980).

비슷한 유형의 지리도참설은 고려 일대를 통하여 계속된다.¹²⁷⁾ 그리고 조선조에서도 묘지의 선정 등 여러 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시대에 도교와 풍수지리·도참사상이 줄곧 성행되어 온 것에서 당시 사상체계의 복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 때 역사의 시대적 특성을 정치·경제·사회·사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거기에서 논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우선 정치면에서 중앙의 경우 핵심기구들은 당·송의 제도와 고려의 독자적인 필요에서 만든 것 등 세 계통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조직은 2품과 3품을 경계로 하여 이중 편제로 되어 있었다는 것과, 특히 권력구조에서 宰臣이 6部判事를 겸직하고 다시 宰樞가 6部尙書를 중복적으로 지니는 사실과 관련하여 재추 중심의 정치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고려도 왕조 국가였으므로 국왕권을 결코 낮추 평가할 수는 없으나 재추가 정치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만큼 왕권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좀 미약했다는 이해인데, 그렇게 된 연유는 고려가 귀족사회였고, 따라서 그 같은 귀족적 성격이 정치제도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파악하였다.

다음 지방의 통치조직에서는 그 구역이 남도와 북계·경기 지역으로 다원화되어 있었고, 다시 거기에는 군현제 지역 이외에 향·소·부곡·莊·處 등 특수행정조직이 광범하게 존재했음이 한 특징이었다. 그리고 행정체계상으로는 중앙과 지방관이 과견된 主郡縣(領郡縣) 사이에 直牒關係에 있었다는 게 남다른 점이었다. 그러므로 중간행정기구인 京·都護府·牧 등의 界首官과 5道按察使의 기능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지방관이 없는 많은 屬郡縣은 주군현을 통한 간접지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광범한 속군현의 존재와 중앙과 주군현간의 직접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外官 중심의 행정체계가 고려 군현제의 또 다른 특징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말단을 맡아 실무를 본 향리

127) 崔柄憲, 〈高麗時代의 五行的 歷史觀〉(《韓國學報》13, 1978).

(長吏)들의 역할과 위치가 매우 높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었다.

한편 고려의 역사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주변의 여러 나라와 유난히도 잦은 외교교섭과 전쟁을 벌이는 특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五代·宋과는 친선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거란족의 遼와 여진족의 金, 몽고족의 元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으며, 말기에는 홍건적·왜구와도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같은 빈번한 국난을 끈질긴 투쟁으로 극복해간 대외적 성격이 강한 역사였던 것이다.

이어지는 경제면에서는 당시의 주업이 농업이었던 만큼 토지 지배관계가 중요한 대상이었는데, 먼저 민전의 존재에 유의하였다. 그것은 양적으로도 전체 토지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더러 民産의 근본이요 국가 재정을 지탱하여 주던 地目으로서, 매매·처분과 증여·상속이 자유로운 백정농민 등의 소유지였던 것이다. 이처럼 민전은 소유권 측면에서는 국유지나 관유지와 같은 공전에 대칭되는 사전이었으나 수조권 측면에서는 그 田租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귀속하는 경우에 공전이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그것은 收租率에서도 1/4公田租 및 1/2私田租와 함께 논의가 거듭되었으나 지금은 대략 1/10조였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또 매매·처분 등이 자유로운 토지였음이 밝혀지면서 처음에 유력시되어 오던 토지국유제설을 부인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고도 있다. 각종 地目들과 공전·사전 및 差率收租의 문제, 토지국유제와 사유제론 등이 고려 때의 토지 지배관계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 중심에 민전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職役을 부담하는 관리·군인 등에게 그 대가로 미곡을 주는 녹봉과 함께 전시과제도에 의해 이들 토지가 분급되었다. 그 가운데 문종 30년(1076)에 정비된 更定田柴科를 보면 전체 대상자를 관직의 고하와 중요도에 따라 18과등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분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전지와 더불어 시지도 지급하고 있고, 또 그들 토지가 주로 外州에 산재해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 나름의 실정이 반영된 分地制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급이 收租權이었는지, 아니면 免租權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의 경영방식도 달리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녹봉은 文武班祿의 경우 역시 관직의 고하와 중요도에 의해 47과등으

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끄나 더 이상의 특기할 만한 내용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후 이 같은 체제는 무신정권기 이래 정치와 경제 질서 등이 문란해지면서 토지는 사적인 대토지지배의 특수한 형태인 農莊으로 나타나며, 녹봉제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祿科田制를 시행하기도 하고, 농장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은 모두 실패하였다. 고려 때의 농장주들은 대부분이 부재지주들인 개경 거주의 권세가들이어서 이 점에서도 조선시대의 그들과는 성격이 좀 달랐는데, 끝내는 이 농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고려의 운명을 재촉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상공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편이었다. 도시상업의 경우 수도인 개경의 시전은 상설점포로서 비교적 교역이 활발하였으나 다른 곳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지방상업도 비상설적인 장시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寺院이 상업 방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대외무역은 송 및 요·금·일본 등 주변 각국들과의 사이에 행하여졌으나 그중 가장 활발하게 교역을 한 나라는 송이었는데, 이들을 매개로 하여 대식국, 즉 아라비아 상인들이 진출하여 온 것은 한 특이한 현상이었다. 교역에 사용된 화폐로는 물품화폐인 布·米가 큰 몫을 하였다. 금속화폐로는 성종 때 鐵錢을 주조한 일이 있고 다시 숙종 때에는 海東通寶 등과 은 한근으로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본떠 만든 銀瓶을 통용토록 하였으나 도시를 제외하면 이들 역시 그다지 활발하게 유통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수공업으로는 관청수공업이 중심이었고 소수공업도 전업적이었으나 민간수공업은 여전히 미미한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다음 사회면에서는 먼저 신분구조가 법제상 良身分과 賤身分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양천제 이론이 제기되면서 종래와는 달리 양반·귀족과 일반 양민과를 동일한 신분층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논란이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는 양자가 士·庶로 표현되듯이 상호 대칭되는 신분계층으로 이들간의 상하·귀천의 질서는 양천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각각의 신분층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종래에는 정치적·사회적 특권층인 귀족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를

귀족사회로 보려는 경향이 짙었으나, 한편에서는 귀족의 존재를 인정하되 귀족사회는 아니었다는 의견과 함께 차라리 양반사회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귀족과 양반의 개념 및 범위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거니와, 어떻게 고려의 신분구조에서도 이들이 중요한 신분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집단천민으로 간주하여 왔던 향·소·부곡민이 실은 하층 양민으로서 광범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주목되는 일면이다. 한데 노비를 비롯한 이들 각 신분층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세습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양민은 잡과나 군인직을 통해서, 특히 향리나 서리 등 중류층은 별다른 제약없이 신분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고려는 이렇게 신분의 세습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동의 길을 열어놓고 균형과 조화를 찾아갔다는 데서 또 다른 특성이 찾아지는 신분구조였다.

가족제에 있어서 그 유형은 소가족 형태가 주류였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데 대해 대가족 내지 중가족 형태가 많았다는 의견도 있어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이 가족 형성의 한 중요 계기가 되는 혼인은 여자의 경우 16~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였던 듯 싶은데, 그리하여 대개 일부일처제에 입각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다가 혹 남자쪽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여자의 재가는 자유로운 편이었다. 아울러 근친혼 내지는 동성혼이 널리 행해지고 심지어는 동성동본혼의 사례도 보이는 것은 고려 때 婚俗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가족제에 있어서 보다 큰 특성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높고 컸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우선 가호의 구성에서 여자가 호주가 되고 있다는가 여러 자녀 중 딸이 위일 경우 그부터 기록하고 있는 데서 살필 수 있다. 그리고 媼留婦婚과도 관련하여 딸·사위가 친정부모, 곧 장인·장모와 한 가족을 구성하여 모시는 것도 그 한 모습이며, 노비나 민전 등 家業·財産의 상속이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균분상속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 역시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측면이 친족조직에도 반영되어 相避制나 五服制 및 호적에 있어서의 世系推尋 범위 등에 本族뿐 아니라 外族·妻族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고려 때 가족·친족의 사회적 기능은 여러 모로 달랐던 것이다.

다음으로 사상면에서 불교의 경우 나말려초에 호족과 연결된 선종이 크게 유행하면서 교종과 양립하는 형세를 이루었다가 점차 후자가 우위를 점하였다. 그런 가운데 문벌귀족사회가 형성되면서는 왕실 및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교종의 법상종과 화엄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거기에 더하여 의천이 敎觀并修를 표방하고 새로이 천태종을 開立하여 번창하였다. 이와 짝하여 유학도 크게 달라진 사회체제와 분위기 속에서 새 전기를 맞는데, 광종 때의 과거제 실시는 발전의 한 큰 계기였으며, 여러 가지 유교의례가 마련되는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확고한 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 이후 私學을 열어 유학 학풍을 크게 진작시킨 최충에 의해 유교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며, 예종·인종대에는 국학의 정비와 經學에 대한 강론회의 개최 등으로 한층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얼마 오래지 않아 무신란이 폭발하고 그들 정권이 서면서 유학은 매우 위축되지만, 반면에 선종계의 조계종은 지눌의 활동으로 중흥을 이루어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宗旨로 삼고 수선사를 중심으로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하여 크게 떨쳤다. 이 같은 결사운동은 천태종계의 요세가 중심이 되어 백련사에서 일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원 간섭기에 접어들어 일연이나 普愚·慧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많은 폐단을 낳고 승려들도 타락하여 한 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여 갔다. 이러한 시기에 주자성리학이 안향·백이정 등에 의해 전래되어 사대부들에게 수용되면서 불·유병립의 상황은 점차 성리학 중심으로 교체가 이루어져 갔던 것이다.

한편 고려에서는 도교도 국초부터 줄곧 유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九曜堂 같은 醺星處가 마련되고 이후 北斗醺·太一醺·星變祈禳醺 등 각종 齋醺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종 때에 道觀인 福源宮(福源觀)이 건립되는 것은 도교사상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후 도교행사가 더욱 빈번해지고 神格殿과 祈恩色·淨事色·大淸觀 등 도교기관도 여럿 설치되지만, 아직 불교에서와 같은 강고한 종교교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그가 지니는 한 한계성이었다. 이 도교와 함께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 역시 국초부터 유행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처음에는 지방의 호족들이 자기의 존재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종과 인종 때에는 정치

적 목적과 결부된 서경천도운동의 연유로 앞세워지기도 하고, 또 延基觀念에 따라 3京이 설치되고 三蘇宮이 조성되는 것도 이들 사상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처럼 풍수지리·도참사상은 정치·사회 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고려 때의 사상계는 이상에서 소개했듯이 佛·儒와 함께 도교·풍수지리·도참사상 등이 공존하면서 상호 대립·융합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받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데 커다란 특징이 있었다.

〈朴龍雲〉

4. 조 선

1) 조선왕조사의 특징과 시기구분

여기에서는 먼저 조선왕조사의 특징을 개관한 다음, 조선시대사를 초기·중기·후기의 3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순으로 총괄해 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한국사》 제22권 ‘조선왕조의 성립’에서 제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까지 각 권의 ‘개요’를 다시 축약, 정리하되 주관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한정된 지면에 조선왕조 500년사 총설을 담아야 하므로 각 권의 ‘개요’를 그대로 신지 못하고 나름대로 재단해서 정리하다보니 개요의 상당부분이 삭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왕조의 기본 성격을 ‘신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집권적 양반관료국가’로 규정할 때 ‘유교’나 ‘양반’ 및 ‘집권적 관료제’란 용어는 앞 왕조인 고려시대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麗末부터 신왕조의 창건주체가 추진해 온 崇儒·抑佛의 정책은 국시로 확정되었고 또 성리학이 수용된 뒤 《朱子家禮》의 보급과 《小學》교육의 장려로 인하여 유교이념과 유교의례는 상류사회로부터 점차 민중생활 속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정치·경제·사회·사상에 功過 양면으로 심대한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그 정치체제는 명분상 왕권

을 정점으로 하는 유교적인 양반 관료에 의해서 통치되는 지배체제를 갖추었다. 유교정치가 왕권을 정점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교적인 지배기구와 그 제도를 통해서만 권력이 행사되기 마련이었고 또 실제로 정권도 왕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반 중심의 관료기구를 통해서만 발동되는 체제였다. 한편, 협소한 국토에서 그나마 고려 이래 중앙정부와 並列해 있는 지방정권의 존재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양반사대부는 ‘郡縣制’와 같은 중앙집권제를 발달된, 또는 최선의 지방통치 방식으로 간주한 데서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가 줄곧 강화되어 갔다.

조선왕조는 ‘사대부정권’이라 할만큼 독서유생인 士와 전·현직관료인 大夫가 재조와 재야에서 정치·사회적 지배세력으로서 역대의 정권을 담당해나갔다. 이러한 사대부는 士族 또는 兩班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그 형성 시기는 고려 후기로 소급된다. 그들은 대개 지방의 군현 향리가문에서 출자하여 경제적으로는 지방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진 데다가 고려 후기 정치적 혼란과 北虜·南倭의 외침이 거듭되는 가운데 과거·군공·添設職 등을 통해 중앙관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로서 ‘能文能吏’의 조건을 갖춘 새로운 관인상을 지닌 동시에 때마침 元나라로부터 전래된 신유학(朱子學)을 적극 수용하면서 고려말에 가서는 마침내 송유배불과 반원친명책 및 왕조교체라는 방향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들은 14세기 말 왕조교체를 계기로 집권사대부와 재야사대부로 나누어졌는가 하면, 15세기 후반 세조의 왕위찬탈을 겪으면서 다시 훈구파와 士林派로 분기되어 갔다. 특히 후자는 왕조교체기의 재야사대부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훈구파의 집권 아래 주자학적 향촌지배질서와 새로운 先進농법을 향촌사회에 적용하여 원만한 ‘主奴’관계와 地主佃戶制를 근간으로 지역개발을 활발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촌사회의 획기적인 성장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꾀하였다. 그 결과 세종조의 地理志에 각읍마다 戶口·田結數가 기재되고 《經國大典》에 面里制가 비로소 法制化하며, 16세기 후반부터 새로 편찬되기 시작한 《邑誌》에는 종전의 地志에서 볼 수 없던 ‘坊里’와 ‘人物’ 조항이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바로 15세기 이래 재지사족들에 의해 꾸준히 개발되고 있던 향촌사회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15세기 후반 이래 재지사족의 활발한 진출과 鄉約을 비롯한 鄉村諸規約과 향안·동안 등의 제정, 실시는 바로 조선 초기 이래 재지세력들에 의한 지역개발과, 그 결과로 얻어진 사회·경제적 기반에 힘입은 바 컸던 것이다.

조선 초기 재지사족에서 성장한 士林이 16세기 후반 정계장악과 함께 다시 동서·남북·노소의 당파로 나누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교학과 신분상으로 본다면 모두 성리학에 훈도된 양반사류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京鄕을 막론하고 사류가 중심이 된 양반지배가 확고한 사회인 동시에 사림이라 불리는 선비집단이 그 사회의 영도세력이었다. 그 결과 사림이란 호칭은 당대 최고의 영예이며, 그들의 여론인 士論과 그들의 기상인 士氣는 곧 국가·국민의 원기로 간주되어 위정자는 이를 적극 배양, 권장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부사장에 능한 文才와 성리학적 지식은 그만큼 출사와 향촌지배에 중요한 방편의 하나가 되었다.

양반과 동의어로 사용된 사족이란 항상 士와 族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었고 어느 한쪽만을 취하지 않았다. 가령 입학·과거·銓注·任官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와 署經과정에서 당사자의 글재주·학식·덕행과 함께 혈통과 가계 및 族屬을 중히 따지는 취지는 바로 그 두 가지 요건을 필수조건으로 하였던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깔고 성리학적 유교소양과 文·武·蔭(南行)의 3대 출사료와 관련하여 과거·천거·取才 등을 채택했다는 데서 사와 족의 두 가지 요건인 혈통·가계·문음을 따지는 성과 본관, 가문·혼인관계를 중시한 결과, 아무리 명문·거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사족 곧 양반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중앙정부는 왕을 정점으로 전국의 군현토성에서 상경 종사한 양반관료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고, 지방은 각 군현 단위로 중앙의 왕실과 조정의 屏藩으로서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해 주고 외적의 침입이나 지방 반란이 발생했을 때는 각기 재지 세력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북로·남왜와 같은 외침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고 跨州包郡과 같은 여러 고을이 연합한 지방 반란이 쉽게 일어

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은 그 기간 동안 異民族에 의한 정복왕조나 전형적인 혁명에 의한 지배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성이 매우 강인하게 존속하였고 또 지배세력의 변화와 교체도 계기적·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양반사회의 강한 지속성은 사대부의 기본성격에도 연유한 바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조자인 대부와 재야자인 사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지위가 교체될 수 있으며, 또한 재조자 중의 관직의 고하와 재야자 중의 재산정도의 차이로 인해 사고와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재조자가 너무 오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지나치게 권력을 부리는 처지에 있게 되거나, 반대로 재야자가 너무 오래 벼슬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교양도 법도도 없게 되면 모두 사대부 집단에서 탈락된다. 여기에서 전자는 過한 것이고 후자는 不及한 것이다. 과도 불급도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 사대부의 기본성격이라 할 수 있다. 15세기의 훈구파나 16세기 전반의 척족처럼 지나치게 권귀화됨으로써 누적된 모순을 시정하기는 커녕 도리어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마다 재야자들의 획책과 추진으로 정변이 생기고 정변에 의한 모순의 일시적 타개는 그런대로 역성혁명의 파국으로의 전락을 중지시켰던 것이다. 中宗反正과 仁祖反正 및 왜란과 호란과 같은 큰 정변과 외침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사대부의 정치적 대체행동에 의하여 왕조는 몇 번이고 위험한 그 통치체제를 정돈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그만큼 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벌벌정치 내지 세도정치가 나타난 뒤에 사대부 재야자의 정치적 행동이 분쇄되다시피 된 것은 왕조가 앞으로의 정치적 대체세력을 잃고 말았다는 점에서 불행한 것이다. 이로 인한 왕조의 장기화는 결과적으로 근대를 지향하고 역사의 행정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담당할 다음 사회의 주체세력, 즉 기존 사대부의 변혁세력의 형성을 매우 늦추어 놓았던 것이다.

또한 양반사회가 그러한 지속성을 갖게 된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첫째, 世臣·世族으로서의 양반사대부와 향역을 세습하는 世吏로서의 향리, 世傳其業하는 잡과출신의 중인층, 둘째, 사족의 손발과 재산으로서의 世傳奴婢와 공신들에게 지급한 공신전·공신노비를 비롯한 賜牌田民과 조상의 유산 등 신

분과 직역 및 재산상속의 세습성과 폐쇄성이 특히 강인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는 계급내혼제와 子女均分상속제가 철저하였으므로 사회신분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 조선사회의 ‘양반’제도와 노비세전법을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의 성관체제, 경제소와 유향소의 병존, 邑司향리의 철저한 향역세습, 越境地와 犬牙相入地의 광범한 존속, 八高祖圖와 男歸女家婚·남녀균분상속제 등은 중국과는 판이한 제도와 관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양반의 신분유지에는 유교(학)적인 소양과 文才·학식과 관직, 명조·현조의 가계 및 일정한 경제적 기반(토지와 노비)이 있어야 했다. 또한 조선사회는 중앙과 지방 또는 각 신분·계층별로 권력의 안배와 財富의 분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외 관청마다 官과 吏란 양반과 중인, 고을마다 官아와 향청 및 吏廳, 향교와 서원, 반촌과 민촌 및 씨족과 문중을 단위로 한 관권과 향권이 서로 균형과 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전통적인 지배세력인 양반 이외에 제3세력의 정권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간에 대해 지금까지 학계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국사》에서는 초기·중기·후기로 나누는 새로운 시기 구분을 도입했다. 중기 설정이 새로운 점이다. 이 구분에서 새로 설정한 중기는 대체로 15세기 말엽에서 17세기 말엽까지 곧 성종 후반에서 숙종 전반기에 이르는 약 2세기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종래의 전기·후기의 양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임진왜란이란 外侵을 구분점으로 삼는 것은 역사를 내재적으로보다는 타율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둘째로 그간의 여러 部面의 연구에서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 사이에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더 많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은 양분법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2) 조선 초기의 사회와 문화

조선왕조의 개창은 다만 역성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사상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오게 한 중대한 사건이

었다. 이성계 일파는 위화도회군을 통하여 정권·병권을 장악하였으나 그들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사의 군사를 유지하기 위한 軍資 및 신진관료들의 녹봉을 확보하는 일과 농민들을 수탈과 핍박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 민중의 호응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파들은 그 길을 私田改革에서 찾았다. 즉 권문세족의 私田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급여하고 농민들로부터 法定의 전세(1/10)를 수취하면 군자·재정도 해결되고 민생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공양왕 3년(1391)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개혁파에 의하여 科田法의 실시를 보았다. 그것은 개혁파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해 준 것이었으나 처음 그들이 이상으로 했던 완전한 개혁은 되지 못하고 결국 구귀족의 토지를 빼앗아 이성계일파와 신진관료 등에게 분배하여 농민들은 배제되었다. 이처럼 정권과 군권 및 사전개혁의 경제기반을 확보하게 된 이성계는 그 일파와 都評議使司의 추대를 받아 1392년 7월 17일 새 왕조의 왕으로 즉위하였다.

새 왕조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유신과 이에 동조한 세력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새 왕조의 정치지도이념은 숭유억불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과전법체제와 대명사대관계는 이미 정해진 방향이었다. 또한 고려말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도 새 왕조의 과제였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였다. 그러한 정책방향과 기대는 태조 원년(1392) 7월 28일에 반포된 태조의 卽位敎書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새 왕조가 건립된 후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신속하게 진척되었다. 즉위 직후 이성계의 즉위사실을 명에 알렸고 이어 즉위교서와 함께 문무백관의 제도가 공포되었다. 즉위한 지 한 달만에 康氏소생 芳碩을 서둘러 세자로 책봉하였다. 태조 2년 2월 15일에는 국호를 ‘朝鮮’이라 결정하였고, 동 3년에는 새 국도를 ‘漢陽’으로 정하였다. 태조 원년에 개국공신 52명을 책봉하였고 원종공신은 원년부터 6년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이 선정되었다. 태조 3년에는 고려 왕족(王氏)들을 제거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새 왕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들이었다.

태종은 두 차례의 쿠데타를 통하여 왕위를 쟁취하였으므로 그의 왕권은 무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태종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집권적 양반관

료체제를 확립하면서 왕권의 강화와 공적 영역의 확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公私노비의 변정과 추쇄, 사원토지·노비의 정리와 호구성적 및 전국적인 양전사업 등 정책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세종 치세의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다.

세종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뽑아 집현전을 세웠으며 그들로 하여금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학술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집현전은 經筵·書筵·知製敎·史官·試官·古制研究·편찬사업 등 학술적인 직무를 수행하였고, 賜暇讀書制를 두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쟁쟁한 학자들이 양성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유교적 의례·제도의 정리작업과 편찬사업이 전개되었다. 유교정치를 할 수 있는 기틀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세종대의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세종대를 일관하는 국정운영의 특징은 세종이 의정부대신뿐 아니라 많은 관료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의논을 통하여 국정을 풀어갔다는 데 있다. 세종 26년 貢法을 반포하기까지 15, 6년 동안 중외의 관료는 물론이고 많은 농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것은 세종대 정치의 중요한 한 면이다. 이러한 국정운영은 세종대의 유교정치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유교적 민본정치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문종은 세종 20년대 후반에 세자로서 섭정의 경험을 가진 바 있고 즉위 후의 정치적 분위기도 세종대와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세종대와 같은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재위 2년 남짓에 승하하였다. 1452년 단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정치분위기는 일변하였다. 문종은 皇甫仁·金宗瑞 등 의정부대신들에게 단종을 보필해 줄 것을 遺命하였으므로 황보인·김종서 등은 의정부서사제하에서 막강한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허약했다. 단종 원년(1453) 10월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은 정권과 병권을 독차지하였고, 단종 3년 윤 6월 양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계유정난을 통한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은 세조 왕위의 명분과 정통성에 흠이 되었고 도덕성에도 큰 허물을 남겼다. 세조 2년(1456) 6월의 死六臣事件은 명분·정통과 도덕성에 흠 있는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하기 위한 운

동이였다. 그러나 세조가 왕위에 있는 동안 치적은 적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의 통치기구를 재정비한 일, 재정제도의 개혁, 職田法의 단행, 五衛制의 확립 등 큼직한 치적을 이루었고 《經國大典》의 편찬도 그가 남긴 업적의 하나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승하하였으므로 예종대는 세조대에서 성종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1469년 성종이 13세로 즉위한 이래 7년 동안은 尹大妃(세조비)의 수렴청정과 院相制가 계속되었으나 정치적인 분위기는 크게 변하였다. 원상들은 훈신세력의 핵심으로서 세조의 승하 후 강력한 정치주도세력으로 떠올랐으므로 성종의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훈신들은 세조공신들로서 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 등의 공신으로 거듭 책록되어 직전 이외에도 막대한 공신전을 받아 과대한 재력을 소유하였고 막강한 정치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세력은 왕권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성종으로서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구대신들의 과대한 정치력을 약화시켜 왕권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金宗直을 위시한 사림세력의 정계진출은 훈구세력을 견제하려는 성종의 의도가 내재한 것이었다.

성종대에는 집현전제도를 이은 弘文館의 설치, 讀書堂制度 운영, 유생교육의 장려 등 인재양성에 힘썼고, 《東國輿地勝覽》·《東文選》·《東國通鑑》·《五禮儀》·《樂學軌範》 등 큰 편찬사업, 문화정리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경국대전》을 완성·반포하는 등 문풍이 진작되어 조선 초기의 문화·제도의 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성종대에는 훈구대신들 간에 고리대 행위가 일어나고 뇌물이 성행하였으며, 사치와 퇴폐의 풍조가 풍미하게 되었으며 왕도 점차 유흥에 빠지고 후궁에는 분규가 생겼다. 연산군대의 士禍의 꼬투리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선은 개국 전후 압록강·두만강 연안일대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에 대하여 태조대부터 세종대에 이르는 동안 초유와 진무를 함께 하며 4郡과 6鎭을 설치하였다. 북쪽 경계를 침입·약탈하려는 여진족과 이를 밀어내고 지키려는 조선의 공방전은 계속되었고 북방개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하였다. 특히 세종의 적극적인 북방개척 의지와 김종서·崔潤德 및 많은 군사들의

피와 땀으로 4군·6진이 설치되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진족의 침입은 그치지 않았고 조선정부의 방어 노력도 끊이지 않았다. 함길도·평안도로의 사민정책도 여진족에 대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북변으로의 사민은 태조대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세종 16년(1434)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도내와 남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민정책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연변을 충실히 하고 국방을 위한 것이었으나 入居人의 입장에서는 강제적 사민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참기 힘든 고역이 따랐으므로 도망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조 이후에도 下三道民의 사민은 계속되었다. 북변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계속되었고 이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도 심하였던 것이다.

조선은 국초부터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세웠다. 14세기 후반 중국대륙은 원의 지배에서 명의 지배로 바뀌었으므로 조선의 외교적 관심은 명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있었다. 또한 삼국시대 이래 있어 왔고 특히 고려말에 극심했던 왜구의 침입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터이므로 일본과의 적절한 외교관계 수립도 필요한 것이었다. 만주 일대 및 압록강·두만강 남쪽에까지 들어와 살던 여진족에 대하여도 그들을 위무하기 위한 적당한 외교관계의 유지가 필요하였다. 琉球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 중 명과는 사대관계를 맺었고 그 밖의 나라들과는 교린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흔히 조선의 외교정책은 사대교린정책이 기초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라고 한마디로 규정되고 있지만, 실제의 운영면에서는 시기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많았다. 그리고 명분상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유교적인 양반관료에 의해서 통치되는 지배체제를 갖추었다. 유교정치가 왕권을 정점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교적인 지배기구와 그 체도를 통해서만 권력이 행사되게 마련이었고 또 실제로 정권도 왕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반 중심의 관료기구를 통해서만 발동되는 체제였다. 조선왕조의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양반은 그들의 유교적인 정치성향에 맞도록 文班위주의 집권적 관료체제를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麗末의 신

홍사대부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를 마련함에 있어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추구는 새로이 접한 新儒學의 영향에서 앞 왕조의 정치체제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왕조의 집권화 과정을 역사적·시대적 발전추세로 보는가 하면 官僚制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신유학에 혼도된 신흥사대부의 성향이 다분히 서울 指向性과 관료지향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데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도 있다.

《경국대전》체제를 염두에 두고 보면 조선왕조의 정치권력은 형식상 왕에게 있었다. 왕은 그 권력을 中外관원에게 배분하는데, 그 지표는 品階와 職事였다. 관품체계는 우선 宗親·儀賓·文班·武班·土官·雜職으로 구분되어 그 명칭과 대우가 각각 달랐다. 당시의 권력구조가 왕을 정점으로 크게 宮中과 府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는 종친·의빈의 행정참여를 차단하고 행정과 군사를 구분하여 행정의 우위를 보장하며, 賤人신분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官品체계의 다른 구분은, 문반을 중심으로 보면, 大夫와 郎의 구분, 堂上·參上·參外の 구분이 있었다. 대부와 낭의 구분은 인사절차의 차이에 있다. 大夫階는 왕이 敎旨의 형식으로 바로 주는 데 비해, 郎階는 銓曹의 낭청·당상의 결재를 거쳐 주어지고 臺諫의 署經을 거쳐야 했다. 당상·당하의 차이는 정책결정이나 인사의 참여 여부에 있었으며, 참상·참외의 차이는 治事·治人の 자격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당상관은 정치·인사를, 참상관은 행정실무와 牧民의 기능을, 참외관은 그 보조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그런데 관직에 일정한 품계를 고정시키고 그 품계에 맞는 관원이 거쳐가도록 짜여진 관직·관품관계의 괴리에서 생기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行守法’이었다. 관직·관품의 괴리는 주로 加資濫設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지배층의 자기보전욕구의 결과로서 나타났는데 代加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관직체계를 보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요 관서는 모두 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는 중앙의 경우 행정 최고관서인 六曹의 屬衙門으로 편제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는 觀察使·兵使·水使를 거쳐 왕에게 연결되도록 편제되어 있다. 그 연결을 보완하는 장치는 중앙의 경우 주요 3품아문의 1, 2품직과 기타 관서의 提調制이고 지방의 경우는 敬差官·御史 등이다. 그

런데 중앙의 관직은 주로 正品階이고 지방의 관직은 주로 從品階이다. 軍事와 행정간의 견제·통합은 중앙의 경우 兵曹—五衛都總府의 관계와 都總官·副總官·五衛將 등이 모두 兼官인 것 등에 나타나 있고, 지방의 경우 관찰사—兵馬節度使의 관계와 守令이 僉使~都尉를 겸임하도록 한 것 등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中外官職체계에 있어 文官의 우위가 제도나 관행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중앙관제는 왕을 정점으로 그 밑에 議政府와 6조 및 三司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은 권력구조상에 있어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 언론, 탄핵, 署經 및 法司의 여러 기능을 통하여, 때로는 왕권의 전제를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료기구는 항상 견제와 균형이란 원리에 입각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시기에 따라 한결같지 않았다.

지방통치체제는 중앙의 관료체제와 마찬가지로 양반관료의 권익을 일차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으며, 지방행정이란 것도 결국 양반의 지배체제를 부지하기 위한 행정적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통치의 방식은 왕권의 강약과 훈구·사림파란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15세기는 지방제도의 개혁이란 면에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였다. 즉 고려의 五道·兩界가 八道體制로 확정되고, 신분적이며 다원적이던 郡縣制가 일원적으로 행정구획화되며, 事審官制가 京在所와 留鄉所로 분화 발전해 나가고, 종래의 속현과 향·소·부곡이 소멸, 直村化하면서 새로운 面里制로 점차 개편해 나갔던 것이다. 경재소와 유향소는 무엇보다도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신흥사대부 세력이, 그들이 소유한 外地의 토지와奴婢를 효과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이제까지 군현지배권을 갖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그들 주도의 지방통치와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경재소는 1읍 1所의 원칙대로 主邑을 단위로 조직되었던 것이며 각 읍의 京邸와 병존하면서 해당 읍의 유향소를 거느리고 있었다. 유향소가 초기에는 군현지배권을 향리로부터 인수받기 위해서 경재소의 힘을 빌렸던 것이며, 在京官人들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배경으로 각자 연고지의 지방행정은 물론, 자기들의 사회적·경제적 기반도 부식해 갔던 것이다.

양반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반사대부가 지향하려 했던 유교

적인 향촌질서가 먼저 확립되어야 했다. 그런데 향촌사회는 일찍이 재지사족들에 의한 자율적 조직체가 존재했음이 밝혀졌는데 ‘鄉案’은 그 구성원의 명부이며, 鄉規는 그 규약이라는 것이다. 향약의 보급에 앞서서 유향소와 향안을 규제했던 향규는 벌써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유교적인 향촌질서의 확립 과정은 성리학적 교육과 윤리·의례의 수용 및 사림과 세력의 성장과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바로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강조하던 사림과 세력의 성장에 따라 《朱子家禮》의 수용과 《小學》 교육의 보급, 社倉의 설치 및 유향소의 설치와 향규·향약의 시행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양반사대부들의 본래 취지는 유교적인 덕치, 위민정치의 실현수단으로 제시되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반 대 농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있었던 것이며, 향촌의 지배권을 장악한 재지사족들이 민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 내지 수탈하기 위한 필요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가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왕→감사→수령으로 이어지는 관치행정적 계통과 경재소→유향소→面·里任으로 연결되는 在地士族 중심의 자치적인 행정체계 및 이들 중간에介在한 上計吏·京邸吏·營吏·邑吏의 향리계통, 이 3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건국 이후 군대의 징발과 통솔권이 모두 장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私兵체제적인 고려말의 군사조직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병권의 분장과 사병적 존재가 중앙집권적 군사조직으로 개편되어 갔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군사조직 중 우선 중앙군의 실태를 보면, 여기에는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10위와 갑사로 이루어진 왕실 사병으로서의 의흥친군위, 그리고 각 도의 번상 시위패와 반법제적인 존재였던 궁중 숙위병력인 成衆愛馬 등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또한 군역 역시 군제만큼이나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왕조의 안정과 더불어 차츰 정리되어 왕권을 직접 호위하는 무반관료로서의 금군과 중앙군은 5위제, 그리고 지방군은 鎭管體制로 정리되었다.

중앙군의 근간이 된 5위는 의흥위·용양위·호분위·충좌위·충무위로 구성되었다. 이들 5위에는 각기 조선 초기 중앙군의 13개 병종들이 편입되었고 또 전국의 지방군까지 각 위별로 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지방군은

각 지방절도사에 의하여 지휘·통제받고 있어서 지방군의 분속은 그들이 직접 번상하여 수도방어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 등 군사훈련에 대비하여 전국의 지방군을 거주지의 진관별로 파악하고 5위에 분속시킨 데 불과한 것이다. 즉 중앙군은 5위제로 대표된다고 하나 5위제는 하나의 훈련체제이고 실제 중앙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군의 각 병종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 초기의 5위제에 분속된 중앙군의 병종으로는 시취에 의하여 선발되는 군인(別侍衛·親軍衛·甲士·破敵衛·壯勇衛·彭排·隊卒)과 시취에 의하지 않고 특전 혹은 의무병역으로 편입되는 군인(族親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補充隊·正兵)으로 대별되었다. 이 중 중앙군의 대표적 군사력은 갑사였다.

지방군제 역시 세조 때에 정비되었다. 세조 원년에는 이때까지 북방의 익군과 남방의 영진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군사조직을 북방의 예에 따라 군·익도의 체제로 통일하였고, 이것이 2년 뒤에는 다시 진관체제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 때에 육군만이 아니라 수군도 이러한 진관조직을 갖추었다. 조선 초기의 지방군사제도는 이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이 시기의 군역은 양인의 의무이지만, 관직으로 올라가는 권리이기도 하였다. 한편 번상보병은 15세기 후반부터 役卒化하였고 이후 대립·수포의 주대상으로 군역의 변화를 겪는다.

조선 초기는 강력한 문교장려책으로 인해 여말에 문란했던 관학체제가 잘 정비되어 전국의 인재들이 지방의 향교에서 성균관으로 진출하고 또 관학을 이수한 유생들이 소과나 文科에 합격함으로써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크게 관학과 사학으로 나눌 수 있다. 관학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4부학당(4학)·종학·잡학·향교 등이 있었으며, 사학 교육기관으로는 서재·서당·가숙 등이 있었다. 연산군 폭정을 계기로 문신들이 향교의 교관을 기피하자 향교교육이 급격히 쇠퇴한 반면 재지사족들의 서당·서재에서 교육받는 사림세력이 배출하게 되었고 그러한 관학과 사학의 성쇠는 결국 16세기 중반에 가서 서원설립을 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대체로 세종조에 정비되었다. 과거 중에 문·무과는 고급관료를 뽑는 시험이고, 잡과는 기술과 실무의 하급관료를 뽑는 시험

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는 초입사로로서 중요한 관문이었다. 그러나 초입사로는 과거 이외에 문음과 천거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문음·과거 외에 유일·남반잡로·성중애마 등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남반과 성중애마가 吏職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자 천거의 성격이 강한 遺逸(隱逸이라고도 함)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 있어서 문음과 과거는 초입사로로서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관문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인사관리제도는 과거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에는 초입사의 의미가 강했던 과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초입사에 못지않게 超資·超職의 의미가 컸던 것이다. 이 초자·초직의 특징은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법제였다. 循資法·考課法과 같은 까다로운 진급 규정을 무시하고 과거적으로 고급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조선시대 과거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이처럼 현직관리에게 과거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그 합격자에게 더 큰 승진의 특권을 주었던 것은 조선 양반관료제의 하나의 특성이었다.

고려말 사전개혁운동은 공양왕 3년에 과전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전법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과전법은 농장의 不輸租特권을 배제하여 모든 전지를 과세지로 재편성하며 소유권적 토지 지배관계를 공인하게 하였고, 私田의 재분배는 私田畿內의 원칙에 따라 分給收租地가 축소되었으나 신진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농민의 所耕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여 어느 정도 농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였다.

종래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의 변천을 주된 제도적 골격으로 다루어 왔으나, 그것은 조선 초기 토지제도의 일부인 양반관료의 수조지 지배만을 다룬 것에 불과하였다. 양반관료의 수조지 지배인 과전은 사전억압시책으로 태종·세종년간의 私田 하삼도 移給과 還給, 세조 12년의 직전법, 성종 원년의 직전세 官收官給制로 이어졌으며,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는 직전 내에서 田主의 토지 지배관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직전제마저도 명종 때에 이르러 소멸되고 말았다.

토지소유관계는 일제시기 이래 일제 관학자와 유물사관론자에 의하여 토지국유제로 주장되어 정설로 인정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이래 토지사유제가

주장되어 토지국유제는 하나의 표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토지사유제임을 밝혀냈다. 토지사유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공전·사전·민전의 개념에 대한 제검토와 민전의 실태에 대한 규명이었다. 공전·사전·민전의 개념에는 토지국유제론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수조관계로서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 이외의 소유관계로서의 개념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민전은 상속·매매·증여·전당할 수 있는 토지로서, 평민은 물론 양반·중인·천인 등 모든 계층의 민유지였다.

과전법 체제 아래 영농형태는 지주의 농장형, 소농민의 자영형, 영세소농·무전농민의 병작형으로 분류된다. 영세농민이나 무전농민은 병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과전법에서 병작을 금하고 있으나 조선 초기 이래 병작은 널리 보편화되어 갔다. 병작이 발달한 원인은 토지집적의 진전과 영세·무전농민의 끊임없는 증가,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유통경제의 발달, 농민의小經營능력 보유와 철저한 양인 影占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과전법으로 여말 권문세가의 대토지소유에 의한 권력형 농장이 사라진 이래 15세기에는 중소지주의 理財형 지주전호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16세기에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여말·선초에 休閒法이 극복되고 連作法이 보급되면서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였다. 조선 초기에 연해지역의 개발과 下濕地의 水田개발은 중국 江南農法의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전농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고려말까지 중국의 농서만이 간행, 보급되었으나 세종 때 비로소 우리의 농서인 《農事直說》이 편찬, 보급되어 농업기술의 발달에 이바지하였다. 조선 초기 이래 수전은 直播連作法이 정착되었으며 移秧法은 수리·생산기술면에서 아직 널리 행해지지 못하고 乾耕法이 조선의 기후 조건에 맞추어 독특한 耕種法으로서 개발되었다. 畵田농업은 15세기에 1년1작식의 연작법이 지배적이었고, 16세기에는 비옥한 밭에서 1년2작식 혹은 2년3작식도 행하여졌다.

조선 전기의 상업은 농본주의 정책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상업은 국내상업과 대외무역으로 구분되고, 국내상업은 다시 도시상업과 지방상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상업으로, 서울에 行廊상점인 시전은 상설점포이었으며 개성과 평양 등 도시에도 상설점포가 개설되고 있었다. 서울의 시전은 개

성의 것을 본떠 태종 때에 대규모의 행량을 조성한 후에 개설되었다. 시전은 宮中과 府中の 수요를 조달하는 반면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의 특전을 차지한 어용상점이었다.

지방상업으로 장시는 15세기 후반에 전라도에서 발생하여 점차 3남지방으로 파급되고 이어 전국적으로 발달되었다. 장시의 발생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유통경제의 활성화 현상이었다. 즉 조선 초기에 휴한법이 극복되고 연작법이 보급되면서 농업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장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어 장시는 정부의 금압책이 이완되는 가운데 충청·경상도로 번지고 이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각 군현마다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장시 발달의 배경은 지주제의 발달, 중국과의 사무역 발달, 군역의 布納化, 농민층의 분화와 이에 따른 상인의 증가, 防納의 성행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정부는 米·布 등 물품화폐 기능의 한계를 통감하고 화폐경제가 발달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楮貨·銅錢 등을 유통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경국대전》에는 布貨를 國幣로 규정하고 있는 바, 포화에는 麻布와 綿布가 있고, 그 중에서 마포가 正布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면포가 세종 때부터 유력한 유통수단의 기준이 되어 왔다. 이처럼 화폐유통정책이 실패한 것은 상품교환경제가 미숙한 상태인 까닭도 있겠지만 면포의 화폐적 기능에도 한 원인이 있었다.

대외무역은 사대교린정책에 따라 朝貢과 回賜의 형식인 관무역과 使行에 의한 사무역이 행하여졌다. 대외무역의 대상국은 명·여진·일본·유구·남만 등이었다.

수공업은 15세기에 관영수공업인 官匠制가 주도하였으나 16세기에는 민영수공업인 私匠制로 바뀌어 갔다. 관장제는 工匠이 관부에 예속되어 물품을 생산하며, 중앙관아에 경공장이, 지방관아에 외공장이 배속되었다. 공장의 신분은 양인과 公賤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관아의 수요에 따라 각기 책임량을 제작하였다. 그들의 작업은 公役に 응하는 것이므로 무상이며, 공역 이외에 사적으로 생산한 물품에는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민간수공업도 독립수공업자, 농민·승려·백정 등에 의하여 수공업품이 생산되었다. 독립수공업자는 관부의 匠籍에 등록되어 공역을 부담하지만 공역 이외에 생산된 물품

에는 匠稅가 부과되었다. 농촌수공업은 농민의 부업으로 생산되었으며, 승려의 수공업으로는 製紙·製鞋·木工·製麵 등이, 백정의 수공업으로는 製革·柳器제조 등이 있었다.

철광업은 야철수공업의 성장과 함께 발달하였다. 태조 7년에 염철법이 혁파되고 鐵場都會制로 바뀌었다. 철장도회제는 철장도회에서만 선공감·군기감에 공철을 납부하고, 철장도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민영으로 광산이 운영되었다. 세조 때에 철장도회의 공철이 미곡으로 代納되었고, 성종 때에는 철장 생산지에 한하여 각 읍 採納制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민간 야철수공업의 성장으로 각 읍 채납제도가 무너지고 대납제가 보편화되었다.

방직업에는 주로 絹織과 麻織·綿業이 있었다. 견직을 위해서 잠업진흥정책이 수립되었다. 조선 초기에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蠶室都會를 설치하여, 5등호제에 따라 뽕나무 수량을 의무화하는 양잠조건을 펴 생산이 배증되었으며, 관영수공업에 의한 견직물 생산이 주도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관영수공업은 독립수공업이나 농가 부업의 민간수공업으로 바뀌어 갔으며, 농가의 견직이 장사에서 거래되었다. 면업은 여말에 文益漸이 원나라에서 목면 종자를 가져와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 목면의 전래에 따라 조선 초기 의료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의 주된 의료는 마포였으나 태종대에 목면이 서민 의료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세종·세조 때에는 아래로 천민에 이르기까지 목면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 한편 세종 때 이래 목면은 일본으로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일본의 목면 재배는 조선보다 1세기 이상이나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16세기에 목면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代役價나 노비 身貢 등이 모두 면포로 납부되었다.

제지업은 종이의 용도가 많아 발달하였는데 관영수공업이 위주이나 민영수공업도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공장과 외공장의 전체 인원 중 紙匠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위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는 造紙署가 있었고, 지방에는 각 읍마다 官楮田에서 官備貢物로 국가의 수요를 조달하였는데 주로 하삼도와 강원도에 배정되었다.

造船은 민간 조선업이 없지 않았으나 관부의 조선관리가 위주였으며, 典艦司에서 造船을 관장하였다. 세조 때에 새로운 兵漕船을 개발하여 전시에는 병선으로, 평시에는 조운선으로 사용하였다. 《경국대전》에 보이는 大·中·小猛船은 병조선을 그 크기에 따라 일컫는 것이다. 조선 초부터 제조되어 왔고 임진왜란 때에 위력을 보인 거북선은 平屋船에 두터운 널빤지(蓋板)를 복개한 군선이다.

염업은 모든 해안에 鹽盆을 두어 소금을 생산하였다. 고려시대에 비하여 염분 수가 배로 증가되고, 황해·평안·함경도 해안에까지 염분이 널리 설치되었다. 조선의 소금은 陸鹽이 없고 海鹽 위주이며, 제염방식은 海水直煮法에서 無堤鹽田式으로, 다시 有堤鹽田式으로 발달해 갔으며, 이 시기에는 아직 세 가지 제염방식이 함께 행하여졌다. 소금의 생산은 鹽干이 신역으로 官鹽을 제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염분의 私占, 염간의 도망 등으로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

수산업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획물의 종류가 풍부하였고 연안어업이 개발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어획물에는 어류·패류·갑각류·수산동물·해조류 등이 있다. 漁法으로는 어망·漁梁·釣漁 등이 있는 바, 어망이 널리 사용되었고, 어량은 서해안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조어에는 외줄낚시와 주낙이 있었다. 수산양식업으로 양어가 있었으며, 해조류 양식 중 김양식이 조선 초기에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수산제조품으로는 乾製品이나 젓갈류가 있었다. 어장은 원래 私占을 금하고 司宰監에 속하게 하였으나 어장의 사점이 일반화되어 갔다.

국가재정의 수입원은 租稅·力役·貢物 등이었다. 그리고 세조 때에 일종의 세출일람표라 할 수 있는 橫看의 제도가 마련되고 세입일람표라 할 수 있는 貢案이 재조정된 것은, 국가재정제도에 있어서 일대 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조세의 수취는 건국 초에 과전법의 조세규정에 의하였으나 세종 때에 새로운 전세제도인 貢法으로 개혁되었다. 과전법의 조세규정은 1/10 수조율과 損實踏驗法 등이 중요 내용이었다. 공법은 손실담합의 폐단과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전세제도의 개혁으로 田分6등법, 年分9등법, 1/20稅, 常耕의 正

田과 時耕에 한하여 수세하는 續田과의 구분, 災傷田 10결 連伏에 의한 감면규정 그리고 田結制의 재조정 등이 중요 내용이었다. 손실담험법이 休閒法에 알맞는 조세규정이려면 공법은 連作法에 적합한 조세규정으로 조정된 것이다.

역역은 徭役과 國役으로 구분되었다. 요역은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 민호의 노동력을 무상으로서 정기·부정기적으로 징발하는 제도이다. 요역의 기준은 태조 원년의 計丁法에 의한 3등호제이었는데 정종 원년에 人丁과 田地의 기준을 함께 한 計丁計田折衷法으로 개정되고, 세종 17년에 計田法에 의한 5등호제로 재개정되었다. 《경국대전》에 요역은 出丁기준이 ‘田八結 出一夫’로 되어 있고, 동원 기간은 1년에 6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그 기준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역은 항구적인 역이며 身役 혹은 職役이라 할 수 있고, 그 신분에 따라 良役과 賤役의 구별이 있었다. 따라서 역의 내용도 軍役, 혹은 吏校, 혹은 干尺, 혹은 노비身貢 등 다양하였다. 국역 부담에 있어서 당번의 의무를 지는 자는 戶首라 하고, 호수가 당번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뒷바라지 하는 자를 奉足이라 했다. 국역 부담의 단위인 戶는 대개 3丁 1戶로 삼는 것이 통례이었다. 세조 때에 봉족제는 保法으로 개편되었는데, 보법에서는 봉족을 保人이라 부르며 2丁을 1保로 삼고, 이제까지의 戶 기준 대신에 丁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경국대전》에 보인의 호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인 保布는 매월 면포 1필로 규제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貢物은 민호가 토산의 현물을 공납하는 것으로서, 각 주현에 배정되면 다시 민호에 배정되었다. 공물은 민호에게 현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혹은 민정을 동원하여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현물의 대가로 미·포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민호에 나누어 배정되지 않고 관아에서 직접 마련하여 납부하는 官備貢物도 있었다. 그리고 매년 바치는 常貢 이외에 필요에 따라 징수하는 別貢이 있었다. 공물의 分定은 실제 지방관의 임의에 맡겨지고 향리가 그 실무를 맡았으며, 공물의 종류도 잡다한 까닭에 그 분정에 있어 공평하기가 어려웠다. 공물의 수납과정에서 防納과 點退는 큰 폐단이었다. 방납은 공물청납업자가 공물납부자의 물품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납

공자로부터 배 이상으로 징수하는 일을 말하며, 점되는 공물납부자의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규격미달의 구실로 그 물품을 도로 무르는 것을 말한다. 방납은 관료·양반·승려 등 공물청납업자가 모리를 일삼던 일이며, 점되는 공물 수납의 실무자인 吏胥의 농간이었다. 이러한 공물 수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후일 공물의 田稅化인 大同法이 실시된 것이다.

공물 이외 토산의 현물을 공납하는 進上이 있었다. 공물은 납세의 일종으로 각 주현 단위로 매년 1차 상납하는 것이나, 진상은 본래 납세의 의무라기보다 국왕에 대한 外官의 禮獻으로 궁중에 쓰일 물품을 각 도 단위로 감사와 병사·수사가 월 1차 상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도 공물과 같이 의무적인 것이어서, 각 도 단위라 하지만 역시 주현에 나누어 배정되어 민호의 부담이 되는 점에서 공물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공물과 진상제도는 국가와 관부 또는 왕실용으로 책정된 것이지만 실제 지방의 민호에서 징수하여 왕실과 관부에 상납하는 과정에서 공물 또는 진상을 바치고 남은 餘分을 갖고 외관들은 그것을各司 관원과 재정관인·친척들에게 증여했으며 그 여분은 담당 吏胥들에 의해 또한 그들 이서 사이에 나누어 가졌다.

교통기관으로 驛과 院이 있었다. 역에는 驛子를 배치하여 공문의 전달, 공무여행, 관물수송 등에 역마를 제공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 41개 驛道에 537개 역이 설치되어 察訪·驛丞이 관장하며, 역마 이용자에게 중앙에서는 尙瑞院이, 지방에서는 감사와 병사·수사가 마필 수가 새겨진 馬牌를 발급하였다. 원은 공무 여행자와 행려자의 숙식을 위해 반관반민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驛館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전국 1,310개소의 원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에 공사 여행자의 숙식은 대개 客舍나 민간업자에 의해 대행되었으며, 중기에는 원은 없어지고 원터에 주점·주막이 발달하였다.

漕運은 水運과 海運으로 각지의 漕倉에 수납된 세곡을 서울로 수송하는 것이었다. 《경국대전》에는 9개 조창제로서 각각 조창의 收稅구역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평안·함경 양도의 세곡은 조운하지 않고 고창에 그대로 두었다. 조운은 주로 관선에 의해 행해졌으나 명종 때 이래 사선의 貨船制가 행해졌다.

烽燧는 중요한 통신기관으로 산봉우리의 봉수대를 연결하여 변경의 긴급한 상황을 서울 南山(木覓山)에 전달하는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전국의 주요 봉수망은 5개 간선으로 되어 있고 5炬法으로 변경의 상황이 중앙에 보고되었으며, 대체로 변경의 상황이 12시간이면 서울에 전달될 수 있었다.

고려말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北虜·南倭의 침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사회를 지향하는 사대부정권이 수립되었다. 특히 그들은 전통적인 불교와 도교 및 淫祀 등 잡다한 토속신앙과 관습을 유교적인 의례로 개혁하는 한편 양반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명분과 인륜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즉 유·불 교체를 비롯하여 신분계층과 향촌구조, 가족제도와 혼·상·제례 등의 변화가 수반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의 안정과 권농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의식주 생활이 크게 향상되고 인구와 농지 또한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인구조사가 실시되어야 했다. 조선왕조는 고려말의 전제개혁에 이어 개국 초부터 奴婢辨正事業과 함께 호구 파악에 정력을 쏟았다. 호구시책 가운데 호적법의 제정과 호구 成籍의 勵行 및 이의 실시를 돕는 호패법·인보법의 실시와 노비변정사업, 군액확보책, 流移民 방지책 등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법제적인 호의 등급은 그 호의 丁數·가산 또는 가옥 間架數의 다과에 따라 대·중·소의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고려말 이래의 통례였다. 고려말의 計丁法에 따라 정해진 3등호제는 개국 초의 計丁·計田 절충법을 거쳐 계전법으로 바뀌면서 호의 등급도 大·中·小·殘·殘殘의 5등호제가 되었다. 한편 자연호의 경우는 신분과 빈부의 차이에 따라 수십 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있는가 하면 불과 서너 명의 소가족도 있었는데,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호당 구수가 평균 4~5명인 소가족이었다. 호적 정리와 함께 五家作統法이라는 切隣의 공동책임제와 호패라는 신분증명의 패용을 아울러 실시하게 한 것도 호구의 파악을 위한 제도였다. 초기의 호구 파악 노력은 마침내 세조 7년(1461)에 이르러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전국적인 호구조사가 실시되어 호 70만, 구 400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세종조~성종조에 이

르는 기간의 전국의 실제 호구수, 즉 자연호는 대략 100만에서 150만 내외이고 인구수는 600~700만 내외가 되며, 국역을 지는 남정수는 100만 내외가 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 초기 인구의 지역적 이동은 크게 홍황·전란으로 인한 유이민과 국가정책에 의한 북방사민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말 이래 왜구의 침입으로 삼남의 연해지방이 많은 피해를 입어 인구의 유출이 많았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계와 중부 내륙지방은 인구의 유입으로 충실한 편이었다. 그러나 세종조부터 왜구가 종식되고 정치·사회적인 안정과 함께 주민 안집책과 권농책 등으로 삼남지방에는 인구의 유입이 많은 대신, 강원도와 서북지방은 주민의 유망으로 점차 피폐해 갔다. 이에 조선 개국과 더불어 추진된 북방개척과 徙民入居 정책이 세종·세조·성종조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인구이동 외에도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됨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있었는가 하면, 중앙에서는 집권세력의 교체에 따른 신흥세력의 上京從仕와 실각세력의 낙향이 수반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사족과 이족의 분화에 따라 종래의 읍치지역에서 향촌지역으로 인구가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결과 초기에는 비교적 충실했던 서북지방은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전결수가 감소하였고, 반대로 삼남지방은 유이민의 유입과 활발한 개간으로 인해 전결수가 증가하여 여말에 100만 결 미만이었던 것이 세종조에는 160여 만 결로 격증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신분제도는 고려 말·조선 초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변화와 성리학적 신분관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새 왕조의 개국과 함께 직면한 신분 재편성의 문제는 지배신분의 이원화와 양인신분의 확대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즉 지배층인 양반의 배타적·신분적 우위의 확보, 중인신분의 창출과 고정화, 국역을 부담할 양인층의 확대 및 노비신분의 확정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했다.

조선시대의 사회신분은 학자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법제적인 구분과 사회 통념상의 구분이 있다. 먼저 법제적으로는 크게 良·賤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양인은 과거 응시자격과 관료로의 진출이 허용된 자유민으로서 조세·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으며, 천인은 부자유민으로서 개

인이나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賤役을 담당하였다. 양인은 직업·가문·거주지 등에 따라 양반·중인·상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으로는 士族이란 지배계급이 고려시대부터 피지배층인 일반 양인(상민)과 구분되어 있었고, 그 사족은 조선 초기에는 양반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15세기에는 양반(사족)·상민·천인의 세 계층으로, 16세기 이후에는 중인층의 형성으로 양반·중인·상민·천인의 네 계층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에 있어 많은 의견이 대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법제도에는 양친의 규정만 보이는 데 비해 실제적으로는 良身分에서 양반·중인·양인이 별도로 파생되어 나간 적지 않은 사례를 당시의 사료나 사회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세기는 사회의 신분층이 크게 개편되어 간 시기로, 양인층의 확대와 함께 지배층의 계층 분화가 진행되었다. 양인층의 확대책으로는 노비의 변정, 승려의 환속, 身良役賤層의 설정, 新白丁의 양인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집권사대부들은 향리·서리·기술관·서얼 등이 관료로 진출하는 길을 크게 제약하였는데, 그 가운데 향리의 과거 응시자격의 제한, 원악향리의 처벌, 군현 개편에 따른 향리의 대폭적인 이동, 그리고 限品敍用制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신분의 완성시기와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신분의 완성시기에 관한 견해로는 15세기설·16세기설·17세기설이 있고, 그 종류에 대해서는 4종·3종·2종설 등이 있다.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뒤에 지배계층인 사족을 의미하는 말로 변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가 대부분이었으며, 과거·음서·군공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급관직을 독점하였다. 또 양반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특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양반은 이른바 士·農·工·商 가운데 사족에 해당되는 최상급의 사회신분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이었다. 또 유학을 업으로 하고 아무 제한 없이 관료로 승진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 실제로 중요한 관직과 제반 특권은 모두 이들이 독점하였으며 名敎와 禮法을 준수하

는 사회의 지도적 계급으로서의 정신적 의무만을 지녔던 것이다. 그들은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관료 내지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던 신분이었다.

중인은 기술관 및 향리·서리·토관·군교·역리 등 경·외의 아전직과 양반에서 격하된 서얼 등을 일컫는다. 중인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분계층이라는 넓은 의미의 중인과, 기술관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었다. 이 가운데 넓은 의미의 중인은 15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중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있는 중간신분으로서의 중·외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신분 내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 근접한 곳에서 거주하였다. 그들의 성향은 기회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거나 모나지 않고 세련된 처세 등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을 많이 공유하며 양반층에서 도태된 서얼층과 함께 중인층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인층은 양반지배 체제하에서 양반들로부터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정의 실무를 세습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실속이 있었고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특히 中·外 官衙의 행정실무를 관장했던 서리층은 비록 역사의 표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官衙와 官員 사이를 연결하면서 실제 권력구조면에서나 권력의 행사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더구나 빈번한 政變과 士禍, 거기에 수반된 양반관료의 잦은 교체에도 행정상의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왕조의 기본 운영체제가 유지된 것은 이들의 吏屬이 관아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胥吏는 “양반관료의 乳母”라는 俗語가 유행하였다. 또한 “江流(守令)石不轉(鄉吏)”이라 표현하듯이 郡縣 향리층은 고려 초기 이래 지방행정 실무를 세습하면서 격변기마다 그 시대적 전환기를 잘 포착하여 다음 시대의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해 나간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상민은 평민·양인이라고도 부르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공장·상인을 말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출세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료로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상민은 보통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생산계급으로서 납세·공부·군

역·요역 등을 주로 담당하는 계층이다. 특히 병역은 양인을 주체로 하며 실제 입번하는 군정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奉足(保)과의 연대로 단위를 이룬다. 당시에는 피지배층 가운데 양인·천인의 신분상 구별이 있어 천인은 천역을, 양인은 양역을 담당하되, 양인으로서 천역을 담당하는 수도 있어 이것을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천인에는 노비와 함께 白丁·廣大·社堂·巫覡·娼妓·樂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가 천인은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천시되었을 뿐이다. 즉 노비와 그 노비에서 파생된 창기·의녀·악공 등은 명실상부한 천인이었으나 백정·광대·사당·무격은 원래 천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천시되면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천시되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천인화된 것으로 보인다. 천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노비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 있는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해 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이러한 공·사노비는 또한 立役奴婢와 納貢奴婢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는 관부의 노역이나 주인집의 잡역에 종사해야 하며, 후자는 관부나 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신공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각각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사노비는 주인에 의하여 세전됨으로써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되기도 하였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노비인 경우에도 그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반들의 노비 증식책에 따라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양반사회는 노비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분의 귀천과 역의 귀천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사가에 있어서나 노비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국가기관의 온갖 천역에 公賤이 동원되듯이, 私賤은 주인 내외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서 온갖 생산활동과 사환 및 잡역에 종사하였고 외거노비는 주인의 전지를 경작하거나 일정한 신공을 바쳤다. 자식 없는 노비의 재산은 그 주인에게 귀속되며 노비가 개간한 토지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비제도는 사회·경제적 조직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고 禮俗과 風教를 진작시키는 데도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아주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양반이 반역죄를 저질러 노비가 되거나,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중인과 상민이나 노비가 과거나 군공 등을 통하여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간의 이동이 그리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 초기는 신분제가 재편성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중기 이후보다는 신분이동이 어느 정도 개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는 고려적인 불교의식과 토속적인 음사 및 비종법적 가족제도가 《朱子家禮》와 《小學》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성리학적 유교사회로 바뀌어 갔는데, 이러한 변화는 17세기를 분기점으로 후기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夫妻兩邊의 방계가족의 형태, 동성결혼과 異姓收(侍)養, 男歸女家婚과 자녀균분 상속제, 부처 또는 부자의 異財, 가계상속에 있어서의 ‘兄亡弟及’, 자식이 없는 경우 불입양 및 자녀 윤회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유제를 이어받은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주자학적 禮制와 종법적 가족제도에 입각하여 종래의 유제를 부계친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동성결혼과 이성불양, 親迎禮와 장자봉사제, 자녀차등상속제와 같은 가족제도로 개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상·제례와 장법도 대체로 15세기 전반까지는 전통적인 불교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소수의 사대부 가정에 한해 《주자가례》가 수용되다가 성종조 이후에 가서 점차 유교적인 상례와 제사 절차에 따르게 되었다. 특히 남귀여가혼·자녀 균분상속제·자녀 윤회봉사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 초기의 가족 및 상속제도는 그것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성씨, 본관 의식과 족보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귀여가혼은 결과적으로 딸(사위)과 그 소생(외손)을 아들 또는 친손과 동일시하면서 부처·부모·자녀·내외손을 각기 대등한 위치에서 간주하려는 쌍계적[兩側的] 친족체계를 낳게 하였다. 그러한 혼인풍속과 가족제도는 다시 자녀 균분상속제를 낳게 하였으며, 그 균분제는 다시 부모의 제사를 균분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관행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딸이 있으면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입양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다시 자녀와 그 내·외손들을 한 마을에 모여 살게 하는 居住相을 낳게 하였다. 한편 각자의 혈통과

재산은 부모 양쪽을 비롯한 내·외 조상으로부터 이어받게 되고 그 양변의 혈통과 재산의 유래를 소급, 추적하는 데서 世系圖·八高祖圖·族圖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양반사회에 있어서 혈통의 유래와 승음·응시·출사 및 재산의 傳係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당시 성과 본관에 대한 의식과 그 姓貫 자료인 족보의 편찬체제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조선 초기의 의식주 생활은 유교적인 합리주의와 사대부의 검약정신에 영향을 받아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향상되어 갔다. 목면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종래의 마포·저포와 함께 국민 衣料의 주종으로 자리잡게 되고, 중국으로부터 각종 예복과 견직물이 유입되면서 옷감도 다양해져서 의생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한편 고려 말 이래 새 선진농법의 적용으로 새로운 품종이 개량되고 시비법 및 재배법이 개발됨으로써 주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류·채소류·과일류가 생산되고 풍부한 어패류 등으로 식품이 다양해졌다. 또한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궁·사의 건물은 춥고 더운 계절에 맞추어 따뜻한 방과 서늘한 마루를 갖추므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세종 때부터 화재 예방책으로 초가 대신 기와를 권장하자, 중외 관아·누정·창고 및 사대부·토호들의 가옥은 기와집으로 바뀌어 갔으나 일반주민의 주택은 거의 초가였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유교적인 민본주의와 농본정책을 표방하여 여러 가지 교화사업과 농민생활의 안정책을 실시하였다. 양반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사회신분 질서의 유지와 농민의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반 지주들의 토지점령을 억제하고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잡역에 동원되지 못하게 하고 각종 재해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조세와 요역을 감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진휼과 의료·구제시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지배층은 고려 말기의 시련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로서의 자체 정립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토와 그 주민에 대한 새로운 파악을 통하여 국가체제와 통치방식을 새로운 형태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새로운 敎學으로서의 性理學을 유일한 지배이념으로 정립하고, 새로운 통치준거로서의 여러 법전을 정비하며, 일상의 언

어에 맞는 한글을 창제하였다. 조선 초기에 정립된 문화형태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은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기본 계층이 새로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所耕田’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 겸 경작지를 자기 혈연가족으로 경영하면서 국가를 직접 상대하는 양인 자영농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농층이 보편적으로 정립되었다. 국가는 이 계층에게 기본 국역인 군역을 부과하는 한편, 이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부세제를 운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計田法的 수취제도라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근착하고 있는 현실의 자영농민층은 일상의 생산활동에서부터 외적을 물리치는 일일까지 결코 무시하지 못할 實在로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성장을 수행함으로써 이 시기 지배층에게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더 크게 일신시키기에 이르렀다. 조선왕조의 지배층은 이전의 일방적인 지배방식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들을 교화해가면서 통치하는 방식으로 지배체제를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른바 위민정치나 훈민정책이 강조된 사실이 그 같은 현상을 적실히 말해 준다.

조선 초기 문화형태의 성격을 규정한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교학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전의 불교라든가 전통유교에 비하여 보다 理智的인 새로운 계층적 존재론과 인식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정통론·명분론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용유하고 있었다. 성리학적 인식론은 객관적 사물의 실재를 긍정하면서 좀더 그 이치를 탐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초기 문화의 성격은 양인 자영농층의 보편적 성장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성리학적 가치지향의 국가체제의 확립, 즉 농민층의 객관적 실체가 사회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것의 실재를 새로이 인식하고 그것을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지배질서 속에 다시 편성함으로써 국가체제를 확립한다는 두 가지 측면의 통일적 작용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통치문화는 우선 지배체제를 객관적 준거에 따라 개선하여

정립한다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토지와 호구를 중심으로 하는 國勢의 파악은 가장 급선무였다. 이에 일찍부터 호적과 군적을 작성하고 양전을 거듭하는 한편, 그 전체를 종합한 각 지역의 地理志를 여러 차례 편찬케 하였다. 그래서 작성된 《八道地理志》라든지 그것의 종합형태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각 군현단위로 名號와 연혁 및 역대의 領屬관계, 소금·철·양마 등 특수 산물의 유무, 토지의 肥瘠과 기후 및 민속, 호구수와 전결수 및 토산물의 종류, 조세·歲貢과 그 轉輸의 방법, 영·진의 위치와 군사·전함의 수, 부속도서의 정세, 煙臺·烽燧, 왕릉 및 선현의 묘, 土姓과 지역 출신 명현 등의 10여 항목에 걸쳐 실로 주밀한 파악이 이루어졌다.

국가 수취제도의 정비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즉 세종대에는 田制 詳定所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국왕이 친히 독려하면서 새로운 양전·수세법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貢法田稅制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 관민들에게 새 법의 편의 여부를 물어보도록 해서 여론을 청취한 일도 있었다. 이제 국가의 전세제도와 같은 큰 제도의 변천을 논의할 때에는 어느덧 농민층까지 그 논의의 대상으로 참여시킬 정도로 역사는 진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척도를 考正하고 통일하게 된 것도 이 시기 문화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래서 이제 도량형제도의 기본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토지의 양전이라든가 의례·음악의 音律을 조종하는 데에도 일정한 객관적 기준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통치제도의 정비는 국가재정의 지출면에서도 이루어졌다. 가령 이전까지는 중앙의 각 기관에서 供用하는 물품의 일정한 지출규정이 없었던 까닭에 많고 적은 것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와서 호조의 계청에 따라 비로소 ‘式例’를 정해두고 그 규정에 의해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또 요컨대 임금의 所用도 유한하여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徵斂에 범도가 없고 용도 또한 무절제하였던 이전까지의 현실을 비판하고 오랜 세월을 두고 가다듬은 결과, 성종대에는 이른바 ‘式例橫看’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재정지출 규정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납을 비롯한 수취제도의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이전에는 지배층의 자의에 의존해 오던 재정수납이 이 시기에 와서는 객관적 준거를 가진 제도적인 것으로 전환하기에 이

르렀던 것이다.

한편 조선 초기의 통치문화는 이전에 비하여 교화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는 편이었다. 인간은 天賦의 理를 타고났으므로 비록 온전하지는 못할 망정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녔다. 이러한 인간을 상명하복의 통치질서 속에 안착시키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가르쳐 깨우치고 길들여야 하는 것이 필연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 교화의 기본 지향은 명분과 정통성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도덕규범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세종대 忠·孝·烈에 관한 기본덕목을 널리 가르치기 위하여 《三綱行實圖》를 펴낸 것은 교화의 구체적인 실례이다.

여기에서 충·효·열의 덕목을 최고의 윤리규범으로 거듭 주장하는 한편, 그것을 범하는 경우는 綱常罪라는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이른바 嫡·庶의 차대가 이 시기에 와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사실도 명분론의 하나인 정통론과 관련된 것이었다. 각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고 ‘守令七事’에 학교교육의 흥기를 규정함으로써, 성리학적 도덕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王化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장려하였다. 이 시기에는 개인으로부터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국가체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명분과 직역에 따른 계층적 사회규범과 성리학적 도덕관념이 일원적 체계로 점차 자리잡아 갔다. 가령 主·奴의 관계를 君·臣의 관계와 동일하게 명분론적 규범으로 설명하게 된 것도 이 시기에 와서의 일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기본의례를 새로이 정비하기 위하여 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5禮를 강구·편찬케 하였는데, 그 순차에 있어서 송나라의 예제를 따른 것은 역시 성리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가령 5례 가운데 가장 중히 여기던 吉禮를 두고 말할지라도, 모든 祭儀에는 공경과 정성을 다하되, 명분에 맞지 않는 과람한 경의를 표하거나 혹은 아첨함으로써 복을 빌어오던 형태는 國家祀典에서 완전히 혁파되었다.

성리학적 명분론은 華·夷관계의 명분 또한 강조하였다. 이에 중국에 대한 事大의 예를 다하는 한편, 오랜 국가의례로 지켜오던 제천행사를 천자국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혁파하였다. 그래서 국가의례의 정리에서도 명분론을 스스로 지켜서 자국을 제후국으로 자처하였다. 성리학적 세계관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 이룩된 큰 업적으로는 訓民正音의 창제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자국의 백성들이 날마다 쓰는 국어를 기준으로 바로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든 것이었다. 국어에 맞는 글자가 창제됨으로서 이후 자국의 말과 글 자체의 발전은 물론, 이른바 기층문화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트이게 되었다. 그래서 보편적 농민층을 기본으로 하는 절대다수의 국가 구성원이 비로소 자신의 의사를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문화 생활권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른바 동족문화라는 것의 성립이라든지 그 변증법적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독자적 바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성리학은 전통유교보다도 훨씬 더 배타적인 교의를 지닌 지배이념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지배층은 고려시대까지 국가적으로 숭상해오던 불교라든가 도교를 이제 이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적 숭상은 결정적으로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祖上神·家廟 외에 다른 잡다한 祀神행위는 이를 淫祀로 금단하였다. 지방에서의 祀典의 정비는 중앙의 축소판으로 각 고을마다 1廟(文廟), 3壇(사직·성황·여단)을 두었다.

먼저 불교에 대해서는 태종과 세종대에 대대적인 정리를 단행하였다. 종래 전국적으로 불교를 보호·관리해 온 僧錄司는 이 때 아예 혁파되었다. 불교 종단도 禪·敎 양종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소속 사원도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불교사원에 절급해오고 있던 收租地를 극히 일부만 남긴 채 축소하고 그 노비는 아예 혁파하였다. 그리고 度牒제도는 승려가 되는 길을 극히 제한하였고 僧科도 점차 축소되어 16세기 후기에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승려의 도성출입도 금지되어 갔다. 오히려 국가에 어려운 역사가 있을 때마다 다수의 승도를 동원하여 복역시키는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민간신앙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고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도피처로 불교가 선호되었던 것이다. 한편 도교 관련 여러 국가 기관도 점차 혁파되고 오직 昭格署만이 남아 의례적인 齋醮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사림정치가 성숙함에 따라 소격서마저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과학과 기술은 자주적 성향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특히 세종 때에 전개된 과학과 기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集積된 한국과학을 결산하는 것이었다. 중국과학뿐만 아니라, 문명의 교류에서 얻어진 모든 지역의 과학문명을 하나로 용융시키는 도가니와도 같았다.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학문·문화·예술적 성과가 짧은 동안에 이루어진 적은 한국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조선식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전통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서방세계는 물론, 아랍세계와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태종 3년(1403)에 왕은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癸未靑銅活字의 주조를 강행하였다. 이 사업은 세종에 의해 훌륭하게 계승됨으로써 조선식 활판 인쇄기술은 크게 발전하고 완성되었다.

이러한 발전적 업적은 우리 나라 과학의 황금시대로 불리는 세종 때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雨量計의 발명도 그 하나이다. 세종 23년(1441)에서 24년에 걸쳐서 測雨器와 水標라고 명명된 강우량의 측정기가 발명되어 강우량의 수량적 측정법이 완성되었다. 또한 새로이 천문대도 설립되었다. 大簡儀臺라고 불린 景福宮의 천문대에는 簡儀·水運渾天儀와 渾象·圭表·丁方案(方位指示表)·각종 해시계 등이 설치되고, 自擊漏라고 불리는 自動報時 물시계와 屋漏라고 불리는 天象時計 등의 장치가 부설되어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군사기술에서도 조선의 특색이 강하게 나타났다. 조선식 火砲와 龜船의 출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화포는 중국의 영향에 의하여 고려말부터 실용화되었는데, 세종 때에 이르러 중국 양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조선식으로 규격화되어 화포의 전반적 改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화포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그 다음 왕대에 나타난 火車는 동시에 다수의 로켓을 발사하는 일종의 장갑차였다. 한편 귀선은 고려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서 격심했던 왜구의 침입으로 속을 썩인 조선정부가 그 白兵戰術에 대비하여 만든 것이며, 고려의 突擊戰艦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만들어 낸 조선 특유의 전함이다. 그것은 15세기 초에 건조되었는데, 그것이 교묘한 전술에 의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것은 16세기 말의 임진왜란 때였다.

농업기술도 세종 때에 큰 발전을 보았다. 그 때까지의 한국 농업기술은 주로 중국 농서를 교본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농서와 실제의 農

法,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 사이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 차질을 해소하는 길은, 조선의 농법을 더욱 앞선 기술에 의해서 개량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세종 11년에 완성된 《農事直說》이다. 그것은 각 지방의 농법을 널리 조사하여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발전된 기술을 요약한 것이다.

醫學 분야에서는 한국 醫藥學의 체계화와 동양의학의 집대성이 특히 주목된다. 고려말에 시작된 한국산 의약에 의한 독자적 처방의 체계화는 조선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었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걸쳐서 《鄉藥濟生集成方》과 《鄉藥本草》가 편찬되어, 한국산 의약에 관한 의학적·本草學的 지식이 정리되었다. 이것들을 하나로 요약하고 의학학적 연구를 더해서 체계를 세운 것이 세종 15년(1433)에 완성된 《鄉藥集成方》이다. 이것은 의·약학 분야에서 기존의 중국 의존에 대한 탈피로서 획기적인 일보 전진이었다. 이들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이 《醫方類聚》의 편찬이다. 세조 원년(1455)에 완성된 이 의학대백과사전은 우리 나라와 중국의 의서 153종을 집대성한 것으로 15세기 최대 의서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의방유취》는 조선의 개성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

조선 초기의 문학은 고려의 것을 계승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세종 때 훈민정음, 즉 한글의 창제는 단순한 문학적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문자생활에 일대 혁명을 예고했다. 한문학은 성리학을 이념적 바탕으로 삼고 있던 조선왕조의 건국 주역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조선 초기의 그것은 불교사상과 도교사상을 배척하고 성리학 유일의 논리를 내세웠다. 그들은 불교사상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문학은 ‘載道之器’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文以載道論’은 이후 權近의 《入學圖說》 등에 의해 확고한 이론적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조선 초기 한문학의 주류로 떠올랐다. 또한 성종 때 徐居正 등은 중국의 《文選》에 대응하여 《東文選》을 발간함으로써 조선 초기 詞章派 문학의 기틀을 잡았다. 국문 시가문학은 樂章·景幾體歌·歌辭·時調로 이루어졌다. 악장·경기체가·가사는 敎述詩이며, 노래로 부르는 시이고 음악이면서 문학이다. 이들은 악장에서 경기체가로, 경기체가에서 가사로 올수록 음악으로서의 구실은 줄어들고 문학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우리말 노

래인 악장은 조선왕조의 창엽과 더불어 등장했는데, 나라에서 거행하는 공식적 행사에 소용되는 노래이다. 그러나 악장은 목적하는 바나 나타내는 내용은 아주 뚜렷하지만, 독자적 형식을 형성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악장과 경기체가 같은 한시에서 국문시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다가 시조와 가사가 점차 국문학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조선 초기의 문자생활은 한자로 행해졌다. 나라의 공적인 기록이나 문서, 즉 역대의 실록이나 각종 법령, 關文이나 牒呈 등은 모두 한자로 쓰여졌던 것이다. 이 가운데 실무와 관련된 법령이나 공문, 외교문서 등은 한자와 함께 이두[吏讀]가 쓰였다. 이처럼 이두를 포함하여 한자로 행하던 문자생활은 공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학자들의 문집은 한문으로 이루어졌으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원문서와 재산매매나 증여의 文記 등은 이두로 작성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생활은 일반백성들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세종 25년(1433)에 훈민정음, 곧 한글이 창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한자에 의한 문자생활을 대신하지는 못하였다. 공적인 문자생활은 여전히 한자로만 행해졌다. 공적이 아닌 문자생활에 국한하여 한글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자나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거나 백성의 교화나 종교의 홍보를 위한 문헌의 간행에, 아녀자들의 주고받는 편지에 한글이 사용되었다. 한글이 창제됨으로써 한자와 한글에 의한 우리나라 문자생활의 이중구조는 조선시대 전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한글은 공적인 문자생활에 등장하지 못하였으나, 창제 이후 꾸준히 보급되어 사용의 영역을 확대하여 나갔다.

조선 초기에는 건국과 함께 새 문화창조의 기운으로 음악·미술 등 예술분야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조선 초기 음악은 예악사상에 의한 雅樂부흥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종 때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조선 초기의 음악문화를 특징짓는 아악부흥은 새 왕조가 성리학의 지배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악사상을 중요시한 결과로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 음악적 업적은 《樂學軌範》에 정리되었다.

조선 초기의 회화는 고려시대 회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중국의 화풍을 수용하여 다양한 한국적 화풍을 형성하였으며, 조선 중기는 물론 일본 室町

시대의 수묵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아시아 회화사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때에는 山水畵를 비롯하여 人物畵・翎毛畵・花鳥畵・草蟲畵 등 다방면의 회화가 발전하였다. 이의 제작에는 왕실·사대부 출신의 화가들과 화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영향력이 컸던 것은 安堅의 화풍이었다. 특히 〈夢遊桃源圖〉는 안건의 대표작으로, 전체적인 구도와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세부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그의 탁월한 창의성과 지혜, 고도로 숙달되고 세련된 표현력과 묘사력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안건의 그림, 안평대군 등의 시와 글씨가 어우러져 ‘詩・書・畵’ 三絶의 경지를 이루고 있어 일종의 종합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서예는 원의 새로운 서풍을 받아들인 고려말의 전통을 이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고려말에 유입된 원나라 趙孟頫의 松雪體가 널리 확산되어 조선 제일의 서체로 자리잡았으며, 우리 나라 전래의 서풍에 큰 영향을 끼쳤던 王羲之體의 전통이 조선 초기에도 변함없이 존중되어 서예의 기반을 이루었다. 이 밖에 고려말 서풍이 조선초로 이어져 金石과 寫經에 그 영향을 다분히 나타내었다. 아울러 훈민정음 반포 초기의 한글서체는 점차 쓰기에 편리한 筆寫體로 변화하였다.

도자기 공예기술에서 高麗靑磁는 조선에 이르러 특징있는 粉靑沙器를 거쳐 白磁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고려의 자기와는 형식과 성질이 다른 조선 백자로 변모한 것이다. 분청사기는 백토 扮裝으로, 백자는 백토로 이루어지므로 표면이 백색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청화백자는 세종 때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입되어 15세기 중엽부터는 조선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된 사기인데, 그 기형과 청화문양의 주제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3)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15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여 정권을 독점해 왔던 훈구세력이 양반관료제의 모순을 야기하고 있었고, 이에 수반하여 과전법의 붕괴, 지주제의 발달, 상품의 유통과 貢納制의 모순 심화, 軍役制度의 붕괴, 국제교역의

발달 및 마찰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사림파였다. 사림파는 재지중 소지주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점차 훈구파를 대신할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아 갔으며, 그들은 훈구파 지배하에서 야기된 각종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道學政治의 이념을 바탕으로 향촌질서를 재편하는 한편 書院의 건립, 性理學의 보급, 경제개혁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볼 때, 15~16세기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정치사회적 갈등구도 속에서 후자가 전자의 대체세력으로 등장하여 마침내 사림정치를 실현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훈구세력에 의한 양반관료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가는 가운데 과전법이 붕괴되고 지주제가 발달하였다. 과전법의 붕괴로 국가기관 절수지나 私處 절수지 모두에게 수조권적 토지 지배의 모습이 점차 쇠퇴하여 갔고,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소유권적 토지 지배 형태가 확립되었다.

과전법의 붕괴와 함께 사족 관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들은 상속·혼인이나 개간·매득 등을 통하여 농장을 확대하였다. 또 농장의 확대가 일반적인 추세였지만, 전세·요역·공물·군역을 바침으로써 국가를 지탱하였던 양민 자영농층의 개별 경영이 이 시기의 기준적인 영농형태였다. 그러나 16세기로 내려오면서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양민 자영농층의 몰락으로 소농민경영의 분화가 가속화하여 병작영농이 점차 보편적인 영농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16세기의 조선에서는 사족의 地主化와 대다수 하층민의 無産化라는 사회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상업에서는 점차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장시의 발달로 이어졌다. 16세기가 되면 장시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경상·경기도 등지로 확산되어 갔으며, 특히 임진왜란을 겪은 후부터는 장시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出市 횟수도 잦아지는 등 더욱 성행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 중에서 상인으로 전환하는 인구도 늘어났다. 장시의 성립으로 인한 유통경제의 발달로 화폐경제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 시기의 주된 화폐는 면포였다.

이에 따라 연산군 때를 거치면서 횡간이 무시되고 加定·引納 등이 일어

났으며, 불산공물의 분정은 구조적으로 방납을 조장하고 공물부담 규정의 모호성은 부담의 극심한 不均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방납은 당시 권세가들의 비호하에 행해져 농민들에게 엄청난 해독을 끼쳤으므로 세조 때부터 그 폐단에 대한 시정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방납은 유통경제의 발달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방납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유통경제의 발달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즉 공물의 대가로 미곡이나 포를 거두어들이는 형태의 운영이 그것이었는데, 결국 이는 大同法으로 귀결되었다.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신분제와 兵農一致制에 입각한 군역제도 역시 붕괴되고 점차 收布化로 나아갔다. 신분제 외에 병농일치제 그리고 奉足制를 기반으로 한 조선 초기의 군역제는 균등한 군역 부과와 군역의 증가를 목적으로 했던 保法이 人丁만을 고려하는 군역제도로 전환되면서 문란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正軍과 保人 중 토지가 없는 빈한한 농민들은 피역을 위해 유리·도망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一族과 切隣에게 대신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군역의 苦役化는 代立을 불러왔다. 자신의 정상적인 영농을 위해서 혹은 가혹한 役使를 피하기 위해서, 나아가 원거리 番上 근무의 고통과 경비를 덜기 위해서 농민들의 대립이 성행하였고, 거기에 대립을 통해 이익을 피하려는 諸司官屬들의 侵虐까지 작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代立價가 폭등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불러오게 되었다. 정부는 대립가를 公定하는 조치와 함께 차츰 軍籍收布法으로 방향을 바꾸어갔다. 이러한 납포제는 신분제와 병농일치제에 입각한 군역제와는 다른, 상비군으로서의 급료병제 성립의 전제가 되었다. 한편 지방에 留防하는 군인들에게도 兵使·水使 등의 지휘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방군수포를 강요하고 있었다. 방군수포의 보편화는 지방군을 지극히 허술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조선 초기 국방체제의 근간인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가져왔다.

국내에서의 경제변동은 국제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15세기의 공무역체제가 점차 해이해지면서 16세기에 이르면 使臣 또는 使行員들에 의하여 私貿易이 이루어지고 직물류나 보석류 등의 사치품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사무

역의 주도세력은 왕실·威臣·權貴 등의 특권세력과 富商大賈들이었으며, 사무역은 척신정치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상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한편 일본과의 무역은 進上과 回賜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리·금은 등이 수입되고 쌀·직물류·약재 등이 수출되었다. 16세기 이후에는 사무역이 크게 발달하면서 국내 상업 발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재정궁핍으로 일본인에 대한 통제책이 강화되고 양국간의 통교가 어려워지면서 三浦倭亂·乙卯倭變과 같은 왜변을 초래하였다.

신흥사족 혹은 재지사족이라고도 하는 士林은 祖先傳來의 田地 및 노비의 매득·개간·점병 등의 수단을 통해 중소지주로서 안정된 생활을 누렸고, 祖業繼承과 子女均分相續制를 이용하여 사족 공동의 이익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향안을 작성하고 향회 또는 留鄉所를 조직하여, 재경관인으로 이루어진 京在所와의 연결을 꾀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지사족들은 그들 상호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해 鄉規·鄉約·洞契 등을 조직하여 향촌사회를 운영해 나갔다.

金宗直과 그의 문인인 金宏弼·鄭汝昌의 교육활동에 의해 영남·기호지역 사람들의 인간적·학문적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성종 16년(1485) 이후 훈구세력에 대응되는 정치세력, 즉 사림파로서 모습을 갖추어 갔다.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은 훈구세력과의 갈등과 충돌을 예고하였다. 성종대 중반 이후 훈구세력 기용의 부당성과 昭陵復位 주장 등 과감한 언론을 행사한 이들은 연산군의 즉위 이후 그 세력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훈구파로부터 탄압을 받는 사건, 즉 戊午士禍가 발생하였다. 무오사화는 세조의 집권을 부정하고, 이에 반대한 인물들을 推獎한 金駟孫의 史草가 빌미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조대 이래 정치·사회·경제적 여러 특권을 향유하고 비리를 저질러오던 훈구파를 사림파가 견제하려 한 데서 발생하였다. 이로써 성종대 이래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사림파는 일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연산군의 생모인 尹妃가 폐위·賜死된 사실로 발단이 된 甲子士禍는 궁중과 결탁한 朝臣과 府中の 조선간의 대립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오사화에서 잔존한 사림파도 화를 입었다.

이후 전개된 연산군의 亂政은 中宗反正으로 종식되었다. 반정을 통해 집권한 공신집단은 이후 政曹의 고위직을 장악하여 정국을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중종 9년 趙光祖가 정계에 진출한 이후 사림파는 중앙정계에 재진출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훈구대신 집권하에 빚어진 각종 정치적·사회적 비리를 척결하고 ‘至治’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 훈구파는 물론 온건파 대신·국왕의 완강한 저항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僞勳削除 사건을 계기로 사림파가 크게 희생되는 己卯士禍가 발생하였다.

기묘사화 이후 南袞·沈貞·金安老 등으로 이어지는 훈구대신들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중종 말기 이후 인종초까지 사림파가 차츰 등장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다. 명종의 즉위와 함께 외척 尹元衡과 권신 李訥는 자신들의 세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乙巳士禍를 일으켰으며, 사림파는 다시 한 번 중앙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이후 척신정치가 지속되는 동안 사림파는 서원설립을 통하여 자파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결국 선조대 사림정치가 성립되는 주요한 토대로 기능하게 되었다.

사림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파를 형성함과 아울러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또 그들은 성리학적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의 필요에서 鄭夢周→吉再→金叔滋→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학통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재지적 생활기반에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학문세계나 현실정치 개혁에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학문이나 활동면에서 鄉黨의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鄉飲酒禮·鄉射禮의 勵行, 향약·향규의 시행, 서원건립 등을 통해 보여준 행동유형과, 조광조 등 ‘己卯士林’들의 개혁정치에 투영된 현실인식 및 대응자세에서 이는 쉽사리 감지된다. 이러한 향당적 요소에 기초한 향촌질서의 확립은 성리학적 윤리질서와 통치질서의 기축이 되었다.

사림파는 道學政治를,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통해 군주나 백성의 天命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상사회의 실현 즉 ‘지치’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림파는 위민·애민에 정치의 목표를 두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

다. 그들은 聖君으로서의 자질, 군주와 신하 상호간의 믿음, 言路의 개방과 군주의 納諫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言官의 활동을 탄핵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정책의 수립과 같은 보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조광조가 등용된 중종 9년(1514)부터 사림파는 三司를 장악하였다. 그들은 특히 홍문관을 개혁정치의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그 실천방안을 확정하는 產室로 활용하면서 본격적인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사림파의 언론활동은 전통적 명분의 회복과 인습·舊制의 革去 및 성리학적 윤리질서의 확립과 새 향촌질서의 수립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개혁정치를 추진할 인적 기반의 확충을 위해 훈구파에 대한 대규모의 削勳과 賢良科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훈신과 척신의 반발로 사화가 일어나 사림파의 다수가 처형되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도 혁파의 대상이 됨에 따라 실패로 돌아갔다.

서원은 훈구파의 탄압을 받은 사림파가 을사사화 이후 향촌 지배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건립하였는데, 여기에는 과거를 위주로 하는 官學이 쇠퇴한 데다 사림파의 내적 성장을 위한 그들의 私學 건립 의지도 아울러 작용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이 점차 관념론적 理氣論을 지향하던 무렵의 사상적 분위기 역시 서원의 확대에 일조하였다. 최초의 서원은 중종대 周世鵬이 건립한 白雲洞書院이었고, 李滉에 의해 보급·정착되었다. 초기의 서원은 관학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의 기구로 인식되었지만, 이황에 의해 사림의 講學·藏修處로 그 성격이 분명하게 되면서 사림파의 향촌활동에서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선조대 이후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봉사자도 사회기에 피화된 인물, 사림 각 학파의 영수,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확대되었다.

선조대 이후 서원은 朋黨政治와 관련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 갔고, 건립의 사정도 달라지게 되었다. 집권세력의 도학적 정통성 부여를 위한 자파계 인물의 재향처로서 또는 사림간의 상호결속을 위한 취회소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 이후 봉당정치가 전개되면서 향촌사림의 여론이 정치에 큰 역할을 끼치게 되고, 향촌사림 역시 중앙 정치세

력과 연계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함에 따라 서원은 그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16세기 사림파의 정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그들은 소농민경영의 안정을 통한 자신들의 계급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권농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이 시기에는 훈척세력이 소농민을 동원하여 추진한 低平·低濕地 개발이 활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사림파에 의해 川防 즉 洑의 설치와 활용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천방은 堤堰에 비하여 가용처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관개가 가능하였으므로, 16세기 이후 우리 나라 수리관개의 대중을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각 군현단위로 사림파 인사들이 향권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경지의 개발과 더불어 천방을 많이 축조해 나갔다. 특히 훈척세력이 다수의 노비와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토지를 잃게 된 소농민층의 파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자, 사림파 관료들에 의해 豪勢家の 대토지소유를 제한하자는 均田·限田論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도 사림파의 정치적 한계로 인해 실현되기는 어려웠다.

賦稅의 대중을 이루는 공납은 연산군 때 加定된 이래 방납현상으로 인하여 큰 폐단이 되었다. 그러나 공납제의 기본적 폐단인 공납의 개정, 방납의 근절을 종종 때 사림파가 중앙정치 요로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해 제기된 각 군현단위로 공납제를 詳定해야 한다는 개혁론은 대동법의 이론적 기초로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후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한·중·일 3국을 뒤흔든 대전란으로서 동아시아사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즉 중국에서는 명·청이, 일본에서는 豊臣·徳川氏의 왕조 또는 정권교체를 가져왔는가 하면, 조선에서는 전 국토가 거의 전장화하여 왜적의 약탈과 살육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 전란으로 인한 조선왕조의 정치·사회·경제 및 사상면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임진왜란의 원인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선시대는 물론이며, 일본의 유학자들도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명분없는 전쟁’을 도발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학자들 사이에서도 임진왜란의 원인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공명심과 영웅심, 대명무역확대, 해외발전 또는 봉건영주들의 세력 약화를 위한 것 등

을 들고 있다.

16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는 지배층의 편당, 정치기강의 해이, 수취체제의 문란과 군비의 허설화 등의 폐단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었다. 왜란 전 일본은 백여 년간 분열되어 혼란을 거듭하던 정국이 수습되고, 통일의 여세를 몰아 대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조선은 사림 집권 이후 국론이 분열되고 통치체제의 해이로 국방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1592년 왜란을 당하여 정부는 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별 해답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재지사족과 민중이 자발적으로 향토를 방위하는 길밖에 없었다.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곧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이르렀다. 이에 국왕은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능함을 드러냈고, 이에 민중들은 격분하여 궁궐과 관청들을 불살라 버리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바다에서 李舜臣 등이 이끄는 수군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제해권을 장악하는가 하면, 또한 각지의 의병도 향토 조건에 맞는 무기와 전술로서 큰 전과를 거두게 되어 점차 전세가 만회되고, 이와 아울러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오자 결국 일본은 화의를 추진하다가 결국 패퇴하고 말았다.

전후 7년간 계속 되다시피 한 왜란은 17세기 전반 胡亂과 함께 초기에 확립된 양반관료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외적 작용으로서 15세기 말 이래 꾸준히 성장·발전해 온 내적 요인과 상승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미증유의 대국난을 끝내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을 거론할 때 혹은 그 배경을 제해권을 장악한 해전의 승리에서, 혹은 전국에서 봉기한 의병활동에서, 혹은 명의 구원에서 찾기도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각기 떼어내어 개별적으로 공적을 돌리기보다는 그러한 요인들을 상호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함이 바람직하다. 그 궁극적인 극복 요인은 무엇보다 조선왕조 기존의 양반지배체제 내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체제가 크게 동요되지 않은 데다가 임진왜란 초기에 동요된 민심을 수습하고 당시 제조·재야세력이 민중을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여 戰守 양면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고을 단위로 창의, 기병한 의병진이 도처에서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 수군이 해상에서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명의 원군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란을 겪은 뒤 조선에서는 그 뒷처리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다. 먼저 난중의 피폐된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 재정기반을 튼튼히 함에 힘을 쓰는 한편, 성곽·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명·청의 교체 현실을 직시하고 신축성 있는 중립외교를 폈다. 그러나 그동안 개혁을 추진하던 광해군과 복인정권이 서인에 의해 타도되고 인조와 서인정권이 수립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인정권은 중립적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명에 대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친명배금정책을 뚜렷이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호란이 야기되었다. 막강한 여진족의 군사력 앞에 조선은 힘 없이 무너졌고 이에 조선은 이후부터는 명에 대신하여 청에 조공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니, 조선과 청의 관계는 한때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경제적·문화적으로 돈독해졌다.

정치적으로 16~17세기는 사림세력의 성장과 그들에 의한 사림정치(또는 붕당정치)가 펼쳐진 시대이다. 15세기의 정치가 양반관료제로 출발했다면, 16~17세기의 붕당정치는 양반관료제 위에 정파정치로서 붕당정치를 실현시킨 것으로 전자와 명확히 구분된다. 그리고 그것은 18세기의 탕평정치, 19세기의 세도정치 등과도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한 시대의 정치형태로 규정해도 좋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15세기에 확립된 수취제도와 부역제도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농업 발달을 토대로 상업·수공업이 발달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사상적으로는 성리학과 예학이 크게 발달하는 시대적 특징을 보였다. 임진왜란이 이런 흐름을 중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간의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16~17세기의 역사상은 18세기에 군주들이 사림의 붕당정치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탕평정책을 취하여 스스로 정국을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면서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사림세력은 정치의 현장에서 붕당을 인정하는 정치적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그 형성 초기에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宋代의 歐陽修와 朱熹의 붕당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스스로 정치세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정치에서 붕당은

부정될 것이 아니라, 공도의 실현을 추구하는 봉당은 오히려 推獎되어야 삼대의 이상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정론으로 자리 잡아갔다.

사람세력의 새로운 봉당은 반대세력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진기예의 사림들은 중앙 주요관서의 낭관직에서 자천제의 실현을 통해 대신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상호 결속을 강화해 대신 중심의 일방적 정사처리에 제동을 걸거나, 언관직에서 승평의 집단적 활동을 통해 왕을 간쟁하고 훈척세력의 비리를 비판 또는 탄핵하였으며, 이 같은 것은 제도로 정착되었다. 언관들은 낭관들이 각 부서에서 당상관과 대립할 때 그들을 지원하여 주었고, 전조낭관이 삼사 관원의 인사를 주도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다.

사람세력은 명종 때까지는 척신세력과의 투쟁을 계속하다가 선조대에 비로소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훈척세력과의 투쟁에서는 상대를 소인의 무리(僞朋)로, 스스로를 군자의 당(眞朋)으로 규정하였지만, 같은 사람계가 거의 주도권을 쥔 정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쪽에서는 그것을 一朋의 상태로 규정하여 단합을 촉구하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척신정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것만이 앞날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부 비판론을 제기했다. 집권세력이 된 사람계는 이 쟁론 끝에 동인·서인으로 분당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 자체 분열현상은 선조 일대에 학연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되어 남인·서인·대북·소북 등 많은 봉당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임진왜란도 사람세력의 이러한 분열 속에서 맞았다. 봉당분열로 인한 정국의 혼미는 仁祖反正(1623)으로 서인과 남인 양대 봉당이 공존하는 체제가 확립되면서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인조 이후의 봉당정치는 상대세력과의 공존을 토대로 한 공론정치의 실현을 중요한 명분으로 삼았다.

17세기 봉당정치는 비변사 중심의 공존체제와 삼사언론의 활성화, 천거제의 시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봉당정치기의 정사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조~현종년간에 비변사의 당상 이상의 관직은 서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남인이 소수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끌어지다가 숙종 즉위 초에 남인이 대거 진출하여 반수를 차지하는 변화를 일으켰다. 비변사의 公事는 대개 유사

당상 이상의 합의를 거쳐 왕에게 ‘備邊司啓’로 입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관직에 대한 薦舉權, 봉당간의 이해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삼사의 언론은 대간 개인보다는 부서별, 또는 승계의 형태로 입계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언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의 표방과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 통일이 필요하였으며, 대간이 합계하면, 홍문관도 ‘常規의 道’로 이에 동조하는 것이 관례였다. 봉당정치기에 삼사는 공론정치를 표방하고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집중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사림의 봉당정치는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도 봉당의 교체현상으로 換局이 빈발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숙종 즉위년(1674)에서 영조 4년(1728)사이 50년간 아홉 차례의 환국(갑인·경신·기사·갑술·경인·병신·신임·을사·정미)이 거듭한 것은 다른 시기의 정치집단의 교체에 비해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하나로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후로는 국왕의 탕평책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시대성이 더욱 부각된다. 환국은 복수의 봉당이 균형을 깨고 주도 봉당과 견제 봉당을 바꾸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환국의 핵심은 봉당전체의 교체라기보다 봉당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권력집단의 교체이기는 했지만, 국왕의 의지가 그 변동의 핵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현상이었다. 숙종대는 실제로 국왕이 봉당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국왕이 명실상부하게 주도하는 ‘탕평’의 정국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봉당정치 속에서 국왕은 독자적인 권력행사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도 봉당이나 권력집단의 교체를 통해 왕권의 입지를 넓혀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환국은 단순히 봉당정치의 말폐라기보다는 18세기 탕평정치기에 발현된 여러 변화의 시발로 보아야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조선 중기는 자연환경 조건이 대단히 나쁜 시기였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천문 이상현상 및 자연재해에 관한 기록들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성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서구학계는 17세기에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강하한 사실-소빙기(little ice age) 현상-이 있었다는 보고를 여러 방면으로부터 받

왔다.

종래 16세기의 사회경제는 15세기의 농업경제 발달을 배경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부역제도에도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보는, 발전론적인 해석이 강하였다. 16세기 전반기까지는 이러한 관점의 해석이 타당하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이래 17세기 전반까지 약 1세기간은 자연재해보다는 척족정치와 왜란·호란으로 인한 내부외환에 영향을 받은 바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공납제도에서의 대동법의 발상은 방납의 폐단을 저지하기 위한 데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7세기의 시행과정에서 그 필요성은 安民益國의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대동법의 성립은 요역의 물납세화, 전결세화 과정을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법제화하는 것이었다. 모든 공물의 전세화는 중간 작폐로서 방납의 폐단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나아가 각종 요역의 부담도 이에 포함시킨 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민 구제의 수단을 내장하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노동력 제공을 요하는 각종 요역을 雇立制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이에서 확보되었던 것이다.

장기적인 재해와 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전란(왜란·호란)은 농민경제의 대규모적인 황폐화를 가져왔다. 임진왜란 후의 농경지의 황폐는 극심하여 광해군 3년(1611)의 경지 조사결과 54만 2천여 결로 이전의 170만 8천여 결에 비하면 극감한 상태였다. 인조대의 양전에서도 총 농지는 985,002결로 늘어났으나, 진전이 443,139결(45%)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거듭하는 자연재해가 복구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경지는 숙종 46년(1720)의 경자양전에서 비로소 139만 5,333결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

대동법 시행론자들은 부수 효과로서 상업·수공업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를 촉진하는 방도로 금속화폐제도의 시행을 동시에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이 반대론에 밀려 시행시기가 늦추어지기는 했지만, 대동법 시행의 효과가 발휘되면서 동전의 주조도 저절로 후속되었다. 군수산업은 군영제도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고 필요한 병기류의 조달은 대동법하의 貢契를 통해 이루어졌다.

16세기 중반 이후 심각한 상태에 빠졌던 사회경제는 17세기 말엽, 18세기 초엽에 이르러 회복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비상대책으로 시행된 대동

법·고립제·환곡운용·화폐제도 도입 등이 새로운 경제의 틀을 구성하였으며, 그간 명·청 교체의 국제질서의 대변동 가운데서 외교적으로 많은 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단과 그 原絲 등의 중국상품을 일본에 중개하는 국제교역상의 이점도 이 시기의 상공업 발달에 한 몫을 하였다.

조선왕조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사림은 자신들을 주축으로 하는 향촌의 자치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관권과의 일정한 타협하에 자신들의 향촌지배권을 확보하는 자율책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은 때로 향약이나 鄉規·鄉案과 같이 一鄉을 망라하는 조직 형태로 구체화하기도 하고, 그보다는 좀더 하부체계로서 親隣·同志의 성격을 가지는 결사형태인 洞契조직으로 성립하기도 하였다. 사족의 향촌지배는 그 이전부터 그들이 마련하여 온 유향소·향약·향규·洞約·洞契 등의 자치조직을 통해 구현되었다. 유향소는 수령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여 몇 차례의 치폐과정을 겪기도 하였으나, 수령권과의 타협 위에서 재지세력이 부세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유향소는 성종 때 사림파에 의해 鄉射禮·鄉飲酒禮와 같은 주자적 이념을 실천하는 교화장소로서 주목되었고, 후일 서원이 발흥함으로써 사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나 적어도 17세기 중반까지는 사족의 향촌지배기구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군현단위의 향촌자치조직에는 향약과 향규가 있었다. 향약은 성리학의 수용과정에서 알려진 중국의 향촌제도로서 중종년간 조광조 등의 사림이 교화의 방안으로서 전국적인 보급운동을 벌였으나 기묘사화로 실패한 후, 지방사족에 의하여 구휼위주로 성격이 바뀌어 향촌별로 점차 시행을 보았다. 유향소와 향약·향규가 군현단위의 조직이었다면 보다 축소된 지역단위로서 동계가 있었다. 동계의 출발은 자연촌의 형성에서부터였겠지만, 16세기에 이르르면 하나의 촌락 혹은 지연·혈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몇 개의 촌락에 거주하는 사족 사이의 결사적 성향을 농후히 하게 된다. 동계의 구성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안에 입록될 수 있었고, 향약·향규 등의 군현단위 자치조직에 참여, 사족의 향촌지배에 가담할 수 있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출현하는 서원은 사족의 향촌지배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새로운 기구였다. 그것은 講學과 藏修를 표방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유향

소처럼 수령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향약이나 향음주례 등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고려될 수 있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족의 향촌지배체제는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향촌기구를 통해 향촌민 지배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여 온 사족세력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지방지배의 동반자로서 향리 대신 사족을 선택한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성리학 이념의 정착이라든가 15세기 이후의 농법의 발달과 그에 수반한 경지의 확대에 따른 사족 경제력의 상승 등이 배경이 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사족의 향촌지배에 큰 전기를 마련한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 임란은 조선조의 지배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향촌에서의 사족지배구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다. 임란 후 재건된 향촌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견해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난중의 의병활동을 기반으로 사족은 난후의 수습과정에서 진주지방의 里坊편성에서 보듯이 그들 중심으로 향촌사회를 재건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황폐화된 토지의 개간과 유향소·향약·향규·동계·서원 등의 향촌조직이 복구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은 그러나 얼마가지 않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우선 국가의 對鄉村政策이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던 간접적인 방식에서 소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형태로 전환된 것과 관련된다. 먼저 경제소의 혁파로 향입의 선임권을 수령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유향소는 명칭마저 향청으로 바뀌어 수령의 보좌 기구가 되어버렸다. 나아가 국가는 ‘五家統事目’과 里定法の 시행을 통해 부세행정실무를 면이임과 향리의 연결조직을 이용해 수령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사족의 부세운영권 참여를 무력화하여 小民에 대한 지배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외부의 견제와 함께 사족세력 내부에서도 분열이 심화되어 더 이상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家禮의 보급에 따른 가족 및 상속제도의 변화는 異姓雜居의 同族村에서 同姓同本の 同姓村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에 따라 종래의 公有財産에 대한 이해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향촌사족이 분열되어 각자가 동성촌에 기반한 族的結束과 門中勢의 확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향촌사족의 이런 분열에는 중앙정계의 붕당간 대립의 심화도 크게 작용하였다. 당론의 세습성은 향촌사족에까지 여파를 미쳐 향론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여기에 향권장악을 둘러싼 대립까지 가세함으로써 사족 내부의 분열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빈발하는 당색과 연결된 사족간의 鄉戰, 특히 서원제향자를 둘러싼 향전의 빈발이 그것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사족의 향촌지배권이 약화되는 속에 사족 내부의 분열까지 겹치게 되면서 16세기 이후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는 후퇴하고, 새로이 드러나는 동성촌락을 중심으로 한 족적결속과 문중조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촌사회의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사림의 정치활동이 본격화하고 그 사림의 母集團인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가 본래도에 오르면서,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근거였던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후반 이후 理氣心性說에 관한 깊은 연구와 함께, 특히 17세기에 들어가면 사림과 사족의 행동규범과 생활의례로서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예학이 크게 발달하고, 왕실의 典禮문제와 관련해 禮說논쟁이 주요 정치쟁점화하여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가 되며, 유교적 예속의 전파에 따른 宗法制의 보급과 정착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는 물론 향촌사회의 촌락구성마저 달라지는 변화가 오게 된다.

예학에 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주자가례와 3례, 또 3례 중에서도 《예기》와 《의례》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고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학파와 당색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면서, 마침내 인조대의 元宗추숭 논의나 현종 때의 服制 논쟁과 같은 왕실의 전례에 대한 예법의 적용문제로 비화, 정치세력간의 커다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림이 사회전반을 주도하며 주자가례에 의한 예학이 발달하여 중법제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시기는 17세기 이후였다. 그 결과 家廟가 널리 보급되어 사족집안의 가옥구조까지 달라졌으며 男歸女家婚에 대신하여 迎親禮가 본격화되고 立後制가 확립되는 등 종전의 兩系的 특성이 부계적 가족제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주자가례의 勸行은 外孫奉祀・輪回奉祀 대신에 적장자에 의한 四代奉祀

제의 실현을 보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녀균분상속제 역시 적장자 상속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종법적 가족질서의 확립은 족보에도 영향을 미쳐 17세기 초까지는 외손까지 포함되는 子孫譜 형태에서 父系親만 수록하며, 기록도 先男後女로 하는 방식을 정착시켰다. 뿐만 아니라 촌락의 구성에서도 조선 전기까지 몇 세대의 내외손이 함께 거주하는 이성잡거의 동족촌락에서 부계친 중심의 동성촌락으로 바뀌는 변화까지 일으켰던 것이다.

예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유교적 예측의 보급은 실상 성리학의 철학적 이론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초로 한 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런 만큼 성리학의 탐구는 주자학 이해의 입문이었던 것이다. 李彦迪이 理를, 서경덕이 氣의 이론을 궁구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이기설은 이황·조식·김인후·奇大升·盧守愼·李珣·成渾 등의 저명한 유학자들에 의해 理氣心性說의 연구로 발전되었으며, 이것은 16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퇴계와 율곡에 의해 정리되어 각기 主理·主氣라는 조선성리학의 양대 조류를 형성하였고 그 문인 및 계승자에 의해 학파로 성립하며 봉당정치하에서 각 정파의 정치이념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기 자기파의 학설의 보강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동시에 상대학파의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논쟁이 벌어지며, 또 달리 張顯光·許穆과 같이 주리·주기설을 절충하려는 이론도 제기되는 등 학계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자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 예컨대 陽明學이나 불교·도교 등을 이단으로 배격하는 교조적인 성향이 강화되어, 尹鑄나 朴世堂과 같은 탈주자학적인 시도는 용납되지 못하였다.

역사학에 있어서도 국가의 관료 중심적 역사편찬 대신에 주자의 정통론과 綱目論을 수용한 사람의 개인 단위 역사편찬이 이루어지는데, 史略型 역사서의 유행, 도표와 연표에 의한 서술, 箕子에 대한 관심, 강목형 사서의 출현, 역사 지리학 연구의 심화, 樂府體의 발전, 當代史를 다룬 야사형 사서의 편찬 등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한편 불교와 도교는 주자학이 갖는 이단배척의 특징에다가 조선주자학이 점차 교조적 성향을 더해감으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교는 현실에서 떨어진 은둔화의 경향 속에서도 山中僧團의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山僧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불교의 존재

를 크게 드러내었던 임진왜란시의 승군활동은 이런 법통과 승단조직을 밑받침으로 하여 일어날 수 있었다.

사람의 사회 주도과 사족지배체제의 운영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민속과 일상의 의식주생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조선 전기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 변형되거나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18세기 이후의 후기 사회에 전달해 주고 있었다.

우선 문학의 면에서는 자연 속에서 심성을 수양하는 사람의 삶과 대민교화의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많은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을 거친 후에 한편으로는 《홍길동전》에서 보듯이 전쟁의 황폐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상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는 사회소설이 나오는가 하면, 전쟁의 패배를 치유하고자 역설적으로 전쟁의 승리와 그것을 가져오게 한 민족영웅의 형상을 그린 軍談소설이 한때 유행했으며, 17세기 후반에 가면 현실적인 사회체제의 동요 속에서 이를 관념적으로 보상받고자 사대부의 出將入相과 가문창달의 실현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구운몽》 등의 한글소설이 나와 18세기 이후 성행하는 고전소설의 선구를 이루었다. 반면 미술에서는 이 시기를 특징짓는 사대부들의 은둔사상이 크게 반영되어 漁村問答·濯足·觀瀑·釣魚 등이 화폭에 자주 등장하였다. 선비의 절의를 상징하는 대나무·매화가 많이 그려진 것이라든가 隱者的인 정취를 자아내는 墨法이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대부의 기본 교양이라고 할 書體에서 굳센 의지를 표현한다는 王羲之體가 부활하는 가운데, 거기에 토대해 자신의 독특한 필법을 가미했다는 石峰體가 널리 유행하고, 金生·李嶠을 비롯한 우리 나라 역대 명필들의 筆跡과 碑文을 摹刻·탁본하여 연습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刻帖이 만들어지면서 《大東金石帖》이 나왔던 것 역시 이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조각의 양식은 유일하게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佛身에 비해 머리부분이 크며 기법도 떨어져 전반적인 불교쇠퇴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도자기 공예에서는 분청자기가 소멸하고 굵은 모래받침의 회백자 제작이 성행하였는데, 관영사기공장으로는 경기도 광주의 分院이 중심지이다. 특히 鐵畫백자의 제작과 明器類에 보이는 다양한 남녀인물상·銅畫백자 및 乳白色의 백자 출현은 조선 후기

백자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 시기 도자공예의 특징이었다.

한편 조선 중기의 음악은 궁중 안에서의 祭享樂과 宴享樂이 앞 시대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축소되지만 향악곡이 발달하고 관악곡으로 변질되는 새로운 변화를 보이며, 궁중 밖에서는 北殿·中大葉·數大葉같은 관현반주의 새로운 노래와 거문고 중심의 기악합주인 풍류음악이 생겨나 선비들의 애호를 받으면서 조선적인 고유색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종법제의 정착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은 분야는 민속과 사대부의 주거공간이었다. 민속의 경우 고려시대 이래의 巫俗 중심의 축제풍속이 점차 유교의례적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념인 주자학의 영향으로 關王廟와 서원·時祭 등에서 보듯이 친족집단의 조상숭배와 인물숭배 풍속이 등장하였다. 주거공간의 변화가 아마도 조선 중기 사족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례에 의한 4대봉사제가 정착되면서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공간으로서 家廟가 班家에 자리잡게 된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으며, 内外와 長幼의 구별을 위해 안채·별당의 구성과 주인양반의 修身과 학문연마, 손님접대를 위한 사랑채, 그리고 사역과 隨行을 위한 노복 및 婢子의 거처인 행랑채·비자방 등이 별도로 배치되는 구조를 갖는 사대부 가옥의 형태가 자리잡게 되었으나 인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중의 가옥은 초가 3칸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4) 조선 후기의 사회와 문화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상호 유기적 연결을 가진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의 정치는 탕평론 및 세도정치의 전개라는 특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물론 18세기 탕평론이 제시된 데에는 일정한 배경이 있었고, 영조대에 전개된 緩論蕩平의 입장과 정조대에 시행되었던 峻論蕩平은 각기 상이한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이 양자는 탕평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상호 합치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실정치를 이끈 통치이론이었다.

한편 개항 이전 19세기의 정치사에서는 세도정치가 전개되고 있었다. 세

도정치는 왕권강화론의 일부로 제시되었던 탕평론에 맞서 소수 집권가문의 정치적 권리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이론이었으며, 이는 탕평 정국의 출현 및 지속에 대한 집권 귀족층의 반작용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었다.

조선 후기 탕평론이 제시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서민·하층민들의 정치적 지향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양반 중심의 정치질서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양반 지배층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했다. 또한 17세기 이래 지주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던 일군의 학자들은 朱子의 토지론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箕子 箕田說·井田說 등에 주목한 바 있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기자의 저작으로 알려진 洪範 皇極說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조선 후기 양반 지배층 가운데 일부는 四書 중심의 주자학적 체계에 비판을 가하면서 六經 중심의 古學에 경도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書經》의 洪範篇이 재음미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주체를 천자 내지는 국왕으로 보려는 皇極蕩平論의 토양이 마련되어 갔다.

탕평을 표방하는 정국운영론은 이미 숙종 말년부터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탕평론은 영조 5년(1729) 이후에 이르러 실제 정치운영의 원리로 작용되었다. 換局政治의 극심한 폐해를 체험한 당시의 지배층 일부에서는 현실 정치에서 최대의 현안이 봉당의 타파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정치집단을 당시에는 온건한 주장을 펴는 정파라는 뜻에서 緩論이라고 호칭되었다. 반면에 사림의 정치원칙인 각 봉당의 義理 자체가 봉당 타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집단도 있었다. 이들은 완론에 대칭되는 준엄한 입장을 펴는 정파라 하여 峻論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요컨대 영조·정조의 탕평책이 시행되어 가던 기간에는 군주권이 강화되었고, 군주는 세상을 다스리는 바른 도리인 世道의 담당자요 책임자로 부각되었다. 여기에서 군주는 모든 의리를 군주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타파봉당의 기치 아래 당론을 배격하고, 사족 지배층을 억압하며 對民 긍정적 정책들을 강화시켜 갔다. 그러나 탕평정국은 하나의 정치체제로 정립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도정치가 시행

되었다. 세도정치가 시행된 배경으로는 탕평정국을 거치는 동안 진행된 붕당의 퇴조현상과 그리고 정조의 사후 왕권의 약화현상을 우선 주목할 수 있다. 순조와 헌종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군주의 국정 주도를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국왕은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그 관념상의 권위에 상응하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주권의 약화에 대응하여 전개된 세도정치기에는 중앙의 정치권력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반남 박씨, 대구 서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등 특정한 소수 가문에 집중되었다.

한편 지난 17세기 붕당정치기에 있어서 지배계층은 士論의 확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의 근거를 삼았다. 그러나 19세기의 세도가문들은 정권의 장악과 유지의 중요한 기반을 국왕 또는 왕실의 권위에 두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왕실의 외척이 됨으로써 이 권위를 강화시켜 보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왕실의 권위가 강조되는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군주권이 강화되었던 상황이 19세기에 이르러 세도가문들에 의해서 변칙적 형태로 역이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조선왕조의 지배체제가 밝아 온 변화의 귀결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세도가문들은 군주라는 중세적 정치체제의 전통적 권위 위에서 존립했고, 이로써 그들은 조선왕조의 지배체제에서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세도가문들 사이에는 時僻이라는 당색의 차이보다 더욱 강한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동질성은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강화되기도 했다.

순조대에 이어서 전개된 헌종대의 세도정치는 대체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가문이라는 두 세력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철종대의 세도정치 또한 기존의 세도가문들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었다. 세도정치 기간 중 유력가문을 중심으로 한 상호간의 협력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 내부에 있어서는 강한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세도집단 내부에 존재하던 이와 같은 동질성은 대원군 집권기를 통해서도 철저히 불식되지는 못하였다.

18~19세기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조선왕조가 당면했던 17세기의 재정위기를 대동법의 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간 바 있었다. 그러나 전근대적 재정이 갖

는 한계로 인해서 재정위기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18세기의 조선왕조에서도 국가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군역제와 관련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均役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영조 28년(1752)에 시행된 이 군역법은 양역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양인층의 피역 저항이 강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양인층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한편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국가의 재정체계가 租庸調체제로부터 田政・軍政・還穀이라는 三政體制로 전환되어 갔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사회변동의 여파에 따라서 부세제도가 총액제 수취방법으로 변동되어 갔고, 부세제도 자체의 문란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民의 저항이 강화되자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삼정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조선왕조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중요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각종의 변통론 즉 개혁안들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지향하는 대변통론을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체제 내에서 수취방법을 개선하려는 소변통론의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사회가 추구하고 있던 개혁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에 관한 문제제기는 군정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전정이나 환곡 분야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삼정 가운데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오던 분야는 전정이었다. 전정은 조선 후기 당시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잡다한 항목의 조세를 관리하는 문제를 뜻했다. 당시의 토지세는 國納・船給・邑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납은 결당 4두씩 부과되던 전세를 비롯하여 대동미, 삼수미, 결작 등의 경상세를 말한다. 선급은 국납에 따르는 각종의 부가세를 뜻하며, 읍징은 해당 고을의 잡다한 용도에 쓰이는 부가세를 일컫었다. 이 가운데 각종의 부가세가 수십 종류에 이르렀고, 부가세의 종류와 세액이 증가하여 전정의 문란은 가속화되어 갔다. 또한 양전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수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전결세와 수취과정에서도 각종 폐단이 자행되고 있었다.

한편, 환곡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원래 환곡은 진휼책의 하나로 준공기인 봄철에 관청에서 농민들에게 곡식을 대여했다가 가

을철에 元穀과 이자인 耗穀을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방식이었다. 이때 모곡은 원곡의 10%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환곡의 진홀 기능이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당시 정부의 기관들은 이른바 經費自辦의 원칙에 따라 각 관청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에서는 다투어 모곡을 확보하려 했고 이를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각종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의 중엽에 이르러서 환곡은 삼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정부에 대한 민의 저항이 강화되어 갔다.

또한 국가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와 삼정의 문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은 都結의 출현에 관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총액제에 의한 재정 운영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총액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의 부세 운영은 토지와 인민에 대한 국가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파악이 전제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면·리 단위로 부세 단위가 상향조정되었고 국가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도 면·리로 축소되었다. 그후 공동납의 관행은 점차 넓어져 갔다. 즉 人丁稅는 공노비의 庚申摠(영조 16년, 1740) 및 양역의 庚午摠(영조 26년, 1750)에 의해서 정총제로 전환되었고, 전세는 비총제로, 환곡은 환총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모든 부세가 공동납 형태로 징수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정은 총액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18~19세기의 조선의 대외관계는 17세기에 재편된 동아시아적 질서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 이 시기가 드러내고 있는 특성은 대륙에서의 明清交替, 일본에서의 德川幕府의 등장,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해 구미 여러 나라들이 중상주의적 접근을 강화해 오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의 대외관계는 대청관계, 대일관계 및 서양과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병자호란 이후 청과 조선 사이에는 군사적으로는 충돌이 없었다. 그러나 청은 조선에 대해서 상호간에 설정된 군신관계의 틀 안에서 청 중심의 천하 질서에 편입되기를 요구했고, 助兵 등의 정치적 요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청은 숙종 38년(1712) 白頭山에 定界碑를 건립하게 되었다. 요컨대 조청관

계는 조선왕조의 대외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국제관계를 새롭게 정립시켜 나가던 과정에서 청으로부터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도 17세기 이래 새롭게 전개되었다. 조선은 건국 이래로 일본에 대해서 羈縻와 對等の 외교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주도의 독자적인 통교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 시도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여지없이 파괴되었지만, 인접한 양국간의 관계는 정상화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조선은 임진왜란을 극복한 이후 광해군 원년(1609) 일본과 己酉約條를 체결했고, 이로써 일본과의 통교 무역에 관한 틀이 재정비되어 갔다. 이 기유약조는 조선이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일본과 맺었던 약조들을 집약한 것이었다.

한편 17세기 이래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조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조선연해에서는 중상주의적 서양 선박들이 출현했고, 서양인 표착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현상은 18세기에 이르러 더욱 빈번해졌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의 식민주의적 세력들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시켜 나간 여파로 이양선으로 불리던 서양 선박들이 조선연해에 출몰하고 있었다. 또한 서학 즉 천주교 신앙의 성행과 관련하여 서양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직접 입국하여 비밀리에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체포와 탄압으로 인해서 조선은 서양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인식했다. 이 일련의 사실들은 조선과 서양이 새로운 국제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 및 일본과 맺고 있던 전통적인 국제관계만을 고수하고자 했고,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병인양요(1866)나 신미양요(1871)의 경우처럼 프랑스 및 미국과 같은 구미열강과 충돌하게 되었다. 조선을 향한 제국주의적 침략은 점차 도를 더해 가고 있었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조선 후기 경제사 이해의 기본 방향은 대체로 한국의 중세사회가 이 시기에 이르러 민족의 내재적 역량에 의해 해체과정을 밟아 왔다는 것이다. 즉 조선 후기의 변동을 가능하게 한 움직임은 임기응변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정치체제를 재정비하려고 했던 위로부터의 노력이 아니라, 산업활동의 진전에 따른 경제변동이 봉건적 신분제 사회를

분해시켰다는 것이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산업활동의 진전이 아래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이 시기의 민중은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 후기 산업활동의 진전은 농업·수공업·광업·상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어났다. 농민들은 황폐한 농토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했으며,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여 상품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생산체계에 있어서도 보다 넓은 농지를 경작하는 광작이 보급되고,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서민형지주가 나타났는가 하면, 지주·전호의 관계에 있어서도 賭租制가 유행하여, 이를 토대로 佃戶權이 성장해갔다. 수공업에서는 본래 부역제를 토대로 하여 운영되던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그리하여 장인의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생산하는 민영수공업이 성장하여 갔다. 제조업에서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원료 생산이 촉진되어 광업도 활성화되었다. 특히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私採 또는 潛採에 의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조선 후기에 새로운 모습을 보인 경제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장권의 확대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농업·수공업·광업 등에서의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고, 그 잉여 생산물의 유통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업활동도 예전과 달리 자못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 널리 확산된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는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을 보다 촉진시켰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 및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그들이 상업 인구 또는 소비 인구가 되면서 상품의 유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금속화폐, 즉 銅錢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을 갖고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전국 각지에 장사와 浦口가 개설되고, 이들을 연계하는 원격지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에서뿐만 아니라 수공업·광업·어업·염업 등에서도 생산력이 돋보였다. 우선 京工匠을 근간으로 하는 관영수공업이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급속하게 붕괴되어 갔고, 이에 대신하여 私匠들의 민영수공업이

전면에 등장하여 널리 발달하고 있었다. 사장의 수공업장은 당시 일반적으로 ‘店’이라 불렀는데, 유기 수공업장은 鋤店, 철기 수공업장은 鐵店이라 하였다. 점에는 점주 또는 물주라고 불리는 고용주가 있었고, 그 고용주는 일정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물건을 생산하였다. 한편 상업자본이 축적되면서 일부 점에서는 상업자본이 생산과정에 침투하여 이른바 先貸制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원료의 공급을 위해 광업도 발달하였는데, 17세기에는 監官制에 의한 은광업이 번창하다가, 18세기에는 別將制에 의한 군수광업이 성장하였다. 별장제하에서는 서울의 富商大賈들이 별장으로 파견되어 채광하고, 호조에 일정한 稅銀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는 은광업도 점차 쇠퇴해갔다. 결국 광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設店收稅制를 실시하여 사채를 허용하였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어업의 발전도 촉진되었다. 봉건 지배층의 가혹한 어민 수탈이 어업의 발달을 크게 저해하기는 하였으나, 18세기 이후에 이르면, 어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어법이 크게 발달하면서 어물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특히 어구가 대형화하고 어업의 경영규모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漁箭이나 防簾에서 두드러졌다. 수산물의 어획뿐 아니라 이 시기에는 수산물 양식과 수산물 제조업도 나뉘며로 발달하였다. 김이 많이 양식되었고, 조기·명태·청어의 가공이 이루어지면서, 그 유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조선 후기에는 제염기술이 일정하게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 곳곳에는 농촌 시장으로서 장시가 발달하고 있었는데, 그 토대로서 운송교통이 이 시기에 이르러 크게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사회에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 잉여생산물이 처분되면서 자본의 집적이 가능했다고 하면, 그것을 매개하는 기본적 역할은 운송체계가 담당하였다고 하겠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장시와 장시, 장시와 포구, 포구와 포구가 연계되면서 전국이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갔다. 이러한 속에서 물화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륙에서는 馬匹에 의한 육운이, 연해안 또는 수로에서는 선박에 의한 수운이 그 일을 담당하였다. 지방에서 상업도시가 성장한 곳은 서울의 배후 도시로 성장한 개성과 수원, 서울의 공간 확

대에 따라 상품유통의 거점으로 변화된 송과장·누원점, 평양·대구·전주 등 감영 소재지, 포구로서 시장권의 기지였던 원산포·마산포·강경포, 그리고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동래와 의주 등지였다.

국내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 하여 대외무역도 점차 활발해졌다. 17세기 중엽부터 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공적 무역인 開市와 사적 무역인 後市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비단·약재·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종이·무명·인삼 등이었다. 한편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倭館開市를 통한 대일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인삼·쌀·무명 등을 팔고, 또 청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넘겨 주는 중계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으로부터는 은·구리·물소뿔·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국제무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들은 의주의 灣商과 동래의 萊商이었으며, 개성의 松商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은 화폐라는 교환수단에 의해 보다 촉진되었다. 종래의 교환수단은 쌀이나 포목이었고, 물물교환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7세기 말 명목화폐인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숙종 4년(1678) 조선정부가 동전의 유통을 결정한 이래 십수 년이 지나지 않아 동전은 가장 우월한 가치척도·교환수단·지불수단으로 정착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동전의 보급은 상호 인과적으로 상품생산과 교환관계를 촉진시켜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달하였다. 일반 사회에서의 거래는 물론 각종의 고용가도 대부분 동전으로 지불되었고, 국가 재정도 일부 화폐화되었다. 특히 화폐지대가 발생하고, 또한 각종 조세에서의 동전 수취가 매년 수백만 냥에 이를 정도로 농민층을 강제로 화폐경제에 편입시켰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의 몰락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조선 후기 사회는 격동의 사회였다. 근대사회로의 전환 기점으로 이해되기도 할 만큼 재래의 체제·질서·사상들이 여러 부면에서 이완·해체되고 새로운 질서·사상들이 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나 기존세력의 자세와 조치는 극히 보수적이고 임기적이었다. 새로운 변화·

변동을 수용하고 활용하기보다는 대체로 지난날의 질서를 되세우고 유지하려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일부에서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것 역시 《경국대전》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에 다름이 없었다. 19세기 중엽을 점철하였던 크고 작은 민란, 곧 민중의 거센 저항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신분제 이완과 사회신분의 변동·변화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고 촉진되었지만, 그 주된 단초는 양반인구의 증가에 있었다고 하겠다. 양반인구의 증가가 국역체계의 문란을 가져왔고 이는 나아가 양반서얼의 통칭이나 중간신분층과 서민층의 신분상승을 가증시켜서 사회신분의 변동·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신분제의 이완을 전개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반인구의 증가는 지배계층으로서의 권위와 희소가치를 점차 하락시켜 갔을 뿐 아니라, 軍籍收布制가 일반화되었던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역체계의 파탄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군역의 수포화에 따른 양반층의 군역기피 현상이 끝내 양반인구의 면역으로 귀착되자, 이미 통칭에 노력하고 있던 양반서얼들은 물론, 이들의 국역까지 떠맡게 된 평민들도 국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분상승을 기도하게 된 것이다.

양반서얼들은 우선 18세기 초에 모두가 국역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얼 자신은 業儒·業武로, 그 자손은 幼學으로 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얼 자신은 비록 양반의 직역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 모두가 군역부담에서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양반인구는 다시 한번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양반 자녀의 절반 이상이 서얼이었다는 지적에서 보면, 이러한 조치로 양반이 된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평민들의 면역을 위한 신분상승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걸쳐 세차게 전개되었다. 평민들은 조선 초기부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가능한 한 군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여 왔었다. 漏籍하거나 승려가 되거나 私賤이 되는 것이 그 주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국방력 강화와 재정 확보, 향촌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가작통제와 호패법 등이 강력하게 시행되자, 평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면역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때마침 전개된 농업경영의 발전과 상·공업의 발달에 힘입어 양반·중인

으로의 신분상승으로 연결되었다. 부를 축적한 일부 평민들은 혈역의 契房이나 私募屬으로 들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유학·교생·원생을 모록하고 空名帖을 수매하여 양반의 지위로 나아가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신분상승이 개별적이었기 때문에 그 수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나, 19세기 호적대장에 등재된 유학의 반수 이상이 모칭 유학으로 추정될 만큼 그 수가 많았다. 이리하여 유학을 중심으로 한 양반인구의 수는 이미 19세기 중엽에 호적상 주민구성의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증가되고 있었다. 경제력의 상실로 인하여 양반에서 잔반·평민으로, 또 평민에서 고공·노비로 각기 신분이 하락하는 인구도 적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하층민이 신분을 향상시키고, 또 이들을 포함하는 양반인구가 하층민보다도 더욱 높은 자연증가를 이루어 온 결과였다.

그런데 18세기 초부터 중간신분층과 평민층에서 신분을 상승한 새 양반들이 중양과 향촌에 진출·등장하게 되자, 양반계층에서는 또다시 분화를 보이게 되었다. 조정에 진출한 중간신분층 출신의 양반들은 그 수가 적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大家에 포함·수용되어 분화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나, 향촌에 등장한 다수의 새 양반들은 기존의 사족양반들의 심한 차대 속에 갈등을 빚어내며 양반계층의 분화를 이끌어 냈다. 이른바 ‘儒鄉分岐’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었다. 그리하여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이들 재향사족은 점차 향청을 떠나 서원과 향교를 근거로 결집하게 되고, 향청은 수령에 의하여 그들이 차대하던 서얼·평민출신의 양반과 일부 잔류 향반들로 메워지게 되었다. 이른바 유향분기가 전개된 것이다. 전통사족 양반과 신분을 상승시킨 양반과의 차별화가 이제는 향청을 떠나 서원·향교로 결집한 전자(儒)와 새로이 향청을 근거로 결집한 후자(鄉)간의 차별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양반은 이로부터 ‘儒’와 ‘鄉’으로 분화되는 대세를 이루었다. 舊鄉과 新鄉, 元儒와 別儒, 士族과 鄉族·鄉品 등은 모두 이러한 두 부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들 두 부류는 그 출신에서부터 갈등을 빚고도 있었지만, 현실적 기능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구향(儒)이 계속 서원과 향약 등을 바탕으로 향론을 주도하고 교화를 담당하면서 향촌사회의 운영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데 대하여, 신향(鄉) 또한 향청을

근거로 부세를 관장하고 수령을 보좌하면서 자신들의 권익과 지위를 한층 증대하고 상승시키려고 부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간의 충돌은 불가피하였고, 그것은 이른바 ‘鄉戰’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향전은 구향과 신향간의 향촌운영의 주도권 다툼이었지만, 수령과 향임·향리로 직결되는 행정체계를 추구하던 당시의 정부나 수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령 및 정부에 대한 구향의 저항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다툼이었다. 따라서 향전이 거듭되면 될수록 구향은 불리한 국면으로 몰리게 마련이었고, 그것은 곧장 구향의 지위와 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져 갔다. 이리하여 19세기 중엽을 전후로 해서는 신향 및 향리가 수령과의 제휴 아래 향촌사회를 관장·주도하는 새로운 체제가 널리 성립되었다. 그렇다고 구향의 존재나 세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러한 추세에서도 그들의 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서 전통적 질서를 유지·고수하고자 노력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앙에서는 이미 양반서열도 淸顯職에 오르고, 종묘제사에서 獻酌의 반열에도 서게 되는데, 향촌에서는 아직도 사족양반들의 반대로 儒案에 오르지 못하여 향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재향사족들이 위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마련하고 추진했던 자위 내지 입지강화 방책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동성촌의 형성·확대, 문중조직의 결성·활성화, 下契와의 제휴·통합 등은 대개가 공통적으로 보인 주요 현상으로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8·19세기 향촌사회에서는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한 集姓村, 곧 동성마을이 형성·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문중의 결속을 다지는 화수계나 문중계 같은 족계가 또한 성행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입향조나 계파시조를 비롯한 조상의 선영을 수호하기 위한 규약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실·문중사당 등을 건립·운영하였고, 또 문중의 지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사우·서원을 건립하고 족보(파보)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동성마을과 문중의 결속을 기반으로 한 재향사족 양반들의 ‘신향·향리-수령’ 지배체제에 대한 무언의 반격이 전개된 것이다.

한편 재향사족들은 동성마을의 형성과 함께 농민들의 촌락조직인 향도류

의 조직(下契)을 사족들의 동계조직(上契)과 통합하여 갔다. 이는 기층농민을 수령권의 통제로부터 방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이어 전개된 촌락의 성장, 부세의 공동납제 확대, 교환경제체제의 발달 등은 농민의 의식을 성장시키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두레’의 강화와 다양한 촌계들을 조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차 동계를 대신하여 촌락의 운영을 주도하여 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7·18세기에 전개된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의 분화에 짝하여 더욱 촉진되어 갔다.

조선 후기 사회의 변동은 노비신분층에서도 일어나서 18세기에 이르면 노비의 존재양태가 조선 전기와는 반대의 양상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대부분의 노비가 상전이나 소속관청의 경제적 기반과는 관계 없이 외거하면서 身貢만을 납부했던 유형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독자적인 자기경영을 가지면서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제 노비들은 신분상으로만 노비일 뿐, 현실적으로는 평민과 다름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노비소유주는 노비의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농민층 분화에서 창출된 無土不農의 농민, 즉 雇工층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였고, 또 노비의 입장에서든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동력을 징발당하기 보다는 자기경리를 계속 유지하여 그 잉여의 일부를 신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한층 유리하였다.

노비 존재양태의 이 같은 변화는 우선 정부의 노비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17세기 중엽에 이미 공노비의 선상·입역을 폐지하고 고립제를 채택했던 정부는 18세기 중·말엽에 걸쳐 각종 속량책의 확대와 함께 노비추쇄의 중지, 비총법의 실시, 노의 신공 반감과 비의 신공 혁파 등 공노비의 부담과 구속을 경감·완화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여 갔고, 나아가 순조 원년(1801)에는 내시노비를 혁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奴良妻의 소생을 從母從良하는 법을 제정·실시하여 노비인구의 감소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비의 존재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노비 존재양태의 변화는 노비들의 경제력 향상과 신분상승 운동을 촉진하는 계기도 되었다. 자유로운 자기경영을 갖게 된 노비들이 때마침 전개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힘입어 그들의

경제력을 한층 신장시켜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納粟・軍功・代口 등의 합법적 면천을 하여 갔고, 나아가 중인・양반으로까지도 상승하여 갔다. 그러나 경제력이 미치지 못했던 노비들은 광산・도시・서북지방과 같은 고용노동이 풍부한 곳으로 도망・은루하여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노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비제의 붕괴・해체가 이루어져 갔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변화에서 신분제의 해체를 뜻하는 가장 극명한 현상이었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 봉건적 사회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물론 한편에서는 사회변동에 직면하여 현실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조선 후기의 사회는 하나의 전환기적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문화면에서 그러하였다. 지금까지 지배질서의 축으로서 조선왕조의 세계관이었던 성리학은, 이 시기의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배타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갔고, 그것은 중세적 봉건질서의 모순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모순 구조를 타파하려는 양명학, 실학사상, 그리고 감철사상 등이 나타나 사회개혁운동의 정신적 기저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조선왕조적 질서의 무너짐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세적・봉건적 체제의 무너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그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이 나타난 양명학・실학・서학 등으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기에 이른 성리학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나름대로 사상의 혁신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성리학계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학파의 정립과 이론의 활발한 분화, 人物性同異論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쟁점의 제기라 하겠다. 경학에 대한 연구는 급기야 인물성 논쟁을 야기시켰다. 즉 四七論辯을 한층 더 깊이 천착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발동되어 나오는 원천을 성품으로 인식하여 사람의 성품과 사물의 성품이 같은지 다른지를 밝히는 인물성동이론의 논쟁을 전개시켰다.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강하게 제시된 華夷論이 이후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정립되면서 의리론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배타적·보수적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크게 구실하였다. 성리학체계를 묵수하고 기존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19세기에 이르러 서양문화의 도전을 받으면서 더욱 강렬해졌는데, 그 움직임은 인간의 주체적 인식을 강조한 心主理論의 제기, 자연계의 형성과 운동의 변화는 모두 氣의 작용이라는 唯氣論과 理의 절대성을 내세운 唯理論의 대두로 나타났다.

성리학계가 동요하면서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성리학계 내부에서 일어났으니, 尹鑄·朴世堂·李瀼·丁若鏞·金正喜 등에 의한 탈주자학적 경학의 연구가 그것이었다.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은 양명학의 연구로 나타났다. 이어서 18세기 초의 鄭齊斗는 맹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율곡의 理氣一元論을 계승하여 양명학적 심학관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주자와 대립된 입장에서 心卽理說을 제시하고 일체의 학문이 良知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학설은 鄭厚一·李匡明·李匡師 등으로 이어져 소론계 강화학파를 이루었다.

양명학이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목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성리학적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이 천주교의 수용이었다. 당초 西學이란 이름 아래 학문적 호기심에서 연구되던 천주교가 종교신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성리학계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가부장적 권위와 나아가서 유교적인 의례의식을 거부했으므로, 그것은 유교사회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또 부패하고 무기력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구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 탄압을 가했다. 이에 천주교는 중인·서민·부녀자층이 중심이 되어 비밀조직을 통해 확산되었으니 지하교회로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사상계의 갈등 속에서 기존의 민간신앙이 민중세계에 그 기반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도 이 시기에 보여지는 주목되는 현상이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교계의 재건을 위해 진력하였으니 먼저 승려들은 염불과 함께 참선과 교

학을 하는 三學의 수행을 일반화시켰다. 休靜에 의해 비롯된 선교합일의 수행관으로 인하여 중합수도원인 叢林에는 강원·선원·염불원이 갖추어졌다. 나아가 履歷이라는 승가교육과정이 확립되었다. 교학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둘에 따라서 講經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고승들의 문집간행도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 민간에서 널리 신봉된 것은 도참신앙·무속신앙이었다. 사회가 변동하고 기존의 가치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비기·도참 등 예언사상이 유행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도참서는 《鄭鑑錄》이었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감결류와 비기를 집성한 것으로서, 참위설·풍수지리·도교사상이 혼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사상은 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비리가 특히 심해지는 19세기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정부를 비방하면서 민중의 동요를 자극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사상계뿐 아니라 학문과 기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현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되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갔다. 우리 문화의 정리, 즉 학술의 진흥은 당시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적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문화의 정리작업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흐트러진 문물의 재정비였다. 그러나 보다 주목된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리작업이 건실하게 추구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사서·법전류·윤리서가 정리되어 편찬되었다. 서적의 편찬이 활발해지면서 인쇄문화가 발달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리하여 금속활자 외에 목활자, 목판에 의한 인쇄가 활기를 띠었고, 상업적 출판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학술활동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조가 奎章閣을 설치하고 운영한 일이다. 왕실도서관으로서 국왕의 정책자문까지 맡았던 규장각에서는 서적의 수집과 편찬 등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학술의 진흥과 짝하여 나타난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實學의 발달이었다. 실학은 단순한 학문활동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갖가지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개혁사상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이나 개혁의 논리는 종래의 성리학과 같을 수가 없었다. 그 사상은 전통적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일련의 진보적 사상이요 학문이었다. 실학자들의 관심은 우선 농촌경제·

농업경영에 두어졌다. 당시 농촌경제의 안정 여부는 사회의 안위와 국가의 존폐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학자들은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토지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개혁방안에는 차이가 있었다. 柳馨遠은 均田論을, 李瀾은 限田論을, 丁若鏞은 閭田論을 내세웠다. 그리고 徐有榘는 국영농장의 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屯田論을 제시하였다. 한편 도회지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일부 실학자들은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왕조는 당초 농업을 중히 여기고 상공업을 末業이라고 하여 천시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삶의 개척의지가 강렬해지고, 그러한 속에서 생산력이 높아지고, 한편 농촌을 떠난 농민의 일부가 도시로 밀려들면서 도시의 상권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공업의 진흥, 기술의 개발이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으니, 柳壽垣·洪大容·朴趾源·朴齊家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상공업의 진흥과 아울러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도입해야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회모순의 시정과 민생의 안정, 나라의 부강을 나뉘대로 시도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그들의 구상이 민족의식·문화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학의 진흥에도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강토·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자아의식, 민족적 자각은 국토의 자연환경, 자원의 분포, 인구와 취락, 자연보호 등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연구로 승화되었다. 그리하여 각종의 지리지·지도·읍지 등이 간행되었다. 즉 鄭尙驥의 《동국지도》, 金正浩의 《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는 정밀성과 아울러 실용성에서도 돋보였다. 지리지연구에서는 李重煥·崔漢綺·김정호 등의 노력이 이바지한 바가 컸다. 이 시기에 특이한 것은 邑誌의 편찬으로서, 이는 조선 후기 지리학의 최대 성과라 하겠다. 읍지에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공간성에 대한 관심이 지리학이라면, 시간성에 대한 관심이 역사학이다.

국사학의 체계화와 더불어 각 시대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어 단군조선·고구려·발해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학술이 진흥하고 국학이 발달하면서 百科

全書學이 수립되었다. 이는 호트러진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혁의지의 소산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수광·이익·안정복·이덕무·이규경 등 개인 차원의 노력이 중심이었으나, 영·정조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백과전서가 편찬되었으니, 그 결실이 《동국문헌비고》·《만기요람》 등이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해져 이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 천리경을 비롯한 서양의 천문기기가 도입되었고, 서양의 역법을 익혀 시헌력이 채택되었다. 천문·역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주관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地球球形論과 地球回轉說이 제시되었다. 그밖에도 지리학·수학·의학 등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의 특징은 한마디로 서양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다. 즉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과학적 안목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홍대용·정약용·최한기 등의 역할이 컸다.

의식의 확대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다. 조선 후기 문학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양상은 국문학의 성장이었다. 한문이라는 문자상의 제약 때문에 문학적 욕구의 구현이 어려웠던 서민층에게 국문학의 성장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그 결과로서 辭說時調가 유행하였고, 다채로운 양상의 가사가 창작되었다. 작품의 배경은 공상적인 세계보다는 현실의 서민세계가 중심이었고, 작품의 주인공들도 영웅 중심에서 서민적 인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한편 전국 각지에 도시적 생활공간이 늘어나면서 판소리와 같은 놀이패가 발달하기도 하였다. 판소리는 광대들이 한 편의 이야기를 가창과 연극으로 연출하여서 읽는 소설보다 훨씬 흥미를 돋우었는데, 〈춘향전〉·〈심청가〉·〈흥보가〉 등은 매우 인기 있는 판소리 작품이었다.

미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회화부문에서는 산수화와 풍속화가 발달하였는데, 鄭敼은 우리 나라의 자연을 그려내는 데에 알맞은 구도와 화법을 창안해 냈으니 이른바 眞景山水畵라는 화법이다. 풍속화에서는 金弘道와 申潤福이 각기 농촌과 도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한편 조선 후기 회화에 있어서 주목되는 현상의 또 하나는 民畵의 유행이었다.

대개 무명작가에 의해 그려진 민화는 격조가 뒤떨어지지만, 과격적인 구성과 화려한 색채가 특징적이었다. 서예에 있어서는 다양한 서체가 연구되는 속에서 금석학에 바탕을 둔 서도가 널리 행해졌다. 특히 김정희는 청대의 서예 이론과 서법을 수용·종합하여 특유의 秋史體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미려한 필체의 宮體가 발달하면서 한글서체가 새로운 차원을 선보였다.

조각에 있어서는 그리 뛰어난 변화를 볼 수 없었지만, 왜란·호란으로 사찰이 크게 훼손되면서 이를 복구하려는 佛事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불교미술이 나름대로 꽃을 피웠다. 그러한 속에서 불상의 조각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현존하는 불상은 대개 이때에 조성된 것이었다. 조선 후기 예술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공예부문이었다. 삶의 질적 변화에 부응하여 가구와 장식품도 그 격에 맞는 작품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공예품인 도자기는 청화백자가 유행하였다. 경기도 광주 분원요에서 주로 생산된 청화백자는 그 종류도 다양했지만, 문양·기법 등에서 작품성이 매우 뛰어났다. 건축에 있어서는 기존의 건축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향교·서원·사찰의 건축이 널리 유행하였다. 특이한 것은 邑城의 건축인데, 수원의 華城이 대표적이다.

한편 음악의 경우는 아악을 중심으로 한 궁중음악이 쇠퇴한 반면에 민간 음악이 서민사회의 풍류문화 보급과 관련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성장하였다. 즉 가객과 풍류객들이 대두하면서 가곡·가사·시조 등과 같은 풍류음악이 유행하였고, 광대들에 의해 판소리와 같은 공연예술이 발달하였다. 음악과 함께 춤도 발달하였으니, 특히 민중의 생활환경을 토대로 한 민속무가 나름대로 발달하여 민중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민속무에는 풍물굿·탈춤·강강술래·승무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연극에서는 판소리와 더불어 민속극으로서 가면극·꼭두각시놀음·탈춤들이 서민사회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조선 후기의 사회는 18세기 이후 기존의 신분제가 이완되어 나갔고, 민중 사회의 성장이 확인된다. 17세기 장기간에 걸친 기근과 전염병의 피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국가에서도 각종의 사회제도 개혁을 뜻하는 변통론

들이 제기되어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그와 같은 변화는 대략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난 共同納의 관행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 공동납의 관행 아래에서는 면리 단위로 조세를 부담할 호구수의 총액 즉 戶總과 口總이 정해졌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의 조세가 개개인이 아닌 각 면리에 공동으로 부과되었다. 이 새로운 부세징수 방식으로 말미암아 부세의 기준인 호구총수가 정해진 이후에는 호적 기재상의 직역 표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18세기 전반 이후 신분별 호구 비율의 급격한 변동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사회에 있어서 사족지배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재지사족들은 士族勢를 이루면서 양반 신분을 새롭게 획득한 사람들과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은 종법제도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제사상속권을 강화하고,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동성촌락인 班村을 출현시켰으며, 촌락사회에서는 宗家型 地主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반상제적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상민들의 성장이 계속되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양반 사족에 대한 상민층의 저항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향약이나 향안이 변질되어 나가는 시점에 이르게 되자, 양반층은 상민층에 대한 계속적 지배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여기에서 18세기를 전후해서 사족들은 일종의 자구책으로 族契, 門契를 강화하거나, 서원·祠宇를 장악하고 유력 성씨들이 반촌을 형성하여 상민 촌락 곧 民村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처럼 양반층이 상민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 방안을 여러 방향에서 모색해야 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상한들의 성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 상한들 가운데 일부는 18세기 중반을 경과하면서 부민층으로의 성장을 계속했다. 이들 부민들은 신향층을 형성하기도 했고, 수령과 결탁하여 守令-鄉吏 수탈구조를 이루며 부세행정의 말단 기구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이와 같이 민인들이 향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들은 사족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향권을 두고 구향층과 대립하여 향권을 장악하거나 이를 분점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향을 형성하게 된 상층 상한들 이외에도 서민지주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력의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 향

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가고 있었다.

한편 일반 상한들도 경제적 활동이나 신앙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는데 香徒와 淫祀나 村契·두레와 같은 조직이 그것이다. 그리고 分洞으로 인해서도 민중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촌계나 두레 등 촌락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 강화됨과 동시에 촌락사회로부터 이탈되어 간 下賤民들도 민중결사를 시도했다. 流亡한 농민들 가운데 도성이나 읍성 주위에 거주하던 이들은 생계유지나 자위의 수단으로 향도계를 조직하여 잡역을 담당했다.

한편 당시 향촌사회에서는 향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18세기에 들어와서 향회가 부세행정에 있어서 수령의 자문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었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大小民齊會’의 형식으로 반상 구분없이 참여하는 향회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향회에서 새롭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으로 ‘饒戶富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농민층 이외에도 상인이나 광산업자 등 다양한 출신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賣鄉 등의 방법을 통해서 향권에 접근해 갔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향회의 기능이 부세 자문기구적 성격보다는 민의를 집결하고 읍정을 주관하는 기능으로 발전되어 갔다. 또한 당시 공동납의 관행이 강화되어 가던 과정에서 과외의 수취나 부정기적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이 요호부민층으로 집중되었고, 그들의 부담은 결국 일반 농민층으로 전가되었다. 여기에서 관과 요호부민의 대립과, 관에 기생하는 吏鄕層과 농민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향회가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으로 활용되었고, 요호부민층이 항쟁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런데 사족, 이향이나 요호부민이 아닌 일반 민인들도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서는 민중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향회와는 별도로 민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중조직의 출현은 민중세력의 성장을 나타내는 현상이며, 이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저항운동이 준비되고 실천되어 갔다.

이상과 같이 후기사회에서는 민중조직이 발전하고 민중사상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조선 후기 민중운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함께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민중사상이란 정통적 성리학의 지배이념에 대해 회의하거나 이를 거부하려는 사상이다. 성리학이 당시 지배층의 이념이었다면 민중사상은 민중이 창출했거나 실천하고 있었던 이념으로서, 제도의 개편이나 사회변혁을 추구하던 이념이었고 민중계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상이었다. 이 민중사상은 불교나 鑑訣思想과 같은 전통적 종교신앙과 관련되는 사상이거나, 서학·동학 등 신종교운동의 틀 안에 드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민중사상은 성리학에 대한 사상적 도전이었으며,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거부하거나 조선왕조의 멸망과 교체를 주장하는 사상으로서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러한 민중사상을 전파하거나 실천했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존재는 현실의 정치집단으로부터 배제된 저항적 지식인으로서 地師나 儒醫, 學長 등에 종사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민중사상의 전파가 중에는 巫覡이나 승려들도 있었다. 한편, 18세기 말엽 이래 서학이 수용되고 19세기 중엽 이후 이양선의 출몰이 빈번해졌다. 이에 일부 민중저항운동자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조건을 활용하여 저항운동을 전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민중사상을 異端邪說로 규정하고 斥邪衛正의 기치를 들어서 이를 박멸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중저항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에 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 민중사상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18세기 민중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민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유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지주제의 전개에 따른 농민층의 분해와 부세수취 과정에서 드러나는 苛斂性에서 찾아진다. 이로 인해서 농민층은 유망을 강요당했다. 이들 유민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로 진입하여 임노동자층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상업이나 광업·수공업 분야에 편입되기도 했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의 수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간의 화전지대나 국경지역 또는 島嶼地方으로 유망해갔다. 이 유민 가운데 일부는 국가의 부세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승려가 되거나 明火賊으로 轉化되기도 했다.

명화적들은 주로 양반이나 土豪家를 습격하거나 포악한 관리들의 만행을 응징하기도 하며, 관부를 습격하여 물화와 군기를 탈취하거나,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내는 각종 상납물을 약탈했는가 하면, 또한 그들은 유통로를 장악하여 상인들의 재화를 약탈했다. 이러한 명화적의 활동은 당시 지배층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 이 시기 중세 체제 내에서 전개되던 명화적의 활동은 19세기에 이르러 중세체제를 거부하는 민란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위치하였고, 조선 후기 민중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18세기를 전후하여서는 劇賊의 발호가 심화되기도 했다. 극적은 다수의 도적들이 집단적으로 출몰하여 약탈행위를 일삼던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웅거하면서, 극적 상호간에 일종의 연락망을 갖기도 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각처의 토호들과도 연계되었다. 이들은 명화적과 유사한 존재였으나, 그 조직이나 상호 연계성 또는 농민층과의 결합도 및 장기 간에 걸친 활동 등에 있어서 명화적들과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유민이 점증하고 극적의 활동이 강화되던 상황에서 영조 4년 戊申亂이 발생했다. 1720년대는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내적 모순과 지배층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노출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봉당세력이 약화되고 집권층의 채원이 진행되면서 무신란을 주도하게 된 戊申黨이 영조 즉위 직후에 형성되었다. 무신당은 당론상으로 볼 때 少論 峻論系와 濁南 및 小北系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일부 재지사족층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당대 名族의 후예였지만, 숙종 연간의 甲戌換局(숙종 20년 ; 1694) 이후 정권에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도 급속히 몰락해 가던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무신당에서는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는 反正을 통해서 중앙정계로 진출하고자 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로는 李麟佐와 鄭希亮을 들 수 있다. 무신란의 당초 의도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거병하면 여주, 이천에서 이에 호응하고, 주도층 자신들이 京中을 교란시키면 평안병사가 勤王을 구실로 상경하여 도성을 평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군들은 경기 및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심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이반되어 가던 상황에서 청주를 근거지로 확보한 후 그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慶尙下道에서 안음·거창·합천·삼가·함양 등을 장악했다. 전라도

에서도 부안과 변산의 토호는 독립당세력을 동원해서 부안 및 전주를 장악했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에서의 거병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경상도에서는 안동과 상주의 점거가 실패로 돌아갔고 전라도에서도 나주세력의 호응을 얻을 수 없는 데다가 평안병사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주의 반군세력과 변산의 독립당은 서로 합세했지만, 경상하도의 반군들은 반군의 주력과 차단되어 있었다.

무신란은 그 계획 단계에서 몰락한 사족 및 재지사림 혹은 토호나 鄉品, 장교 등의 관여가 확인된다. 그러나 무신란의 전개과정에서 독립당의 세력이나 일반 민인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참여 동기를 감안할 때, 이는 민중운동의 하나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무신란이 政變 차원이 아니라 兵亂 차원에서 전개된 배경으로는 먼저 재지사족이나 토호 등의 현실비판 의식 및 정치참여 의지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민인들이 당론 내지는 국왕 선택에 따른 권력투쟁과는 무관했지만, 병란의 성공을 통해서 부세수탈을 면해보려던 현실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의 민중운동에서는 殘班과 下民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무신란은 민중운동 발전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필연적 통과점으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는 중세사회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과정이었고, 조선사회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제반 갈등이 심화되던 때였다. 이 시기의 농민들은 이미 18세기 민중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민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이 민중운동들은 조직과 진행과정, 지향과 이념의 측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때의 민중운동은 저항의 주체나 투쟁공간, 운동의 지향점이나 투쟁형태 등에 따라서 몇 갈래로 나뉘어 진다. 향촌사회 기층민의 계속적인 유망과 함께 抗租, 抗稅와 같은 투쟁도 18세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擊鐙, 呈訴나 官前號哭, 白活, 等訴와 같이 관을 상대로 하는 민중운동, 그리고 掛書, 亂言, 헛불시위, 山呼 등 민인들이 구사해 오던 전통적인 저항의 형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것은 民亂과 變亂을 들 수 있다. 민

란 혹은 民擾라 할 때는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그 속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생활하던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세수탈이나 수령과 이서배의 수탈에 대하여 通文을 돌리거나 呈訴를 거쳐 봉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민란은 봉기지역이 고을 단위에 머물고 있으며, 투쟁의 목적도 탐관오리의 규탄이나 부세수취의 부당성에 대한 경제투쟁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 민란적 성격의 농민항쟁은 보통 향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군현 단위의 향권을 장악하거나 중앙정부의 회유가 있으면 곧 진정되었다.

“民擾가 越境하면 叛亂이라 칭해진다”라는 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변란은 고을의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였다. 이러한 변란 혹은 병란은 稱兵騷亂, 賊變, 逆謀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정치투쟁이었다. 한편 농민을 주체로 한 대규모의 변란으로서 고을 단위의 국지성을 벗어나 중앙권력의 타도와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무장투쟁의 경우는 農民戰爭으로 규정된다. 농민전쟁은 농민운동 내지 민중운동에 있어서 가장 고양된 형태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전반기의 민중운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平安道農民戰爭’으로 불리는 ‘洪景來亂’을 들 수 있다. 이 난은 조선 후기 평안도지방이 가지고 있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이 지역에서 누차에 걸쳐 일어났던 농민봉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했다. 즉, 이 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안도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차별을 강요받고 있던 평안도는 사족층의 형성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향인층이 향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청무역이나 수공업, 광업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신향층을 이루면서 향촌질서를 재편하고자 했다. 이들 신향층의 신분 상승 욕구는 부민층에 대한 수령의 수탈행위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수령권과 부민층의 대립이라는 갈등구조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평안도에서의 민중저항운동이 양성되고 있었다.

이 난은 수령권의 부세수탈과 그 수령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중앙권력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의 부민층 등에 의해 수년 간에 걸쳐서 준비되었던 이 난은 순조 11년(1811) 12월에 평안도 가산 다복동을 근거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 난에서는 홍경래가 都元帥로, 金士用이 副元帥

로 활동했고, 禹君則·金昌始가 謀士의 직책을 맡았고, 李禧著를 비롯한 이 지역의 저항적 지식인과 신향층 등이 대거 참여했다. 난의 발발 직후 홍경래가 지휘하던 남진군은 가산과 박천을 함락시켰고, 김사용의 북진군은 곡산, 정주를 함락시키는 등 반란 후 10여 일 만에 청천강 이북 7읍을 석권했으나 松林里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이들은 定州城에 웅거하여 저항을 계속했다. 이들의 봉기는 이듬해 4월까지 지속되었으나, 정주성의 함락으로 이 난은 실패로 돌아갔다.

홍경래난은 평정된 이후에도 농민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저항운동에 힘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삼정의 문란을 비롯하여 중세사회의 해체현상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당시에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는 설이 떠돌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란을 지향하던 심성을 나타내 준다. 그리하여 홍경래난이 평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농민의 저항운동은 다시금 일어났고,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농민항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철종 13년(1862)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한 ‘1862년 농민항쟁’으로 불리는 투쟁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농민항쟁은 철종 13년 2월 경상도 단성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단성 농민항쟁은 곧 인근 지역인 진주로 확대되었고,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삼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그 해 추수기까지 대략 80여 개의 군현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했다. 봉기가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야기된 부세문제가 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농민항쟁에 참가하는 계층은 대개가 신분적으로 常漢이고 小貧農의 처지에 있는 일반 농민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소빈농에 준하는 유민, 雇工이나 노비층의 참여도 확인된다. 물론 일반상인이나 수공업자의 참여도 있었지만 이들이 항쟁의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봉기를 주도한 지도부는 주로 일부 몰락양반이나 농촌 지식인으로 구성되었다.

1862년 농민항쟁은 조세제도의 철폐 및 시정의 요구를 통한, 경제적 측면에서 반봉건을 주창한 것이었다. 그들은 삼정제도에 대해 저항하며 새로운 부세체제를 요구하는 반봉건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수령, 관속, 읍권 담당자들에 대해 공격하고 농민 스스로가 읍권을 장악하던 과정에서 현존

하던 봉건적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 정치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식은 점차 고양될 수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농민들에게 다양한 계급모순 외에 민족모순이 중첩적으로 부가되자 그들의 의식과 항쟁의 외연은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혁과 저항의 주체로 결집되어 갔다. 개항 이후 도처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은 바로 이 같은 1862년 농민항쟁을 그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변란은 19세기 전반기의 변란이나 여타 민란과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즉, 변란 주도층의 지역적 구성범위가 확대되었고, 변란의 투쟁목표는 왕조의 타도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변란 주도층이 이념적 무기로 가지고 있던 감결신앙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적 의지에 관한 인식이나 구체적 전망이 제시되지 못했다. 또한 변란 지도부는 생산현장이나 향촌사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묶어낼 수 있는 조직기반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변란 지도층이 가지고 있던 반외세의 이념을 민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변란을 통해서 확보된 지역간의 연계성이나 反王朝的 의지 및 反外勢의 이념은 19세기 후반기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민중항쟁을 가능케 해준 역사적 체험이 되었다.

이러한 거국적인 농민항쟁과 농업에서부터 상공업으로의 경제적 비중의 증가, 여기에 편승한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중인층의 성장과 전통적인 농촌사회 구조의 해체 그리고 도시(邑治)의 발달과 도시 주민의 시민적 존재로서의 전화 등은 결국 중세사회로서의 양반사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李樹健〉

5. 근 현 대

역사란 꿈을 만들고 꿈을 실천해 가는 작업의 연속이다.¹⁾ 따라서 한국근대사는 중세나 고대의 어느 때보다 좋은 꿈(이상)을 가지고 그 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되어야 했다. ‘좋은 꿈’이란 어떤 꿈인가. 그것은 인간주의의 실현을 말한다. 중세까지 인간을 구속했던 신분제를 벗고, 인간의 자유 평등을 구가하는 사회가 근대라고 생각한다. 자유를 정치에 적용했을 때 국민주권사상에 의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것이고, 경제에 적용했을 때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추구한 자본주의를 말하고, 사회적으로는 인권을 보장한 사회를 말한다. 처음에는 그러한 자유가 평등하게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 민주주의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을 발견하여 신분제를 거부하고 자유 평등에 대한 생각이 싹트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실현할 민주주의는 어떻게 형성하고 성장시켜 왔던가. 거기에서 한국근대사의 중심과 중심의 흐름인 근대사의 본류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근대사 본류의 형성과정에서 제국주의의 흙탕물이 덮치고 말았다. 그래서 한민족은 흙탕물 속을 헤엄치며 인간의 길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독립운동의 역사이다. 독립운동은 인간의 길을 찾기 위한 민족적 노력을 말한다. 1945년 해방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물이 맑아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흙탕물 찌꺼기를 없애가며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새롭게 일으켜야 했다.²⁾

1) 조동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3, 신서원, 2000), 23쪽.
——,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도 역사의 힘을 믿는다》, 푸른역사, 2001), 13쪽.

위의 글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작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역사는 꿈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역사는 실천의 연속이다. ③ 역사는 발전한다. ④ 역사는 다양하게 발전한다. ⑤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축을 만들며 발전한다.

2) 역사는 아무리 새로운 세상이라고 해도 전시대와 혼합해서 존재한다. 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니까 새로 밥상을 차리듯이 말끔하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먹던 밥과 반찬에 덮치기로 구시대와 새시대가 혼재하며 발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증법도 생각하게 되고 도전과 응전의 원리도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조선 후기에 인간의 평등을 노래한 《春香傳》이 나왔다는 것은 근대사의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어 정부에서 간행한 《秋官志》에서 노비제를 비판했는가 하면 《備邊司謄錄》이나 《正祖實錄》 같은 정부 간행물에서조차 민의 사상이 고양되고 있었다.³⁾ 그때 서민문화가 발달했던 것이라든가, 영조나 정조와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이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운을 일으켰다든가, 수리시설이나 이앙법의 발달 등에 따른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상업통보를 중심의 화폐 유통이 활발했던 것처럼,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고, 농업이나 수공업에서 상업성 경영 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京江商人·松商·澗商이나 혹은 樵負商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유로운 경제행위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자본주의가 싹트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학연구와 함께 자국사 연구로 나타난 민족의식의 부상은 자기발전 곧 인간의 발전을 의미했다. 말하자면 근대사가 동트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뒤이은 세도정치의 반동으로 봉쇄당한 것을 보면 근대사의 새벽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도정치와 같은 반동은 중앙정치에 국한된 것이 아닐 정도로 전국에 퍼져 있었다.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문중서원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 세도정치와 역사적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었다.⁴⁾ 그러니까 근대사적 동력은 반동체제에 눌러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韓致彞(1765~1814)·丁若鏞(1762~1836)·金正喜(1786~1856)·李圭景(1788~?)·崔漢綺(1803~1877)·金正浩·李尙迪(1804~186

구시대를 정당화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 3) 《備邊司謄錄》과 《正祖實錄》이나 《明南樓叢書》에 나오는 ‘民國’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民’과 ‘國’을 말하는가, 아니면 ‘民國’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학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民’의 위치가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李泰鎮, 〈大韓帝國 皇帝政과 民國 정치이념의 전개〉(《韓國文化》 22,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998).

——, 〈‘御旗’ 태극팔괘도의 유래와 민국치 이념〉(《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258~260쪽.

- 4) 李海濬, 〈門中書院 건립의 性格〉(《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85쪽.

5) ·朴珪壽(1807~1876)의 실학 저술이나 활동이 세도정치기인 19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었던가 하면, 서민문화도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었다. 세도정치의 반동체제로 말미암아 활기를 떨 수가 없어 분산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후 다시 근대사적 계기가 마련된 것은 학자에 따라 1860년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1876년 개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제국주의 역사가나 종교가들은 후자의 주장을 고집하고 반제국주의 학자나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전자를 고집한다. 이와 같이 한국근대사 연구는 출발부터 제국주의 논쟁에 휘말려 있다.

필자는 1860년을 전후하여 근대사가 열렸다고 보고 있다. 1850년을 전후한 김정호·최한기 등의 활동에서 보듯이 근대적 저술이 나오고 있었던 사실도 주목하고 싶다.⁵⁾ 다음에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1860년을 전후한 사회변동이 근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876년 개항으로 역사가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근대적 변동은 일어나고 있고, 근대를 인간주의 시대라고 보았을 때 비인간의 표본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개항에 근대사의 출발점을 설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⁶⁾ 그래서 186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근대사의 기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전개되었다.

- ① 근대적 사회변동과 자주 개혁의 시련(1860년 전후~1910)
- ②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독립운동(1910~1945)
- ③ 해방정국의 혼돈과 현대사의 전개(1945~현재)

5) 崔漢綺는 1837년 《靑丘圖》, 1857년 《地球典要》를 내고, 김정호는 1864년에 《大東輿地圖》와 《大東地志》를 냈다.

6) 근대화를 볼 때 인간주의를 외면하고 경제의 수치를 기준하여 설명하면 형식 논리에 빠져 근대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기된 것도 근대주의가 경제의 계량적 성장을 표준한 나머지, 인간 가치를 기준한 역사발전의 본질이 아닌, 국부 발전론에 치우쳤던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경제발전이 있었다고 해도 경제발전은 경제발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논리와 평가는 인간주의에서 출발해야 하고 다음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1) 근대적 사회변동과 자주 개혁의 시련

(1) 근대의 초기적 특징

근대의 특징은 인간주의 사상의 확산과 생활화 및 제도화에 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간의 발견은 자기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후기에 실학과 더불어 자국어와 자국사연구가 일어난 것도 자기발견의 단면이었다. 자기를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발견하면 자기가 소속한 나라와 겨레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비인간적인 중세 신분제에 대하여 비판과 개혁 논리를 찾게 된다. 거기에서 평등사상이 대두하고 평등사상에 기초한 서민문화가 일어난다.⁷⁾ 그러한 조선 후기의 실학연구, 사회변동, 민족의식의 고양, 서민문화의 발달 등의 근대적 지향은 세도정치기의 반동으로 말미암아 후퇴하거나 잠복했다가 세도정치가 물러간 후에 다시 부상하였다. 그것들은 이웃 중국대륙에서 阿片戰爭(1840), 태평천국의 난(1853), 영불연합군의 북경침략(1856~1860) 등의 충격적 격변의 영향도 입어 새로운 얼굴로 부상하였다. 실학의 개혁론을 새 시대에 맞게 다듬어 내수자강론에 이어 동도서기론으로 꾸몄던가 하면, 그에 만족하지 않고 혁명적 변혁을 추구한 개화사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동도서기론은 조선 후기 개혁사상의 정직한 계승자였는데 개화사상은 구시대의 계승을 수구라고 공박하며 혁명적 변화를 추구했다. 그렇게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 개항전(1840~60년대)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손꼽는 이는 최한기를 비롯하여⁸⁾ 박규수·吳慶錫(1831~1879)·劉鴻基(1831~1884?) 등이다.⁹⁾

7) 조선 후기의 실학에 대하여 주목한 최초의 역사서는 1930년 崔南善의 《朝鮮歷史講話》인데(육당전집편찬위원회, 《六堂崔南善全集1》, 현암사, 1973, 52쪽), 실학을 사회개혁사상으로 진단한 것은 丁若鏞의 《與猶堂全書》를 1934년부터 간행하면서 그에 관련한 安在鴻·白南雲 등에서 비롯되었다(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203쪽 주133) 참조).

8) 權五榮,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研究》(집문당, 1999), 53~61쪽.

——, 〈새로 발굴된 자료를 통해본 해강의 기학〉(《해강 최한기》, 청계, 2000), 15쪽.

9) 愼鏞廈, 〈개화사상의 형성〉(《서세동점과 문호개방—한국사37》, 국사편찬위원

근대사가 동트는 또 다른 특징은 조선 후기 이래의 사회변동과 서민문화의 정신 즉, 평등과 평화사상에 기초한 토착종교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는다. 1860년에 경주에서 人乃天의 기치를 들고 東學이 발생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풍미한 평등과 평화를 갈망한 鄭鑑錄사상도 민중사상의 일단으로 주목해야 한다.¹⁰⁾ 그때 사회변동을 재촉한 1862년의 삼남민란도 중세 신분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삼남민란이 전통시대의 농민반란 수준에 머문 것이냐, 농민운동 수준에 이른 것이냐, 혹은 과도기의 농민전쟁으로 볼 것이냐는 견해가 엇갈려 있다.¹¹⁾ 농민전쟁으로 본다고 해도 근대사의 새벽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다음의 근대사적 특징은 대원군의 개혁정치(1864~1873)이다. 특히 서원철폐와 호포제실시는 양반 봉건제에 대한 개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혹은 말하는 왕실제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책이라고 하더라도 양반 봉건제에 대한 비판 없이 단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대사를 일으키는 개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재야를 망라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던 것도 안동 김씨 중심의 노론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대원군 집정기에 판서급 이상 취임자 139명 가운데 노론이 78명으로 56%에 이르고 안동 김씨가 10%에 이를 정도로 구조개혁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경우가 있는데,¹²⁾ 인원 통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요직을 누가 맡고 있었는가를 보아야 하고,¹³⁾ 또 구조개혁 같은 혁명 수준이 아니라 부분적 개혁 수준의 변화도 평가해야

회, 2000), 92~105쪽.

10) 高成勳, <정감록사상과 변란>(《朝鮮後期 變亂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25~34쪽.

11) 농민반란은 전통시대에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이념 없이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말하고, 농민운동은 농민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목적으로 전개한 사회경제운동을 말한다. 운동 성격에 따라 개혁이나 혁명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농민전쟁은 농민반란이 농민운동으로 발전해 갈 때 농민운동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과도기적 현상을 농민전쟁이라 한다.

12) 成大慶, <대원군의 내정개혁>(《한국사 37》, 국사편찬위원회, 2000), 159쪽.

13) 핵심요직인 총융사·어영대장·금위대장·훈련대장은 김좌근·김문근·김병기·김병국 등의 안동 김씨가 전담하고 있던 것을 대원군 집정기에는 그들이 하나도 맡지 못하였다. 대원군 퇴각후에는 민씨들이 독점하였다.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개혁이나 변동이 19세기 반동체제 속에서도 서서히 진행되다가 세계사적 격변기를 맞아 새롭게 변화하였다. 그 새로운 변화가 근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정치제도와 세계 인문과 지리를 소개한 《地球典要》(1857) 등이 사상계를 바꾸고 있었던가 하면, 동학의 발생(1860), 삼남민란(1862), 대원군의 개혁정치(1864)와 아울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대한 항쟁(1866) 등을 근대사의 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독자적으로 근대성을 본질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사건마다에 내함하고 있는 근대적 요소를 모아 그 총체적 변화에 주목하여 근대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 개항의 역사성과 사상계의 동향

아시아국가들이 느림보 걸음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서유럽국가들은 항해술을 발달시켜 아시아를 침략해 왔다. 이른바 西勢東漸이다. 그들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서유럽국과 뒤따라 미국과 러시아도 그에 참가했는데 그들의 첫 번째 요구가 문호개방이었다. 결국 그들의 총칼 앞에 세계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국에 대하여 문호개방을 요구한 최초의 나라는 영국이었다. 뒤이어 프랑스와 미국 등이 요구해 왔으나 그들은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에서 격퇴되었다. 격퇴한 것을 쇄국으로 보거나 척사위정으로 규정할 것도 아니다. 소박하게 열강의 침략에 대한 국가 본원적 반격으로 보아야 한다. 거기에 위정척사가 편승하고 쇄국으로 비추어진 것을 제국주의자들이 과장했을 뿐이다. 그후 정국을 주도하던 대원군이 퇴각하고 광무황제(고종)의¹⁴⁾ 친정이 실시되면서 대

14) 광무황제란 고종을 일컫는다. 고종이란 칭호는 1919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지어준 사후 왕시호이다. 광무황제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사용한 연호를 광무라고 부른 데에서 연유한 호칭이다. 아직 대한제국도 성립하기 전에 광무황제라고 부르는 것이 눈과 귀에 익지 않으나 그 보다 더 뒤인 1919년에, 그것도 광무제를 폐위시킨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이름을 사용하기 보다는 광무제란 호칭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근래 몇몇 연구가 광무제의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태진의 고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논문은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2000)에 집중 게재되어 있

원군 세력에 맞설 민비 척족정치가 실시되었는데 민씨정권은 문호개방의 일단으로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¹⁵⁾

일본도 구미 제국의 무력에 굴복하여 1854년부터 문호를 개방하였는데 문호개방 후 일본은 반전하여 서양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을 침략해 왔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미국이 굴복시키지 못한 조선을 굴복시켰다. 그것이 강화도조약이다. 이러한 세계 대세를 간파한 개화와 정객들은 문호개방을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진로로 전망하고 타율적으로 개항한 문호개방을 자율의 역사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오경석·유흥기·이동인·탁정식·김옥균·

는데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서 전개한 이태진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줄일 수 있다. ① 고종시대의 역사는 조선 후기의 개혁사상과 사실을 계승하여 새롭게 발전하고 있었다. ② 새롭게 발전하는 역사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종이었다. ③ 그렇게 자력으로 한국근대사가 형성 발전하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기와 군사력의 강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을 것은 빼앗으며 망쳐 버렸다.

사실 광무제는 대원군의 노욕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왕좌를 지켰다. 그리고 의병장에 밀지를 내려 격려하고 대한매일신보에 자금을 지원했던가 하면, 을사늑약의 비준을 거부했고, 헤이그특사사건 후에 추가 비준까지 거부하고 왕좌에서 물러난 광무제였다. 그러나 한편, 유럽 의병장들이 명나라 毅宗의 모범을 따라 자결하라는 상소를 외면했던가 하면, 아무리 구식군대라고 해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치른 군대였는데 친정 후 갑신정변·갑오왜란·을미사변·을사늑약의 소동에서 궁전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 15) 19세기 후반기의 역사는 대원군과 광무제(고종)의 부자관계, 그리고 대원군과 민비의 구부관계를 솔직하게 밝혀야 이해가 가능하다. 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한 평론은 한결같지가 않다. 필자는 반동적인 것도 있지만 발전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그의 앞 시기에 비하여 발전적이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은 일시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 개의 손가락에서 한 개의 변화가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선구적 개혁이 있었느냐의 여부와 그 뒤에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민씨 척족정치나 광무제가 친정하면서 개혁정치를 얼마나 계승하고 추진해 나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개혁정치도 마찬가지로 후계자가 계승하고 발전시켰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대원군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침략군을 격퇴한 것을 쇄국정치의 일단으로 보아서는 안되지만, 침략군을 격퇴한 다음에 세계조류에 뛰어들지 못하고 척화비를 세운 1871년의 처사가 쇄국을 불러 일으키고 말았던 것은 분명한 실책이었다. 그러나 대원군은 그 다음의 정책을 수립할 겨를없이 1873년에 물러났다. 그러한 1871~1873년 2년간의 실책보다 그가 역사를 그르친 것은 가족관계의 잘못된 조율과 물러난 뒤의 행각에 있다고 생각한다.

박영효·홍영식·서광범·서재필 등 이른바 개화당 인사들이었다.

그런데 문호개방을 자율화하기 위한 개화정책의 진행은¹⁶⁾ 지지부진하였다. 1876년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고 다음에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까지 6년여의 세월을 소비하였다. 그 6년간은 일본의 독무대로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이 형성된 기간이 되고 말았다. 그때의 각종 개화시설 또는 근대 시설이란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로를 만드는 시설이었다. 정상적이라면 강화도조약에 이어 열강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열국간의 세력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해야 됐다. 외세에 의지하는 것은 역사를 그리치지만 외세를 이용하는 것은 생존과 발전의 지혜인 것이다. 청나라까지도 1878·79년에 걸쳐 문호개방을 권고한 바 있었으나 거부하였다.¹⁷⁾ 그후 뒤늦게 일본에 건너갔던 수신사 金弘集의 주장과 黃遵憲의 《朝鮮策略》을 검토한 1880년 10월 12일의 중신회의에서 문호개방을 결정한 것이다.¹⁸⁾ 그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16) 역사는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언제나 자율적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타율적으로도 전개된다는 말인데 타율적으로 전개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역사도 나의 역사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876년의 개항이나 1945년의 국토분단이 타율적 사실이었지만 한국사의 사실로 고착된 것처럼 타율적 사실이라도 그를 자율적 힘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면 한국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때 타율적 역사를 자율적 역량으로 수용하여 타율의 의미를 극복하거나 회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필자는 '타율성의 자율화 작업'이라 말하고 있다.

17) 權錫奉, 〈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歷史學報》21, 1963), 114쪽.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단국대 출판부, 1985), 36쪽.

18) 중신회의는 黃遵憲의 《朝鮮策略》의 권고에 따라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였다. 7:3 정도의 찬성으로 통상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결정은 문호개방의 타율성을 자율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에 반대한 1881년의 辛巳斥邪疏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5백년 유교왕조와 조선 중기 이래의 북벌론 의식의 기세를 고려하면 그것도 당연한 추세였다. 당연한 추세인 척사소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모두 유배형으로 봉쇄하고 춘천의 洪在鶴은 일벌백계로 처단하여 척사소의 기세를 잠재웠다. 그것은 국왕과 정부의 문호개방 의지를 대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타율적 개항을 자율적 문호개방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조치였다. 문호개방을 반대한 홍재학은 춘천군 서면 신매리 출신으로 華西 李恒老의 문인 重菴 金平默의 제자였다. 《朝鮮策略》에는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청국 국기를 조선의 국기로 사용할 것 등에 대한 요구도 등재되어 있다. 국기는 1881년 이래 태극기를 사용하였는데 속방 문제는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맺었지만 그것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했다. 문호개방을 추진한 조선은 중국과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근대적 통상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그때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임오군란은 1876년 이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방치한 나머지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군란이었다.¹⁹⁾ 그런데 임오군란으로 청군이 주둔하고 청군에 의해 대원군이 납치되고 청군에 의지했던 민비정권을 압박하여 24년간(1636~1882) 왕실간의 조공관계를²⁰⁾ 국가간의 종속관계로 전환시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 조선이 청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속국 규정도 그것이지만 조선 국왕은 청의 북양대신과 대등하다는 규정에, 청나라 상인이 조선내지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규정하여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²¹⁾ 이것은 자주 개혁의 꿈이 무너지는 대사건이었다. 개화당이 쿠데타를 서두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 혼돈에 휘말린 것은 혁명적 개화세력 즉, 개화 주체의 약체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²²⁾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중국과의 통상조약에서 명시하고 말았다. 그것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1894년 청일전쟁 후부터였다.

- 19) 임오군란이 일어난 1882년의 무역수지를 보면 일본에 대한 수출입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수입 185만 2천원 가운데 대일 수입이 156만 2천원인데 대청수입은 29만원에 불과하고, 수출은 대일 상품수출이 193만 1천원과 사금수출이 52만 9천원인데 비하여 대청수출은 총 16만 2천원에 불과했다(도면회, 〈개항후의 국제무역〉, 《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1999, 148쪽).
- 20) 李萬數(1664~1732)는 사대관계를 왕실간의 관계에 한정하고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 백성이 남의 나라 국왕을 추모하는 萬東廟 설치에 반대하면서 조선 백성은 자기 국왕에게 충성하면 그만이라고 했다(이만부, 〈萬東祠議〉, 《息山全書二》, 여강출판사 영인본, 1993, 269쪽).
- 21) 중국의 황포에 반발한 개화당을 독립당이라고 부른 이유도 포악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때문이었다. 林殷植을 비롯한 종전의 독립운동 저술에서 갑신정변부터 시작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 22) 일본과 미국과의 통상조약에 이어 열국과 통상조약의 체결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조약들은 치외법권·관세특혜·최혜국대우 등을 규정한 불평등조약이었음은 제국주의 시대의 통례였다.
 1882. 8. 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83. 11. 영국과 수호통상조약
 1883. 11. 독일과 수호통상조약
 1884. 6. 이태리와 수호통상조약
 1884. 7. 러시아와 수호통상조약

당시의 사상동향을 보면, 지배적 대세는 세도정치기에 정체되어 있던 실학의 개혁사상이 다시 활기를 찾아 대세를 주도하고 있었다. 대원군의 개혁정치도 그러한 추세에 일단으로 볼 수 있다.²³⁾ 그러한 개혁사상이 서세동점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국가개방론’ 또는 ‘개량적(온건) 개화론’으로 변신해 갔다. 그것이 개항과 더불어 다시 동도서기론으로 다듬어진 것이다. 동도서기론을 사상사의 위치에서 보면, 실학의 재생과 같은 것이다. 그때 실학 방식의 구시대 논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아비판을 통한 자아혁신론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혁명적(급진) 개화론’이었다. 그들은 서세동점의 대세를 보고 혁명적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혁명적 지식인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들은 특히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폭력적 압력을 당하고도 중국에 관심을 쏟는 <개량적 개화론>을 구시대의 보수로 보고 수구파·사대당이라고 공박하였다. 그러니까 개화론이 대두하여 온건노선과 급진노선으로 분화한 것이 아니라 실학사상이 온건(개량적) 개화론으로 전이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발로 급진(혁명적)개화론이 대두한 것이다. 혁명적 개화론자는 자기만을 개화파 또는 개화당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²⁴⁾ 그런데 어느 개화론도 개화의 시계가 청과 일본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넘는다고 해도 청나라나 일본을 통해서 보는 정도였다. 서양의 책을 번역해도 중국이나 일본 번역서를 재번역하는 방식이었다. 개화를 중개받고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間接開化 또는 屈折開化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조선 후기부터 실학과 북학론에 밀려 세력을 잃고 있던 위정척사론

1886. 6. 프랑스와 수호통상조약

1892. 6. 오스트리아와 수호통상조약

1901. 3. 벨기에와 수호통상조약

1902. 7. 덴마크와 수호통상조약

23) 박규수·최한기 같은 실학자가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 때 斥和論을 제기했다고 해서 개화를 반대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대원군의 척화론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침략 전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척화론을 鎖國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해야 하고, 斥和論이 斥邪論과 같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 李光麟, 〈穩健·急進開化派의 思想〉(《韓國史講座 近代篇》Ⅴ, 일조각, 1981), 126쪽.

이 서세동점의 거센 물결에 반발하여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위정척사사상은 효종조의 북벌론에서 발원했는데 발원 당시에는 국민적 호응도가 높았다.²⁵⁾ 그리하여 북벌론을 제기한 이후의 조선 왕조를 북벌론 정권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북벌론 즉, 위정척사론은 국론의 위치를 굳히고 있었다. 그것이 실학이나 북학론의 공격을 받아 조선 후기부터 위축되고 있었다. 더구나 신문물 신종교가 유입되면서 지도이념의 자리를 잃고 있었다. 척사의 대상도 확대되면서 척사의 개념도 모호해져 갔다.²⁶⁾ 그것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전국적 척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척사론이 힘을 얻었고, 다음에 1881년에는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추진한 조정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른바 신사척사운동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895년 을미사변 때 위정척사의 기치를 들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자, 위정척사사상은 반제국주의사상의 중심을 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을미의병을 위정척사사상의 마지막 꽃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격변기에 사상의 분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조선 중기의 북벌론을 수호하면서 유교주의 예론을 지상의 사회윤리로 생각한 위정척사사상의 지식인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또 조선 후기 유학자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개량주의적 개혁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도 자연적 추세였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정세를 맞아 그에 호응하여 혁명적 변화를 모색한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할 생각이었다. 마지막의 혁명적

25) 北伐論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노론정권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의 고장인 안동에서 남인으로 알려진 瓢隱 金是樞이 崇禎處士를 자처하면서 은둔생활을 고집하였는가 하면, 영양의 醉睡堂 吳演도 은둔했다가 효종의 북벌계획이 알려지자 靑杞面 靑杞里 椒洞 산중에서 북벌군을 일으켜 훈련할 정도로 북벌론에 적극 참여했다. 청기리에는 지금도 軍幕址가 전해 온다.

26) 斥邪의 대상이 北伐論에서는 淸나라를 배척한 것이었는데 그후 서양문화-천주교→서양 제국주의→일본 제국주의로 배척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중심이 이동했다고 그 전의 척사의 대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고 있었을 뿐이었다. 때문에 척사론이 모두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컸다. 거기에 때마침 일어난 북학론에 이어 신문화와 신종교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아 척사론은 세력을 잃고 있었다. 그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국민적 저항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 활기를 띄게 된 것이다.

개화사상이 새시대에 가장 적절한 생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혁명노선을 추구하면서도 혁명의 수단과 방법론에는 어두웠던 것 같다. 혁명적 개화와 개혁에 수반해서 유입되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았다. 혁명도 자체 역량을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혁명원리를 외면했다. 그리하여 1884년 갑신정변은 실패했다.

그렇게 지식인이 오류를 거듭하고 있었으므로 대중이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체 사상을 개발해 나갔다. 1860년에 민중종교로 일어난 동학사상이 그것을 말하고 동학이 전파력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동학은 1871년에 경상도지방에서 李弼濟亂의 농민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 조직력이 약하여 농민전쟁이 아닌 단순 반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는 방향타를 잃고 혼란이 거듭되었다. 조선 후기 이래의 鄭鑑錄 사상이 확산되었던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 한편 문호개방과 더불어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일본의 神敎와 일본 불교가 들어오고, 미국의 개신교, 영국의 성공회, 프랑스의 천주교가 급속하게 유입, 확산되어 그 동안의 문화적 구심점이었던 유학이 힘을 잃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이와 같은 종교 또는 사상의 무정부상태가 나라의 힘을 잃게 한 주요 이유라고도 말한다. 그것이 힘을 잃는 이유가 됐든 아니든, 문화나 사상의 구심점이 제국주의 침략을 맞은 그때에 분산된 것은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적진 분화가 아니라면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3) 개혁 · 반개혁과 열강의 각축

임오군란으로 자율적 역사 전개가 타격을 입은 그 틈에 열강이 경쟁적으로 침략해 왔다. 일본에 이어 1882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통상조약을 맺고, 1883년에는 영국과 독일이 뒤를 이었다. 이럴 때 조선왕국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준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조선의 왕실이나 정객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힘을 빌려 세계로 나아가거나 일본을 모방하고 그의 힘으로 문명을 달성하려고 생각한 지도자가 많았다. 오히려 전통 시대 사대주의로 오해를 받던 위정척사 유림은 일본이나 미국을 비롯한 제

국주의 국가들을 오랑캐라고 배척했던 것은 물론, 유학의 성지인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 정벌론(북벌론)을 일으켰던 의식이 유존하여 어느 정파보다 외세 의존성이 적었다. 그에 비하여 개량적 개화론은 청나라 문화를 배우자는 북학을 계승한 나머지 청나라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그에 반발한 혁명적 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²⁷⁾ 그것이 1884년의 갑신정변과 그를 둘러싼 정치 정세의 성격이었다.

김옥균·박영효 등의 개화당이 주도한 갑신정변에서 공포한 14개 政令(政綱)을²⁸⁾ 보더라도 역사는 그 방향 즉, 시민이 주도한 개화혁명의 방향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성급한 나머지 대중의 기반을 얻지 못한 채 혁명을 추진하여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말았다. 당장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혁명이라도 대중적 기반을 확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혁명은 혁명운동이 축적하여 끝내는 혁명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⁹⁾ 그런

27) 개화당이 일본을 모방하고 일본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은 개항 직후부터 시도한 중대한 오류였다. 강화도조약 이듬해인 1877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부산에 이어 원산·목포에 東本原寺 別院을 설치하고 조선의 승려와 개화당 인사와 교류하며 정계에도 깊이 관여한 일본 東本原寺 승려 奥村圓心の《朝鮮國布教日誌》에 그때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동본원사 별원에서는 일본 청년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며 특수 훈련을 시켜 갑신정변에 투입했다가 희생되기도 했다. 그의 여동생 奥村五百子は 박영효와 살면서 많은 화제를 남겼다(조동걸, 〈奥村圓心の「朝鮮國布教日誌」〉, 《韓國學論叢》 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4).

28) 1884년 12월 6일 발표한 개화정권의 14개 〈政令〉은 다음과 같다.
김보경 등, 〈1884년 정변의 政令에 대하여〉(《역사와 현실》 30, 한국역사연구회, 1998), 10~25쪽.

① 大院君 귀국과 淸國에 대한 朝貢撤廢	② 門閥廢止・人民平等・人材登用
③ 地租法 개혁・窮民救濟・財政確立	④ 內侍府 폐지
⑤ 貪官汚吏 숙청	⑥ 各道 還上制 폐지
⑦ 奎章閣 폐지	⑧ 巡查制 실시
⑨ 惠商公局 혁파	⑩ 流配 禁錮 죄인의 재조사
⑪ 4軍營을 1營, 왕세자로 대장 임명	⑫ 財政 一元化
⑬ 議政府 회의제 확대 실시	⑭ 議政府 六曹외의 정부조직 개혁

29)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나 중국의 신해혁명도 수많은 혁명운동의 축적 위에서 이룬 혁명이었고, 한국에서 1960년 4·19혁명부터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패의 기록 위에서 민주화를 달성한 것이다. 혁명은 혁명운동의 축적 위에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

데 갑신정변은 대중성을 중시하지 않았다. 대중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보부상 조직은 주목할만 했는데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힘의 공백을 외세로 채웠다. 일본과 어렵게 어렵게, 또 군색스럽게 손을 잡고 혁명을 일으켰으므로 혁명의 실패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를 궁전 안까지 불러들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아울러 개화의 길을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들었다. 일본군만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청군도 진주하여 청일 각축장을 만들었다.

정상적 발전 코스라면 외세없는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실패하면 그 뒤에 다시 또 일으켜 1894년에 이르러 동학농민전쟁의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갑오경장을 혁명으로 발전시키는 코스로 가야 했다. 그러한 정상적 혁명 코스가 아니라 외세에 의지한 갑신정변을 구상한 나머지 일장춘몽의 쿠데타로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혁명이나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화당과 대중이 별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때 민씨 척족은 더욱 반동화하여 민영익·민영준(휘) 등을 주축으로 세도를 강행했다. 이에 이르러 국민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다. 일단 혁명을 일으켰던 1884년부터 폭풍이 몰아쳐야 할 10년간에 별다른 격동이 없었던 것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 탓 때문이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국민적 분위기라면 제국주의의 침략이 더욱 용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10년간에 변화가 있었다면 열국과의 통상이 확대되면서 제국주의 경제 침략에 의한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그에 대응한 정부의 상업정책에 힘입어 객주상회소와 일반상인의 상회사가 전국적으로 설립되는 등, 한국 자본주의도 다소는 성장하고 있었다.³⁰⁾ 독일이나 미국 상인의 진출이 변화를 불러오던 가운데³¹⁾ 1876년 이후 일본 침략의 독무대였던 조선에 〈조청수륙무역장정〉 이후부터 청나라와의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은 외교사적으로는 1885년의 天津條約과 관련하여

30) 都冕會, 앞의 글, 174~178쪽.

31) 金正起, 〈조선정부의 독일차관도입(1883~1894)〉(《韓國史研究》 39, 한국사연구회, 1982), 85~120쪽에서 독일 자본의 도입으로 말미암은 경강상인의 몰락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타격상이 분석되어 갑신정변 후 역사의 표본상을 적절하게 전해 준다.

이 시기 미국자본의 침투에 대해서는 하지연, 〈타운센드상회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4,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6)가 참고된다.

이해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청일 양국의 무역경쟁이라는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발발한 것이다. 이른바 제국주의 전쟁이었다.³²⁾

1894년의 역사는 대단히 다단하였다.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이 일어났던 해이다. 청일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었으므로 주체를 달리하지만,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경장은 조선이 주체이고 구시대의 봉건체제를 청산하는 역사적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전쟁의 弊政改革案과 갑오경장의 洪範14조를 비롯한 3차에 걸쳐 추진한 정치·외교·행정·경제·군사·경찰·사법·교육 등 각 분야와 사회개혁 덕목은 다 함께 한국근대사를 궤도에 올리는 데 중요한 요목들이었다.³³⁾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갑오경장에서 일부나마 반영됐다. 그런데 추진 주체는 서로 상반된 길로 갔다. 그것은 갑오경장을 추진한 시민계급이 갑신정변 이후 대중적 기반을 만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변동기에 중산층이나 지식인은 대중이 따를 수 있는 개혁 진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갑오경장에서 일본을 모방하기에 바빴다.

그렇더라도 갑오경장에 일본의 간섭이 없었고, 동학농민전쟁에 일본군의 토벌이 없었다면 동학농민전쟁이 성공하거나 동학농민전쟁이 갑오경장과 합류한 어떤 새 모습을 갖추어 한국근대사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정부는 동학농민군의 저항을 진압할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그때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길은 차단되고 말았다.

그때 일본은 갑오왜란(7. 23)과 청일전쟁(7. 25)을 도발하면서 갑오경장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新式貨幣發行章程〉(8. 11)에서 일본 화폐 통용의 길을 열고 〈暫定合同條款〉(8. 20)으로 경제침략의 길을 넓게 닦았다. 동시에 청일전쟁의 전시동맹인 朝日盟約(대일본 대조선 맹약, 8. 26)을 강제하고 동학농민

32) 都冕會, 앞의 글 참조. 그때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 상인과 함께 낭인들이 들어와 조선 침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일전쟁 직전인 1893년의 일본인 거주자를 보면 서울에 823(325) 인천 ; 2,504(974) 원산 ; 794(307) 부산 ; 4,750(2097)명으로 총 8,871(3,703)명이었다. ()안에 나타난 여자 인원이 많은 것을 보면 일본인 이주가 장기 생활을 전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姜昌一, 《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역사비평사, 2002), 60~61쪽.

33) 柳永益, 〈갑오경장〉(《한국사》 40, 국사편찬위원회, 2000), 281쪽.

군을 토벌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해 갔다. 오도리 가에 스케(大鳥圭介)에 이어 일본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국왕과 각료를 협박하여 각 아문에 일본인 顧問官을 배치하고³⁴⁾ 借款으로 조선의 재정을 장악해 갔다. 그때 조선을 보호국으로 묶을 공작까지 진행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이 갑오·을미의병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국왕 중심의 외교투쟁으로 나타났는데 일제 침략에 반발하던 명성황후 민비는 일본공사 미우라 코로(三浦梧樓)의 공작테러인 을미사변을 맞아 희생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서도³⁵⁾ 김홍집내각은 갑신정변 때와 같이 대중보다는 일본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학농민전쟁이 후반부터 대일전쟁을 전개할 때 갑오경장 세력은 반대로 일본과 손을 잡고 농민군을 토벌하였다. 한국근대사는 여기서 민중의 길이 별도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근대사에서 시민과 민중의 통합이 숙명적 과제라는 것도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차 갑오경장인 을미개혁은 김홍집·박영효 등이 일본 세력을 업고 추진한 것이다. 그들은 청일전쟁을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 전쟁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임한 것이나, 청일전쟁이나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통해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는 국제관계를 읽지 못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조선의 독립이라고 착각한 조선의 지식인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유인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에 대한

34) 그때 배치된 고문관이 石塚英藏·齋藤修一郎·仁尾惟茂·岡本柳之助·楠瀬幸彦·星亨·武久克造 등이었다.

35) 일본 경제는 신식화폐발행장정으로 금융시장을 침식하고,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부설을 통하여 운수체계와 통신시설을 독점하고, 통신시설이 농토를 잠식하고, 어업·광업·해운업까지 박탈하고 있었는데 1894년을 분수령으로 침략이 본격화되어 조선 경제가 일본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갔다. 그런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금융·교통·통신 등의 유통산업의 침략에 대하여 침략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독립신문》처럼, 개발로 착각하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1차산업의 손실은 침략으로 보면서 특히 3차산업에 대해서는 침략여부를 분간하지 못한 것 같다.

왕궁 방위능력까지 상실한 가운데 왕비가 참살당한 을미사변을 맞은 것이다.

이제는 어떤 개혁도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대중은 그 때까지 타도의 대상이던 봉건 유림의 손을 잡고 반제국주의 의병전선을 형성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비롯한 을미개혁에 저항한 봉건 유림이 일본 타도의 기치를 올렸을 때 봉건유림으로부터 수탈만 당하던 농민(대중)이 목전의 이해가 같은 양반 유림을 따라 대일전선에 나섰다. 자연발생적 통일전선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것이 1895~1896년의 을미의병이다.

(4)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경장 전후의 사회 문화

문화개방과 더불어 사회변동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자체변동과 제국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변동이 중첩해서 진행되어 복잡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1882년 임오군란부터 갑신정변·동학농민전쟁·갑오경장·청일전쟁·을미사변, 그리고 1896년의 아관파천에 이르는 가운데 정치는 주체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회 문화의 변화는 자율성을 확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회 문화의 변화는 동학농민전쟁의 폐정개혁안의 제기나 갑오경장 때 군국기무처의 개혁안처럼 자율화과정을 통하여 토착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는 일본제국주의의 관여와 방해로 토착화가 차단되거나 정치 경제는 타율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은데 비하면, 사회 문화는 자체적으로 자율화과정을 밟은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 안에서 민족문화가 존재했던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구한말의 가장 큰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전쟁의 폐정개혁안과 갑오경장의 사회 문화 개혁의 요목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동학농민전쟁은 동학란·동학농민혁명·동학농민전쟁·동학농민봉기·갑오농민전쟁 등으로 관점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³⁶⁾ 동학농민전쟁은 전기항전(1894. 양력 2. 10~6. 11)과 집강소 설치기(1894. 6. 11 : 음 5. 8~10. 26 : 음 9. 18)와 후기독립전쟁기(1894. 10. 26~12. 30)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36) 東學亂이라고 반란으로 이해하던 것을 혁명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논문은 黃義敦, 〈民衆的 叫呼의 第一聲인 甲午의 革新運動〉(《開闢》1922년 4·5월호)이었다.

다. 거기에서 농민전쟁 이념은 집강소 사회개혁의 성격이기도 한 폐정개혁안으로 나타났다. 폐정개혁안은 12조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분류해서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탐관오리·부호·유림 양반 등의 지배층 숙정
- ② 노비·칠반천인·백정·청춘과부의 해방
- ③ 잡세금지·지벌타과·공사채 무효·왜와 간통업벌의 시폐개혁
- ④ 토지 평균분작

폐정개혁안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이 약한 것은 지도역량의 한계였다. 하지만, 신분제 혁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구조적 모순과 시대적 모순을 일치시켜 이해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안은 일부 갑오경장에 반영되기는 했으나 갑오경장 추진세력과 주체 성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당장의 역사 발전의 빌미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갑오경장에서 제1차개혁은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영의정 김홍집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가 주도하여 210건의 사안을 개혁한 것이다. 거기에서 청나라에 대한 독립을 천명하고, 의정부와 궁내부를 양립시키고 6조를 8아문으로 나누고,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신분제를 혁파하고 공사 노비를 해방하고 과부 재가를 허용한 것 등은 동학농민전쟁의 폐정개혁안과 더불어 1894년에 사회 문화가 크게 변혁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신분제 혁파가 혁명적 조치였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과거제도만 해도 고려 초에 실시한 1천년의 역사를 폐지한 것이다. 과거제가 유교왕조를 일으키고 또 유지시키는 기초가 됐던가 하면 유교사회와 유교문화를 유지하는 힘이 됐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의 폐지가 앞으로 사회 문화를 다양하게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을 전망하기 어렵지 않다. 과부 재가를 금지했던 한국 봉건사회의 암적 특질을 해체한 것은 신분제 혁파에 버금가는 일대 전환인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만든 〈신식화폐발행장정〉에서 일본 화폐의 통용을 허용한 것처럼,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개혁한 타율성의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강요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 음모와 함께 추진한 제2차 개혁과 제3차 개혁으로 갈수

록 더욱 심화되었다.

제2차 개혁은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7월 7일까지 213건의 개혁안이 실시되었는데 역시 김홍집내각의 박영효가 주도하고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조종을 받았다. 거기서 〈홍범14조〉를 선포하고³⁷⁾ 내각을 7부로 나누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구획했다. 그때 관세사와 징세사, 그리고 재판소와 경찰청을 독립시키고, 〈敎育立國詔勅〉이 발포되어 성균관과 향교외에 한성사범학교를 선두로 국공립 각급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 교과서가 편찬되고 역사편찬도 새롭게 일어났다.³⁸⁾ 〈소학교령〉이 나와 오늘날의 교동·재동·매동초등학교의 모체가 세워진 것이다. 제3차개혁은 제3차 김홍집내각이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공사 미우라 코로의 조종을 받으며 140여건의 개혁을 실시했는데 양력사용과 단발령 강행이 대표적 사안이었다. 그것이 강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1백년이 지난 이제는 모두 단발하고 양력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타율성의 자율화과정의 여러 유형중의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 문화는 어떤 것은 고대부터, 어떤 것은 조선시대부터, 어떤 것은 갑오경장부터 유래하였다. 어떤 것은 식민지시기에, 또 어떤 것은 민주화운동에서 유래한 것도 있다. 언제부터의 것이냐에 따라 역사적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런데 갑오경장에서 조선시대의 기본 윤리인 삼강오륜이나 관혼상제에 대한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다. 개혁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률상의 규범은 고사하고 윤리적 통제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회기강이 설 수가 없었고, 각종 종교가 난무해도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문화 무정부 상태가 연출되고 있었다. 무정부상태가 자율성에 의한 결과라면 걱정할 것이 아니지만 타율성에 의한 현상이므로 역사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침략에 도움을 준 경우가 많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역사적 생산물은 자율성 여부와 타율성의 자율화과정을 검

37) ‘洪範’이란 중국의 夏나라 우왕이 발표했다는 ‘洪範九疇’에서 유래한 말로 국가의 기본규범을 일컫는 말이니 ‘헌법’이란 뜻과 같다. 〈홍범14조〉는 한국사에서 첫 번째의 헌법과 같은 규범이 된다. 開國紀元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38) 趙東杰, 〈근대교육과 역사교과서〉(《現代 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73쪽.

토하면서 살펴야 한다. 아울러 주의할 것은 자율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만하거나 자기우상에 빠지면 그때는 당초의 발생가치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해치고 만다는 점이다.

(5) 대한제국의 성립과 독립협회, 시민운동의 대두

열국의 침략으로부터 탈출해 보려는 조선왕조의 몸부림은 아관파천에서 벗어나 경운궁으로³⁹⁾ 환궁하자 곧 대한제국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朝鮮’에서 ‘韓’으로 고친 국호는 고‘조선’이 위만의 침략을 받아 망할뻔 하다가 準王이 남분하여 金馬(益山)에서 馬‘韓’을 일으켜 중흥했다는 마한(삼한)정통설과⁴⁰⁾ 같은 중흥의 역사 재현을 바라는 기원을 담은 것이다. 삼한정통설이 맞든 말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주독립’과 ‘중흥’의 기원을 담은 국호라는 점이다.⁴¹⁾

대한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독립국가의 황제가 하느님에게 고하는 圜丘壇을 설치하고⁴²⁾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그리고 1898년에는 量地衙門을 설치하고 전국에 걸쳐 토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개혁을 단행하였다. 서울의 정리사업으로 도시모습이 일신해졌고 개항장일망정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고 있었다. 전기·교통·통신시설을 비롯하여 산업·교육·언론·의료·군사·경찰·사법제도의 개선이 외국인을 놀라게 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었다.⁴³⁾ 양치아문은 1901년 토지에 대한 권리증을 발부하는 地契衙門으로 개편

39) 慶運宮은 헤이그특사사건 때문에 1907년 7월에 광무황제가 일제에 의해 퇴위당하고 융희황제가 즉위한 곳인데 그것을 왕위를 선양한 궁전이라 미화하여 중국에서 선위한 궁전의 이름으로 불리는 德壽宮이라 불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0) 馬韓正統說은 숙종 때 洪汝河의 《東國通鑑提綱》에서 주장한 후 실학자들이 그의 주장을 이었고, 구한말 대부분의 역사서가 마한정통설을 수용하고 있었다. 마한정통설과 다른 고대사 인식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을 정통으로 보는 三朝鮮說이 있고, 단군·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夫餘正統說이 있다.

41) 趙東杰, 앞의 책(1998), 300쪽.

42) 圜丘壇 축조는 1895년 7월 12일 왕명으로 결정하여 10월 15일 원구단에서 황제 존칭 봉위식을 거행하기로 예정한 바가 있었으나 일·영·러·미국공사가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1897년 대한제국을 성립시키면서 달성한 것이다.

43) 정연태, 〈光武年間 西洋人の 高宗觀〉(《韓國史研究》 115, 한국사연구회, 2001),

하였다. 이러한 광무 초년의 각종 정부사업을 광무개혁사업이라 한다.⁴⁴⁾

한편 1896년 친목단체로 출발한 獨立協會가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시민운동 단체로 발전하여 각종 개혁운동을 전개했는데 1898년 만민공동회를 통한 의회설립운동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1898년에는 李鍾一을 중심으로 대한제국 民力會도 탄생했고, 여권운동도 대두하여 ‘여권통문’을 선포하고⁴⁵⁾ 최초의 여권단체로 贊襄會를 결성하고 최초의 민립여학교인 順成여학교를 설립하였다.⁴⁶⁾ 독립협회에 대항하여 결성한 皇國協會도 일어났는데 보부상 조직이라고 한다⁴⁷⁾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했던 것 같다. 그러나 1898년 독립협회가 上議院 설립운동을 전개한데 반하여 황국협회가 民議院 설립운동을 전개한 것은⁴⁸⁾ 황국협회의 반동화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적 저변을 확대시키면서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도모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운동을 광무개혁운동이라 한다. 시민운동의 과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세수단이 아닌 순수성과 대중화가 과제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광무개혁운동은 독립협회·민력회·찬양회·황국협회 등의 시민(브루쵸아)조직을 통해 나타났다. 특히 여권운동도 일반 시민운동과 같은 시기에 대두한 것은 주목할 점이다. 이때 《독립신문》에 이어 《皇城新聞》과 《대국신문》이 간행되어⁴⁹⁾ 시민운동을 한걸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163~165쪽.

44) 地契衙門은 1904년에 탁지부 量地局으로 개편되었다. 1898년부터 量地衙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대장을 〈光武量案〉이라 하는데 현재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45) 《皇城新聞》, 1898년 9월 8일자.

《대국신문》, 1898년 9월 13일자.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자.

46) 朴容玉, 《한국 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지식산업사, 2001), 343~348쪽.

47) 趙宰坤, 〈皇國協會의 정치경제적 활동〉(《한국근대사회와 보부상》, 혜안, 2001), 174쪽.

48) 趙宰坤, 〈하원(민선의원) 설립운동〉(위의 책), 181쪽.

49) 이때의 신문 발행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漢城旬報 1883. 10. 31(순간, 통리아문 博文局) 갑신정변으로 폐간

漢城週報 1886. 1. 25(주간, 통리아문 박문국) 1888. 7. 7 폐간

독립신문 1896. 4. 7(격일간 후에 일간, 徐載弼) 1899. 12. 4 폐간

협성회회보 1898. 1. 1(주간, 배재학당 協成會) 동년 4. 9일 매일신문으로 고쳐 최초의 일간지, 1899. 4. 4 폐간

19세기 말에 대두한 시민운동이 20세기 초두에 개혁당·협동회·진명회·공진회·보안회·헌정연구회·국민교육회 등으로 발전해 갔는데 1904년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운동이 구국운동으로 통합 발전해 갔다.

시민운동이 광무개혁운동으로 전개될 때 어느 것도 대중성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광무개혁사업과 광무개혁운동이 전개되기 전에 동학농민전쟁을 담당했던 농민의 향방을 추적해 보면, 영학당·남학당·동학당·북대·남대 등의 이름으로 활약하다가 1900년부터 활빈당으로 개편되어 갔는데 그것을 모두 하나로 묶어 ‘광무농민운동’이라 이름하고 있다.⁵⁰⁾ 농민운동이라고 해도 소상인이나 계절 노동자도 참가하고 있었으므로 농민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1904년에 이르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여 그들은 의병으로 전환되어 갔으므로 사회운동으로 전환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1897년부터 1904년까지의 역사는 정부의 광무개혁사업과 시민운동인 광무개혁운동과 민중적인 광무농민운동으로 구조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영·미의 책략과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제1단계로 1876년 강화도조약을 성공시킨 후 1884년 갑신정변에서 제2단계의 야욕을 달성하려다가 실패하고 제3단계로 1894년 갑오경장의 우위를 잡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민족적 저항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열국의 견제도 있었으므로 그들의 뜻대로 달성될 수 없었다. 조선이 그때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중흥을 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독립의지가 조야에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京城新聞 1898. 3. 2—대한황성신문 1898. 4. 6—皇城新聞 1898. 9. 5—漢城新聞 1910. 8. 30~9. 14

대국신문 1898. 8. 10(일간, 李鍾一) 1910년

時事叢報 1899. 1. 22(洪中燮) 1899. 8. 17 폐간

商務總報 1899. 4. 14(商務公社, 皇國協會系) 매일신문 시설 이용.

50) 趙東杰, 〈光武農民運動과 申彥石 의병〉(《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102쪽.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영·미 제국주의와 합작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새로운 단계에서 추진한 것이 1900년대 초두의 동북아 정세였다. 즉, 러시아 제국주의의 팽창을 크리미아전쟁(1854~56)과 아프가니스탄전쟁(1878~80)으로 막고, 다시 극동지방으로 터져나오는 러시아를 일본의 손을 빌려 막으려고 계산한 것이 영국과 미국의 속셈이고, 그의 대가로 일본에게 한국침략의 우선권을 보장했다. 이것은 한국 침략을 소망하던 일본 제국주의로서 절호의 기회였다. 영일동맹(1902. 1. 30, 제2차 1905. 8. 12)을 맺고, 러일전쟁을 도발하고(1904. 2. 8~2. 10) 한편, 미일협정 즉, 테프트·가쓰라 비밀협정(1905. 7. 29)을 맺은 것이다. 이듬해에 노일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1905. 9. 5)을 체결하여 일본은 한국침략의 국제적 보장을 확실하게 끝냈다. 이것이 제4단계의 일제 침략이었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국제적 보장을 배경삼아 한국 침략을 범 절차도 무시하고 난폭하게 추진하였다.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한국의 국외중립선언을 무시하고⁵¹⁾ 한반도 전 영토와 해역에 일본군을 진주시켰던가 하면⁵²⁾ 한국과 견대를 편성하여 서울의 왕궁 정면의 남산 일대에 군영을 설치하고⁵³⁾ 창덕궁·원구단·문희묘·광제원 같은 공공시설도 모자라 민가까지 숙영지로 징발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듬해인 1904년 2월 23일에 韓日議定書를 강제 체결하였다. 체결에 반대한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李容翊을 납치하고 보부상의 두목 吉永洙와 육군참장 李學均과 참령 玄尙健은 연금하고 체결하였다.⁵⁴⁾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국제 협약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주권의 제약을 규정한 협약이 군대를 주둔시킨 협박 속에 체결되

51) 한국정부의 열국에 전달된 局外中立宣言은 1904년 1월 21일었으나 일본정부에는 그에 앞선 光武 7년(1903) 9월 3일이였다. 당시 주일공사 高永禧 명의로 일본 외무대신 小村壽太郎에게 전달하였다(《日本外交文書》제36권 제1책, 723쪽).

52) 金正明編, 《朝鮮駐軍歷史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1》(巖南堂書店, 소화 42년 : 1967), 33쪽.

53) 지금의 필동·회현동·동자동·청과동·이태원·삼각지·이촌동 일대가 일본군의 주둔지였는데 뒤에 일본인 거주지가 됐다. 옛 거주지 동쪽 끝에 위치한 영희초등학교는 일본인의 日出소학교였고, 서쪽 끝의 용산고등학교는 9월이 일본인 학생이었다.

54) 尹炳奭, <을사5조약의 신고찰>(《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36쪽.

었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施政改善에 관한 忠告를 받아 들일것”(제1조), 일본정부는 “軍略上 필요한 地點을 隨機收用함”(제4조), 그리고 제5조에는 제3국과 의정서에 위배되는 협약을 맺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⁵⁵⁾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위하여 그해 8월에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정부 부처에 고문을 배치하고, 그것을 비판한 《帝國新聞》을 일본 헌병 사령부에서 정간시켰다. 전국 곳곳에 군략상 필요한 지점이라 하여 요소 요소를 점령하던 일제는 獨島를 영토에 편입시켰다.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카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는 1904년 11월 典圀局을 폐쇄하고 〈화폐제도정리안〉을 만들어 백동화를 정리하여 한국 화폐를 일본 화폐에 종속시켰다.⁵⁶⁾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1904년 한일의정서의 체결부터 일본의 준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그후의 침략과정에서 형식상 체결한 1904년 8월의 한일협약,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⁵⁷⁾ 1907년 7월의 한일신협약, 1910년 8월의 병합조약들은 1904년 한일의정서의 구체화 과정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은 없었다.⁵⁸⁾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의 강점

55)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따라 한국 침략을 구체화하는 〈帝國 對韓方針〉과 〈對韓施設綱領〉을 만들어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확정하고 6월 11일에는 ‘天皇’의 재가를 받았다. 대한방침에서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그를 위한 시설강령 6개항에서는 ① 한국의 국방은 일본군이 맡는다 ② 외교 감독을 강화한다 ③ 재정을 장악하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군대를 해산하고 주외국 공관을 철수한다 ④ 교통기관의 장악 ⑤ 통신기관의 장악 ⑥ 농업·임업·어업·광업의 척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한일의정서에 근거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한일의정서에서 준식민지상태가 전개된 것이다.

56) ‘화폐제도정리안’의 ‘정리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① 한국화폐의 기초와 발행화폐를 일본과 동일하게 한다 ② 한국화폐와 동일한 일본화폐의 유통을 인정한다 ③ 본위화폐와 태환권은 일본화폐로 하거나 또는 일본 태환권을 준비시켜 일본 정부가 감독 혹은 보증하는 은행권으로 한다.

57) 1905년 11월 17일 일본군을 궁전 안팎에 포진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려다가 이완용을 비롯한 5대신(을사5적)의 찬동을 얻기는 해도 참정대신을 비롯한 3대신의 반대가 있었고, 광무황제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실패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이행시켜 ‘늑약’이 되었다고 해서 선인들은 ‘乙巳勒約’이라 불러 왔다. 을사늑약의 원문에는 협약의 이름조차 없어 ‘乙巳無名條約’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韓日協商條約’·‘乙巳條約’·‘乙巳五條約’·‘제2차 韓日協約’·‘乙巳保護條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여러 호칭 가운데 ‘을사늑약’이 선인들이 부르던 이름이고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과 동시에 중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1909년에 間島協約으로 한중간의 국경분쟁을 종식시키면서 만주에서 安奉철도 부설권 등 여러 가지 이권을 침식하며 만주 침략을 구체화하였다.

(7)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전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은 눈앞에 닥친 일본 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 것이 당장의 급선무였다. 그러나 그를 지원하고 있는 영·미 제국주의에 기만당하지 않아야 할 자주성이 또한 중요했다. 자주성은 배타성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대주의 개혁을 동시에 수행했을 때 달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제 침략의 대응은 세 가지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광무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투쟁이었고, 하나는 항일 의병전쟁이었고, 하나는 브르쥔아 시민운동 성격의 계몽주의 운동이었다.

가. 광무제의 외교투쟁

외교투쟁이라면 당연히 정부에 의해서 전개될 문제였지만, 그때의 정부 요인은 1904년 이래 일본에 매수되어 매국노의 길에 빠져 있었다. 한일의정서로 나라가 기운 것을 보면서 영국에서 자결 순국한 李漢應 공사 같은 지사도 있기는 했지만⁵⁹⁾ 각료들 대부분이 정신이 마비되어 자주 정부의 각료 구실을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이 외롭게 비밀리에 항쟁한 딱한 처지에 있었다.⁶⁰⁾ 임금이 각료를 믿지 못하고 밀령을 발부하던 것은 1904년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 1894년 7월 23일 갑오왜란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삼남지방에 밀지를 보내 근왕병(의병) 봉기를 종용했던 데서 효시를 찾을 수 있다.⁶¹⁾ 그

58) 李泰鎮, 〈서론-“보호”에서 “병합”까지〉(《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9~23쪽.

59) 李漢應 공사(서리)가 순국한 것은 1905년 5월 12일로서 을사늑약 6개월전이었다. 그때의 유서에서 “嗚呼・國無主權・人失平等・凡關交涉・恥辱罔極・苟有血性・豈可堪忍乎”라 한 것을 보면 영국에서 일본 외교관의 간섭을 받아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던 나머지 자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60) 박희호, 〈외교활동〉(《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13~80쪽.

61) 李晚燾, 《響山文集 附錄 年譜》, 甲午 9월조(趙東杰, 〈響山 李晚燾의 독립운동과 遺志〉, 《韓國近現代史의 이해와 論理》, 지산업사, 1998, 211쪽).

후 유인석·최익현·김도현·이은찬·이강년, 그리고 1914년 임병찬까지 국권을 상실하던 20년간 적지 않은 의병장이 밀지를 받아⁶²⁾ 충의를 맹세하며 항쟁한 경우를 본다.

그러나 외교투쟁은 1904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러일전쟁을 앞두고 국외중립을 천명했던 것도 일부는 비밀 외교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구체화되자 비밀외교의 대상이 미국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1898년 하와이와 필리핀을 정복하면서 태평양 지배국가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주변은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의 4나라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미국만이 한국 침략에서 뒷집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1882년 한미수호조약 제1조에서 “양국은 서로 돕고 거중알선하여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문구에 의지해 보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한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짓밟고 말았다. 그것이 테프트-가쓰라 협정이었고, 그에 따라 일본의 한국침략을 보장한 포츠머스조약을 거중알선하였다. 그의 공로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제국주의가 노벨상까지 지배했던 것이다.

이제는 대한제국이 믿을 나라가 있을 수 없었다. 거기에서 고안한 것이 국제회의에 특사를 밀파하여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길이었다. 그것이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평화회의에서 전개된 이상설·이준·이위종의 헤이그밀사 사건이었다. 민비와 대원군이 죽은 뒤의 광무황제는 외로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 전의 임금 모습보다는 오히려 왕도를 지키는 듯 했다. 헤이그밀사사건의 꾸밈 자체도 그것이지만, 그때 매국 각료들이 을사늑약에 비준할 것을 주달했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임금에서 물러났다.⁶³⁾ 그후 隆熙帝(순종) 정부는 일본의 괴뢰와 다름이 없었다. 융희제가 즉위하자 한일신협약(정미조약)으로 대

62) 의병전선에서 밀지를 받았다는 인원은 의외로 많다. 혹은 ‘위장 밀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장도 의병 봉기를 독촉하기 위한 좋은 의미의 것도 있고, 혹은 사기성 위장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63) 1907년 7월 17일 8대신이 주달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金光濟·崔承學, 《大同報》 제3호, 大同月報社, 光武 11년 7월 25일, 35쪽). ① 光武 9년 11월 17일의 新條約에 御璽를 押할事 ② 皇太子殿下에 攝政을 推薦할事 ③ 皇帝陛下에서 일본 동경에 親幸하사 일본 황제께 謝過할事

한제국은 일본 통감부의 감독을 받아야 했고,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부의 시정개선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했다.

1904년 한일의정서에 뒤이은 일본정부의 〈對韓施設綱領〉 제3항에서 재정을 압박하여 親衛隊외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계획에 따라 서서히 감군하다가 정미조약과 동시에 전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1907년 8월 1일부터 1주일 내에 친위대만 남기고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에 주둔한 진위대를 모두 해산하였다. 그해 6월부터 헤이그밀사사건, 광무제와 융희제의 교체, 정미조약에 이어 군대를 해산한 망국사태가 1907년 6·7·8월을 메웠다. 그후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이름조차 없어질 때까지 3년간은 망국 절차를 밟던 기간에 불과했다. 그때 어떤 민족운동 단체도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었다.⁶⁴⁾

나. 의병전쟁의 전개

의병이 봉기한 것은 189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정세 변화에 따라 해산하고 1904년 활빈당으로 종결된 광무농민운동이 의병으로 전환하면서 의병전쟁이 본격화되었다. 그것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의병(1894~1896) ; 갑오의병은 1894년 갑오왜란에 대한 안동의병과 상원의병을 말하는데 근왕병 성격이고, 을미의병은 1895년 민비시해의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의 을미개혁에 저항하여 전국 유림이 봉기했는데 근왕병과 적사의병의 복합성격의 것이었다.
- ② 중기의병(1904~1907) ; 1904년 한일의정서에 항거하여 광무농민운동(활빈당)이 의병으로 전환하고, 1905년 을사늑약 때 전국에서 유림의병이 봉기했는데 국가주의 의식이 부상, 민중의병과 유림의병이 병존 연합 혼재했다.
- ③ 후기의병(1907~1909) ; 1907년 6·7·8월 망국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해산군인이 참전하여 의병전쟁을 발전시킴. 국가주의가 확산되었고, 각계각층의 의병이 참전한 국민전쟁 성격이다.
- ④ 전환기의병(1909~1915) ; 유인석·이범윤·안중근의 경우처럼,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해 가는 시기의 의병전쟁으로 국내에서는 민중의병이 전선을 주도했다. 민족주의가 부상했던 시기였다.
- ⑤ 말기의병(1915~1918) ; 일제 강점하에서 해외 독립군으로 전화하지 못한 잔

64) 趙東杰, 〈舊韓末(1909) 國民演說會 小考〉(《韓國民族主義의 성립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218쪽.

류의병이 3·1운동 직전까지 산발적으로 항전한 의병이다.⁶⁵⁾

의병이란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봉기한 민병을 말한다. 군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쟁 의사를 결정하는 국왕이 의병 봉기의 밀지를 발송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거나 궁전이 일본군에 점령당하고 국왕이 매관 각료에 포위되어 주권 의지의 표현이 제약을 받고 있을 때, 주권 의지는 국민 또는 민족에 의하여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데, 민족의 지가 의병 봉기로 나타났으므로 의병전쟁이라 부르는 것이다. 외형으로 보아도 전쟁 형식과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의병과 대적한 일본군의 《暴徒編冊》이나 《朝鮮暴徒討伐誌》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대한 제국 병합은 주권 의지와는 무관한 강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의병전쟁은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항전이었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의병은 널리 알려져 있고, 그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도 많지는 않았지만 의병의 봉기가 있었다. 이러한 전통 위에서 1894년부터 의병전쟁이 전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자 일본을 야만인이라고 배척하며 싸웠다. 한국의 윤리와 문화를 항전의 정신적 지주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적 항전이요 도덕적 항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개인의 본능적 항전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침략자도 문화와 도덕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어느 것이 인류를 위하여 우월했던가는 아직도 대답이 없다. 다만 근대와 전근대의 잣대로 우열을 나누는 수가 있는데, 근대에는 발전근대와 수탈근대가 양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대가 인간주의를 상실하면 수탈근대로 전락하고 만다.

의병전쟁은 정의와 도덕과 문화를 명분으로 했다. 그러나 수탈 무기 앞에 패전을 거듭하고 말았다. 사람은 죽고 집은 불타고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다.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다. 얻은 것은 정의를 지키는 전통이요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정신뿐이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정의와 자유의 정신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독립운동의 밑거름을 얻었고, 그것이 해방 후 민주화운동의 동력으로 이어져 현대사를 발전시킨 것이다.

65) 趙東杰, 〈義兵戰爭과 3·1운동의 關係〉(위의 책), 441쪽.

다. 계몽운동의 전개

계몽운동을 정확히 말하면 계몽주의운동이다. 계몽주의는 중세에서 근대로 발전할 때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문명 이론으로서 한국 계몽주의는 근대주의·사회진화론·국학 민족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계몽주의 운동은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었다.⁶⁶⁾ 1896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광무개혁운동의 부르주아 시민운동이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을 보면서 구국운동으로 발전한 것이 계몽주의운동이었다. 활빈당을 중심으로 한 광무농민운동이 의병전쟁으로 발전한 것과 운동 곡선을 같이하고 있다.

계몽운동의 분야는 교육운동·언론운동·산업운동이었는데, 여성운동도 등장할 정도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있었던 지식인의 부르주아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초기 조직은 국민교육회와 대한자강회가 대표적이었다. 교육운동은 지방별로 나누어 전개되었는데 서우학회·한북학회·기호흥학회·호남학회·관동학회·교남교육회 등이 그것이었다. 언론으로는 황성신문·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하여 신문 잡지가 무수하게 간행되고 있었다. 그러한 교육과 언론에서 표방하는 것이 근대주의와 사회진화론과 국학 민족주의였다. 국학 민족주의는 국어·국사·국교운동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 신문 잡지에서는 조선어·조선역사·대종교 등을 소개하기에 바빴다. 최광옥·주시경·김택영·현채·장지연·박은식·신채호·정인호·안종화·정교 등이 많은 저술을 남겼다.

계몽주의는 1907년 7월 망국사태를 당하여 좌우파로 분화되었다. 일제 침략에 대한 저항론과 온건론의 차이였다. 저항적 좌파는 공화주의를 표방하며 지하조직인 신민회를 만들어 저항하다가 1910년을 전후하여 해외로 망

66) 계몽운동이라는 역사의 像을 최초로 역사 서술에서 부각시킨 것은 黃義敦, 〈光武 隆熙年代之 啓蒙運動〉(《新民》 14호, 1926년 6월호), 173쪽에서 비롯되었는데 해방 후에 孫晉泰, 《國史大要》(을유문화사, 1948), 238쪽에서 ‘愛國 啓蒙運動’이라고 이름한 후에 애국계몽운동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계몽운동은 계몽주의 사상을 기초한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애국계몽운동’이 아니라 ‘계몽운동’ 또는 ‘계몽주의운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계몽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근대 초기에 있었던 사상으로 공통된 것이 근대주의였다(趙東杰, 〈韓末 啓蒙主義의 思想構造와 독립운동상의 位置〉, 《韓國民族主義의 성립과 獨立運動史 研究》, 지식산업사, 1989, 97쪽).

명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였고, 온건적 우파는 보황주의(입헌군주제)를 표방하며 대한협회를 만들어 식민지하에서는 개량주의로 전략하거나 친일파의 길을 걸었다. 함께 사회진화론을 믿었지만 진화의 주체를 좌파는 민족으로, 우파는 국가로 보았다. 그러므로 민족의 진화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국가의 진화를 도모하다가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진화의 주체를 상실하고 친일파로 전략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민족을 진화의 주체로 생각한 좌파는 나라는 망해도 민족의 진화를 통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해외로 망명하거나 국내에서 지하 혁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3·1운동의 인도주의 이념에 젖으면서 사회진화론에서 탈피하였다.

(8) 자주개혁의 좌절과 대한제국의 멸망

이상과 같이 근대 초기의 근대를 향한 초기적 변동과 함께 추진된 대원군의 개혁은 민비정권에 의하여 새로운 개혁으로 탈바꿈해 갔으나 만족스럽게 계승하지 못하였다. 그 위에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정쟁이 심화되어 국왕과 정부측에서 시도하던 개혁이 방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때 혁명적 개혁을 지향한 개화당이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을 통하여 정국을 일변하면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정변이나 개혁의 대중적 기반을 얻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대중적 힘의 공백을 외세의 힘을 빌려 추진하여 외세 각축장을 연출하고 말았다. 결국 1894년에는 이땅에서 청일전쟁을 맞아야 했다. 그러니까 자주 개혁이어야 할 근대적 개혁이 제국주의의 상처를 감수하며 추진되어야 했다. 따라서 자주성을 외면한 개화당의 개혁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서 대중은 별도로 민중적 결집을 이루게 되었다. 1860년대 이래 동학을 창시하고 삼남민란을 일으킨 民敎와 民亂 세력이 이필제란으로 합류를 시도하면서 동학농민전쟁으로 발전해 갔다.

여기서 대한제국으로 국호까지 고치며 중흥을 도모하던 정부의 광무개혁사업이 다소의 진전을 보였고, 그때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인 광무개혁운동이나, 활빈당으로 정비되던 민중운동인 광무농민운동도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각 별도의 길을 갔다. 1900년을 전후하여 광무개혁사업과 광무개혁운동, 광무농민운동이 별도의 역사적 사실로 존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주 개혁의 노력이 역량의 분화로 벽에 부딪힌 안타까운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한 힘의 공백과 힘의 분산을 호기로 일본 제국주의가 침투하였다. 영·미 제국주의를 업은 일본 제국주의가 1904년에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한일의정서로 한국 지배를 강화해 갔다. 여기서 그때까지 자주 개혁으로 근대화를 도모하던 모든 세력이 구국전선을 형성했다. 광무황제를 중심으로 외교투쟁이 전개되었고, 활빈당 등의 광무농민운동은 그때까지 적대관계에 있던 봉건 유림과 합류하여 의병전선을 형성하였고, 광무개혁운동을 추진하던 시민운동은 구국 계몽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의병전쟁은 유림이 주도했던 민중이 주도했던, 그것은 전통시대의 역사적 역량의 결집이었고, 계몽운동은 그 동안에 성장한 근대적 역량의 결집현상이었다. 거기에서조차 전통과 근대가 역량의 분산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근대사의 한계라 하겠다. 그 분산의 통합은 독립운동 마당의 과제였다.

그와 같이 근대화를 추진했던 광무황제와 정부 관리나 혁명적 개화파정객이 제국주의 침략의 구조적 모순 탓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역량 부족이었거나,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해 나라를 그르쳐 갔다. 광무황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서 청일 양군의 횡포에 타격을 입고 불안에 빠졌으나 그래도 자신의 개화노선을 추구했다. 그런데 갑오왜란과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는 공포 분위기에 빠지고 있었다.⁶⁷⁾ 동도서기 또는 구분신참을 표방하던 정부관리는 방향을 잃고 일신의 영달과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개화정객들은 점점 친일에 빠지고 있었다.⁶⁸⁾ 결국 광무황제의 외교투쟁이나 계몽주의운동이나 의병전쟁이나 대한제국을 구하지 못하였다.

1904년 한일의정서로 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그해 8월의 한일신협약으로

67) 정연태, 〈光武年間 西洋人の 高宗觀〉(《韓國史研究》 115, 2001), 153~154쪽.

68) 개화정객 가운데 1904년에 비교적 정도를 걸었던 인물로 알려진 徐載弼이나 李承晩 같은 이도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친일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취하였다고 한다(孫世一, 〈李承晩과 金九 15〉, 《月刊 朝鮮》, 2002년 10월호, 532쪽).

지배를 구체화하면서 동해안의 독도를 점령하고, 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을 강제하여 통감부를 설치하고, 1907년 7월에 한일신협약으로 감독정치체제를 만들고 한국 군대까지 해산하였다. 그리고 1909년에는 협약도 아닌 己酉覺書로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고 1910년에 이르러 이른바 ‘일한병합’을 달성하여 대한제국은 그 이름조차 없어지고 1천3백만 명의 한국인은 나라를 잃고 말았다.

2)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독립운동

(1) 일제의 강점과 식민통치의 기초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강점하자 ‘칙령’으로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조선귀족령〉으로 76인의 병합 공로자를 평생 연금을 받는 식민지 귀족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식민통치의 율타리로 삼았다. 역시 칙령으로 임시토지조사국 관제와 제령으로 〈회사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경제의 틀을 짜고, 〈조선교육령〉으로 식민교육 즉, 민족동화교육의 기초를 정비하였다. 〈조선재판소직원령〉·〈범죄즉결례〉·〈조선태형령〉·〈조선민사령〉·〈조선형사령〉·〈조선감옥령〉으로 사법체제를 완비하였다.

총독부에는 총독관방장관을 비롯하여 총무국·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경무총감부를 두고, 974명의 관리가 배치되었다. 별도로 철도국(변화무상)·통신국·세관·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영립창의 경제수탈업체와 증추원·취조국의 자문기구를 두었다. 지방은 종래 317군 4,351면을 폐합하여 1914년에 12부 218군 2,517면으로 구획하였다(《施政30年史》). 1945년의 마지막 중앙 관서는 총독관방·총무국(개폐무상)·재무국·광공국·농상공·법무국·학무국·경무국·체신국·교통국이 있었다.

총독은 덴노(天皇) 직속으로 입법·행정·사법의 3권과 육해군 통수권을 장악한 육군대장(1명은 해군대장)이 부임하고 그를 정치 기술로 보좌한 정무총감은 민간 정치인을 배치하고 있었다.⁶⁹⁾ 총독은 독립적으로 법률과 같은

制令과 總督府令을 공포했고, 관입관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 총독부에 사법부와 각급 재판소를 두고 재판을 관할하였다. 3권을 장악한 위에 군통수권까지 좌우하여 절대군주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였다.⁷⁰⁾ 이러한 조직을 동원하여 감행한 식민통치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본다.

가. 본국인 생활경제와 직결시킨 식민지 경제수탈

식민지 건설의 일차적 목표는 경제적 이익추구에 있었는데 경제 이익은 영국이 인도에서 추구했던 상품시장을 통해서, 아프리카 식민지에서는 주로 원료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획득한 경우도 있었고, 포르투갈이 고아나 마카오에서, 영국이 싱가포르나 홍콩을 통해서 추구했던 경우와 같이 무역수지를 통해서 이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었다. 그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제수탈은 다방면으로 추구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만,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의 생활경제와 직결된 식민지 경제를 이루어갔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이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이나 1930년대의 농촌진흥계획, 1940년대의 증미계획의 추진이었다. 그들의 식량문제를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지주를 통한 수탈체제를 구조화시켰다. 수탈을 극복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고(죽음을 담보한 노동) 인구 증가에 따라 노동력이 상승하여 미곡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일 반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농민의 생활은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1930년 총독부 통계에 질량농가가 6월에 이를 정도였다.⁷¹⁾

69) 1919년 8월 19일 관제 개편에서 무관 총독제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까지 문관 총독이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 관제 개편으로 육해군 통수권은 이관되었는데 그래도 총독은 필요에 따라 조선군사령관에게 군대의 동원을 요구할 수 있었다.

70) 金雲泰, <개요>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1~5쪽 : 《改訂版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박영사, 2002, 148쪽).

71) 朝鮮總督府, 《朝鮮의 小作慣行》下(1932), 74~75쪽에 의하면 1920년의 소작농민(자소작 포함)이 77.2%였고, 1930년에는 78.8%로 8월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때 미곡의 수확량을 보면 1917년 1천3백만석인데 1927년에 1천5백만석으로 증가했으나 대일 반출량이 1917년에 1백50만석, 1927년 5백60만석으로 폭증하여 조선에 남는 쌀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944년에는 수확량의 6할을 공출하기도

이와 같이 경제 수탈이 생산지 조선의 조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소비지 일본의 요구에 따라 조선경제가 좌우됐다. 식민지 수탈이라고 해도 일단, 시장 논리에 따라 식민지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에 수탈을 극대화하는 구미 제국주의 방식과 달랐다. 그러므로 일본의 수탈 양상이 잔인하였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다는 조건이 그것을 부채질하였다.

나. 민족동화를 위한 식민문화 건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민족에 대한 동화를 획책한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뿐이었다. 미주 대륙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이 동화를 원한다고 해도 유럽 식민국가들이 반대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민족을 동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동화란 조선인을 일본에 흡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동화를 추진하다가 만주족이 중국(漢)민족에게 동화되듯이 문화권이 같은 탓으로 역동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민지 동화정책은 주밀하게 추진되었다. 학문과 예술과 종교를 일본의 학문·예술·종교에 예속시켰다. 특히 민족형성과 발전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언어·문학·역사를 파괴하여 일본식으로 재편해 갔다.⁷²⁾

민족이란 정치·경제는 망해도 문화의 기능을 통해 존속하기 때문에 식민지 속에서도 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시기의 민족문화는 민족 보존의 영양소 구실을 했다. 따라서 학문과 예술과 종교 등의 문화가 민족의 특수성을 상실하면 민족을 지탱할 힘을 잃게 되므로 다른 민족에 흡수되고 만다. 그것을 일본 제국주의가 겨냥하고 조선의 문화를 파괴해갔다. 문화파괴는 먼저 식민교육을 통하여 강행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6세)에 일본어를 주당 6시간을 배정하여 가르쳤는데 그것은 조선의 어문을 파괴하기 위함이었

했다.

72) 민족동화정책을 1943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遠藤柳作은 1959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벚나무와 소나무, 버드나무가 재료로 한데 섞여 하나의 벚나무 통으로 태어나고, 소나무도 버드나무도 벚나무로 변화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강력한 테도 두루고, 테를 선으로 조여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감정상의 마찰도 생기고 생활상의 마찰도 일어났던 것입니다”(宮田節子(정재정역),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해안, 2002, 277쪽).

다. 토착어문이 있는데도 6세 어린이에게 토착어가 아닌 외국어를 주당 6시간을 강제교육한 경우도 일본 식민교육의 특징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일본 노래와 일본 역사를 가르쳤고, 일본 위인전을 교양도서로 보급하였다. 그때 한편에서는 조선의 노래를 봉쇄하고 말과 글도 막고, 조선의 위인이나 역사는 잘못되거나 괴상하게 꾸몄다. 이러한 식민문화와 식민사학이 조선인의 교양과 상식을 지배한 가운데 조선민족은 일본 민족으로 개조되어 갔다. 바로 그것을 동화정책이 노리고 있었다.

결국 조선민족은 소멸하고 일본민족만 남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869년 북해도의 설치 통합, 1879년의 유구 통합으로 아이누족이나 유구인이 일본민족으로 전환되어 갔듯이 조선민족도 같은 궤도를 밟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러한 식민통치상의 특수성은 구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다.⁷³⁾ 그것이 일본으로서 불가피했던 것은, 원주민을 방치했던 구미식으로 통치하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민족동화의 강력한 통제가 요구되었다고 하겠다. 민족동화정책은 1910년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총독이 부임하면서 一視同仁이란 구호로 식민문화를 통하여 추진되었는데, 1931년 일본이 만주까지 정복한 다음에는 조선을 완전하게 통제할 것을 획책하여 식민문화에 그치지 않고 식민통치 전반에 걸쳐 민족동화(민족말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조선에서는 內鮮一體(1936년 南次郎 총독 제창), 만주에서는 五族協和를 들고 나왔다.⁷⁴⁾ 만주에서 오족협화를 추진하자면 조선에서 강력한 안전장치로 내선일체가 필요하다고 계산한 것이다. 내선일체를 표방하면서 가정에 소형 가미다나(神棚)를 설치케 하고,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이른바 국민복을 입게 했다. 다음에 입법을 추진한 것이 징병제·의무교육제·참정권문제였고 3자는 정치 이론상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징병제 외에는 실시할 겨를이 없었다.

73) 민족동화정책이 구미제국주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인데 그것을 일본은 “외국의 식민통치에서 보이듯이 원주민은 가급적 미개한 상태로 내버려두려다가, 원주민에 관해서는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두라는 식의 사고방식, 통치자는 지배자로서 원주민과 섞이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고와는 기본적으로 달랐다”라고 기만적으로 변론했다(宮田節子, 위의 책, 278쪽).

74) 金泰國, 《滿洲地域 朝鮮人 民會 研究》(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2), 240쪽.

아울러 식민지 경제수탈을 극대화한 것도 민족의 저항력(물적 기반)을 박탈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해방 후에 식민지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숙청 논의가 정치적 배신자와 달리, 최남선·이광수·최린 등, 학자·예술가·문학자·종교인·교육자·언론인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이유도 일본이 문화의 기능을 통하여 민족 동화정책을 추진했던 식민통치상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식민지시기의 학자나 문화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 문필을 더럽히고 강연을 하고 다녔다. 그들은 사회적 인물의 이름을 행사할 때는 꼭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다. 민족동화와 식민수탈의 극대화를 위한 직접식민통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7년 10월 31일 한국중앙농회에서 일본인 2백만 명의 농업이민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⁷⁵⁾ 그때 한국 인구가 1천3백만 명이었으므로 6.5명당 1명의 일본인이 사는 식민사회가 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군인과 관리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6명당 1명을 계산하였을 수도 있다. 식민지에 대한 이러한 높은 비율의 이민을 계획한 제국주의가 구미 열국에는 없었다. 구미 열국은 필요에 따라 군인은 부대 인원을 주둔시켰지만 간접 식민통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의 수는 적었다. 인도에 파견된 영국 관리의 수가 5천 명을 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다. 영국보다 직접통치성이 강하다고 말하는 프랑스의 월남 통치에서도 괴뢰일망정 토착인의 임금을 통하여 통치하는 간접 방식이었다.⁷⁶⁾ 그런데 일본의 조선통치는 시골의 지주 순사와 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산골 읍면에서 일본인은 식민지 신귀족으로 자리잡아갔다. 공장과 농장을 설치한 경우에

75) 近藤書店, 《朝鮮의 回顧》(1945), 193쪽.

76) 괴뢰국왕에 의한 간접통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심할 수 있다. 괴뢰국왕이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토착인의 생활풍속을 유지하고 민족적 정서를 확산시키면 그 정서가 민족의 대중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월남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서 그것이 1945년 해방 후에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그렇다고 괴뢰국왕이 민족운동상의 위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괴뢰 국왕이 해방 후에 근심했다면 월남 국민도 그를 대우했을 것이다.

도 노동 임금은 일본인이 두 배를 넘게 받았다. 비교적 완화됐다고 한 1940년대에 서울의 면방적 여공의 경우 조선인 : 일본인의 월임금이 0.70 : 1.69원이었으니 2배를 넘었고, 남자 면가공직은 0.85 : 3.10원으로 3배를 넘었다.⁷⁷⁾ 이것은 조선 노동자의 인력을 수탈한 한편, 일본 노동자의 대량 유인과 일본인의 이민을 통한 식민지에 대한 직접 지배라는 일석이조의 소득을 계산한 것이었다.

그래도 1백만 명의 일본인 이민을 넘기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토 히로부미의 1907년의 예상과 달리 1931년부터 만주를 침공하여 일본인의 해외진출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백만 명을 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직접통치를 강행하기에 넘치는 인원이었다. 그들이 모두 관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관리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치제에 참여하여 식민통치의 운영에 기여하였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직접식민통치에서 자치제 실시는 식민통치의 통로를 넓혀주는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간접 식민통치에서 자치제 실시가 민족공간을 넓혀 준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도의 독립운동은 민족공간을 넓혀주는 자치제 획득을 주요 목표로 했지만 한국독립운동에서는 자치제를 배격했다.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이나 전략이 식민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직접 식민통치의 필요에서 지방행정의 구조를 개혁하여 조선시대에는 郡(부·목·군·현)을 중심으로 지방을 통치하여 里洞 자치제가 발달하고 있던 것을 面 중심체제로 바꾸어 식민통치가 그 동안의 이동 자치기능을 봉쇄하면서 식민적 신질서를 수립해 간 점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라고 해도 고관은 많지 않았지만,⁷⁸⁾ 면제 행정을 통하여 지방에서 새

77) 《昭和十九年 朝鮮年鑑》(京城日報社, 1943), 202쪽.

78) 조선총독부의 《제86회 帝國議會 說明資料》(1944, 12쪽)에 조선인 고관이 소개되어 있다. 총독부 학무국장(武永憲樹-嚴昌燮), 학무국 사회과장, 관방조사과장(최하영), 재무국 연초과장, 광공국 근로조정과장, 경찰에서 도 경찰부장 1명(尹鍾華), 도 고등과장 1명, 도 형사과장 1명, 도 수송보안과장 6명, 경찰서장 3명, 도지사 5명(平松昌根-李昌根·中原鴻洵-劉鴻洵·金大羽·山本文憲-宋文憲·增永弘-朴在弘), 도 내무부장 1명, 도광공부장 7명, 도농상부장 6명, 도재무부장 5명으로 나타나 있다.

로운 식민지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전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시골 읍면에는 일본인 순사와 교원이 빠짐없이 파견되어 있었고, 그들은 농가지도의 이름으로 식민교육뿐만 아니라 식민행정을 돕고 감독하고 있었다.⁷⁹⁾

라. 식민지 황도주의와 군정체제

서양의 식민지 개발과 식민통치에서 종교를 선두주자로 출동시켜 교회를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기 때문에 아시아인은 제국주의 경제와 종교와 군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다. 아편과 성경과 총칼을 놓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모두를 아편으로 보았다. 그와 같이 서양 종교는 아시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인의 양심을 기독교 양심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아시아인의 양심을 배반했다. 어떤 종교가 되어도 토착사회의 양심을 배반하면 선교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달랐다. 그 이유는 구한말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외래 종교 회유책에 힘입어⁸⁰⁾ 일본 침략에 동조한 경우가 없지 않았던 기독교가 식민지시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기독교 선교와 기본적으로 모순되었던 이유는 일본은 神敎를 국교로 하고 있었고, 신교를 통치이념으로 포교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15년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선교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성경'시간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일본은 신교를 종교로 한정하지 않고 통치이념으로 현실화하여 운용하였다. 그러한 신을 신앙하고, 그 신의 실존적 실체가 텐노(天皇)라고 했다. 그래서 텐노는 신이면서 국왕으로 군림해 있었다. 그에 따라 일본국 백성은 그러한 신의 종으로 존재한 동시에 臣民으로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그 철통종교체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강요되었다.⁸¹⁾

79) 1932년 전라남도 학무과장으로 재직한 遠藤柳作은 당시의 학무행정을 "(교원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게 했어요 ... 당시 조선에서 초등교육은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도 모두 담당한다는 정신으로 졸업생의 집을 하나하나 돌며 ... 기를 쓰며 지도했어요"라고 1959년에 회고하였다(宮田節子, 앞의 책, 269쪽).

80) 金翼漢, 〈1910년 전후 山縣, 伊藤系의 對韓政策 기조와 종교정책〉(《韓國史研究》 114, 2001), 49쪽.

그러한 신교조직과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군국주의의 군대조직과 군사문화였다. 1906년에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가 강점기에 조선군사령부로 개편되고 그의 군부대가 전국에 배치되었던 것도 그것이지만, 1906년에 확정한 〈帝國國防方針案〉에 따라⁸²⁾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이 맡아 군사통치 방식의 식민통치를 강행하였다. 군사통치의 정치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독 밑에 민간 정치인으로 정무총감을 두었다. 아울러 총독은 입법·행정·사법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5년부터 중학교에 배속장교를 배치하여 학생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에 군대 윤리가 지배하도록 했다. 학교의 상하급생이 군대 계급처럼 질서를 강요한 나라는 식민지 조선 뿐이었을 것이다. 그의 잔재는 해방 후의 군사문화와 유착하여 아직도 남아, 뜻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식민지에서 군국주의적 지배가 정착하면서 193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을 파쇼체제로 재조직할 수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전국을 군대 조직처럼 계열조직으로 묶으면서 군복같은 국민복을 입고 군가를 부르는 파쇼군단의 생활 강요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강압 속에서 대중사회의 민족 역량이 크게 감퇴하였고, 그래도 민족을 외우며 살던 개량주의들이 친일파로 전락해 갔다.

81) 남산에 朝鮮神宮을 건립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그들의 神社를 설치하였다. 심지어 학교마다 신사(봉안진)를 설치하여 조회시에 배례를 올리고 그 앞을 지날 때 마다 배례하도록 강제하였다. 교실에는 덴노의 궁전 사진을 정면에 게시하여 우러러 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5년부터는 학생을 통해 가정에 가미다나(神棚)라고 하는 '귀신집'을 배부하여 그것을 신성한 곳에 두고 가족신앙으로 믿도록 강요하였다. 식민지 조선 전체를 신교 조직으로 엮어매고 있었다.

82) 1906년의 〈帝國國防方針案〉은 그해 伊藤博文이 한국 통감부의 통감으로 부임함에 따라 정치 주도권을 경합하고 있던 山縣有朋이 해외 정략은 육군이 주도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덴노로부터 재가를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井上清, 《日本 歴史》 下, 岩波書店, 1966, 91쪽). 일본의 해외 진출은 중국을 향할 것, 군 통수권의 독립, 군부대신의 무관제, 관동도독부 도독과 장차의 조선총독의 장군임명, 조선의 중국침략의 전진기지화를 노리고 있었다(91~92쪽). 국방방침안은 山縣이 1922년에 사망한 뒤에도 존속하여 1923년에는 상상 적국을 미국·러시아·중국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었다.

마. 식민성 봉건체제로 근대적 발전을 지연시켰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의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농업기반과 인력기반으로서 기존 지주의 권익을 옹호하는 원칙 아래 추진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시대부터 농민의 권리였던 경작권과 입회권이 근대 소유권의 명분 아래 무시되고, 농민의 근대적 권리로 성장한 개간권과 도지권도 묵살되어 지주권은 전통시대 이상으로 유리한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식민지 지주의 위치였다. 전통시대의 지주란 양반 지주를 일컫는 것인데 그 양반 지주가 식민지 지주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양반 봉건제가 식민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온존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경학원령으로 종래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전국 향교를 친일조직으로 제도화하고 사찰령으로 불교도 36본산을 통해 사찰 재산권을 통제, 식민적 지주제와 유착하게 했다.⁸³⁾ 그러므로 식민사회는 봉건 유제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47개 서원만 남겼는데 식민지하에서 무수히 복원되면서 봉건적 논리로 식민지 문화를 찬양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식민지하에서 여성의 지위도 더욱 전락하였다. 상속권이 봉쇄되고 호주권도 박탈당했다. 친족법이나 민법상의 지위가 세계적으로 천대받던 일본 여성의 지위에 따라 전통시대 이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봉건적 규제가 식민지 법률로 옹호되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체제가 식민지 법이나 정책으로 옹호된 것을 식민성 봉건체제라 한다. 그리하여 일제 강점하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발전이 크게 지연된 것이다.

바. 다액의 통치비용 지출

이상과 같이 일본은 조선에서 본국인 생활에 맞는 특수 경제를 꾸미고, 민족동화를 위해 식민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특수 종교인 신교와 군국주의체제를 건설하고, 그를 위한 직접통치를 완수하고, 식민성 봉건체제까지 갖추

83) 식민지하에서 양반 지주제를 거부하고 망명한 사례도 적지는 않았다. 이회영·김대락·이상룡·이세영·윤세복·신규식·안효제·노상익·정원하·이건승·홍승헌·박은식·신채호 등은 식민지 지주권을 포기하고 독립군 기지개척의 선봉에 섰다.

자면 인건비도 그것이지만 다양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통치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은 당연했다. 그것을 식민지인의 복지나 개발비 때문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1920년대에 산미증식계획을 강행하면서 토지개량이라 하여 밭을 논으로 만드느라 수많은 농민을 괴롭혔다. 쌀 단작으로 본국인의 미곡수요를 충당하면서 농업통제의 능률을 높일 수는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쌀 단식의 생활을 심었다. 아울러 오늘날 특용작물 재배를 위하여 논을 밭으로 역개발하는 현상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도 미곡증산이 두 배에 이르렀다고 개발 효과를 자랑하는데 인구가 1천만이나 증가하여 노동력 상승에 의한 생산력 증대와 극단적 착취에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최대의 생산력을 발휘한다는 ‘죽음을 담보한 생산력 증대’라는 교훈도 생각해야 한다.

한편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많은 학교를 설립했다고 말한다. 대한제국이 망하던 1910년에 사립학교가 학부의 인가를 받은 것이 2,250개교가 있었다. 그것이 식민지가 되면서 절반도 남지 못하였다. 또 조선 후기부터 농촌 마을에까지 설립되어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하던 書堂도 여러 가지 핑계로 폐쇄하거나 변질시켜 버렸다. 그리고는 별도로 학교를 설립했다고 해도 그것은 민족동화를 목표한 식민교육의 학교였다. 교육이 오히려 해롭다는 교육원리가 적용될 그런 교육이었다.⁸⁴⁾

그래도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철도를 부설한 것은 식민지를 크게 개발한 증거라고도 말한다. 철도 같은 간접자본의 개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그것은 수탈의 도구로 개발한 것이다.

84) 臺灣에서 1939년부터 의무교육을 추진하여 1941년에 대만교육령을 개정 공포하여 1943년 4월부터 6년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만에서 황민화교육은 크게 성공하여 지금도 대만인은 일본의 식민교육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조동걸, <대만의 표리>, 《그래도 역사의 힘을 믿는다》, 푸른역사, 2001). 그런데 당시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의무교육을 추진했던 田中武雄(1942. 5. 29~1944. 7. 15)은 의무교육이 정병제 실시와 조선인의 요구를 막을 수 없어 실시하기는 해도 민족의 속성상 혹은 국가도 생물과 같은 優勝劣敗의 법칙이 지배하므로 독립운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회고하였다(宮田節子, 앞의 책, 150~153·162쪽). 그래서 조선에서는 문맹정책과 의무교육의 양극단론이 부침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 수탈 도구는 해방 후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도적이 도적질할 때 사용한 사다리를 가지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후일 사다리 타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2) 식민통치의 시기별 특징

일본 제국주의는 1869년에 북해도를, 1879년에 유구를, 1895년에 대만을, 1905년에 요동반도와 사할린을 병합하면서 1904년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언제부터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조정을 받았다는 뜻에서 식민통치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하나는 1905년 11월 17일(18일 0시30분) 강제된 을사늑약에 따라 1905년 12월 21일 일본 국왕의 칙령 267호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1906년 2월 1일 조선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임시 통감을 맡아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식민지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하나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이름까지 없어진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때부터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3안에 따르면 형식까지 일치하여 논리를 찾는 데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1904년부터 대한제국은 준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독립국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 僞設 통감부시기

1905년 을사늑약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통설이 되었다.⁸⁵⁾ 일본은 그렇게 국제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 조약을 근거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것도 처음에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차 조선군사령관을 임시 통감으로 임명하여 눈치를 보다가 1개월 뒤인 3월 2일에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3월 15일에 통감이 한국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시정개선을 시달하는 등, 이른바 통감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그 통감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위설된 것이다. 위설된 통감과 통감부 조직, 전국에 산재한 영사관을 통감부 이사청으로 개편하여 지방행정까지 통할하면서 한

85)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까치, 1995).

국을 완전 식민지로 만들어 갔다. 거기에는 법률도 도덕도 교린의 전통도 일절 무시되었다. 오로지 목전의 이익과 힘만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한국인은 안중근이 옥중에서도 “見利思義”를 외쳤듯이 도덕과 양심과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힘 앞에 도덕이 쓰러지듯이 우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통감부시기는 거짓과 힘이 난무했던 시기로 특징짓는 것이 좋을 듯 하다.⁸⁶⁾

나. 1910년대 무단통치로 식민통치 기반완성

이때 일본 정계는 군국주의를 대표했던 야마카타 아리토모(山縣有朋)·카츠라 타로(桂太郎)·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등이 장악하여 조선 식민통치도 교원이 칼을 차고 수업하는가 하면, 헌병경찰제를 강행하는 등, 무단통치로 식민지 제도와 조직을 완비하였다. 무단통치란 말도 그들이 일컫던 낱말이다.

이때에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조선귀족령〉·〈조선토지조사사업〉·〈회사령〉·〈조선교육령〉·〈조선태형령〉·〈포교규칙〉·〈서당규칙〉을 강행했다.

다. 1919년부터 관료조직에 의한 수탈의 극대화

제1차 세계대전의 반성으로 부상한 인도주의와 신인문주의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의 영향도 있고 군국주의 강경파인 야마카타(山縣)계 테라우치(寺內)내각이 물러나고 민정과 정우회의 하라 케이(原敬)내각의 등장과 함께(1918. 9~1921. 11) 잠시나마 대정 데모크라시가 세력을 얻는 듯했다. 아니라고 해도 1910년대에 식민통치 기반을 완성했다면 굳이 무단통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는 관료조직을 통한 수탈의 극대화에 주력할 차례였다. 그때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민족적으로 전개되자 무단통치를 후퇴시켜 ‘문화정치’라는 관료수탈체제를 수립했다. 그러한 수탈체제는 국제적으로 베르사이유 안정기조가 보장해 주었다. 베르사이유체제는 제국주의 안정체제였다. 그러므로 문화정치가 도전을 받으면 언제나 폭력을 동원했다.

86) 鄭在貞, 〈‘통감부지배’ 또는 ‘보호국’ 시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韓國史研究》 114, 2001), 10쪽.

1920년의 경신(간도)참변이나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학살의 참상이 문화정치 속에서 자행된 폭력이었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발포하고 동시에 중학교에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낸 것도 그의 단면이었다. 1920년대에는 일제의 회유분열정책이 어느 때보다 극성스럽게 자행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 경제공황이 닥치고 있던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산미증식계획 · <치안유지법> · 조선농회 · 조선철도국 · 조선신궁 · 경성제국대학 ·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이어 조선사편수회와 조선사학회를 설치했다.

라. 1931년부터 파쇼화와 중국 · 몽고 침략을 위해 수탈한 시기

1929년 경제공황이 세계를 강타하자 세계 각국은 자기 조건에 따라 공황 극복의 방향을 찾았다. 그래서 1930년대의 세계는 공황 극복을 위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영 · 미 · 불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오타와선언 · 리마선언 등으로 나타난 불럭경제체제를 통하여 극복방향을 찾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통제와 개혁을 강화하여 극복해 갔는데,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 일본은 히틀러 · 뭇소리니 · 푸랑코 · 텐노의 파쇼체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수탈과 확장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불럭체제의 식민지에서는 수탈 강도를 완화해 갔는데 비해 파쇼국 식민지에서는 수탈통제가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확장을 위하여 기존 식민지는 군수기지로 이용하여 수탈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5 · 15사건(1932), 국제연맹 탈퇴(1933), 2 · 26사건(1936)이 파쇼 성격을 설명한다. 1931년 만주침략을 통해 괴뢰 만주국을 만들고, 조선에서는 1930년대부터 內鮮一體로 뭉뚱 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륙침략을 위하여 후방의 안전장치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었다.

만주사변 · <조선소작조령> · <조선농지령> · 자력갱생운동 · 농어산촌진흥계획 · 군수공장 상륙 · 관청과 학교에 奉安殿 설치 · 가정에 가미다나 설치 · 신사참배 · 황국신민의 서사(국체명정 · 내선일체 · 인고단련) · 창씨개명 · 중일전쟁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결성이 이때의 특징적 기사였다.

마.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 체제기

중일전쟁과 더불어 비상전시체제에 돌입한 신호는 1938년 5월에 〈국가총동원법〉 시행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해 7월 7일 중일전쟁 1주년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하고 1940년에 농어산촌진흥회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통합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을 두고 말단에는 愛國班을 두어 식민지 전체를 군대조직처럼 묶었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독부에 신설한 국민총력과였다. 그해 일본은 大政翼贊會를 만들어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일·독·이 3국동맹을 맺고 세계대전체제를 갖추었다. 1941년에 국방보안법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심성까지 통제하였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이제는 세계정복의 야망을 위하여 조선인은 희생되어야 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인력을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소작료통제령〉·〈임금통제령〉·〈직업이동방지령〉을 만들어 농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봉쇄하였고, 〈금속회수령〉으로 밥그릇까지 빼앗아 갔다.

쌀공출·말풀공출 그리고 징병·징용·징발·여자정신대·위안부 등의 인력 공출, 애국일·대조봉대일·폐물수집·방공법 시행·진주만폭격·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대동아공영권 등이 특징적 기사였다.

(3) 한(조선)민족 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

이상과 같은 일제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하여 한(조선)민족은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축적한 민족역량을 깨우쳐 일으키면서, 새롭게 근대적 역량을 개발하면서,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갑오왜란을 당하여 안동과 상원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1895년 을미사변을 당해서는 전국에서 항일의병이 봉기하였다. 1904년에는 활빈당이 의병으로 전환하고, 1905년 을사늑약에 맞서서는 의병전쟁이 민족전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고, 광무황제도 을사늑약 비준을 거부하고 특사를 파견하여 외교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부르주아 지식인들도 계몽운동으로 구국전선을 형성하여 항쟁하였다. 1907년에 이르러 신민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계몽운동이 지하운동을 전개하며 독립군으로 발전할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의

병전쟁은 유림이 주도했든, 민중이 주도했든, 전통시대의 역량을 나타낸 것이고, 계몽운동은 새롭게 개발한 근대적 역량을 나타낸 것이다. 1910년 대한 제국이 멸망하자 주로 만주 각처에서 독립군 기지개척이 추진되었는데, 그것은 1894년부터 전개된 구국 독립운동의 연장이요 발전이었다는 민족운동의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⁸⁷⁾

그렇게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한(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의 특징적 기초를 보면, ① 역사적 전통역량의 기초 위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한(조선)민족은 식민지 당국인 일본보다 우월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민족적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잠시 낮잠을 자다가 나라를 잃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제국주의에 희생된 식민지 민족운동 가운데 전통시대의 역량을 기초한 경우는 월남·인도·아랍제국·폴란드·아일랜드가 대표적인데 전통역량을 대변한 전통시대의 역사 저술이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역사저술의 발달을 보더라도 한(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이 어디보다 우월한 전통 역량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통적 역량의 기초 위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라도 나라를 잃었던 반성과 세계적 변동기를 맞아 근대화를 동시에 추구한 독립운동이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을 전후하여 독립군기지를 개척하면서 종래의 의병전쟁

87) 여기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관계를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족운동은 민족(시민)혁명운동·민족해방운동·민족통일운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근대적 민족개념이 형성되면서 일어난 시민(민족)혁명운동에서 민족운동이 출발하고 있다.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장이 그에 근접한 성격이고 세계적으로는 프랑스혁명이나 신해혁명이 대표적이었다. 다음에 민족해방운동인데 이것은 반식민지 종속(반식민지)해방운동·식민지해방운동·사회주의 계급해방운동으로 나뉘어진다. 독립운동은 원칙적으로 식민지해방운동을 일컫는다. 반식민지해방운동은 중국의 경우처럼,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끝내면 독립운동으로 이어지질 않으나 한반도처럼 의병전쟁이나 계몽운동의 반식민지해방운동이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면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사의 序章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해방운동은 독립운동에서 계급해방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여 독립운동 기간에는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독립한 연후에 다시 계급해방운동을 전개하여 해방전선을 형성한 경우를 말하는데 북한이 밝은 길이다. 다음에 민족통일운동은 현재 한(조선)민족의 당면한 과제로서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통일(1861)·독일통일(1871)에서 비롯되었고, 베트남통일(1975)과 독일통일(1991)이 근래의 사례이다.

과 계몽운동을 통합하여 의병전쟁의 전쟁방략과 계몽운동의 정치이론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 근대적 독립운동 이념과 방략을 수립해 갔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에서 독립의군부(1914)와 대한독립단(1919) 외에 어떤 독립운동 단체도 임금이 없는 근대국가 수립을 표방하였다. 3·1운동에서나 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에서나 만주의 어떤 독립군 단체도 봉건적 구시대를 동경하지 않았다. 그 기초 위에서 해방 후 새 조국 건설에서 신분과 성별의 차별 없는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을 표방할 수 있었다. 남북에서 실시한 농지개혁도 독립운동의 유산이었다.

③ 독립운동의 주체세력을 보면, 각계각층이 참가한 민족해방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점점 대중화하여 아래로부터 이론 민족운동이 발달한 점이 특징이다. 전통시대의 권문세가나 자산가나 부호보다 민중의 참여가 폭넓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운동·노동운동·여성운동·학생운동 등의 사회운동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해방 후 남한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사실로 연결되어 근현대사의 발전을 아래로부터 이루었다는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아래로부터 이론 근현대사에 지도자의 역량이 따르지 못한 한계는 반성할 점이다.

④ 독립운동의 이념은 다양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유는 독립운동 주체의 다양성에도 있고, 독립운동이 시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화된 것도 있고, 독립운동 무대가 세계 각처에 이른 탓으로 각처의 영향도 있었다. 1910년대에는 공화주의·보통주의·복벽주의에 한정된 듯 했으나 3·1운동을 전개하면서 3·1운동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 방법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의 이념이 만발하게 되었다. 어느 길이어야 독립을 쟁취할 것인가의 고뇌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이념이 다양했듯이 방법과 전략도 다양하였다. 다양한 방략 가운데 무장독립운동인 독립전쟁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해방 당시 무장단체는 한국광복군·조선의용군·동북항일연군 즉, 소련88여단의 조선인부대 등 세곳에 있었다.

⑤ 이념과 방략의 다양성이 분열로 가는듯하면 통일전선 형성을 추진하였다. 통일전선은 3·1운동과 더불어 7개의 임시정부가 탄생한 것을 곧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그해 9월 통합 임시정부 결성이 서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23년의 상해 국민대표회(김동삼)와 1924년 해삼위 국민위원회(김규식)·만주 반석의 조선노동당(김응섭)·길림의 고려혁명당(양기탁)이 대독립당·민족대당·민족유일당의 결성을 추진한 바 있었고, 1926년에는 대독립당 북경 축성회가 결성되면서 민족유일당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것이 만주에서는 3부통합으로 갔고 국내에서는 신간회(이상재·권동진·안재홍·허헌·김병로) 결성으로 일단락되었다. 그후 중국 관내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김규식·김원봉)과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김구·조소앙·이청천)가 결성되고 그를 통합하기 위하여 1939년 기강에서 7당회의와 5당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1942년에는 중경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통합되고 한편, 임시정부의 통합의회가 출범하였다. 1944년에는 임시정부 연립정부가 형성되면서 통일전선이 더욱 진전하여 연안의 독립동맹(김두봉·무정)과 노령의 조선인부대(김일성·최용건·김책)와도 연락하고, 노령에서도 임시정부와의 통일전선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⁸⁸⁾ 바로 그때에 8·15를 맞은 것이다. 이러한 통일운동은 해방 후 미·소가 분단한 조국을 민족의 힘으로 통일하려는 남북협상의 기초가 되었다.

⑥ 독립운동은 격정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식민통치의 수탈성·잔인성·직접통치 등의 특성에 대응한 것이었다. 한국독립운동에서 무장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의열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의열투쟁은 테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르다. 의열투쟁은 목적이 인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고, 테러는 야만적 보복에 있다. 때문에 의열투쟁은 대상이 불의를 자행하는 인간과 시설인데 테러는 대개 불특정 다수인과 불특정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열투쟁은 자기를 떼땀이 밝히는데 테러는 자신을 숨긴다. 이러한 의열투쟁을 독립운동의 이론으로 정립한 것은 1923년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었다.

⑦ 한편 온건한 문화운동으로도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식민통치가 민족동화정책을 식민문화를 통하여 추진했던 데 대응한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문화운동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어문운동과 역사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88)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 金九全集 8》(대한매일신보사, 서울, 1999), 927쪽.

의미가 있지만, 그를 핑계하여 실력양성운동으로 전개한 것은 자치운동과 다를 바가 없다.

⑧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의병에서 시작되어 1945년 전야까지 끊임없이 전개된 지속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속성은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특징이다.

⑨ 독립운동은 조선 안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 만주·중국·일본·러시아·미주·유럽 등 세계 각처에서 전개한 세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한국독립운동은 국제연대를 개척, 형성하면서 전개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나 광복군이 중국국민당과 연대하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중국공산당과 연대하고,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부대가 중국공산당이나 소련과 연대하고, 그리고 미주에서 대한국민회를 중심한 민족운동 단체가 미국정부와의 유대를 추구했던 것도 국제연대의 모색이었다. 국제연대의 모색에서 잊지 못할 것은 아시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과 유대를 맺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당이나 세계무정부주의연맹이나 에스페란토운동과 연계하고 있었던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로 말미암아 해방 후 국제적 패권주의에 현혹되어 민족역량이 분열된 이유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⑩ 그와 같이 독립운동이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고 찬란하게 전개되었는데 그의 소득은 뜻밖이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영·미·불 등의 연합국의 식민지에서는 1930년대 이후 프랑스의 인민전선 형성처럼, 본국의 민주화에 힘입어 식민지 통제가 간접식민통치 이상으로 완화되어 그 기회에 식민지 민족의 역량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인도와 월남의 경우에 네루나 호치민의 영도력도 그것이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민족 역량이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해방 후의 민족운동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에 비하면, 추축국 일본은 1930년대 이후 파쇼화와 침략전쟁을 강행하면서 식민지 통제가 강화되어 그 기회에 한국인의 독립운동이나 민족역량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것은 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에서 민족역량의 회생을 위하여 새로운 정비와 노력이 요구된 이유가 되었다. 그 틈에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가 국토를 분단 점령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민족역량은 더욱 손상을 입었다. 그때 분단정부 수립을 주도한 행각은 역사의 심판

을 받겠지만, 그러나 민족역량의 희생이 아득하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바야흐로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이 그를 입증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 항거하여 한(조선)민족은 끊임없이 국내외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일제 강점과 그의 식민통치가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대한제국을 강점할 때 위조와 기만으로 만든 일련의 조약을 통한 강점이었으므로 식민통치는 국제법까지 위반한 폭거였다. 여기서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에서 1905년 을사늑약의 폭거를 잘못된 사례로 지적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⁸⁹⁾

(4) 독립운동의 시기별 특징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일제 침략을 인지한 1894년부터 1945년까지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시기별로 보면 일제 침략과 식민통치의 특성에 따라 대응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가. 구국운동기(종속해방운동, 반식민지해방운동)

일제 침략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비롯되었는데 1894년부터 조선은 일제의 반식민지상태에 놓이고, 1904년부터는 준식민지로 전락했다. 그에 따라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을 일컫는 갑오왜란에 맞서 안동과 상원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1895년 을미사변을 맞아서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것을 전기의병이라 한다. 이때 구국운동은 전통 역량을 결집한 의병전쟁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구국운동이 근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개한 계몽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준식민지로 전락한 1904년부터였다. 국민교육회와 대한자강회가 그의 선봉 조직이었다.

그때 의병전쟁은 중기의병·후기의병·전환기의병·말기의병으로 변천해

89) 박태균, <해방 후 한일회담 과정에 나타난 1900년대 “한일협약”에 대한 인식고찰>(《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340쪽.

갔다.⁹⁰⁾ 처음에는 근왕적이고 척사적인 유림의병이 주도했으나 이념이 忠道·忠君·忠國·忠民으로 발전하면서 평민 또는 민중의병으로 발전해 갔다. 그때 계몽운동은 신민회를 주축으로 계몽주의 좌파(강경파)의 항일전선이 형성되고 대한협회를 주축으로 계몽주의 우파(온건파)가 개량주의의 선례를 만들어 갔다.

나. 1910년대 독립운동의 정비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대에 일제가 식민지 기반을 조성할 때 독립운동도 전열을 가다듬었다. 국내에서 혁명기지를 개척한 경우는 대한광복회와 조선국민회가 전국에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듯이, 중국의 신해혁명과 같은 민족혁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해외로 망명한 이는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나 하와이 대조선국민군단처럼, 독립군을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자와 종교인까지 민족 전열에 참가하면서 전민족적인 3·1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때 조선인의 행적을 보면, 대한제국의 회복을 갈망한 복벽주의 유학자들, 의병이나 계몽주의 좌파처럼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거나 국내에서 혁명기지를 개척한 보황주의 또는 공화주의 인물, 조선산직장려계를 만든 계몽주의 우파처럼 국내에서 개량주의에 머문 사람, 1918년까지 계속된 토지조사사업의 추이에 따라 토지분쟁에 골몰했던 다수 농민, 〈조선 귀족령〉이나 은사금을 받고 중추원이나 총독부 관리에 몸을 던져 친일 행각을 걸은 사람, 식민지적 재편에 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친일 행각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도 참가하여 3·1운동을 거족적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그때까지의 복벽주의나 보황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킨 것은 민족역량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역사적 혁신이었다.

3·1운동을 세계사적으로 보면 인도주의 혁명운동이었다. 정의·인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를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개조의 논리로 자유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공산주의 등의 사상

90) 조동걸,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512쪽.

논쟁이 일게 되었다. 아울러 세계와 사회를 개조하자니 제국주의를 철폐하고 약소민족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족해방운동이요 독립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의 제1차적 성격이다.⁹¹⁾ 레닌이나 월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의 논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세계사조를 이용하여 민족혁명으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열국이 모두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여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였다. 국제사조의 총론과 각론이 다른 단면이기도 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그때까지 성장해 온 근대적 민족지성을 총합하고 새롭게 나아가갈 민족지성과 독립운동의 방향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다. 1920년대는 민족총력항쟁의 시기였다.

1920년대는 민족총력을 경주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3·1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독립전쟁이 전개되어 청산리전쟁을 비롯한 무수한 대소전쟁이 독립운동사를 장식하였다. 연해주에서는 때마침 볼셰비키혁명의 진행중에 1921년 자유시(스바보드니)침변을 당하여 독립군은 모두 러시아 혁명군으로 개편되었다.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연락망인 연통부와 교통국을 비롯하여 수 많은 지하단체가 결성되어 저항하다가 해외로 이동하였고 한편, 청년운동·학생운동·여성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형평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국어·국문학·국사 등의 국학운동과 함께 언론운동·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계는 있었다고 해도 경제운동으로 전개된 협동조합운동과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문화운동의 종교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도 민족적 분위기를 제고시켰다. 자신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과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민족총력항쟁이었으므로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1920년대에 각종 사상운동이 대두하여 1925년 조선공산당 출범을 전후하여 사상단체가 백화난만식으로 나타났는데 이어 국내 외에서 꾸준히 추진된 민족유일당운동을 보거나, 그의 일단으로 추진된 1926

91) 趙東杰, 〈3·1運動의 理念과 思想〉(《韓國民族主義의 形成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393쪽.

년의 6·10만세운동을 보거나, 1927년에 신간회가 탄생한 것을 보거나,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이나 원산노동파업과 용천소작쟁의의 내용을 보거나, 총력항쟁이 질적으로 추진된 역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유일당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해할 때 먼저 식민조건과 대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론을 세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임시정부를 이해할 때 그의 발생가치는 3·1운동에서 표현된 민족적 주권의지의 산물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상해에서 중경까지 이동하며 싸워온 그의 역할가치는 사람마다 평가를 달리할 것이다. 그것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정상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라. 1930년대는 해외 독립군의 이동과 각종운동이 재정비된 시기이다.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여 괴뢰 만주국을 설립하자 독립군은 중국군과 함께 반만항일전선을 형성하여 싸웠다. 1933년에 이르러 국민부의 조선혁명군과 한족연합회의 한국독립군의 주력이 항주·남경·낙양 등의 관내로 이동하여 만주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주의 유격대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동북인민혁명군에 이어 동북항일연군으로 싸웠다.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도 1932년 윤봉길의거를 계기로 항주로 옮긴 후 1940년 중경에 이르기까지 이동기를 맞았다. 만주에서 관내로 이동한 독립군은 낙양군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마치고 후일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의 기간요원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정비작업이 있었다. 1929년 조선공산당 해체에 이어 1931년에는 신간회를 해체하고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 등의 대중운동이 파쇼정권에 대항하여 극단화되고 있었다. 거기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 맞물려 계급혁명을 표방한 적색노동운동이 급부상하였다. 파쇼화의 우파적 극단과 계급혁명의 좌파적 극단이 사상계를 양극단으로 몰고갈 때 극단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보편 논리가 대두하였다.⁹²⁾

92) 민족주의는 구한말에는 종족주의, 1920년대까지는 국수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 민족과 세계를 모순없이 포용한 보편적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 민족주의 문제는 사상 조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3·1운동과 더불어 부상한 자유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이 갈래를 달리하며 호사

1930년대 중반에는 민족주의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선학운동이 전개된 것이 특징중의 하나였다. 조선학운동은 丁茶山의 《與猶堂全書》의 간행과 더불어 일어났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⁹³⁾ 1935년에는 코민테른 7차대회가 열려 인민전선 노선을 채택하여 민족주의가 새롭게 생기를 얻게 되었다. 그에 따라 만주에서 민생단사건이 종식되고 1936년에는 조국광복회의 결성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1937년에 보천보전투로 이어져 군국주의 파쇼정권과 식민지 조선을 크게 자극하였다.

마. 1938년부터는 독립전쟁 시기였다.

독립전쟁기라고 한 것은 해외 독립군이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독립전쟁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부친 이름이다. 만주에서는 1936년에 조국광복회(전광·김일성)가 결성되고 중국 관내에서는 1938년에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용대(김원봉)를 결성하였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이청천)를 조직하였다. 1939년에 공작대를 개편하여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조성환)과 한국청년전지공작대(나월환)를 전선에 파견하였다. 식민통치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국민총동원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대비가 된다. 해방을 맞았을 때 독립군 조직은 중경에 본부를 둔 한국임시정부의 광복군, 연안의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 하바로프스크의 소련 국제군단인 88여단의 조선인부대가 있었는데 도합 1,500명 정도의 인력이었다.

국내에서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소작료통제령이나 임금통제령 등으로 전 시파쇼가 강화되어 사회운동이나 문화운동이 일절 금지당한 암흑기를 맞았다. 그 속에서 학원을 중심으로 태극단·근목당·조선독립당·순국당·건국위원회·무궁단·백의동맹·화랑회 등, 소규모의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성격을 보면 역시 독립군적 조직의 저항이었다.⁹⁴⁾ 194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상이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되게 사느냐의 방법론인데 논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인간 이상의 것으로 착각한 경우도 생겨났다.

93) 趙東杰, 《現代 韓國史學史》(나남출판, 1998), 197~206쪽.

94) 趙東杰, 〈韓國近代學生運動組織의 성격 變化〉(《韓國近代民族主義運動研究》, 역사학회, 1987), 317쪽.

까지 폐간하고 1942년에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식민지 조선인의 말과 글을 없애려고 했고, 민족동화를 막장에 이르러 민족말살정책으로 강행하여 각급학교에 식민교육을 강화했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어린 학생의 독립군적 조직이 일어나고 있었다. 징용·징발·징병·보국대·여자정신대·종군위안부로 끌여가고, 소나무 뿌리까지 공출해 가던 야만적 압제 속에서도 한국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유를 찾고 독립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독립군적 조직을 일으켰다. 그와 같은 독립전쟁 상태에서 1945년 8월 15일을 맞았다.

(5) 일제 강점기의 생활

이때의 역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적 교훈이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먼저 주의할 것은 한국근대사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근대사이므로 한국사의 맥락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를 보면서 일본근대사의 한 토막으로 보아서 안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역사 서술에서는 한국인을 주체로 한 표현이어야 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서술할 때 주어가 무엇인가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1910년부터 1945년의 역사에서 일제의 식민통치는 객체이고 한국독립운동이 주체인 것이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한(조선)민족이 어떻게 생활했던가의 역사인 것이다.

생활상에 대하여 대체적인 상태를 보기로 한다. 해방 직전의 생활 유형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수의 직업성 독립운동가 외에 ①8할이 넘는 농민·어민·화전민·노동자 ②영세 상인 ③ 식민지하에서도 천민으로 묶여 있던 머슴·백정·무당·점쟁이 등 ④ 신교육을 받은 언론인·교원·학생 또는 지식인 ⑤ 조선시대와 다름없이 생활하던 양반 유생이나 불교의 승려와 기독교·천도교·신흥종교 종교인 ⑥ 중소 지주와 중류 상공인과 지방관청(도·부·군·읍·면)의 하급관리 ⑦ 대지주와 식민지 신귀족과 조선총독부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②③은 하층 백성이고, ④⑤⑥은 중류 생활

——, 〈8·15직전의 독립운동과 그 試鍊〉(《韓國近現代史의 이해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178쪽.

자였고, ⑦은 상류의 생활자였다. 거기에서 하층민이 8할 5부에 이르고 중류 생활자가 1할을 넘고 상류는 2부 정도로 2천4백만 인구에 30만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식민지하의 민족문제라면 농민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제하의 농민은 8할이 소작농민으로 고을 소작료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러므로 소작쟁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적색농민조합운동이 고조되었으므로 농민들이 사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조선 후기부터 성장하고 있던 농민의 권리가 1910년대 조선 토지조사사업으로 봉쇄당하고 식민지하에서 소작농민으로 생활하는 동안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이 없었다. 농촌에는 예사로 점심이 없었다. 조반석죽도 이어가기 힘들었다. 해마다 봄이면 절량농가가 6할을 넘어 초근목피로 끼니를 이었다. 농민은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1910년의 그 초가삼간에서 그 옷을 입고 1945년의 해방을 맞았다. 양복을 입고 기차를 타고 자동차가 집 앞을 지나가도 그것은 하늘의 비행기처럼, 농민과는 관계가 없었다. 혹간 식민지 발전론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위의 ④⑤⑥의 중류 생활자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 1930년의 문맹율이 77%로 2천만 명 인구 가운데 1천 5백만 명을 넘었다.⁹⁵⁾

중류 생활자는 교육을 받은 신지식인이었다. 세끼의 밥을 먹으며 양복을 입고 시계를 차고 켄트를 피우며 개화장(지팡이)을 짚고 인력거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국학운동이나 사상운동을 일으킨 사람을 제외하면 대개 개량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았다. 개량주의자는 글이나 말끝마다 조선을 쳐들고 민족을 이야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를 비하하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한글을 익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며 살았다. 그래서 기회주의와 이중인격의 소유자로 살았던 사람이 많았다. 자치운동을 변론하는 특성도 이중인격의 자신의 변론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일제 식민통치가 직접통치로 강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자치운동은 식민통치의 통로를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인도 같은 간접 식민통치에서 자치운동이 민족운

95) 《朝鮮日報》, 1934년 12월 22일, 社說.

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경우와 다른 한국독립운동의 특성이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중류 생활자라도 학생인 경우는 꿈을 아끼는 학생의 순수성, 신세대의 대변자, 민족지성의 대변자 등의 역사적 위치가 그들을 규제하여 자신의 가정조건에 불구하고 개량주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것이 민족역량을 성장시켰던 것은 물론이다.

식민지 생활문제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성문제였다. 이 시기 여성의 지위 변화는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일본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던 탓이 컸다. 여자의 재산 상속권이나 호주 상속권이 없어진 것이 식민지 유산인 것이다. 그 대신 출가하면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것을 여성의 권리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여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⁹⁶⁾ 때문에 식민지하의 여성운동은 여권운동과 독립운동의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이야기할 것은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식민통치가 일본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은 물론이지만, 한국사 발전에도 기여했는가와 문제이다. 흔히 식민지근대화의 여부이다. 인간가치는 저락하고 자주개혁은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말살되어도 경제는 발달했다는 국부발전론을 제기하는 수가 있다. 식민통치가 아니고 한(조선)민족이 이끈 역사라면 불가능한 경제발전이었던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은 경제발전 자체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목표한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 국부발전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독립운동을 통해 근대화가 촉진된 것이 적지 않다. 해방 후 남북한에서 민주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을 표방한 원천이 어디에 있었던가. 남북에서 실시한 농지(토지)개혁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신분제를 타파하고 남녀평등을 규정한 법률의 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며 맞춤법통일안을 만든 것이 누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가. 모두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의 결실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결실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철도를 부설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동화나 경제수탈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96) 구한말에 서양의 풍속을 따라 서울여자교육회를 일으켰던 이옥경이 원래의 성인 홍씨를 변성한 경우도 있었다.

3) 해방정국과 현대사의 전개

1945년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한국현대사를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⁹⁷⁾

- ① 1945~1960년 ; 해방 후의 혼돈기
- ② 1960~1993년 ; 민주화운동기
- ③ 1993~현재 ; 민주주의 개혁과 통일운동기

해방 후의 혼돈기에는 분단과 미소의 군정, 남북 단독정부의 수립, 6·25전쟁과 정전협정, 남북의 정치과동 등의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모두 혼돈의 모습으로 이해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 후에는 5·16군사정변이 있었고, 군사정권에 의한 한일협정, 유신체제의 등장 등이 있었는데 역사는 발전의 축을 기준하여 시기를 구분해야 하므로 군사정권의 변천보다는 그때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기준하여 보아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4·19혁명에서 비롯되므로 그것을 묶어 하나의 시기로 본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1993년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므로 그후는 오늘날까지 묶어 민주주의 개혁과 통일운동기라고 이름한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일단락하고 각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고 통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시기라는 뜻이다.⁹⁸⁾

(1) 해방과 분단과 혼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여 해방을 맞았다. 그 해방에 대하여 타율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국의 승리에 따라 해방되었다는

97) 趙東杰, 〈現代史研究의 반성과 課題〉(《현대사의 흐름과 한국현대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韓國近現代史의 이해와 論理》(지식산업사, 1998), 397쪽.

——, 《現代 韓國史學史》(나남출판, 2000(제2쇄), 468쪽.

98) 통일은 한국사에서 근대와 현대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 지금은 편의상 1945년 해방을 근대와 현대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편의에 불과한 것이다.

것이다. 그런데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광복이라고 말한다. 연합군의 승리는 한국 독립군의 승리이므로 당연히 광복이었는데 그것을 미국과 소련이 가로채어 군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 논리라면 광복을 강탈당한 것이다. 그렇게 미국과 소련이 군사 점령했으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을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38선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분담 진주 정도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1948년 8월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였다.

해방 조선에 대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소련의 점령을 우려한 미국이 38선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고 자치능력을 확인할 때까지 신탁통치안을 제안하였다. 거기서 자치능력이란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이 아닌 소련이나 중국의 세력권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할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일본 패전과 더불어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염려한 나머지의 우려였다. 신탁통치안은⁹⁹⁾ 미국이 1942년에 구상하여 1943년 카이로회담부터 1945년 포츠담회담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합의한 전후 한반도에 대한 방침이었다. 그것을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구체화시켰다. 내용은 조선에 임시정부를 설립한다. 임시정부가 독립을 준비할 때까지 5년간 미·영·중·소의 4개국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그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리하여 1946년 5월과 1947년 3월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으나 무위로 끝나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고 말았다.

그러한 국제관리안은 해외 독립운동자에게 먼저 전달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던 중경에서는 1943년 5월에 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여 전후 국제관리설을 규탄하고 계속하여 외교활동으로 완전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다. 연안의 독립동맹도 국제관리설을 규탄하였다. 국제관리설이 제기된 것을 알지 못한 국내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9월 6일에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지방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¹⁰⁰⁾ 그해 11월 23일 한국임시정부의 환국을 전후하여 혼탁한 정국 속

99) 신탁통치는 1945년 5월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국제연맹 당시의 위임통치를 개편한 국제관리안이었다. 그러므로 유엔 창설 전에는 신탁통치라는 용어는 없이 국제관리라는 용어만 사용하였다.

에 무수한 정당이 탄생하였는데 한국민주당·한국독립당·국민당·조선인민당·조선공산당이 대표적이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소련군이 진주해 있었으므로 해방과 더불어 소련의 군정 계획 아래 해방 정국이 전개되었다. 처음에 여러 이름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지방별로 결성되었는데 11월 19일에 5도행정국,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1947년 2월에는 전국 선거를 통해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실상의 중앙 통치가 실시되었다. 이것을 군정으로 보면, 남쪽과 달리 간접 통치 방식이 실시된 것이다.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1943년부터 염려하던 신탁 통치안만 눈에 잡혀 즉각 전민족의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조선공산당도 반탁노선을 취하였다. 그러한 민족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한국임시정부에서는 國字 1·2호로 미군 군정을 폐쇄하고 임시정부가 행정권을 인수한다고 선포하였다. 1946년 1월 1일 ‘김구-하지회담’에서 반탁운동을 허용한다는 조건에서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후 양자의 대립은 풀리지 않았다. 한편 조선공산당은 1946년 1월 3일의 서울운동장 시민대회를 찬탁대회로 전환시키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고 나서, 정국은 찬탁과 반탁의 논의가 좌우 대립구도로 이행하였다. 2월 14일 이승만·김구·김규식을 영수로 한 우익은 민주위원을, 박헌영·여운형을 영수로 한 좌익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면서 대립구도가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그것이 미소 냉전 기류와 유착하면서 해방정국에서 광복도 해방도 상실한 혼돈을 연출하고 만 것이다. 1946년에 김규식·여운형에 의한 좌우합작위원회가 열려 ‘좌우합작 7원칙’까지 합의하였으나 극우 극좌의 이승만과 박헌영이 거부하여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분단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어 총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48년 8월 15일에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어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 분단정부 수립을 저지하려고 김구·

100) 그에 앞서 9월 3일에는 중경에서 한국임시정부가 환국 후에 과도정부를 수립한다는 ‘당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인민공화국의 수립 발표는 그의 대비책으로 이해하는 주장도 있다.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추진하여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가 열렸으나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당장에 소득은 얻지 못하였으나 그의 통일의지는 역사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단독선거에 의하여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신생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정신을 선언하기는 했으나 임시정부에서 1923년에 불신임당하고 이어 1925년에 탄핵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임시정부측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북협상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이승만정부에 참여를 거부하였다. 남북 대립으로 착잡한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한 혼탁정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승만정부는 독립운동 지도자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에 임명한 개혁정국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헌법 15조에서 “재산권은 보장된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자본주의의 길을 선언하고, 제84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라고 복지국가 경제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그것을 위하여 농지개혁안을 만들어 1949년에 소작농을 금지하고 농지 소유를 3정보로 제한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조봉암이 주도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6·25전쟁에서 북한의 오판을 만들어낸 남한의 농촌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남북문제를 국제적 냉전체제에 맞추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를 위하여 정치기술·행정기술·사법기술·경찰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친일파를 등용하여 공산당 색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 비판자까지 숙청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고비에 오른 것이 1949년 6월사태였다. 국회 프락치사건에 이어 반민족행위자처벌법에 의해 설치된 반민특위 조사위원회를 습격하여 악명 높은 친일파를 구제하고 6

월 26일에는 백범 김구를 암살하였다. 여기서 이승만정권은 민족적 기반을 잃었다. 그후 독재는 강화되어 6·25전쟁중에 부산 정치과동을 일으키고 발췌 개헌안으로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여 4사5입개헌안으로 종신 대통령을 꿈꾸면서 3·15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4·19혁명을 맞아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였다.¹⁰¹⁾

1946년에 북한 전역에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그때까지의 5도행정구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갖추고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사회주의 정권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즉각 1947년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그해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남북 정권의 출범을 세계사의 냉전구도로 보면, 남한은 미국의 침병으로, 북한은 소련의 침병으로 출발한 것이 된다. 그러한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 조국을 건설하지 못한 민족 역량의 한계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에 반하여 남북 정권은 경직성을 심화하면서 무력 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불원간 6·25전쟁이 예상되는 일이었다. 그후 북쪽에서도 남로당(박헌영) 계열의 숙청과 독립동맹(김두봉) 계열의 숙청 등으로 독재가 강화되어 남북 정권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3) 4·19혁명과 민주화운동

1960년 4·19혁명은 그해 2월 28일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의 연합시위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의 시위운동으로 확산되어 4월 18일부터 대학생이 참가한 학생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학생운동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101) 이승만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1904년 미국으로 망명할 때까지 청년시절에는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다. 특히 배재학당의 학생운동과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을 통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감옥에서 출옥한 후에 상동청년학원 원장으로 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옥중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그런데 미국에 망명한 후에 안창호와의 불화, 박용만과의 충돌로 재미 동포사회가 분열하게 되었다. 그의 명성에 힘입어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해서는 재정과 외교를 독단하다가 국무총리 이동휘와 충돌하고 이어 안창호와 대립하여 1925년 탄핵까지 받게 되었다. 그를 끝까지 옹호하던 김구가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하면서 신설된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945년 귀국하였다. 그런데 김구와도 정적이 되고 말았다.

이래 중등학생 중심의 학생운동이 비로소 대학생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한 학생운동이 4월 19일부터 일반 시민이 참가한 시민혁명운동으로 발전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곧 통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 하면서 평가를 절하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 어디에 일회성 혁명이 있었던가. 프랑스혁명도 1789년부터 1848년까지 59년이 걸렸다. 중국의 신해혁명은 1911년부터 북벌을 완성한 1928년까지 본다고 해도 17년이 걸렸다. 4·19혁명은 1960년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27년, 1993년까지라면 33년이 소요되었다. 그 동안에 1960년대에 6·3항쟁과 3선개헌반대투쟁, 1970년대에 유신반대투쟁과 부마민중항쟁, 1980년대에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이 있었다. 거기에는 4·19혁명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 면면이 흘러 그것이 한국현대사의 양대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¹⁰²⁾ 그런데 어떻게 군사정권을 기준해서 시기를 구분할 것인가.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고조된 시기였다. 그의 표현이 드골의 프랑스주의, 초세스쿠의 루마니아 독자노선, 중소이념분쟁, 알바니아사태, 그리고 1960년에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선언한 나라가 22개국에 이르러 그해 12월 24일에 유엔에서는 AA43국에서 제출한 식민지해방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한 세계적 민족주의 사조가 한반도의 민주화운동에도 반영되었다. 그것을 집권자도 외면할 수 없었다. 남한의 군사정권도 주체성확립을 제창했지만, 북쪽에서는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것이 1970년대에 남쪽에서는 유신체제로 변질하고, 북쪽에서는 유일 주체사상이 됐다. 주체사상 또는 유일사상은 북한 사상계를 주도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사상은 국수주의라고 할 정도로 경직된 느낌을 준다는 것이 남쪽의 중평이다.

(4) 산업화와 사회 문화의 발전

해방전에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해방 후에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적 역량을 증대시킨 것은 한국현대사 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아시아 대

102) 趙東杰, <4·19혁명의 民族主義의 性格>(《韓國近現代史의 이해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380쪽.

부분의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위로부터 이룬 성과였다. 거기서 지도역량을 증대시킨 점은 한국인으로서 부러운 바인데, 그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아래로부터 전개하여 대중적 역량을 증대시켰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한국현대사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아래로부터 창출한 발전 동력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적 교육열에 힘입어 해방 후에 교육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현대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정부수립 당시에 문교부에 성인교육과를 두어야 할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세계에서조차 문맹을 걱정하지 않는 굴지의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대중적 역량 증대가 해방 후 한국현대사의 특징인 것이다.

1945년 해방 당시 인구가 2천4백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남북한 7천5백만 명으로 5천여만 명이 증가하였다. 해방 당시만 해도 구시대의 신분제가 사실상 잔존했는데 이제 그것은 없다. 이웃 일본에는 아직도 부락회가 있어 백정 후손의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근대화를 선구적으로 추진한 영국에 중세 귀족 전통이 잔존한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다. 남한의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 이르고 경제규모와 무역량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군사정권이 1993년까지 30년 집권기간에 독재정치일망정, 또 개발 독재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산업은 발달시켰다. 그로 말미암아 정경유착의 구조적 모순, 부실공사의 만성화, 도덕의 타락, 농촌의 폐쇄, 부정부패의 만연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지만, 국민적 역량에 힘입어 경제는 발전할 수 있었다. 노동자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를 끊임없이 전개하며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학교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만 하는 것 같던 학생들도 밤새워 공부하며 학문을 도야했다. 그들이 학문과 기술과학을 발전시켜 전자기술은 세계 1위에 올라 섰다. 의무교육이 9년제에 이를 것도 멀지 않았고 신문·텔레비전·컴퓨터 보급률도 세계 수준에 도달하여 정보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아날로그시대도 비교적 빨리 달성했는데 디지털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한국인의 교육수준 향상이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사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당면 과제라 하겠다.

6백만 해외동포에 대한 모국정책도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1945년 8월 16일에 결성된 조선학술원에 등록된 회원이 1백 명을 넘지 못했는데 현재 대학 교수수만 6만 명을 넘는다. 2002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받으려고 등록한 학자수가 7만 명에 이르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등록한 인원만도 2만 4천 명을 넘는다. 해방 후 학문의 발달은 각 분야에 걸쳐 있었으나 특히 일제 강점하에서 위축되었던 한국학(조선학) 분야가 괄목되게 성장하였다. 남북한을 통하여 국어학·국문학·국사학·민속학 등이 경쟁적으로 발달하여 이제는 국학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의의 국수화를 염려하여 각급학교에서 국학교육에 제동을 걸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만에 도취할 단계는 아니다.

(5) 민주주의 개혁과 통일운동

4·19혁명 이후 오랫동안의 민주화운동 결과, 1993년에 이어 1998년에 민간정부가 수립되었다. 오늘날의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애호자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금융실명제를 시험하고, 군사정권 정치세력을 숙청하고, 군부의 군사정권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 식민지 우상이었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부패방지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만들어 민주주의 개혁이 뿌리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러한 개혁 분위기는 시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협의회·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여성운동 연합회·청년단체협의회 등의 시민운동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에 의한 정경 유착을 청산하지 못하고 혼란이 덜 된 정치인의 국가 운영으로 말미암아 1997년에는 경제가 파탄하여 국제금융기구(IMF)의 관리를 받아야 했고, 권력형비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 부패를 막지 못하여 사회 기강이 문란한 채 방치되어 있다. 문화농촌 건설의 소리가 높지만 그에 눈 돌릴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인구의 도시 집중과 수도권권의 이상 비대가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일본과의 어업협정의 실패로 동남 해안 어민들이 생활 터를 잃고 있는가 하면 독도문제가 새롭게

외로운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 해마다 교과서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군사정권 당시의 교과서체제를 완전히 벗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도덕성과 민주정치의 활동 경험이 일천하여 시행착오가 많아 국가가 표류할 때가 많다.

그렇게 회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의장을 맡고 노벨 평화상까지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한 국가 발전을 바탕으로 통일운동이 급진전하고 있다. 통일운동은 1960년대에 고조되었던 민족주의를 당시의 군사정권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외면할 수 없어 남북교류를 추진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1972년에 7·4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991년에 남북화해합의서가 교환되었다. 1994년에는 김영삼·김일성의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어 그의 실현은 김일성 사망 후의 김정일과 김대중 간에 2000년에 이루어져 6·15공동선언을 보게 되었다. 통일시대의 막이 열리는 신호였다. 그를 전후하여 남북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공식 비공식간의 무수한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개통을 위한 복구작업의 망치 소리가 민족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2002년 9·10월에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와 응원단이 대거 참가하여 화해와 협력이 더욱 무르익고 있다. 금석지감이 새로울 뿐이다.

여기서 역사의 교훈을 하나 되새겨 둔다. 2002년의 태풍으로 삼남일대가 쓸바람으로 황폐해졌는데 그것을 온 국민의 정성으로 복구하고 있다. 수재의연금이 1천2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역량은 아직도 감퇴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만하고 있을 수 없다. 역사의 퇴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도의 우상화와 자기 자신의 우상 즉, 자만에서 비롯됐다. 조선시대 초기의 《經國大典》(1469)이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계적으로 보면, 우수한 제도를 정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선조말 《大典會通》(1865)에 이르기까지, 4백년에 걸쳐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개혁하지 못한 것처럼, 제도의 우상이 나라와 역사를 그르쳤다. 고을마다 향교를 두고 서원·서당을 설립하고 마을마다 글방을 두고 집집이 조상의 문집을 만들며 글과 도덕을 숭상한 그런 조선시대 사람과 같은 도덕주의 인간상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다. 그런데 그 글과 도덕이 사회변천에 따라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은 생각하

지 않고 자신을 우상화하다가 그 글과 도덕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우상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자주적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세계화를 촉진하고 비판에 비판을 거듭하며 자성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우상을 버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¹⁰³⁾

〈趙東杰〉

103) 趙東杰, 〈21세기 韓國史學의 方向〉(《韓國史論 30》국사편찬위원회, 2000):
《韓國近現代史의 이상과 形象》(푸른역사, 2001), 508쪽.